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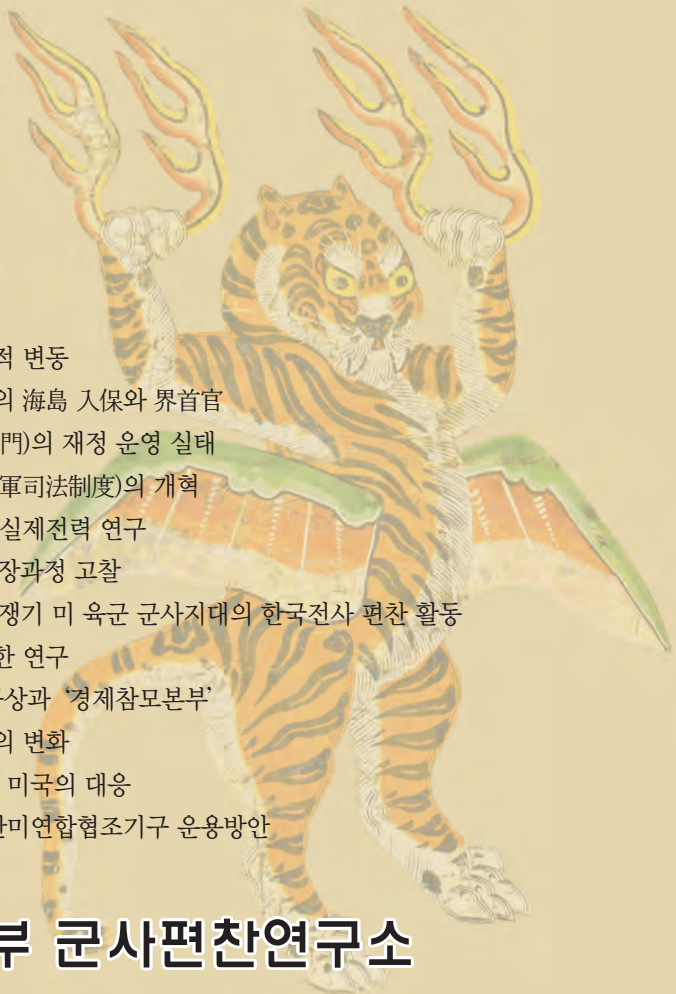
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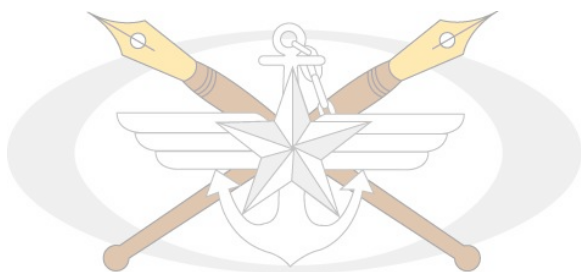
제 89 호 2013. 12

史

-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기 미 육군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 활동
- 나폴레옹의 기병전술에 관한 연구
-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
-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과 미국의 대응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지그림

虎旗(조선후기. 營門밖 양편에 세우는 군기로서 검은색 바탕에 날개 달린 호랑이가 화염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軍史

第 89 號
2013. 12



· 卷 一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軍史

第 89 號

20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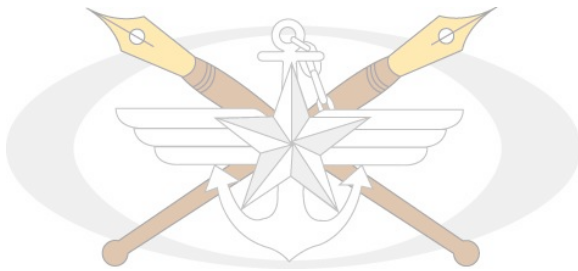
目 次

1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 복신의 정국 주도과 풍왕의 대응을 중심으로 -	김병남
33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윤경진
75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이광우
115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	김혜영
161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	김선호
197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이신재

233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기 미 육군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 활동	정용욱
267	나폴레옹의 기병전술에 관한 연구	주정율
297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	박성진
331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박태균
363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과 미국의 대응	정광호
389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주

부 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3. 신간도서 소개
4. 『軍史』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에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 복신의 정국 주도과 풍왕의 대응을 중심으로 -

김 병 남*

- 
1. 머리말
 2. 풍장의 왕위계승 의미와 귀환 시기
 3. 복신의 정국 주도과 풍장의 위상
 4. 복신의 실패와 풍왕의 친위정변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서기 660년 6월 21일에 당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덕물도에 도달하였다. 백제에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후 7월 9일 백제는 계백을 보내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을 방어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7월 12일에는 수도인 사비성을 포위당했다가 마침내 7월 18일에 의자왕이 항복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꺾이게 되었다. 채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다. 황산벌 전투로부터는 따지만 9일 만의 일이다. 신라와 당나라의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연합군은 갑자기 나타나서 백제 서울을 에워싼 지 6일 만에 전쟁 상황을 종료시켰고, 백제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백제와 신라의 전쟁은 빈번한 일이었기에 백제 사람들은 패전을 절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왕조의 단절이 ‘한순간의 실수’일 뿐, 정말 전쟁 자체에서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 정말로 한번 해 보자는 태세였다.¹⁾ 왜냐하면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가 익히 아는 백제 부흥운동의 줄기찬 전개였기 때문이다.

백제 부흥운동 세력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미 국가 재건의 열쇠인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왜에 체류 중이던 풍장의 귀환이 공식 요구한 상태였다. 풍장의 영입과 왕위 계승은 부흥 백제세력의 중앙지휘부를 견고하게 하고, 그 지휘 아래 조직적 명령체계를 갖추어 단기간에 국가의 부흥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필수 조건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의자왕을 계승하는 왕으로서 풍장의 귀환이 갖는 딜레마도 있었다. 부흥운동이란 것은 기존의 정치체제가 무너진 후 권력의 공백을 최종적으로 누가 메우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백제 사람들의 눈에 정통성을 가진 전 왕조의 출생 중에서 계승하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는지, 아니면 권력자는 따로 있고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워지는지에 있었다.

서기 661년 말에서 662년 초에 백제의 부흥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풍장은 백제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풍장과 복신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재연되고 말았다.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음²⁾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풍장과

1) 구대열, 『삼국통일의 정치학까지』, 2010, 384쪽.

2) 이와 관련된 연구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문화사,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 이야기』, 주류성,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복신이 갈라서게 되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은 기록들을 토대로 서기 661년 9월 풍장의 왜국 출발 시점으로부터 서기 663년 6월의 복신 제거까지의 1년 10개월 사이 부흥운동 내부의 상황 전개와 함께 당시 부흥백제국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소, 즉 나·당군의 움직임까지 결합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백제 부흥운동의 성패에 대해 재음미해 보도록 하겠다.

2. 풍장의 왕위계승 의미와 귀환 시기

기록에 의하면 부흥세력이 부여풍의 귀환을 요청한 것은 서기 660년 10월³⁾이었다. 당시 백제지역은 각처에서 부흥군이 일어나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중이었다. 복신이나 도침·정무·여자진 등의 부흥세력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단절된 왕통을 이으면 국가는 계속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당시 백제 사람들은 ‘위험한 국가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부터 두 달 만인 서기 660년 9월 23일에 사비성을 포위·공격하고, 10월에는 왜에 사신을 보내 부흥세력의 구심점으로써 왕자 풍장의 왕위 계승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다시 6개월 뒤인 서기 661년 4월에도 나타난다. 『일본서기』에는 복신이 풍장으로 여겨지는 왕자 규해⁴⁾의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이 시기는 부흥세력이 두량이·고사비성 전투(661년 3~4월)에서 승리하여 기반을 고착시켜 나갈 때였다.⁵⁾ 이 전투의 승리로 ‘남방제성(南方諸城)’이 모두 귀속되었다⁶⁾고 할 정도로 부흥세력의 기세가 높았던

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문화사, 2008.

3) 『일본서기』 26, 제명 6년 10월.

4) 김영관, 앞의 책, 122쪽. 이와는 달리 규해를 풍장의 동생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앞의 책, 2003, 255쪽.)

5)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 2012, 280~305쪽.

6)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상태였다. 따라서 부흥세력에게는 풍장의 조속한 귀국과 등극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백제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배층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려 지방세력은 각기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서기 661년 4월 이후 사비정부를 대체할 주류성 체제가 어느 정도 구현되자 당과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정국을 관망하던 지역세력들이 일순간 부흥군에 호응하였던 것이다.

이에 복신은 부흥세력의 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지역세력의 결속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밀착시켜 부흥세력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왕위의 승계를 통해 백제의 ‘재조(再造)’ 내지는 ‘계속’을 실행할 능력과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 시작점은 바로 풍장의 초기 귀국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장의 귀환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풍장의 귀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3개월 후인 서기 661년 9월이였다.

- ① 9월 황태자가 나가쓰노(長津宮)에 가서 백제 왕자 풍장(豐璋)에게 직관을 주고, 또 오오노오미코모시키(多臣蔣敷)의 누이를 아내로 삼도록 했다. 그리고 대산하(大山下) 사이노무라치아치마사(狹井連檳榔)·소산하(小山下) 하타노미야츠코노다쿠쓰(秦造田來津)을 파견하여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본국까지 호위해 보내게 하였다. 이에 풍장이 입국할 때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라의 정사를 모두 맡겼다.(『일본서기』 27, 천지 즉위 전)
- ② 여름 5월 대장군 대금중(大錦中) 아즈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羅夫連) 등이 수군 170척을 거느리고 풍장 등을 호위하여 백제국에 호송한 후 칙서를 내려 풍장이 그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또한 복신에게 금책을 주어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작록을 포상으로 주었다. 이때에 풍장 등은 복신과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고 칙서를 받으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그런데 위의 기록에 따르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서기 661년 9월만이 아니라 이듬해인 662년 5월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료 ①에는 백제 왕자 풍장을 “군사 5천 명에게 호위하게 하여 본향으로 보냈다(率軍五千餘 衛送於本鄉)”고 나오는데, 사료 ②에도 분명 “수군 170척을 보내면서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서기』는 풍장의 귀환에 대해 두 종류의 시기를 병기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꼴이 된다.

같은 ‘풍장’에 대한 기사들인데도 귀국 시기가 다른 것은 『일본서기』 찬자가 사용한 원자료가 달랐기 때문이란 견해가 있다. 즉 사료 ①은 서기 661년 9월에 풍장을 호위하여 따라간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관련된 가기(家記)를 참고하였으며, 사료 ②는 아츠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羅夫連)의 활약상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귀국 시기가 두 가지인 것은 편찬자의 착오가 아니라 참고 자료 때문이며, 편찬자는 『일본서기』 본문 내용의 통일보다는 원자료를 그대로 실는 것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⁷⁾ 이는 결국 두 기록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를 인정할 경우 풍장의 백제 귀국 시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풍장은 서기 661년 9월에 치쿠시(筑紫)로 와서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 바다를 건널 기회를 엿보았지만 결국 이듬해 5월에야 5천의 구원군을 실은 170척의 선단과 함께 귀환한 것⁸⁾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기사 중 하나만을 풍장의 귀국 시기와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그의 귀환 시점과 이후 백제에서의 풍장의 상황, 정확히는 그의

7) 박재용, 「『일본서기』에 인용된 도현의 『일본세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130쪽.

8)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푸른역사』, 1997, 240쪽.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지),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전투』, J&C, 2002, 155~156쪽.

심정보,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연구총서 6, 2007, 200쪽.

정식 즉위 시점에 대한 것으로 추정함이 어떨까 한다. 즉 부여풍의 귀환은 부흥세력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1년여인 서기 661년 9월이지만 백제 도착 이후 정세 변화에 따른 부흥세력 내부의 정치적 요동이 그의 정식 즉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구당서』 백제전에는 “이때는 용삭 원년 3월이다……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대를 아우르니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다”고 하여 용삭(龍朔) 원년 즉 서기 661년에 부여풍이 귀국하였고, 복신이 도침을 죽인 후에는 제사만 주관하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따르면 적어도 서기 661년 3월 이후에는 부여풍 즉 풍장이 백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일본서기』 제명 6년 10월 기사에도 “왕자 풍장과 처자를 그의 숙부 충승 등과 함께 보냈다. 그를 정식으로 보낸 때는 7년에 보인다”고 기록하여, 풍장이 백제로 돌아간 시기를 제명 7년이라 하여 서기 661년임을 확인해준다. 그러므로 이들에 근거하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사료 ①의 서기 661년 9월⁹⁾ 이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서기 662년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료 앞부분의 “送豐璋等於百濟國”보다는 “以豐璋等使繼其位”라는 부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풍장이 그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는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정식 즉위식을 통해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염두에 두고 풍장의 귀환 과정을 좀 더 추적하면서 위 두 기록이 갖는 접합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풍장이 왜국을 떠난 시점은 언제였을까? 사료 ①에 따르면 풍장은 떠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치러야 했다. 하나는 왜의 ‘직관(織冠)’을 수여받는 일이었다. 이는 대화개신(大化改新)으로 서기 647년에 제정된 19단계 관위 중 최고 관직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9) 변인석, 『백강구 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1994, 161쪽.

노중국, 앞의 책, 2003, 120쪽.

대해서는 왜가 풍장을 신하로서의 위치에 두려 했던 것¹⁰⁾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식 수행에 따르는 일정 소요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사실이다. 풍장이 왜에 간 것이 서기 643년의 일이므로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왜에서 보낸 것이 된다. 당연히 혼자 살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략결혼의 배경이나 의미 등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사실에서도 주목할 것은 그로 인한 일정과 시간이다.

왕실의 관직 수여나 국혼(國婚)에 준하는 행사 등은 각종 의식 절차로 인해 상당한 노고와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런 행사들을 소화해 낸 풍장과 그 일행이 왜지(倭地)를 떠나게 된 시기는 빨라야 9월 하순¹²⁾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풍장이 부흥세력의 거점인 주류성(부안)¹³⁾에 언제 도착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풍장은 현재의 후쿠오카(福岡)의 나가쓰노(長津宮)를 출발하여 주류성까지는 얼마 만에 도달했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항해 기록이 남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길련박덕서(伊吉連博德書)』에는…… 2척의 배로 오당(吳唐)의 길을 이용하여…… 8월 11일에 치쿠시(筑紫)의 오오쓰우라(大津浦)를 출발

10)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앞의 책, 162쪽.

11) 변인석, 앞의 책, 103쪽.

12) 이렇게 보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국의 제명(齊明) 여왕이 사망한 것이 서기 661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국상 기간인 8~9월(변인석, 앞의 책, 44쪽.)에 풍장이 참석하지 않고 귀국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심정보, 앞의 논문, 197쪽.) 이러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좀 더 늦어져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13)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산 건지산성과 부안 위급암산성 그리고 홍성, 연기 당산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부안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이도학, 앞의 책, 245~247쪽; 노중국, 앞의 책, 2003, 195~196쪽; 김영관, 앞의 책, 17쪽.) 아울러 주류성을 중방성 즉 고사성으로 보는 견해(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222쪽.)도 제기되었는데 이 또한 주류성이 부안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하였다. 9월 13일에 백제의 남단에 있는 섬에 이르렀는데 섬의 이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9월) 14일 인시(寅時)에 2척의 배가 연이어 대해(大海)로 접어들었다.……(『일본서기』 26, 제명 5년 7월)

위는 2년 전인 서기 659년에 왜에서 견당사를 파견하였을 때의 항로를 적은 것으로, 당시 견당사는 북큐슈(北九州)를 출발하여 절강성의 괭주(括州)를 거쳐 낙양에 이르는 코스를 밟았다. 그런데 이 견당사의 출발점인 오오쓰우라(大津浦)가 바로 현재의 후쿠오카 하카다(博多) 만이다. 따라서 풍장의 출발지와 동일한 곳이었다.

당시 견당사의 배는 ‘오당지로(吳唐之路)’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북큐슈를 출발하여 한반도 남서부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의 강남지역으로 직행하는 항로를 가리킨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백제 남단의 섬에 이르렀고, 이어 대해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후쿠오카에서 제주 남쪽을 지나 동중국해로 나가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은 동중국해의 기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남동 내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견당선은 대개 여름에 일본을 출발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서기 661년 9월의 풍장 일행 또한 사료 ①에 나오는 나가쓰노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백제 남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다.¹⁶⁾ 또 풍장이 이용하였을 코스는 견당사의 오당지와 달리 남해안의

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 2008, 174쪽 각주 845번.

15) 삼국시대의 항해에는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거의 겨울 계절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는 반면에 일본에서 신라로 향하는 경우에는 봄에서 초여름, 가을에 걸쳐 남풍 계열의 바람을 이용해야만 순조롭다.(윤명철, 「신라해대의 해양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1, 2000, 208~209쪽.)

16) 600년 후인 고려 원종 15년(1274)에 있는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시에도 군사 25,600명에 전함 900척이 동원되어 10월 3일에 합포(마산포)를 출발, 10월 5~6일에 대마도 기습, 10월 14일에 일기도 공격, 10월 19일 하카다만 도착의 순으로 이루어져서 마산에서 하카다 사이의 항해기간이 보름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하카다에서 거제 앞바다까지의 거리도 겨울의 역풍 속에서 진행되었을 풍장 선단의 항해기간은 생각 이상으로 길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데다가 다시 그 남단을 거쳐 북으로 서해안을 따라 주류성(부안)까지의 거리가 더해진 것이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연안항로 선택 시에는 섬들이 많고, 조류의 움직임이 복잡하면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반도의 서남해안은 조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방향의 지역적 편차도 심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¹⁷⁾ 아침저녁으로 해풍과 육풍이 바뀌는데다가 바람이 주위 지형과 부딪혀 흐름이 변하는 등 배의 운항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운항 일정도 늘어지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서기 659년의 견당사는 2척의 배에 불과했지만 서기 661년 9월의 풍장 일행은 휘하에 5천의 군사까지 동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와 무기·군량 등까지 한꺼번에 움직였을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규모는 사료 ②의 표현처럼 수군 170척¹⁸⁾이 동원될 정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풍장과 5천 군사를 실은 선단의 이동 속도는 더욱 떨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오늘날처럼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달리지 않은 전근대 이전 시기 선박의 경우 순전히 사람과 바람¹⁹⁾의 힘을 이용해야 만이 항해가 가능하였기에 속도 또한 생각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더불어 기상

17) 고정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101쪽.

18) 서기 6~7세기 왜의 병선(兵船)은 본질적으로는 수송선인데 크기는 길이가 10m가 약간 넘고 20명 정도가 탑승(김대욱, 『전쟁의 시대 한국고대사 700년의 체통』, 2012, 358쪽; 변인석, 앞의 책, 196쪽.)한데, 이럴 경우 풍장의 군사 5천이 170척에 나뉘려면 1척당 29~30명이 되어 승선 인원 초과가 된다. 하지만 ‘백제선(百濟船)’ 건조(『일본서기』 25, 효덕 백지 원년) 사실로 보건대 대형 선박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30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新川登龜男, 「백강전쟁과 고대 동아시아」,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347쪽.) 다만 명나라 말기 모원의(茅元儀)가 지은 『무비지(武備志)』 단계에서도 ‘왜인(倭人)의 배는 매우 허약하여 대선은 300명, 중선과 소선은 50~100명을 수용할 정도이나 배 밀이 평평하고 돛이 하나라 순풍에만 사용하고 폭풍이나 미풍(迷風)을 만나면 돛이 넘어지고 노가 흔들려 대양을 건널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비록 중대형의 선박이 있더라도 제조 기술의 미흡함(정진술 외,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2007, 307~308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 서기 838년 일본의 견당사 파견 때 참여한 엔닌(圓仁)의 기록에는 출발 때인 6월 13일에 “바람이 불지 않아 사흘을 머물렀다”거나 6월 17일에도 “바람이 없어 다섯 동안 머물렀다”는 등 항해에 바람의 영향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복룡 역, 『입당구법순례행기』, 정신세계사, 1991, 19쪽.)

변화 등의 제약 조건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며, 원활한 식량·식수의 공급 문제²⁰⁾와 비좁고 불결한 공간에서 빈발하는 전염병²¹⁾ 등도 있어서 수시로 육지에 정착하여야 했고, 때때로 항해 중의 진법 혼란²²⁾까지 고려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항해거리나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견당사의 움직임보다 2배인 60일 이상은 잡아야 주류성 근방에 도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풍장이 9월 말에 후쿠오카에서 출발하였다면 아무리 순조롭게 부안 주변에 도달하여도 거의 11월 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항해는 언제나 예측불허²³⁾였기에 실제 풍장 일행은 좀 더 늦은 12월이 되어서야 도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③ 이 해에…… 또 일본의 고(구)려 구원군 장수들이 백제 가파리의 해안에 정착하여 불을 피웠다. 배에 구멍이 생겨 가는 소리가 났는데 화살이 날며 우는 소리 같았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고 하였다. (『일본서기』 27, 천지 즉위전)

위 사료 ③은 앞에서 언급한 사료 ①과 같은 해의 기록이다. 『일본서기』에는 사료 ①의 서기 661년 9월 기사에 이어 12월에 고구려와 당군 사이의 평양성 공방에 관한 기록을 전한 뒤에 바로 이 기록을 적어 놓았다. 이를 보면 ‘이 해[是歲]’는 적어도 12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다

20) 서기 660년 백제 중앙정부의 붕괴에 따라 서남해안 일대 백제 관할지역의 해상 보급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엔닌은 “사람마다 설사로 고생하여 배의 출발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기록도 적었다. (신복룡 역, 앞의 책, 31쪽.)

22) 『일본서기』 천지 2년 8월 기사에는 백강구 전투의 패인으로 “기상을 관찰하지 않음(不觀氣象)”과 “뱃머리와 고물을 돌리지 못함(艦舳不得廻旋)”을 들고 있어 수군 혼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3) 삼국이나 왜국보다 더 발달된 선박과 항해술을 지녔을 수·당도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오는 작전 때에는 선박 파손과 병사의 익사라는 거대한 손실을 왕왕 입을 정도라 하였다. (胡戟, 「中國 水軍과 白江口 戰鬪」,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254쪽.)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종래 왜 왕권과 고구려 사이의 정보 교류와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구려 구원군’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²⁴⁾ 실제 『일본서기』에는 이 시기 왜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백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예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 ④ 이 달에 당인(唐人)과 신라인(新羅人)이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가 우리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장수를 보내 소류성(疏婁城)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 ⑤ 여름 5월 계축삭에 오노우에(犬上君)[이름이 빠졌다]가 달려가 병사의 일을 고(구)려에게 알리고 돌아왔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위의 기록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구려를 구하러 갔다’거나 ‘고구려가 구원을 요청하여 장수를 보냈다’거나 ‘군사에 관한 일을 고구려와 상의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신뢰하여 고구려와 왜 사이에 군사적 연합도 생각해 보게끔 한다.²⁵⁾ 하지만 위의 기록들을 자세히 음미할 때 드는 의문은 고구려 구원군이었음에도 그 종착점이 왜 하필 가파리 해변이나 소류성에서 끝나는가 하는 점이다.

사료 ③에서 고구려 구원군이 도착한 곳은 가파리 해안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전북 부안 일대로 추정하는 곳이었다.²⁶⁾ 또 사료 ④에도 고구려가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왜군이 진을 친 곳은 소류성 즉 주류성²⁷⁾

24) 연민수,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34쪽.

2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84쪽 각주 914번.

26) 전용신 편,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486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84쪽 각주 915번.

27) 新川登龜男, 앞의 논문, 342쪽.

이었다. 그리고 사료 ⑤의 ‘병사를 아뢴다(告兵事)’는 것도 고구려 구원을 위한 군사 논의였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왜군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한 일(兵事)’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료 ③에서 언급된 ‘고구려 구원군’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백제 구원군은 백제 가파리 해안에 정박하였을 때에는 한겨울의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계속된 항해로 인해 배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지난한 여정을 겪었음을 짐작케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단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풍장과 그 일행의 백제 귀국 여정은 근 3개월, 적어도 70일 이상이 소요된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는 어떤 사람의 말은, 애초에는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선단의 왜에서 백제에 이르는 바닷길이 생각보다 어려웠기에 원조를 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스스로 체득한 넋두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풍장의 백제 귀환 시기는 종래의 서기 661년 9월이나 662년 5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별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은 관련 기록들을 조합하여 살펴보면 풍장이 백제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서기 661년 9월이 맞지만 목적지인 백제 주류성 근방에 도착한 것은 만 2달 이상의 험난한 항해 끝인 서기 661년 12월이었다고 추측된다.

3. 복신의 정국 주도와 풍장의 위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장은 서기 661년 9월 이후에 비로소 귀국 길에 오른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당시의 백제 땅은 부흥세력, 당, 신라가 함께 얹혀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를 야기하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던 전쟁터였다.

특히 서기 661년 9월은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신라가 부흥세력과 당 주둔군 사이의 미묘한 관계²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던 때로, 향후 부흥 백제세력의 정치적 동향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웅산성 전투가 치러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서기 661년 6월에 당이 고구려 정벌을 개시하면서 신라에게도 군대 동원을 요청하자 문무왕이 7월에 대장군 김유신을 필두로 24명의 장군과 대당, 귀당, 상주정, 하주정, 남천주정, 수약주정, 하서주정, 서당, 낭당, 계급당 등 10개 군단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시이곡정에 이르렀는데 웅산성에 진을 친 백제 부흥군이 진격로를 차단하자 전투가 벌어져 9월 27일에 웅산성을 함락시켰다고 나온다.²⁹⁾

당이 고구려의 배후를 치기 위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신라군은 거의 5만에 육박하였다고 보는 견해³⁰⁾도 있는데 이 대규모 신라군의 공격 목표는 당연히게도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하지만 그 군대의 실제 목표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 부흥세력의 웅산성이었다.

공교롭게도 풍장 일행이 군사 5천과 함께 왜국을 출발한 9월 말에 부흥을 위해 노력하던 백제 땅에서는 신라와 부흥세력 사이에 항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부흥군은 웅산성이 함락당하여 성을 사수하던 장수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을 잃었고, 계속해서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술성(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수척골)³¹⁾마저도 공격당하여

28) 당 주둔군과 부흥군 사이의 외교적 교섭에 관해서는 김병남, 「백제 풍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 -도침의 몰락과 복신의 주도 배경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0, 2013, 참조.

29)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원년.

30)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2011, 185~187쪽.

31) 김정보,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 2006, 490쪽.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501쪽.

다시 부흥군 1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았다. 요충지인 웅산성과 연이은 우술성의 함락은 백제 부흥군에 큰 타격이었다. 두 전투에서 전사한 군사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되었고, 더구나 이제까지 웅진 주둔 당군의 목을 조르던 군량 수송로마저 일부 끊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흥세력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웅산성 전투의 더욱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었다. 풍장의 귀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는 국가 재건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것이다. 당시 복신은 풍장의 귀환과 등극이라는 일정과 함께 지역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 재건에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백제와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기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고, 나아가 지역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³²⁾ 우술성의 함락 시에 나타난 조복과 파가의 투항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서기 662년 2월에 탐라국주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한 것³³⁾은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연쇄적으로 부흥세력 중심부의 정치적 변동까지 야기하였다. 즉 『구당서』 열전의 표현처럼 “얼마 있다가 복신이 도침을 살해”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인 것이다. 도침의 몰락에 대해서는 서기 661년 2월의 웅진강구 전투 패배 때문³⁴⁾이라거나, 웅진강구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고사령관 행세를 하여서라거나³⁵⁾, 복신은 풍왕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여겼는데 도침은 깎듯이 군신의 예를 갖추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서 유인궤의 사자를 만난 것을 이적행위라는 명분으로 살해하였다³⁶⁾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

하지만 웅진강구 전투는 이어진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로 상쇄될

32) 김병남, 「백제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 42, 2013, 65쪽.

33)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2월.

3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 『선사와 고대』 19, 2003, 287쪽.

35) 노중국,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101쪽.

36) 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04쪽.

만한 것이었고, 이후 도침의 정국 주도를 보더라도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다. 그러한 과정이 쌓여 불신이 드러났겠지만 중요한 점은 서기 661년 4월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 이후, 서기 661년 6월 신라 무열왕의 사망과 문무왕의 즉위, 그리고 당의 고구려 정벌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 대내적으로는 흩어진 지역세력을 규합하여 국가 부흥을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풍장의 귀환으로 백제국의 성립을 고착화하려는 정치 일정이 모두 흐트러져버린 것에 있었다. 따라서 백제 부흥세력, 그 중에서도 복신에게는 서기 661년 9월의 상황 전개가 백제 재건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계기로 복신 중심의 정치세력에 의한 도침 제거라는 정국 변동이 단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므로 풍장이 가파리 해변에 배를 낸 12월 이전에 이미 부흥 백제 세력 내에서는 복신의 도침 제거와 정권 장악이라는 정변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겨우 백제 땅에 발을 디딘 풍장에게나 그를 의지하고 왔을 일행, 나아가 왜에서 파견된 호위군의 관료 및 장수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였다.

우선 풍장에게는 왕위 계승자로서 갖는 존재 가치와 위상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애초 풍장의 귀환 요청에는 복신과 도침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려고 참여한 여러 세력의 합의 아닌 합의에 따른 추대 형식을 띠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도침과 복신이라는 두 지도자의 부상으로 부흥세력이 사실상 양분화 된 상황에서도 양자를 조정하고 부흥세력의 동요를 안정시킬 제3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될 여지가 충분하였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공식 귀환 일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백제의 정치적 변동은 '본향(本郷)'에 돌아온 풍장에게 전과 같은 입지를 보장할 토대가 사라지게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이제 부흥세력은 복신의 주도하에 그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수립되어 출발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660년 10월의 풍장 귀환 요청 시기와는 달리 그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방안 모색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의 귀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오는 복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제 풍장의 등장은 자신의 권력 행사와 정국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료 ①처럼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국정을 받들어 모두 위임(奉國朝政 皆悉委焉)"하였다는 표현은 '실력자가 명목상 군주를 맞이한 것'³⁷⁾을 뜻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권력을 나눠 가질 파트너도 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도침이 살아있고 복신과 도침이 권력을 양분한 상태라면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왕이란 존재의 활용이 가능한 구석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오로지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국왕은 자칫 권력자의 의사나 행동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따름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풍장의 귀환 이후 기록들은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역전되어 갔음을 추정케 한다.

봄 정월 신묘삭 정사에 백제 좌평 귀실복신에게 화살 10만 개, 실 500근, 솜 1,000근, 포 1,000단, 무두질한 가죽 1,000장, 벼씨 3,000곡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3월 경인삭 계사에 백제왕에게 포 300단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만일 풍장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위의 천지 원년 정월의 내용은 복신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풍장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이라 표현된 풍장에게는 3월에 가서야 포 300단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도 백제의 상황, 정확히는 풍장의 위상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37) 구대열, 앞의 책, 390쪽.

달리 표현하면, 왜에서 백제에게 지원될 전쟁 자금이 고스란히 복신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이 물자를 풍장이 귀국하면서 함께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왜국 지원인지를 당장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월의 물자 대부분이 복신에게 귀속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 물자가 시기상으로 볼 때 풍장이 귀환하던 선단에 실려온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데에는 풍장이 향후 부흥 백제국에서 갖는 실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크게 부합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풍장의 귀환 시기를 서기 661년 12월로 추정하였다. 그 시점은 복신이 도침을 제쳐하고 정국을 주도하던 이후였다. 그런 와중인 이듬해 서기 662년 1월에 왜에서 보낸 대규모의 전쟁물자 마저도 복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다. 권력 유지에는 자금이 필요함은 동서고금의 이치이다. 더군다나 당시 백제의 상황은 전시로 더더욱 물자의 소비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물자는 풍장이 왕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지역의 정치 상황이 180도 변해버린 실정에서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다. 그러므로 서기 661년 1월의 대규모 물자가 복신에게 돌아간 것, 그리고 두 달 후인 서기 662년 3월에 풍장에게는 단지 포 300단만 주어진 것 자체에 사료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복신과 풍장의 위상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서기 662년 3월 기록에 풍장이 아니라 ‘백제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시점에 이르면 복신과 풍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절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³⁸⁾ 즉 복신 측이 풍장을

38) 『삼국사기』 문무왕 2년(662) 3월에 “大赦 王以既平百濟 命所司設大酬”라 하여 백제 측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복신과 풍장 양자의 관계 정상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왕으로서 인정하는 대신에 풍장 측에서는 복신의 국정 운영을 방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구당서』의 표현에 따르면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라는 명목상 통수권자의 역할³⁹⁾ 수행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그리하여 앞선 사료 ②와 같이 서기 662년 5월에 이르러서야 풍장은 정식 ‘왕위를 이어받아(繼其位)’ 즉위하기에 이른 것이다. 왕위 등극 의식은 백제국의 재건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의식에 참석한 백제민과 부흥군 등의 대부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겠지만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풍장과 그 측근에게는 짙은 회한과 오욕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간난고초를 겪으며 백제국의 재건을 이끌어낸 복신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환희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4. 복신의 실패와 풍왕의 천위정변

서기 662년 5월에 부흥세력은 풍장의 왕위 즉위로서 비로소 백제국의 부흥을 완수하였다. 따라서 이후 백제국의 향방은 오로지 정권을 틀어쥔 복신의 공과와 연관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진용을 갖춘 백제국의 상황은 내부의 체제가 공고하게 되기 전 외부의 충격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가을 7월에 유인원과 유인궤 등이 백제 측에 방비가 없는 것을 알고는 갑작스럽게 출동하여 격파하고서 지라성(支羅城) 및 윤성(尹城)과 대산책(大山柵)·사정책(沙井柵) 등의 성책을 함락시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며, 이어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

39) 이도학, 앞의 책, 251쪽.

(眞峴城)이 험준한 요충지라 하여 군사를 보태어 지켰다. 유인궤가 그들의 방비가 조금 해이한 것을 엿보고는 신라의 군사를 이끌고 밤을 틈타 성 아래에 다가가 풀을 잡고 기어올라가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에 드디어 신라의 군량 수송로를 뚫었다. (『자치통감』 200, 「당기」 16, 용삭 2년)

위의 기록에 따르면 풍왕 즉위 2개월 만인 서기 662년 7월에 나·당군의 반격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당 주둔군은 웅진 동쪽의 지라성(대전 대덕구 비래동 칠현성)·윤성·대산책·사정책(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성) 등⁴⁰⁾을 공격한 것이다. 이것들은 당군의 공격을 일제히 받은 것으로 보아 상호 보조가 가능한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주둔한 백제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듯 하다. 그러나 백제군은 당군의 불시 공격에 변변히 대적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권력의 향방에 따른 긴장과 불안 그리고 허탈감 등이 뒤섞여 부흥세력 전체에 뒤덮였을 것이다. 부흥세력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 부흥운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선의 긴장 완화와 방비 미흡 등을 초래하여 백제국은 웅진 동쪽의 주요 성들이 나·당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패전으로 많은 백제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국은 남은 병사들을 진현성(대전 서구 봉곡동 흑석동산성)으로 집결하여 신라와 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진현성은 지정학상 대전에서 연산으로 가는 통로로써 당 주둔군과 신라 사이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어서 백제군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중요한 성이 으레 그렇듯이 강을 끼고 있었고, 높고도 험했기에 지키기에도 쉬운 곳이었다. 하지만 백제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나·당 연합군이 성 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고, 마침내 날이 밝을

40) 심정보,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983, 167~170쪽.

무렵에 개시된 나·당군의 공격에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구당서』에서 이 전투로 살해된 부흥 백제군을 800명이라 한 것을 보면 짐작컨대 주둔한 병력은 1,000명이 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백제군은 진현성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는 신라와 당 주둔군 사이에 연결된 보급선 차단에 또다시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인원이 군사를 더해 줄 것을 아뢰어 청하자 [고종은] 서를 내려 치주(淄州)·청주(靑州)·내주(萊州)·해주(海州)의 군사 7천 명을 일으키게 하고 좌위위장군 손인사(孫仁師)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유인원의 군사를 증원케 하였다.(『구당서』 199 상, 「열전」 149, 동이 백제)

승리에 고무된 유인궤와 유인원은 증원군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당 조정에서는 백제 주둔군의 완전 철수까지 고려하던 방침을 변경해서 손인사에게 산둥에서 징발한 7천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라성 등과 함께 진현성의 함락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백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사지성을 근거로 하여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8월에 백제의 남은 적(賊)들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모여 나쁜 짓을 행하므로 흠순(欽純)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토벌하여 깨뜨렸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위 기록은 특이하게도 이 시기와 관련된 중국 측 사서에 나타나지 않는 전투 사실로, 이는 온전히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다분히 신라의 관점에서 “나쁜 짓을 한다”고 표현된 것을 보면 부흥 백제군의 반격이 상당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이 내사지성(대전 서구 월평동) 또한 대전-공주 간의 길목을 지키는 요충지의 하나였다. 부흥 백제군이 이 성을 근거로 당 주둔군과 신라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자 신라는 김흠순 등 장군 19명을 동원하여 공격케 한 것이다. 그런데 내사지성을 공격하는 신라 장군의 수는 서기 661년 3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 동원된 장군 숫자보다 11명이나 많았다. 이는 신라의 공격이 대규모임을 시사⁴¹⁾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백제군의 규모도 적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하지만 서기 662년 7월에 나·당군에 의해 지라성·윤성·대산책·사정책 및 진현성 등 주요 거점 성들이 함락된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신라군의 공격으로 내사지성마저 빼앗김으로써 백제군은 금강 이동의 전략적 거점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이는 옛 백제 땅의 북부지역 즉 오늘날의 충남 지역 일대가 거의 당 주둔군과 신라에게 빼앗겼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자 백제국 내부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서서히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기 662년 7월과 8월에 있는 나·당군의 공격에 따른 백제군의 패배는 복신 정권의 위상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이란 남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슴이 후련해지는 동물이다. 그런 인간을 통솔해야 하는 지도자, 특히 자신의 치세를 막 시작하는 지도자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으면 국민들은 좋은 징조라 느끼고, 어려움에 부닥쳐도 이 사람이라면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시작부터 비틀거리면 국민이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그 후의 통치가 몇 배나 어려워진다.

도침을 제거하고 시작된 복신 정권의 시작은 순조로웠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왕위에 올랐하려고 불려온 풍장마저도 어느 면에서 완벽하게 굴복시켜 “오로지 제사만을 주관”하는 형식적인 왕에 머물게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더불어 비록 왜의 구원군이 일부나마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투입되자 당 주둔군과 신라의 준동까지 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앞에서

41) 노중국, 앞의 책, 2003, 242쪽.

본 사료 ④의 내용처럼 서기 662년 3월에 왜군 장수가 주류성[소류성]에 진을 치게 되자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고 할 만큼 전선도 안정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를 회복하려는 전시였다. 즉 복신 주도의 부흥세력은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란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주도권만 잡으면 그 후의 싸움도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도권을 적에게 빼앗기면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뒷북만 치고, 이래서는 결과가 안 좋다고 체념해서 가진 힘을 모두 투입하여 승부를 걸어보아도 그것조차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복신 세력은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따라서 당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결과 천도라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겨울 12월 병술삭에 백제왕 풍장(豐璋)과 그 신하 좌평 복신(福信) 등은 사이노무라치(狹井連)[이름이 빠졌다]·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의논하여 “이 주유(州柔)라는 곳은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도 척박하여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고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여기에 오래 머문다면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 이제 피성(避城)으로 옮겨야 한다. 피성은 서북으로 피를 두르듯 고련단경(古連旦溍)이 흐르고 동남으로는 깊은 늪과 커다란 제방이 막고 있다. 주위가 밭으로 둘러져 있고 도랑을 파서 빗물을 모을 수 있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니 삼한(三韓)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이다. 옷과 음식의 근원이 되니 천지 사이에 깊이 굽어 들어간 곳이다. 비록 저지(低地)이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에치노다쿠쓰가 홀로 나아가 “피성과 적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우 가까우니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굶주림은 나중의 일이고 존망이 먼저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주유가 산이 험한 곳에 있어 모두 방어 시설이 되며, 산이 높고 계곡이 좁아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지에 있었다면 어찌 견고히 지킬 수 있으며 동요 없이 지금까지 이르

렸겠습니까”라고 간하였다. 끝내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으로 도읍을 옮겼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위의 기록처럼 진현성과 내사지성 등을 빼앗긴 뒤 4개월 만인 서기 662년 12월에 백제국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천도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피성 천도 이유는 주류성이 농사와 양잠을 할 땅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의 둘레는 3,724m로 임존성보다 더 크다. 삼국시대 산성으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이다. 그런데 성벽에서 산성 안쪽을 보면 모두 비탈과 계곡으로 마을은 고사하고 사찰 하나 세울 만한 공간도 없다. 다시 말해 이 성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전시나 비상시에만 잠시 이용할 곳이었다.

다만 현재 주류성에 올라가 아래에 펼쳐진 경지정리가 잘된 넓고 평탄한 들을 보면 “농지가 멀고 적박하다”는 위의 서술이 거슬린다. 그러나 이 평야는 오랫동안 간척으로 다듬어진 평야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이 만든 1/5만의 지도에도 들판은 경지와 황무지가 반반 섞여 나타난다. 지도에는 바닷가 쪽에 인공 둑이 길게 표시되었는데, 이를 제거하면 삼국 시대에도 이 들판은 거의 바다와 갯벌, 그리고 황무지뿐임을 알 수 있다.⁴²⁾

이에 반해 피성은 삼한(三韓) 가운데 가장 땅이 기름지고 생산력이 풍부하여 왕도(王都) 운영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성지역의 경제적이점이 강조된 것은 표면적으로 나·당 점령군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백제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피성 천도를 주도한 것은 누구일까? 한 국가의 천도에는 그에 따르는 공식적인 이유 못지않게 내면의 정치적 고려가 더 많은 작용을 한다. 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며,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인지 등의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42)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 2, 해안, 2012, 319쪽.

부딪히며 조정되는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피성 천도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을 텐데, 종래에는 천도의 주체를 풍왕으로 파악⁴³⁾하였다. 실제 위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풍왕이 주도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를 통해 자기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려 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또 나아가 복신의 근거지가 주류성인데도 피성으로 천도하면 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왕의 천도 주장에 동의한 것은 백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설혹 피성으로 옮기더라도 그가 전권을 장악한 이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풍왕과 내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이유가 뭘지 알 수 없게 된다. 천도에 반대한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는 풍왕과 함께 왜국에서 온 인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친왕파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풍왕이 천도를 주장하는데 반대파인 복신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견을 사전 조율하였을 풍왕과의 인물이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어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오히려 에치노다쿠쓰의 반대 자체에 주목한다면, 처음부터 풍왕과 그 세력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지 모른다. 물론 문장 구조는 풍왕이 주도한 듯이 서술되었지만 소위 어전회의란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료로 남아 있는 내용이 모두 왕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익히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 왕명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모두 고종의 의지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는 복신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었기에 천도를 강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복신뿐⁴⁴⁾이었다.

따라서 피성 천도 또한 그의 의지가 반영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더욱 순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7~8월에 이어진 나·당군의 반격으로 실추된 복신의 정국

43) 노중국, 앞의 책, 2003, 251~253쪽.

44) 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23쪽.

대응에 대한 반전 노림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천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월에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居列城)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또 거물성(居勿城)과 사평성(沙平城)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또 덕안성(德安城)을 공격하여 1,070명의 머리를 베었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봄 2월…… 신라인이 백제 남쪽 4곳의 주(州)를 불태우고, 아울러 안덕(安德) 등의 요지를 공략하였다. 이에 피성(避城)은 적이 있는 곳과 가까워졌다. 그 때문에 이곳에 군세가 머물 수가 없는 형세가 되어 다시 주유(州柔)로 돌아왔다. 다쿠쓰(田來津)가 간언한 바와 같았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2월)

위의 기사에 보이는 거열성(경남 거창 거열산성)·거물성(전북 남원·장수 접경의 거사물성)·사평성(전북 임실 신평면) 등⁴⁵⁾은 서기 661년 3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부흥군이 크게 승리하자 호응한 ‘남방제성(南方諸城)’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성이다. 또 도침과 복신이 세력을 양분할 당시에도 복신을 중심으로 한 부흥세력은 이 ‘남방제성’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에 몰두하였을 정도로 복신 세력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거열성은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 수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곧장 신라 중심부를 겨냥할 요지였고,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 지역인 전주와 무주(광주)로 뻗어나갈 시작점이었다. 통일신라기 간선통로로 중 경주에서 시작되는 동서 관통로는 북과 남에 두 노선이 있었는데 거창에서 합쳐졌다가 다시 하나는 진안을 거쳐 전주 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남원(거사물)–순창을 거쳐 무주(광주) 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⁴⁶⁾

45)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123쪽.

46)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통로-왕경과 주치소경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

그러므로 서기 663년 2월에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 당한 ‘남쪽의 4주(南畔四州)’, 즉 거열성·거물성·사평성 등은 그 위치로 보아 거창-남원-임실로 이어지는 부흥 백제국의 남방 주요 거점이 일시에 침탈당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는 백제가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덕안성(논산)까지 빼앗겼다고 나온다. 이 성은 백제 5방 중의 동방성으로 당의 덕안도독부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덕안성은 위의 『일본서기』 표현처럼 군사와 행정의 ‘요지(要地)’였던 것이다.

덕안성이 함락 당함으로써 이제 백제국의 수도인 피성(김제) 앞에는 금마(익산)나 고사(고부) 등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미 신라의 침탈을 당해본 곳이었다. 즉, 신라군으로서도 익히 아는 군사작전 구역이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진군해 오는 신라군을 덕안성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백제군의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빼앗김으로써 피성도 이제 신라군의 공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백제에 준 충격은 더욱 컸다. 그 파장은 결국 주류성으로 재천도라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백제에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복신의 주장으로 단행된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자 지금까지 굳건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입지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금까지 유명처럼 존재하던 풍왕이 서서히 정치 전면으로 나올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서기 662년 말에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무기를 수리하고 선박을 갖추며 군량을 비축하는 등 왜국의 지원 태세가 가시화되는 것⁴⁷⁾도 일조를 하였다. 더군다나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고 주류성으로 복귀한 지 한 달 후인 서기 663년 3월에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한 왜군 27,000명이 파견되기에 이른다.⁴⁸⁾

이제 풍왕 자신이 직접 군사적인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대사연구 63, 2011, 169·173쪽.

47) 『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시제.

48) 『일본서기』 27, 천지 2년 3월.

시작했다. 복신이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정국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나·당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자 풍왕이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된 듯하며, 일정부분에서는 활동에도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운신의 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일본서기』 천지 2년(663) 5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풍왕(=규해)이 직접 왕궁인 주류성이 아니라 석성(石城)에까지 가서 왜의 사신을 만났다고 나타난다. 당시 왜 사신의 임무는 고구려와 ‘군사의 일(兵事)’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런 왜의 사신이 풍왕을 만나서 할 일은 당연히 고구려와 왜 사이의 주고받은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당연히 군사적인 사안에 해당하는데도 복신이 아니라 풍왕이, 그것도 직접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가는 행동을 벌린 것이다. 이 사실은 서기 663년 2월 이후 백제 정국이 더 이상 복신의 강력한 입김 아래 놓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이제 풍왕에게도 군사적 실권이 어느 정도 담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풍왕과 왜의 사신이 회견하는 가운데 풍왕은 “복신의 죄를 말하였다(語福信之罪)”고 나온다.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의사를 발표한 것인데, 이러한 공공연한 언행⁴⁹⁾은 이제 풍왕과 그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정국 변화의 움직임은 복신 측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신은 모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풍왕을 제거하기로 작심한 복신은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에 거짓으로 병든 채 하면서 풍왕이 문병을 오는 것을 기회로 죽이려고 하였다.⁵⁰⁾ 그러나 복신의 음모를 사전에 눈치 챈 풍왕은 복신의 계교를 거꾸로 이용하여 도리어

49) 복신의 죄는 도침을 살해하고 군사를 함병한 것과 도읍을 마음대로 옮겼던 일, 그리고 왜국 및 고구려에 대한 원조 요청을 반대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29쪽.)

50) 『구당서』 199 상, 「열전」 149, 동이 백제. “福信稱疾 臥於窟室 將候扶餘豐問疾 謀襲殺之”

그를 급습하여 사로잡아 죽이니, 바로 서기 663년 6월의 일⁵¹⁾이었다.

결국, 서기 661년 12월에 풍왕이 백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벌어진 복신과의 권력 투쟁은 서기 663년 6월에 풍왕의 친위정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력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없는 자는 항상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풍왕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리 되었어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단점을 덮어나갈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내부적인 다툼에 빠져도 관찮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아니란 점이 문제였다. 모든 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갖는 법인데, 이 경우에 ‘플러스’는 적통 왕으로써의 권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이겠지만 ‘마이너스’는 북으로 당 주둔군의 철수를 이끌어내고 서쪽으로는 신라군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을 양분해야 했던 백제에게 이제 그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데 있다.

5. 맺음말

서기 660년 10월 백제 부흥세력은 새로운 구심점으로 풍장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부흥세력은 그의 왕위 계승을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중앙정부의 붕괴로 정국을 관망하던 지역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왕위의 계승을 통해 백제의 ‘계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풍장의 왜국 출발 시기는 서기 661년 9월 하순이었고, 5천의 군사를 실은 선단은 그해 12월에야 백제 땅에 도착했다.

이러는 사이인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는 웅진 주둔 당군과 신라 사이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던 웅산성과 우술성을 함락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지역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국가를

51) 『일본서기』 27, 천지 2년 6월. “王勒健兒 斬首”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쳐 일부 지역세력이 신라에 투항하는 등 부흥세력의 결속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복신은 이를 계기로 도침을 제거하는 정치 변동을 단행하였고 말았다.

풍장의 귀환 시기에 백제의 정치 상황이 180도 변해 버린 것이다. 이는 왕위 계승자로서 풍장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왕위 계승마저 위협하였다. 간신히 정권을 잡은 복신과 타협으로 서기 662년 5월에 즉위할 수 있었지만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인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한 복신 정권도 체제가 공고해지기 전 외부의 충격에 흔들렸다. 풍왕 즉위 2개월 만인 7월에 지라성·윤성·대산책·사정책·진현성 등을 나·당군에게 잃었고, 다시 8월에는 내사지성마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신라군의 반격으로 빼앗김으로써 백제는 금강 이동의 전략적 거점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위상에 균열을 가져왔기에 복신은 피성 천도(662년 12월)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려 하였다. 풍왕과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천도였지만 이듬해 2월에 신라군에게 거열성·거물성·사평성 등 남방 주요 거점과 백제 5방 중의 하나인 동방성이었던 덕안성까지 빼앗기자 결국 다시 주류성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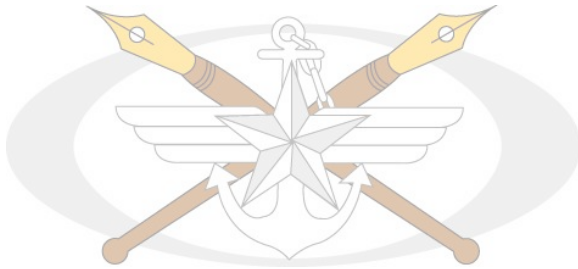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자 지금까지 굳건하게만 여겨졌던 복신의 입지에도 이상이 생겼다. 풍왕이 직접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마침내 풍왕이 왜의 사신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복신의 죄(福信之罪)’를 말할 정도로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풍왕과 복신의 불화는 마침내 서기 663년 6월 복신의 제거로 나타났다.

결국, 서기 661년 12월에 풍왕이 백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벌어진 복신과의 권력 투쟁은 서기 663년 6월에 풍왕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당시는 내부적인 다툼에 빠져도 괜찮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는 법인데, 이때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통 왕으로써의 권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이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나·당군의 공세에 대항해야 했던 백제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풍장, 복신, 주류성, 피성, 부흥백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Establishment and Political Changes of Reconstructed Baekje: Focused on Boksins's Leading a Political Situation and King Pung's Responding to Him

Kim, Byung-nam

The reconstruction forces of Baekje asked Pung-Jang to return to the homeland as the pivot for securing Baekje dynasty's legitimacy. Pung-Jang left Wae (Japan) in September 661, and arrived in Baekje in December. During that time, however, there was some political changes within the reconstruction forces—Boksin eliminated Dochim. Thus, he return seemed in vain.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was threatened because of the political upheaval. He managed to compromise with Boksin, and succeeded the throne in May 662, but he remained as a nominal king without real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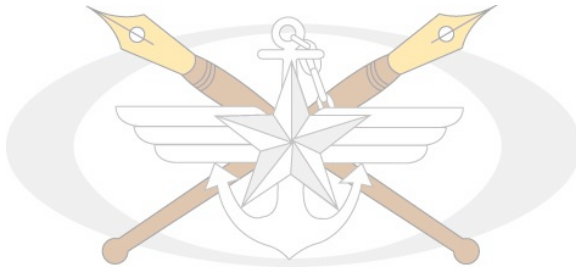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However, Boksin, though he seized the power, was embroiled in the political chaos. Baekje lost most key military bases by Shilla-Tang Combined Forces such as Jira-fortress, Yun-fortress, Deasan-stockade, Sajeong-stockade, and Jinhyeong-fortress in July 662 and Neasaji-fortress as well in August. At this, Boksin sought to settle the political disturbance by the capital to Pi-fortress (Gimje) in December 662. In February 663, however, he lost the key bases in the south such as Geoyeol-fortress, Geomul-fortress, Sapyeong, and also Deokan-fortress, one of the Five-Bangs. He was forced to retreat to Juryu-fortress(Buan) as the new capital was threatened.

As the political maneuver to move the capital city to Pi Fortress failed, Boksin power was weakened. Taking the opportunity, King Pung began involving in the military affairs and strengthened his political power to the extent to raise a formal issue of 'Boksin's sin'. Finally, he could remove

Boksin in June 663.

In the end, the discord between King Pung and Boksin come to an end by a political revolt. But it was not a peaceful period to be engaged in the internecine struggles. King Pung managed to restore his legitimacy as king, but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fight against the Shilla-Tang Combined Forces.

Key Word : Pung-Jang, Boksin, Juryu-fortress, Pi-fortress, Reconstructed Baekj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윤 경 진*

1. 머리말
2. 海島 入保의 시행과 운영 원리
3. 南京·廣州의 江華 舍入과 忠州·淸州의 海道 入保
4. 全州의 槽島·押海島 入保와 羅州의 珍島 入保
5. 東京의 海道 入保 시도와 晉州의 南海島 入保
6.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고려는 몽고와 오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山城 및 海島에 入保하는 전술을 택했다. 이것은 전력의 열세로 몽고와 직접 맞서 싸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고종 18년(1231)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집권자 崔瑬는 江華 遷都를 단행하면서 전국 각지에 대해서도 산성과 해도에 入保하여 항전을 이어가도록 했다.

* 경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산성 입보가 전통적인 방어 전술이었던 것과 달리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해도 입보의 비중도 커졌다. 산성 입보는 생활 기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해도 입보는 생활기반과 분리되기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해도에 입보했던 北界 州鎮 중에 出陸 후 본거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僑寓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그 예이다. 따라서 해도 입보에 대한 고찰은 대몽항쟁으로 야기된 고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지금까지 해도 입보책은 대몽항쟁을 다룬 제반 논고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주로 전쟁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해도 입보의 전개 과정과 그에 대한 몽고의 전술 변화를 고찰한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¹⁾, 입보처로서 ‘戰略海島’의 범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고찰하거나²⁾, 해도 입보와 연계된 해상 교통로 문제를 천착한 연구 등이 있다.³⁾ 이를 통해 해도 입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확보되었고, 전쟁사적 관점에서 해도 입보의 의미와 고려 및 몽고의 전략, 입보가 이루어진 해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직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하나로 해도 입보에서 兩界 州鎮과 南道 郡縣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 몽고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 해도에 들어가 항전을

1) 尹龍樹, 「高麗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 麗蒙戰爭 전개의 一様相」, 『歷史教育』 32, 1982.

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여기서 ‘전략해도’란 육지와 가까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주현민과 별초군이 입보해 있는 섬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시되었다. 전쟁사적 관점에서 입보 해도의 유형화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계수관 등 지방제도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다.

3) 姜재광,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역사』 30, 2012.

4) 일반적으로 南道는 兩界와 구분하여 五道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해도 입보와 관련해서는 開京 이남의 界首官 관할지역, 곧 楊廣道·全羅道·慶尙道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개경 이북의 西海道는 계수관 단위의 운영체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도의 운영체계가 일찍부터

지속한다는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양계와 남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자연 기존 연구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양계와 남도의 사례를 별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도 입보를 대몽항쟁이라는 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통치 및 사회운영의 관점에서 다를 경우, 지역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계와 남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단위의 편성과 군사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지적된다.

주지하듯이 남도는 외관이 파견된 군현(主縣)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屬縣을 관할하는 ‘주현-속현체계’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각급 군현의 운영은 邑司가 담당하였고, 外官은 다수의 읍사를 관할하는 상급체제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兩界(登州 이남은 제외)는 속현이 없고 각 州鎮에 모두 수령이 파견되어 독립적인 운영단위가 되었다.⁵⁾

지방군 운용을 위한 軍事道는 수령이 파견된 단위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남도는 주현-속현 단위로 군사도를 구성한 반면, 양계는 각 주진이 모두 개별 군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남도는 군사도 위에 다시 광역 운영체계인 界首官을 단위로 군사 운용이 이루어졌다.⁶⁾ 해도 입보가 몽고군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는 군사 운용에 있어서 양계와 남도의 차이가 반영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입보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해도 입보는 먼 거리를 이동해 바다를 건너야 하며, 일단 입보하면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도 입보는 일시적 이동으로 운용될 수 있는 산성 입보와 달리 궁극적으로 행정단위의 이동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북계 주진은 군사 거점의 성격이 강하고 인구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부각되었고, 특히 해도 입보에서는 北界 州鎮과 연동하는 측면이 있다. 交州道는 관내에 계수관이 없기 때문이다.

5) 고려 주현-속현체계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尹京鎮, 「高麗 郡縣制의 운영원리와 主縣-屬縣 領屬關係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10, 2001 참조.

6) 윤경진, 「고려전기 界首官의 운영체계와 기능」, 『東方學志』 126, 2004.

해도 입보는 사실상 행정단위의 이동을 수반하였다.⁷⁾

하지만 남도 군현은 생산 기반이 연계되어 있고 대상주민 수도 많았기 때문에 행정단위 전체가 일시에 입보할 수는 없었다. 자연 입보는 일정한 단계를 밟아 이루어졌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해도에 가까운 군현, 혹은 중요도가 높은 거점 군현이 우선 입보하게 된다. 그리고 해도 입보가 군사적 항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군사 위주의 입보가 선행된다. 곧 일정한 권역의 주력군대 위주로 해도에 입보하여 전력을 보존하고 필요할 때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다수의 주민은 현지에 남아 생산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입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산성 입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성에도 일정한 군사력이 남아 방어에 임하게 된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도 지역에서는 산성 입보와 해도 입보가 병행적으로 구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도의 해도 입보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 이는 무엇보다 남도의 해도 입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대개의 자료는 남도지역이 대상이 됨을 보여줄 뿐, 입보 해도와 그곳에 입보한 행정단위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전혀 다른 양계와 남도의 해도 입보를 구분없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 자료에 보이는 사례들을 운영체계의 측면과 연결해 접근한다면, 제한적이거나 남도의 해도 입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곧 지리적 여건을 매개로 입보 해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위치를 판단하고, 이를 군사운영체계와 연계하여 입보 행정단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입보 행정단위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그와 연계된 입보 해도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자료의 제약으로 많은 부분 추론에 의지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7) 北界 州鎮의 海島 入保에 따른 행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 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 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참조.

이를 통해 해도 입보의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냄으로써 그 의의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도 입보의 전개과정을 개괄하면서 그 운영 원리를 정리할 것이다. 이어 지역별로 해도 입보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남도의 해도 입보가 광역 운영체계인 界首官을 매개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관제와 전황 등을 연계하여 각각의 입보 해도까지 추출해 볼 것이다.

2. 海島 入保의 시행과 운영 원리

고종 18년(1231)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집권자 崔瑀는 장기 항전을 선택하고 고종 19년(1232)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다.⁸⁾ 이와 더불어 諸道에 사신을 보내 백성을 山城과 海島에 들어가도록 하였다.⁹⁾ 이것은 1차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의 전술이었던 山城 入保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종 18년(1231) 8월 몽고군은 咸新鎮(義州)을 포위한 데 이어 鐵州를 도륙하였다.¹⁰⁾ 이어 龜州城과 西京城, 慈州城은 함락되지 않았지만¹¹⁾ 龍州城은 항복하였고¹²⁾, 宣州와 郭州는 함락되었다.¹³⁾ 고려 정부는 동년 10월 三軍을 보내 安北府 城外에서 몽고군과 일전을 벌였으나 대패

8)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6월 乙丑 “崔瑀脅王 遷都江華”

9)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崔怡 “又遣使諸道 徙民山城海島”

10)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8월 壬午 “蒙古元帥撒禮塔 圍咸新鎮 屠鐵州”

11)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丙戌 “蒙兵圍龜州城 不克而退”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癸巳 “蒙兵攻西京城 不克”

『高麗史』 권103, 列傳16 崔椿命 “高宗十八年 爲慈州副使 蒙古兵圍州 椿命率吏民 固守不下”

12)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癸卯 “北界馳報 蒙兵圍龍州 城中請降 副使魏瑫 被擄”

13)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壬子 “蒙兵陷宣郭二州”

하였다.¹⁴⁾ 안북부의 저지선을 뚫은 몽고군은 州州까지 바로 치고 내려와 성을 도륙하였고¹⁵⁾, 급기야 京城의 서부에 진을 치고 興王寺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¹⁶⁾

몽고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4개월만에 다수의 주진이 함락되고 경성이 직접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 이는 북계에서 방어선을 형성하여 침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현종 때 거란 성종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위기를 겪은 고려는 이후 州鎮을 추가 설치하여 압록강 방어선을 보강하는 등 북계의 방어력 강화에 힘썼다.¹⁷⁾ 그러나 몽고군의 침입에 방어선이 뚫림으로써 기존의 방어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1차 전쟁 당시 黃州와 鳳州의 수령이 백성을 이끌고 鐵島에 入保한 일이 있었다.¹⁸⁾ 이 사례는 정부의 입보책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수령 등이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모한 것이었다. 황주와 봉주는 서경에서 개경으로 이어지는 간선로에 있었기 때문에 몽고군의 직접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 몽고군에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령들은 해도에 들어가 예봉을 피했다. 이를 통해 인명과 전력을 보전함으로써 사후에 대응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강화 천도와 해도입보책이 선택되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다.¹⁹⁾

고종 19년(1232) 6월 강화 천도가 단행된 후²⁰⁾, 동년 8월에는 西京巡撫使 閔曦와 司錄 崔滋溫이 達魯花赤을 살해하려는 것을 안 西京人 등이 몽고군의 보복을 우려하여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최자온이 이들에게

14)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0월 癸酉

15)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1월 甲辰

16)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2월 壬子 “蒙兵分屯京城四門外 且攻興王寺”

17) 윤경진, 「고려 현종말-문종초 北界 州鎮 설치와 長城 축조」, 『軍史』 79, 2011.

18)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9월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率民 入保鐵島”

19) 전쟁 초기 咸新鎮(義州)의 副使 龔 이 薪島에 입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둔한 몽고인을 죽이고 정부가 보내준 배를 타고 남하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간 자신도 뒤에 배를 타고 개경으로 오다 익사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전략적 차원의 입보로 보기 어렵다.

20)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6월 乙丑 “崔瑀魯王 遷都江華”

구금되자 留守와 判官, 分臺御史, 六曹의 관리들이 모두 楮島로 도망하였다.²¹⁾

이 조치는 서경인의 반란을 계기로 하고 있지만, 達魯花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해도 입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보인다. 유수를 비롯한 관리들이 대거 楮島로 도망한 것을 보면, 유사시에 저도에 입보하려는 계획 아래 일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고려의 도읍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북계 주진의 중심이었던 만큼, 강화 천도에 수반하여 가장 먼저 입보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입보 과정에도 적용된다. 기존의 전략이던 산성 입보의 경우, 평상시에 무기와 식량을 확보해 두고 있어 곧바로 입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해도에는 입보한 군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몽항쟁기에 전술적으로 새롭게 취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입보에 앞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있어야 했다. 특히 西京과 같은 거점지역의 경우 입보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예비 조치의 필요성은 더 컸다.

이후 북계 주진의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일부 주진의 해도 입보 기사가 보이는데, 대개 고종 18년(1231)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는 1차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로서 입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기사는 입보의 원인이 되는 몽고의 침입에 그 결과인 입보 상황을 연결하여 정리한 결과이다.²²⁾

북계 주진의 입보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우선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義州에서 安北府, 西京으로 이어

21)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8월 壬戌 “執崔滋溫 囚之 留守崔林壽 及判官分臺御史六曹員等皆逃竄于楮島”

22) 강재광은 고려의 해도입보책이 고종 17년 몽고의 도발 분위기에 대응하여 입안되었고, 고종 18년 1차 침입 때 실행되었다고 보았다(강재광, 앞의 논문, 2008, 31~37쪽). 그러나 처음부터 해도 입보가 기획되었다면 1차 전쟁 과정에서 북계의 주요 주진이 城을 근거로 몽고에 맞서거나 함락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전략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 119~124쪽).

지는 간선로에 있는 주진들이 입보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내륙에 있는 주진들은 고종 35년(1248) 2차 입보 명령에 따라 해도에 들어갔다.²³⁾

다음에 한곳에 다수의 주진이 함께 입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義州와 靜州가 한곳에 들어갔고²⁴⁾, 안북부가 입보한 昌麟島에는 慈州와 瓮津縣도 입보하고 있었다.²⁵⁾ 창린도는 웅진현 서쪽 70리에 있는 섬이다. 안북부가 이곳까지 내려와 입보한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북계 서해안지역에는 입보할 만한 섬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규모가 큰 섬이 많은 서해도 이남지역으로 내려와 입보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입보한 강화도 주변에 군사력을 배치하여 이를 성원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강화도 주변 도서에 많은 주진이 입보하게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연혁에 따르면 宣州와 昌州는 紫燕島에 입보하였다. 창주는 출륙한 뒤 본토로 가지 못하고 郭州 인근에 僑寓하였는데, 당초 광주도 자연도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연도는 현재의 영종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화도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崔忠獻이 熙宗을 폐위한 후 강화현에 안치했다가 자연도로 옮긴 것을 비롯해²⁶⁾ 유배지로 활용되곤 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다수의 북계 주진이 입보한 것이다.

여러 주진이 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 입보할 수 있는 도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군사력을 모아 방어력을 높이고 관리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원리는 앞서 고종 초 몽고의 침입이 예상될 때 미리 마련한 산성입보책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23) 『高麗史』 권23, 고종 35년 3월 “命北界兵馬使盧演 盡徙北界諸城民 入保海島”

24)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3월 壬子 “詔 義靜二州 人物凋殘 且移入水內 不得耕種 不宜各置官吏 其以靜州副使 兼理義州”

25) 『高麗史』 권25, 원종 원년 정월 戊戌 “西海道按察使馳報 安北都領元振叛 執其州副使文秀及慈州副使金脉 殺之 甕津縣令鄭崇 降於蒙古”

26) 『高麗史』 권21, 희종 7년 12월 癸卯 “忠獻廢王 遷于江華縣 尋遷紫燕島 放太子祉于仁州”

戶部侍郎 崔正芬 등 8인을 보내 北界 興化道の 諸城을 나누어 순찰하여 兵器를 검열하고 軍資를 비축하도록 하고, 여러 小城을 아울러 大城에 입보하도록 하였다. 당시 몽고가 가을이 되면 다시 올 것이라는 첩자의 말이 있어 대비한 것이다.²⁷⁾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여러 개의 小城을 大城에 함께 입보하도록 했는데, 이는 작은 성들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몽고군의 각개 공격에 쉽게 함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군사력을 높여야 했다.

이러한 속성은 해도 입보에서도 다르지 않아, 상황에 따라 한곳에 여러 주진이 입보하였다. 따라서 가급적 큰 섬에 여러 주진이 습입하는 것이 유효하였기 때문에 큰 섬은 해도 입보에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²⁸⁾ 남도지역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관철되었다. 다만 군사 편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습입의 형식보다는 군사 거점의 입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고려 정부가 강화 천도에 이어 해도 입보를 전개한 것은 기존의 방어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산성 입보로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산성의 경우 기존의 생활 터전과 가까이 있고 미리 무기와 식량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빠른 입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장기전에는 어려움이 컸다. 생활 터전이 성밖에 있는 만큼 경작을 위해 성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이는 공격받을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다. 고종 23년(1236) 7월 몽고군 한 무리가 慈州 東郊에서 벼를 베고 있던 주민 20여 인을 잡아죽인 것은 그 예이다.²⁹⁾

27) 『高麗史』 권22, 고종 6년 7월 “遣戶部侍郎崔正芬等八人 分巡北界興化道諸城 檢閱兵器儲待軍資 并諸小城 入保大城 時諜者有蒙古乘秋復來之語 故備之”

28) 입보 해도의 선정에는 군사적 경제적 가치도 아울러 고려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군현이 설치된 큰 섬이 우선적인 가치를 지닐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9)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7월 癸酉 “蒙兵二十餘騎 入慈州東郊 擄刈禾民二十餘人 皆殺之”

그렇다고 적절할 때 성을 나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식량 부족이 야기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작과 수확에 나서려는 입보민과 방어에 신경을 쓰는 관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東州에서는 防護別監 白敦明이 성의 출입을 금하면서 농작물 수확을 요청하던 州吏를 처형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한 일이 있었다.³⁰⁾

해도 입보는 산성 입보에 비해 장기적인 면에서 유리하였다. 물론 내륙에 있던 군현이 해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지난한 일이지만, 섬이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그곳에서 개간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산성에 비해 많은 인원이 입보할 수 있고, 水戰에 익숙하지 않은 몽고군을 막아내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강화 천도 자체가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며, 북계 주진이 산성 입보에서 해도 입보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기사는 해도 입보가 가지는 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 ① 東北面兵馬使가 보고하기를, “登州城 안에는 물이 없고 또 비축된 양곡도 없어 백성이 흩어집니다”라고 하니 島內로 입보하도록 하였다.³¹⁾
- ② 뒤에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는데, 蒙兵이 諸城을 침공하자 葦島에 입보하였다. 섬에는 10여 리 정도 개간할 만한 평지가 있었는데, 바닷물이 밀려와 개간할 수 없었다. 方慶이 제언을 쌓고 씨를 뿌리니 백성이 처음에는 고생스러워 했으나 가을에 크게 여물게 되자 사람들이 의지해 살 수 있었다. 섬에는 또한 井泉이 없어 항상 육지에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때때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다. 方慶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드니 그 근심이 없어졌다.³²⁾

30) 『高麗史』 권101, 列傳14 文漢卿 “又有白敦明者 爲東州山城防護別監 驅民入保 禁出入 州吏告曰 禾未穫 迫敵兵未至 請迭出刈之 敦明不聽 遂斬之 人心憤怒 皆欲殺之”

3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丙辰 “東北面兵馬使報 登州城中 無水 且無糧儲 人民散去 乃令入保島內”

3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兵來攻諸城 入保葦島 島有十餘里 平衍可耕 患海潮不得墾 方慶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熟 人賴以活 島又無井泉 常陸汲

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식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①은 登州城에 식수와 양곡이 마련되지 않자 해도에 입보하도록 조치한 사례이다. 산성은 공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식량과 식수가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등주성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식수와 식량의 측면에서 산성보다 해도의 여건이 유리했던 만큼, 산성 입보가 한계에 부딪치면 해도 입보로 전환될 여지가 컸다.

②에서 葦島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으로 보이는데, 평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마련하고 빗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식량과 식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입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섬에 입보한 경우로 이해되는데, 규모가 큰 섬의 경우 식량과 식수에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었거나 새로 마련하기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보처에 토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① 忠淸, 慶尙, 全羅 3道 및 東州道와 西海道에 사신을 보내 山城과 海島에 피난한 곳을 둘러보고 土田을 헤아려 주도록 하였다.³³⁾

② 지금 諸道の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매우 슬프다. 그들이 난리를 피한 곳이 本邑과 떨어진 거리가 하루가 되지 않는 곳은 돌아가 받을 갈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섬 안에 土田을 헤아려 지급하고 부족하면 연해의 閑田과 宮院田 및 寺院田을 지급하라.³⁴⁾

위의 두 기사는 각각 고종 41년(1254)과 고종 43년(1256)의 기록으로서 해도 입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絕”

33) 『高麗史』 권78, 食貨1 經理 고종 41년 2월 “分遣使于忠慶全三道 及東州西海道 巡審山城海島避難之處 量給土田”

34) 『高麗史』 권78, 食貨1 經理 고종 43년 12월 “今想諸道 民不聊生 彼此流移 甚可悼也 其避難所 與本邑相距程 不過一日者 許往還耕田 其餘 就島內 量給土田不足 則給沿海閑田及宮寺院田”

당시 정부는 해도에 입보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개간에 따르는 어려움을 줄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은 입보한 섬에 이미 토지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곧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입보처로서 유리한 조건이 됨을 잘 보여주는데, 이미 군현이 설치된 섬이라면 더욱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②에서 “난리를 피한 곳이 本邑과 떨어진 거리가 하루가 되지 않는 곳”은 주로 산성 입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도 입보의 경우에도 연안의 군현이 그로부터 멀지 않은 섬에 입보했다면 하루 안에 왕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 본거지까지 가서 경작하고 하루 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일차적으로 산성 입보와 해도 입보를 나누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보면, 해도 입보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루 안에 분읍과 왕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고 모자랄 경우 연안의 사원전 등을 지급하여 생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급 지역을 연안으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입보 해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마저 채워지지 않은 곳은 김방경의 사례처럼 직접 개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⁵⁾

이처럼 고려는 몽고의 침입에 맞서 초기의 산성 입보에서 점차 해도

35) 東界 方面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종 45년(1258) 東界의 15州가 猪島에 입보하게 되었는데, 城은 크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 어렵다 하여 兵馬使 愼執平은 竹島로 옮겨 입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섬이 좁고 우물이 없어 사람들이 주저했으나 신집평은 강제로 입보케 하여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에 신집평은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道에서 양곡을 운반해 올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高宗四十五年 蒙古兵大至 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 入保猪島 東北面兵馬使愼執平 以猪島 城大人少 守之甚難 遂以十五州人 徙竹島 島狹隘 無井泉 人皆不欲 執平 強驅納之 人多逃散 入者十二三 糧儲乏少 執平 分遣別抄 請粟於朝 催運他道”).

입보로 전환해 나갔다.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거점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다가 전면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는 해도가 이동의 어려움이 큰 반면 식수와 식량의 확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몽고군에 맞서는 전술로서 해도 입보의 비중도 커졌다.

초기의 해도 입보는 주로 북계 주진을 중심으로 그 사례가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도지역에서도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위에서 島內 및 沿海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들은 내용상 남도 지역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섬이 남도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도 군현의 해도 입보를 계수관 단위로 구체적인 상황을 추출하고, 이를 지방행정 및 군사운영체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南京·廣州의 江華 合入과 忠州·淸州의 해도 입보

고려의 해도입보책은 처음에 北界 州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남도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고종 22년(1235)에 시작된 몽고의 3차 침입은 여러 해에 걸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경주의 황룡사구층탑이 불타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도 지역에도 해도 입보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남도지역에서 해도 입보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南京과 廣州牧이다. 몽고의 3차 침입에 대한 첫 보고가 올라오자³⁶⁾ 남경과 광주목을 강화도에 合入케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³⁷⁾ 남경과 광주목은 한강을 끼고 있는 두

36)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윤7월 丙子

37)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界首官으로서 강화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강화도의 인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 입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界首官을 단위로 입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계수관 정도의 대응이 입보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계수관이 지방행정 및 군사운영체계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입보가 장기 항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수관의 입보는 군사 거점의 확보라는 의미가 컸다.

고려는 일차적으로 수령이 파견된 고을을 중심으로 軍事道가 편성되었으나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그보다 큰 규모가 요구되어 界首官을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계수관 단위로 편성된 군대를 ‘界軍’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³⁸⁾, 고종 4년(1217) 契丹遺種의 침입 때 전라도의 계수관인 全州와 羅州의 界軍이 동원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全州의 軍馬가 먼저 출발했다가 5일 만에 돌아와 作亂하였고,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³⁹⁾ 羅界軍이란 계수관 나주 관할로 편성된 군대로서 全州의 軍馬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계수관의 해도 입보는 界軍 운용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牙州의 海島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였다.⁴⁰⁾

38) 윤경진, 앞의 논문, 2004.

39) 『高麗史』 권22, 고종 4년 정월 庚寅 “全羅抄軍別監洪溥 馳報 全州軍馬 年前十二月二十六日 催發 行五日 而還州作亂 殺逐長吏 因留住 由是 羅界軍 亦不發”

40)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古兵逆擊 盡殺之” 이 구문의 해석에는 논란이 있다. 巡問使 韓就는 원종 4년 大司成으로 몽고에 사신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高麗史』 권25, 원종 4년 10월 壬戌 “遣大司成韓就 如蒙古 賀正 兼謝賜羊”). 이 때문에 “盡殺之”를 고려군이 반격하는 몽병을 몰살시킨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그러나 문맥상 “盡殺之”는 몽병이 고려군을 몰살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고려군이 몽병을 공격하고자 했다가 반격을 받았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어를 바꾸어 이해할 수 없다. 이 구문은 한취가 牙州 海島에 남아 있으면서 9척의 배를 보내 몽병을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취가 직접 인솔해 나왔다면 ‘以’는 ‘率’로

위의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 해도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려다가 도리어 몰살당한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忠州道巡問使의 직함이다. 고려전기 이래 각종 사신은 대개 계수관을 매개로 설정되는 ‘州道’를 대상으로 파견되었다.⁴¹⁾ 주도는 통상 2개의 계수관을 묶어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3개 이상을 연결하거나 1개 계수관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忠州道는 계수관 충주를 단위로 설정되며, 巡問使는 군사적 지휘권을 가진 사신이다. 결국 忠州道巡問使는 계수관 충주 관내를 대상으로 편성된 界軍을 지휘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충주도순문사는 牙州 海島에 주둔하고 있다가 배를 보내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충주목이 해도에 입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충주목 관내의 모든 주민이 입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도 입보는 장기 항전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본령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입보이다. 여기에 행정기구와 일부 주민의 입보가 병행될 수 있는데, 충주의 경우 행정기구까지 입보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계 주진과 달리 남도는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本城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었다. 실제로는 다수의 주민과 일부 군사력이 현지에 남아 산성에 입보하는 형태로 분산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위의 기사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몽고군이 忠州로 들어와 州城을 도륙하고 또 山城을 공격하니 官吏와 老弱은 저항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月嶽神祠로 올라갔는데, 홀연히 雲霧가 끼고 비바람과 우박이 함께 일어났다. 몽고군이 신령의 도움이라 여기고 공격하지 않고 물러갔다.⁴²⁾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1) 윤경진, 「고려전기 道の 다원적 편성과 5道の 성립」, 『東方學志』 135, 2006.

42)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蒙兵入忠州 屠州城 又攻山城 官吏老弱 恐不能拒 登月嶽神祠 忽雲霧 風雨雨雹俱作 蒙兵以爲神助 不攻而退”

앞서 忠州道巡問使가 보낸 군대를 섬멸한 몽고군은 충주를 공격하였다. 먼저 州城을 도륙한 뒤 山城까지 공격하다가 물러갔다. 충주의 州城은 곧 읍치에 있는 성이며, 山城은 그 배후에 입보처로 마련된 곳이다.

이곳에는 관리와 노약자 정도만 있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충주산성에 군사력이 없이 관리와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사적 방어가 무너지면서 피난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극적인 몽고군의 퇴각을 나타낸 것일 뿐, 적정한 군사력이 남아 州城 및 山城 방어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곧 충주 관할의 군사력 중 일부는 해도에 입보하여 전투에 대비하였고, 일부는 충주산성에 남아 방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해도에 입보한 군사력은 필요한 경우 육지로 나와 몽고군을 기습하는 ‘공격’을 담당하였고, 산성에 남은 군사력은 성을 지키는 ‘방어’에 주 기능이 있었다. 몽고군이 충주 방면으로 향하자 해도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육지로 나와 이를 공격하도록 한 것에서 전자의 운영 원리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산성에 있는 군사력 또한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군사력을 보내 몽고군을 기습하는 형태의 전술도 구사하였다.

충주는 경상도 방면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였던 탓에 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컸으며, 몽고군의 집중적인 공격도 여러 차례 겪었다. 고종 40년(1253) 12월 也窟의 침입 때 몽고군이 충주를 포위 공격하자 防護別監 金允侯의 분전으로 이를 막아내기도 하였다.⁴³⁾ 防護別監의 존재로 보아 당시 충주산성 입보를 통해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몽고군의 충주 공격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① 車羅大가 忠州山城을 공격하는데 風雨가 사납게 일어나니 성안의

43)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0년 12월 “忠州報 蒙兵解圍 時被圍凡七十餘日 兵食幾盡 防護別監郎將金允侯 諫 士衆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焚官奴簿籍 以示信 又分給所獲牛馬 人皆效死 蒙兵稍挫 遂不復南”

사람들이 정예를 뽑아 공격하니 적이 포위를 풀고 마침내 남쪽으로 내려갔다.⁴⁴⁾

- ② 몽고군이 大院嶺을 넘으니 충주에서 정예를 보내 천여 명을 쳐서 죽였다.⁴⁵⁾

①은 고종 41년(1254) 車羅大가 忠州山城을 공격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②는 이듬해 충주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大院嶺에서 충주가 몽고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거둔 내용을 적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둘 다 정예군이 공격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충주산성에 방어를 위한 군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소수의 정예병이 출격하여 기습 공격을 구사했던 것이다.⁴⁶⁾

이것을 고종 43년(1256) 아주 해도의 입보 상황과 연결해 보면, 당시 충주 방면은 山城과 海島로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륙의 산성에 국한하여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나누어 일부는 해도로 들어가 군사력을 보존하면서 필요에 따라 출륙하여 공격을 수행하고, 일부는 주요 거점 산성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정예병의 출격도 이러한 기반에서 구사되는 것이다.

고종 40년(1253) 몽고군의 재침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남도의 산성 및 해도 입보 조치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北界兵馬使가 “몽고군이 이미 鴨綠江을 건넜습니다”라고 보고하니 바로 五道按察 및 三道巡問使에게 移牒하여 주민을 다그쳐 山城과 海島에 입보 하도록 하였다.⁴⁷⁾

44)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9월 癸丑 “車羅大攻忠州山城 風雨暴作 城中人 抽精銳 奮擊之 敵解圍 遂南下”

45)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46) 고종 45년에는 忠州의 別抄가 朴達峴에 매복했다가 몽고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高麗史』 권24, 고종 45년 10월 “是月 忠州別抄 設伏朴達峴 狙擊蒙兵 奪所擄人物 牛馬兵仗”).

47)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北界兵馬使報 蒙兵渡鴨綠江 卽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

위의 기사에서 五道按察使와 三道巡問使에게 移牒되는 것은 이 조치가 남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⁸⁾ 五道按察使는 통상적인 행정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주로 산성 입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 반면, 三道巡問使는 전술한 忠州道巡問使와 牙州 海島 입보를 감안할 때 주로 해도 입보와 관련된 임무를 나누어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순문사가 산성 입보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수립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에 산성 입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어전략에서 해도 입보의 도입은 ‘대체’보다는 ‘병행’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계 주진은 행정단위의 이동까지 수반한 만큼 전략이 대체되는 성향이 크지만⁴⁹⁾, 남도지역은 당초부터 그러한 구도가 성립하기 어려웠다. 강화 천도에 수반하여 산성 및 해도 입보가 시달될 때부터 남도의 입보는 두 곳에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고종 23년(1236) 6월 義州江(압록강)을 건넌 몽고군은 빠르게 진격하며 남도지역까지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려는 諸道에 山城防護別監을 파견하였다.⁵⁰⁾ 이 당시까지 산성 입보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남도지역은 기존의 생활 기반 등으로 인해 해도 입보를 고려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2년 뒤 몽고군은 東京까지 침구하여 황룡사구충탑을 불태

48) 三道巡問使는 고종 30년 慶尙州道, 全羅州道, 忠清州道에 각각 파견된 巡問使를 가리킨다(『高麗史』 권23, 고종 30년 2월 戊辰). 이때 파견된 忠清州道巡問使와 고종 43년의 忠州道巡問使를 동일시할 수도 있으나 道の 편성 원리로 볼 때 관할 범위의 차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신의 활동은 단기간에 그친다는 점과 두 기사의 시차가 3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忠州道巡問使는 忠清州道巡問使와 동일 직임이 아니라 기능이 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9) 州鎭이 밀집되어 있던 北界에서 간선로의 주진이 먼저 海島에 입보하고 내륙 주진은 山城에 남아 있던 것은 결국 산성과 해도 입보를 병행하는 전략을 담게 된다. 하지만 고종 35년 내륙 주진들도 해도에 입보함으로써 북계 주진의 방어 전략은 해도 입보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50)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丁酉 “分遣諸道山城防護別監”

왔다.⁵¹⁾ 몽고군은 이듬해 정월 철군했지만, 4년에 걸친 공격으로 고려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外城을 쌓았다.⁵²⁾ 이러한 상황에서 남도지역 및 내륙 방면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해도 입보를 도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 몽고의 침입은 한동안 잦아들었다가 고종 34년(1247)에 재개되었는데⁵³⁾, 이듬해 북계 주진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도 입보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입보 조치는 몽고의 재침에 대응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곧 앞서 수년에 걸쳐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 해도 입보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제 침입이 재개되자 북계 주진이 대대적으로 해도 입보를 단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남도 지역의 경우에도 해도 입보를 기획한 상황에서 고종 40년(1253) 이를 전면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현 아산만 안쪽에는 입보할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실제 입보한 곳은 이보다 먼 외곽에서 찾아야 하는데, 아주를 통해 출입했기 때문에 “牙州海島”로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상 충주에서 바다로 나가려면 남한강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주 방면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때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의 실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산만에 인접한 大府島(大部島)이다.⁵⁴⁾ 『高麗史』地理志에 대부도는 唐城郡 소속으로 나오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南陽都護府(唐城郡) 서쪽 53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대부도 입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51) 『高麗史』 권23, 고종 25년 4월 “蒙兵至東京 燒黃龍寺塔”

52) 『高麗史』 권23, 고종 24년 “是歲 築江華外城”

53) 『高麗史』 권23, 고종 34년 7월 “蒙古元帥阿母侃 領兵 來屯塩州”

54) 강재광은 牙州 海島의 실체를 아산만 외곽에 있는 난지도 등으로 추정했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이들 섬은 규모가 작아 계수관 단위의 입보처로 활용될 여지가 적다. 멀리 않은 곳에 대부도가 있었던 만큼 이곳이 입보처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大府島 別抄가 밤에 仁州 지경의 蘇來山 아래에 나와 몽고군 100여 인을 쳐서 쫓아냈다.⁵⁵⁾

위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의 기사로서 대부도에 있던 別抄가 仁州 방면에 상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⁵⁶⁾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 과정에는 夜別抄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입보 후 군대 운용과 전투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인데, 위 기사는 그러한 활동의 일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부도에는 일정한 행정단위가 입보했을 것인데, 이것이 충주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남도의 해도 입보는 대개 계수관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양광도 방면의 계수관 중 남경과 광주목은 강화도에 흡수한 상태였다. 대부도 별초의 활동은 충주도순문사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려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충주목이 대부도에 입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忠州牧과 더불어 인근 계수관인 淸州牧의 해도 입보도 확인된다. 곧 고종 43년(1256) 8월 將軍 宋吉儒를 보내 淸州民을 해도로 옮긴 것이다.⁵⁷⁾ 그런데 충주목의 사례를 고려할 때 청주목도 군대 일부는 이미 입보한 상태였으며, 위의 조치는 남은 주민을 추가로 입보케 한 것으로 해석된다.

『高麗史節要』에는 당시 입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將軍 宋吉儒를 보내 淸州의 주민을 海島로 옮겼다. 吉儒는 백성들이 재물을 아껴 옮기는 것을 어렵게 여길까 우려하여公私의 재물을 모두 불태우게 하였다. 이에 앞서 崔沆이 諸道에 사신을 보내 주민을 모두

55)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56) 원종 12년 몽고군의 침탈에 시달린 大部島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27, 원종 12년 2월 辛丑). 窄梁을 방수하던 몽고군이 대부도에 진입하여 주민을 침탈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입보가 이루어져 항전의 거점이 되었던 대부도에서 그 기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해된다.

57)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島內에 몰아넣게 하였으며,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과 錢穀을 불태우니 굶어 죽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었다.⁵⁸⁾

위의 기사를 통해 고종 43년(1256) 청주목 방면에서 진행된 해도 입보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본거지를 모두 불태우는 淸野 전술을 수반하였다. 이것은 충주가 공격을 받아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다시 청주까지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청주목이 입보한 해도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충주목이 입보한 牙州 海島, 곧 대부도에 함께 입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충주도순문사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충주와 청주의 군사력이 따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입보 해도도 달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리적으로 보아 청주목은 아주 방면보다는 남쪽의 해도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태안반도 남쪽의 섬, 곧 현재의 안면도 정도로 비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단순한 추정을 넘어서기는 어렵지만, 딱히 다른 해도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청주목 방면에서 해도 입보와 더불어 산성 입보를 통한 방어가 병행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諸道の 郡縣으로 山城과 海島에 입보한 자는 모두 出陸하게 하였다. 당시 公山城에 舍入한 郡縣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자는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고 노약자는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으며, 아이를 나무에 매어 놓고 가버리는 일까지 있었다.⁵⁹⁾

위의 기사는 고종 42년(1255)의 것으로서 앞서 산성과 해도에 입보한 군현을 다시 나오게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물론 항구적인 입보책의

58)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8월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吉儒慮民愛財重遷 悉焚公私財物 先是崔沆 遣使諸道 盡驅居民入島內 不從者火其廬舍錢穀 餓死者十八九”

59)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3월 丙午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 公山城舍入郡縣 糧盡道遠者 飢死甚衆 老弱填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

포기가 아니라 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시 입보 상황의 악화를 보여주는 예로 公山城이 언급되고 있다. 이곳에는 여러 군현이 흡수되어 있었는데, 공주는 청주목 관내이다. 당시 청주 관내 군사력이 청주와 공주로 나누어 인근 산성에 입보한 것인지, 아니면 공산성에 집중 입보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주에 여러 군현이 흡수하고 있다는 점과 공주가 개령에서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요충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본거지와 멀리 떨어진 주민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목 주력군의 해도 입보와 더불어 공산성 입보도 병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⁶⁰⁾

몽고군은 경상도 방면으로 진출할 때 충주산성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전라도 방면으로 향할 경우 공산성을 거쳐야 했다. 이런 구도에 대응하여 충주목의 군사는 충주산성에, 청주목의 군사는 공산성에 각각 입보하여 방어에 나섰고, 한편으로 각기 해도에 나누어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양광도 방면의 해도 입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도의 해도 입보는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방군의 운용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경과 광주목은 전쟁초기에 강화도에 합입하였고, 충주목과 청주목 역시 해도에 입보하였다. 입보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정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각각 대부도와 안면도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해도 입보는 기존의 산성 입보와 병행되어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효과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었다.

60) 해도 입보와 산성 입보의 병행은 界首官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주력군의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계수관 단위에서 한곳에만 산성 입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산성에 입보가 이루어졌겠지만, 요충지에는 계수관이 이끄는 주력군이 우선적으로 입보했을 것이다. 이곳은 반드시 계수관 인군이 아닐 수 있다. 청주목 주민의 개별적 입보처라면 인군의 상당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계수관 단위 군사력의 활동을 감안할 때 요충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보면 공산성 입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4. 全州의 槽島 · 押海島 입보와 羅州의 珍島 입보

전라도 방면에서 이루어진 해도 입보 사례로는 槽島가 주목된다. 고종 42년(1255) 12월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한 일이 있었다.⁶¹⁾ 이듬해 정월 몽고군이 여러 섬을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정부는 將軍 李廣과 宋君斐로 하여금 舟師를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도록 했다.⁶²⁾ 이들은 靈光으로 가서 군대를 나누어 공격하려 했으나 몽고군이 미리 알고 대비를 갖추자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을 지켰다.⁶³⁾

이광이 어느 섬으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당시 군대의 파견은 앞서 槽島에 대한 공격이 발미가 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조도 외에 섬을 공격한 기사가 없고, 조도 공격은 몽고군이 직접 배를 만들어 도모한 것이었다. 몽고가 諸島 공격을 도모했다는 기사내용은 조도 공격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조도는 전라도 방면에 있었으며 당시 군사 운영의 거점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도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광 등이 영광으로 내려온 것을 통해 영광 서부 연안의 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도서가 있고 개중에는 臨淄縣 등 군현이 설치된 곳도 있었다. 조도 역시 이 지역에 소재한 섬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연안에 인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智島 일원에 비정할 수 있다.⁶⁴⁾

61)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2월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

62)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정월 丁巳 “王聞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李廣 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6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己未 “李廣 宋君斐 趣靈光 約分道擊之 蒙兵知而有備 廣還入島 君斐保笠巖山城 城中強壯 悉投於敵 唯老幼在 一日 君斐佯出羸弱數人於城外 以示之 蒙兵以爲糧盡 引兵至城下 君斐率精銳 奮擊敗之 殺傷甚多 擒官人四”

64) 槽島는 다른 문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정은 불가능하다. 강재광은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조도를 豐州의 椒島로 비정하였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같은 이름의 섬이 서로 다른 지역에도 출현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몽고군의 조도 공격은

한편 송군비가 들어간 笠巖山城은 長城에 있는데, 성을 지키던 強壯은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 송군비는 성이 허약한 상황을 보여주며 적을 유인한 뒤 인솔해 간 정예병을 출격시켜 격멸하였다. 여기서 당시 전라도 영광 및 장성 방면에서는 조도와 입암산성으로 나누어 입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충주산성과 牙州海島(대부도)에 나누어 입보했던 충주목의 상황과 유사하다.

입암산성의 경우 장정들이 적에 투항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장정이 투항한 상태에서 노약자가 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송군비의 활동을 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곳 역시 충주산성처럼 주력부대가 해도로 입보하였고, 이로 인해 성의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槽島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어디였을까. 직접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몽고가 가장 먼저 공격을 가하고 고려 정부가 지원군을 보낸 것을 보면 거점 군현, 곧 계수관의 입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후술 하듯이 나주지역은 배후에 양호한 입보처를 다수 가지고 있었음에 비추어 조도에는 全州牧 중심으로 입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전라도 방면의 군사 운용을 보면, 통상 全州와 羅州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술한 高宗 초 契丹遺種 침입 때 全州軍馬와 羅界軍의 동향은 그 예인데, 몽고의 침입 때에도 같은 형태의 군사 운용을 예상할 수 있다.

당시 전주의 군사력은 남하하여 일차적으로 요새인 입암산성에 입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암산성은 長城과 井邑 경계에 있다. 전주 방면에서 입보하기에 무리가 없고, 관할 知郡인 古阜郡 및 南原府의 입보도 가능한 곳이다. 계수관 전주의 군사력이 집결할 수 있는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전주목의 입보를 유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는 청주목이 公山城에 입보했다는 추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광과 송군비의 파견과 관련되므로 일단 영광 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입보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섬으로서 智島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기의 산성 입보에 해도 입보가 병행되면서 전주목의 군대가 영암 방면의 조도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입암산성의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전술한 충주산성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처럼 입보처가 입암산성과 조도로 이원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 부군도 두 곳으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다.⁶⁵⁾

한편 남도지역 전반에 해도 입보가 진행되면서 몽고군도 해도 공격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⁶⁶⁾ 고종 41년(1254) 3월 몽고의 兵船 7척이 葛島를 공격하여 30호를 잡아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⁶⁷⁾ 고종 43년(1256)에는 몽고군이 艾島를 공격하자 別抄가 잡아죽인 일도 있었다.⁶⁸⁾ 갈도와 애도는 모두 북계에 있던 섬으로 확인된다.⁶⁹⁾ 고종 44년(1257) 9월에는 안 북대도호부가 입보해 있던 昌麟島가 몽고군의 공격을 받았다.⁷⁰⁾

그런데 전라도 방면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몽고군이 槽島 외에 押海島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車羅大가 일찍이 舟師 70척을 거느리고 깃발을 성대히 벌여놓고 押海를 공격하려는데, 저와 한 官人으로 하여금 別船을 타고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押海人이 大艦에 두 砲를 설치하고 기다리니 양측 군대가 대치만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⁷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기사는 『고려사절요』에 고종 43년(1256) 6월의 일로 정리되어

65) 全州牧이 입암산성이나 조도에 입보하기에 거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내륙의 충주목이 아주 해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나 입보를 위해서는 남해안까지 내려와야 하는 東京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주목의 이동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66)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참조.

67)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3월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 侵葛島 虜三十戶”

6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10월 己巳 “蒙兵六十人 寇艾島 別抄盡擒斬之”

69)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3월 丙子 “北界艾葛二島合入各驛人 殺京別抄七人 投蒙古”

70)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 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 率別抄 擊却之 加壽松七品”

71)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韓洪甫 “車羅大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押海 使吾與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置二砲於大艦待之 兩軍相持未戰”

있는데⁷²⁾, 몽고군의 포로가 되어 활동하던 尹椿이 돌아와 崔沆에게 해도 입보의 장점을 설명하는 중에 押海島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車羅大의 공격 당시 압해의 주민들은 大艦에 포를 설치하면서 항전을 준비하였고, 車羅大는 쉽게 공격하지 못했다. 이에 배를 옮겨가며 공격하려 했으나 압해민이 이에 대응하여 포를 준비하자 결국 공격을 포기하였다.

위 기사는 윤춘이 최항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실제 車羅大의 압해도 공격은 이보다 앞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車羅大는 이해 4월 당시 潭陽에 주둔하고 있었고⁷³⁾, 윤춘의 보고 당시에는 海陽縣(光州)의 무등산에 주둔하면서 남쪽으로 공격을 도모하고 있었다.⁷⁴⁾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42년(1255) 12월에 몽고군의 槽島 공격이 있었고, 이듬해 정월 이광과 송군비가 파견되어 방어에 나섰다. 이광은 다시 섬(조도로 추정)으로 들어갔고 송군비는 입암산성으로 들어가 방어에 나섰다. 이러한 전황에 비추어 몽고군의 압해도 공격은 조도 공격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 등의 파견은 몽고군이 諸島 공격을 도모하는 데 대한 대응이었는데, 조도와 압해도 공격은 당시 몽고군이 도모한 諸島 공격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압해도의 대치 상황을 보면, 도서 군현인 압해현의 본래 주민만으로 구사될 수 있는 전술로 보기 어렵다. 大艦의 존재, 몽고 병선의 이동에 대응하는 砲의 비치 등은 전투력을 가진 군사의 입보에 의해 확보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연안에 인접하고 군현이 설치된 압해도는 유효한 입보처였다.

그렇다면 압해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 계수관인 羅州牧의 입보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면에서는 충주목이나 전주목처럼 단순한 구도로 입보처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과 달리 나주 관내에는 입보할 수 있는 섬이 많기 때문이다. 押海縣

72)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6월

73)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43년 4월 “時車羅大永寧公 屯潭陽 洪福源屯海陽”

74)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6월 “是月 車羅大屯海陽無等山頂 遣兵一千南掠”

외에도 臨淄縣과 長山縣, 陸昌縣 등 도서 군현이 다수 있었고, 더 남쪽에 珍島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나주가 입보할 해도로는 압해도보다 진도가 여러 모로 우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방어체계의 측면에서 해도 입보 후에도 육지의 군사 거점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할 知郡인 靈岩과 寶城의 입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주가 진도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도는 섬 안에 3개 군현이 설치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진도현은 현령관으로 안정된 행정 기반도 확보되어 있었다. 입보 여건이 다른 섬에 비해 월등했던 것이다. 뒤에 삼별초가 입보하여 대몽항전을 이어간 것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압해도에는 전주목 관할 군사력이 분산 입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라도 서남부지역에는 많은 도서가 분포하고 있다. 고려 정부는 몽고의 해도 공격에 맞서 이러한 연안 도서의 방어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연안의 섬이 함락되면 이곳을 발판으로 다른 입보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며, 그럴 경우 고려의 해도입보책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전라도 서남 연안에는 군사력의 보존뿐만 아니라 주요 도서 자체의 수비라는 측면에서도 입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맞추어 내륙 군사력의 입보도 특정 도서에 집중되기보다는 직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안의 주요 도서에 분산 배치될 필요가 있었다. 조도 공격에 대해 정부가 군대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며, 전주목이 영광 방면의 도서로 내려와 입보한 것도 도서 방어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영광 방면의 연안 도서에는 전주목이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는 한편 몽고의 해도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었다. 압해도의 사례는 이러한 방어책이 효과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도의

75) 물론 羅州牧의 군사력이 분산 입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나주가 최후 방어선이 되고 있고 배후의 입보처인 珍島의 규모가 크다는 점과 전주목이 입보하게 되는 서해안 도서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목의 분산 입보를 생각하는 쪽이 좀더 합리적이다.

또 다른 계수관인 羅州牧의 입보는 전술한 것처럼 珍島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고종 43년(1256) 6월 당시 車羅大는 해양현 무등산까지 진입하여 남쪽 방향으로 공략을 도모하였다. 당시 車羅大와 협상을 위해 활동하던 愼執平이 羅州로부터 돌아와 보고한 것을 보면⁷⁶⁾, 해양현과 나주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집평은 해로를 이용하여 나주로 들어가 車羅大의 진영에 갔고, 돌아올 때에도 이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나주 방면의 입보 상황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진행된 三別抄의 항쟁 과정을 통해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賊이 珍島로 들어가 웅거하며 州郡을 침략하는데 申思佺은 적을 토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략) 羅州에 이르러 賊이 出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경으로 돌아갔다. 全州副使 李杉 역시 성을 버리고 도망가 모두 면직되었다. 金方慶이 思佺을 대신해 蒙古元帥 阿海와 함께 병사 1천을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賊이 羅州를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全州를 공격했다. 나주 사람들이 전주와 더불어 항복을 의논하는데 전주 사람들이 미적였다. 김방경이 도중에 소식을 듣고 單騎로 서둘러 南行하여 먼저 전주에 공문을 보내기를 “某日에 군대를 이끌고 전주로 들어갈 것이니 속히 軍餉을 갖추고 맞이하라”라고 하였다. 전주에서 나주로 공문을 보내 알리니 적이 소식을 듣고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⁷⁷⁾

위 기사는 진도를 점거하고 있던 三別抄가 전라도 방면에 상륙하여 공격을 진행하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金方慶은 도주한 申思佺을 대신해 追討使가 되어 삼별초를 토벌하게 되었다. 당시 삼별초는 나주를 포위

76)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壬寅

77)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賊入據珍島 侵掠州郡 思佺不以討賊爲意 (중략) 至羅州 聞賊出陸 奔還于京 全州副使李杉 亦弃城逃 皆坐免 方慶代思佺 與蒙古元帥阿海 帥兵一千 討之 賊圍羅州 分兵攻全州 羅人與全議降 全人猶豫 方慶在道聞之 單騎併日南行 先牒全曰 某日當帥兵一萬入州 宜速備軍餉待之 全以牒示羅 賊聞之 遂解圍去”

공격하면서 군대를 나누어 全州도 공격하고자 하였다.

당시 삼별초가 전주와 나주를 공격한 것은 이들이 바로 界首官으로서 군사적 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와 나주는 삼별초의 공격에 맞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계수관으로서 당시 군사력이 두 곳을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었다.

한편 삼별초가 나주를 공격했을 때 나주의 司錄으로 재임하던 金應德은 領內 諸縣에 공문을 보내 錦城山에 入保하도록 하여 방어에 나섰다.⁷⁸⁾ 곧 계수관 관할에 있는 군현들을 나주에 집결시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때 금성산 입보는 삼별초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을 방어할 군사력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대몽항쟁기에도 이와 같은 원리의 대응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곧 나주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모아 대응하도록 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산성 입보를 도모하였고, 錦城山城이 그 거점이 되었다. 그리고 해도 입보도 병행되었을 것인데, 그 대상으로서 적합한 곳이 珍島였다. 車羅大가 무등산에 주둔한 뒤 남쪽 방면으로 공격을 도모한 것은 나주와 진도로 이어지는 고려의 방어선을 추측케 한다. 금성산성과 진도의 연계성은 앞서 살펴본 충주목의 입보 사례나 입암산성과 조도의 연계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가 이곳을 떠나 새로 근거지를 삼은 곳이 바로 珍島였다. 이곳에 입보하여 수년에 걸쳐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항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도가 大島로서 많은 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서남해안을 경유하는 조운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⁷⁹⁾ 이러한 이점은 앞서 몽고와 항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에서 진도는 나주목과 연계된 유효한 입보처였다.

78)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應德 “應德聞其言 卽決意守城 旆州及領內諸縣 入保錦城山 樹棘爲柵 率勵士卒 賊至圍城攻之 士卒皆瘡死守 賊攻城七晝夜 竟不得拔”

79) 해도 입보와 연계된 해상 교통로에 대해서는 강제광, 앞의 논문, 2012 참조.

원종 12년(1271) 진도 함락 후 진행된 주민의 분간 작업을 통해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입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고 황제는 진도 함락과 함께 몽고군에 잡힌 사람 중 강화도에서 삼별초에 끌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 처자가 서로 확인하여 예전대로 살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賊人의 家屬이나 병사들에게 내려준 노비 외에 원래 진도에서 살던 백성 또한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게 하되 王京 부근으로 이주토록 하였다.

원종은 몽고 장수 忻都에게 삼별초에 억지로 끌려 다닌 사람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혼도가 듣지 않았다. 고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고에 여러 차례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중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서 진도에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와 官軍으로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 있다가 驅捉된 자”⁸⁰⁾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들은 자칫 삼별초에 부응하여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따로 적시하여 선별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삼별초가 들어온 후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삼별초에 호응한 것이므로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官軍으로 다른 섬이나 다른 고을에 있다가 驅捉된 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정부가 군이 삼별초 무리와 구분하려 한 사람들은 대몽항쟁기에 미리 진도에 입보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끌려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삼별초에 휩쓸린 부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가 되는 주변 군현이란 결국 진도와 가까운 연안의 군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주 관할에 속한다. 이를 통해 대몽항쟁기에 계수관 나주의 진도 입보가 진행되었고, 이에 군사와 주민 일부가 진도에 들어와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 군현이 설치

80) 『高麗史』 권27, 원종 12년 8월 “或自別島他邑 入珍島而見獲者 或官軍 分往別島他邑而驅捉者”

되어 있던 진도의 규모에 비추어 다수의 주민이 입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나주가 최후 거점이 되었던 만큼 진도 입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삼별초의 진도 항쟁에 토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전라도 지역에서는 계수관인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해도 입보가 이루어졌다. 입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주는 笠巖山城과 槽島의 입보를 통해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고, 나주는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珍島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전주지역이 영광 방면으로 내려와 입보한 것은 이 방면에 소재한 다수의 도서지역의 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후 거점이 되는 나주는 배후의 큰 섬인 진도에 입보했는데, 이것이 후일 삼별초 항전의 토대가 되었다.

5. 東京의 해도 입보 시도와 晉州의 南海島 입보

경상도 지역은 몽고의 침입 경로에서 가장 먼 곳으로서 다른 지역과 달리 해도 입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고종 40년(1253) 몽고군의 침입에 대응해 五道按察使 및 三道巡問使로 하여금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⁸¹⁾ 경상도 방면에도 입보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기사는 경상도 방면의 해도 입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근거를 제공한다.

高宗 때 崔沆에 아첨하며 섬겨 夜別抄指諭가 되었다. (중략) 大將軍을 더하여 慶尙道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夜別抄를 거느리고 州縣을 순찰하며 백성을 다그쳐 海島에 입보하도록 하였다.⁸²⁾

81)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82) 『高麗史』 권122, 列傳35 酷吏 宋吉儒 “高宗時 諂事崔沆 爲夜別抄指諭 (중략) 加大將軍 爲

위의 기사는 宋吉儒 열전의 일부로서 최항 집권기에 경상도 방면에서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水路防護別監은 산성 입보를 주도한 山城防護別監과 대비해 볼 때 해도 입보를 독려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송길유의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송길유는 고종 43년(1256) 8월에 將軍으로서 淸州의 주민을 해도로 옮긴 일이 있었다.⁸³⁾ 그리고 고종 45년(1258) 정월 大將軍이던 그는 楸子島에 유배되었다.⁸⁴⁾ 송길유는 최항에 이어 집권한 崔瑱에 의해 숙청된 것으로서 그가 경상도수로방호별감으로 활동한 것은 최항이 사망하는 고종 44년(1257) 전후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고종 45년(1258) 金俊의 정변으로 崔氏政權이 몰락하였고, 몽고와도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太子(元宗)가 入朝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씨정권이 도모했던 해도 입보도 중단되거나 환원되었을 것이다. 고종 46년(1259) 이미 입보한 지역에 대해 出陸하여 耕種하도록 조치한 것은 해도 입보가 완화된 상황을 보여준다.⁸⁵⁾

하지만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로서 해도 입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화 정부가 출륙하지 않는 한 해도 입보민의 出陸 耕種은 제한된 조치일 수밖에 없었다. 무신 정권은 강화도를 나와 개경으로 돌아가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해도 입보를 풀지 않고 항전을 이어가려는 뜻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항전의 중심이 되는 북계 주진의 입보가 유지되는 데서 확인된다.

고종 46년(1259) 西京과 黃州의 주민을 德積島로 옮긴 것은 그러한 단서를 보여준다.⁸⁶⁾ 이 조치는 이미 해도에 입보한 상황에서 다시 입보처를

慶尙道水路防護別監 率夜別抄 巡州縣 督民入保海島”

8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海島”

84)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정월 癸丑 “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

『고려사절요』에는 그를 추자도에 유배한 기사 중에 慶尙州道水路防護別監으로 활동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85) 『高麗史』 권79, 食貨2 農桑 고종 46년 3월 “令州縣守令 率避亂民 出陸耕種”

86)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是月 徙西京黃州民于德積島”

黃州는 계수관으로서 서해도 방면에서도 계수관 단위의 해도 입보를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옮긴 것이었다. 서경은 전쟁초기 楮島에 입보한 일이 있었고, 뒤이어 주민을 모두 해도로 옮겨 성이 텅 빈 상태였다. 黃州 역시 전쟁초기 인근의 鐵島에 입보한 일이 있어 이 당시에도 철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남쪽의 덕적도로 옮긴 것은 입보 해도가 몽고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경에는 몽고군이 주둔하여 古城을 수축하고 戰艦을 만들며 屯田까지 개설하는 등 장기간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⁸⁷⁾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서경 등이 입보한 해도가 바로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였다. 이에 남쪽의 큰 섬으로 옮겨 입보를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金俊 정권의 수립 후 出陸 耕種을 허락하면서 도 근본적으로는 해도 입보를 통한 항전 지속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출륙 경종은 남도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던 것이다.

김준을 제거하고 집권한 林衍은 몽고와의 강화를 추진하던 원중에 맞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시도하였다.

林衍이 왕명을 거역하고자 夜別抄를 諸道에 보내 백성들을 다그쳐 諸島에 入居하도록 하였다. (중략) 林惟茂가 분노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諸道水路防護使와 山城別監을 나누어 보내 사람들을 모아 입보하여 왕명에 맞서도록 하였다. (중략) 임연이 보낸 야별초가 경상도에 이르러 백성들을 다그쳐 諸島에 입보하도록 하니 按察使 崔澗이 東京副留守 朱悅 및 判官 嚴守安과 함께 모의하여 야별초를 잡아 金州에 가두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⁸⁸⁾

또 하나의 계수관인 海州의 해도 입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주는 고종 23년 北界에 속하는 서경 인근의 龍岡 등이 몽고군에게 함락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高麗史』 권23, 고종 22년 8월 癸丑 “海州馳報 蒙兵陷龍岡咸從三登等城 執其守令”), 해주는 서해도 남부 해안에 위치하여 바다를 통해 강화도와 직접 교신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해도에 입보하지 않고 강화도에 전황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87)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庚子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築西京古城 又造戰艦 開屯田爲久留計”

88)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林衍 “衍欲拒命 遣夜別抄於諸道 督民入居諸島 (중략) 惟茂忿怒 莫知所爲 分遣諸道水路防護使 及山城別監 聚保人民 以拒命 (중략) 衍所遣夜別抄 至慶

위의 기사에 보이듯이 임연은 해도 입보를 통해 몽고와 결탁한 원종에 맞서려고 하였고, 임연 사후 권력을 승계한 林惟茂 역시 이 정책을 이어갔다. 이것은 최항 집권 말기에 도모했던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재차 시도한 것이었다.

水路防護使는 해도 입보를, 山城別監은 산성 입보를 지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 지휘 아래 입보 과정은 夜別抄가 맡았다. 앞서 수로방호별감으로 파견된 송길유 역시 야별초를 거느리고 주민의 해도 입보를 독려하였다. 이것은 후일 삼별초가 진도 등 해도를 근거로 대몽항쟁을 이어가게 되는 사정과 깊이 연관된다.

그런데 임연이 파견한 야별초는 경상도에 와서 해도 입보를 독려하다가 按察使 및 東京의 관리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것은 해도 입보가 계수관 동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지 관리들이 이에 반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원종이 몽고와 강화를 결정한 상황에서 동경지역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큰 해도 입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동경에서 해도 입보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 것과 달리 서부의 晉州牧 지역에서는 이미 입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목의 입보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인접한 南海島와 관련하여 그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단서는 남해도가 진도와 더불어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劉存奕이 南海縣에 웅거하면서 沿海를 노략하거나 賊이 耽羅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80척의 배로 따라갔다.⁸⁹⁾

유존혁은 裴仲孫이 강화도에서 承化侯 溫을 받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大將軍으로 동조하여 承宣에 임용된 인물이다.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가

尙道 督民入保諸島 按察使崔澗 與東京副留守朱悅判官嚴守安 謀執夜別抄 囚金州 以待王還”

89)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裴仲孫 “存奕據南海縣 剽掠沿海 聞賊遁入耽羅 亦以八十餘艘從之”

항전을 이어갈 때 유존혁은 남해현에 응거하고 있었다.⁹⁰⁾

남해도가 진도와 더불어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에 앞서 진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해도 입보를 시달하는 기사에는 대개 夜別抄를 파견하여 백성들을 독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別抄가 출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하는 기사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곧 해도 입보가 이루어진 곳에는 야별초가 그 중심에 있었고, 따라서 삼별초의 항전에 호응했을 것이다. 진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처럼 남해도도 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에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해도에 입보가 이루어졌다면 이곳에 들어간 행정단위는 계수관 旌州牧으로 볼 수 있다. 남해도는 진주목 관내이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는 羅州牧과 珍島의 관계와 동일한 맥락을 띤다.⁹¹⁾

흥미로운 것은 삼별초 항쟁 당시 남해도와 거제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남해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과 달리 거제도는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다.⁹²⁾ 도서와 연안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삼별초가 아직 세력이 미치지 않던 거제도를 공격한 것이다. 이는 남해도와 달리 거제도 방면에는 입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 송길유가 慶尙道水路防護別監으로 활동한 사례에 이어 임연의 해도 입보 조치에 동경의 동향이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이처럼 경상도 방면에서는 해도 입보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고종 말부터 전국적인 해도 입보가 시행된 만큼 경상도 방면에서도 일정하게 해도 입보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⁹³⁾ 후일 진도와 더불어

90) 남해도를 근거로 한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서는 배상현, 「三別抄의 南海 抗爭」, 『역사와경계』 57, 2005 참조.

91) 다만 현재로서는 진주목과 관련된 산성 입보의 내용을 추출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92) 『高麗史』 권27, 원종 13년 11월 戊寅 “三別抄寇巨濟縣 焚戰艦艘 執縣令而去 賊船又來泊靈興島 橫行近境”

93) 경상도 동부지역은 몽고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입보처에서 직접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아울러 山城 入保 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했던 측면과 해도 입보에 어려움이 컸던 점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남해도가 삼별초의 근거지가 된 것은 이미 해도 입보가 실행된 결과로서 그 대상은 인접한 진주목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경 방면은 원종 때 임연의 입보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거제도도 삼별초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어 여전히 해도 입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는 대몽항쟁기 開京 이남지역의 海島 入保 상황을 광역 운영 체계인 界首官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강화 천도가 단행되면서 내륙 군현들은 山城이나 海島로 입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北界 州鎭을 중심으로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山城 入保로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새로 모색된 것으로, 1차 침입 당시 黃州와 鳳州가 鐵島에 입보했던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강화 천도 후 서경 관리들이 몽고 관인을 제거하고 해도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해도 입보가 미리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 해도 입보는 기존의 생활 기반과 분리되기 때문에 입보에 따른 준비가 요구되었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북계에서는 처음에 義州에서 開京에 이르는 간선로상의 주진들이 먼저 입보하였고, 내륙 주진은 고종 35년(1248)에 비로소 해도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개 한곳에 다수의 주진이 함께 입보하였는데, 입보할 수 있는 도서가 제한적인 데다가 군사력 집중을 통하여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서해도 이남지역의 도서에 입보한 것은 강화도 방어와도 연관된다. 여러 주진의 畵入은 고종 초 몽고의 침입에 대비해 여러 주진이 큰 城에 畵入하도록 한 조치에서 원용한 것이다.

고려가 새로 해도 입보를 도모한 것은 기존의 산성 입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었다. 산성 입보는 미리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고 빠른 입보가 가능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입보가 길어지면서 경작을 원하는 입보민과 방어에 치중하는 관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비해 해도는 입보 과정에는 어려움이 컸지만 입보 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섬 안에서 개간을 통해 경지를 확보하고 식수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큰 섬일수록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섬 안의 토지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연 남도지역에서도 해도 입보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楊廣道지역에서는 고종 22년(1235) 南京과 廣州牧이 강화도에 흡수하였다. 이는 강화도의 인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사에 계수관 단위로 언급된 것을 통해 실제 계수관 중심으로 입보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忠州牧은 고종 43년(1256) 당시 牙州 海島에 입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곳에 있던 忠州道巡問使가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했으나 반격으로 몰살당했다. 이어 몽고군은 忠州山城까지 공격했는데, 당시 충주산성에도 일정한 군사력이 남아 성을 지켰다. 해도 입보는 군사력을 보존하여 몽고군을 공격하는 데 본령이 있었고, 산성 입보는 주요 요충지를 지켜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병행 전략은 강화 천도 이후 기획되었으나 고종 40년(1253) 전면화되었다. 한편 충주목이 입보한 아주 해도는 大府島로 판단되는데, 아주를 통해 상륙했기 때문에 아주 해도로 지칭되었다.

淸州牧은 같은 해 주민의 해도 입보 조치가 확인된다. 충주목의 군대가 몽고군 공략에 실패하고 그 여파로 충주산성까지 공격을 받게 되자 청주목의 피해를 우려하여 주민의 해도 입보를 시행한 것이다. 청주목의 입보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리적 관계로 보아 현재의 안면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청주목에서도 해도 입보와 더불어 산성 입보가 병행되었는데,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가는 요충으로 다수의 군현이 흡수해 있던 公山城이 그 대상으로 이해된다.

全羅道 方面에서 이루어진 해도 입보 사례로는 槽島가 있다. 고종 42년 (1255) 12월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정부는 이듬해 李廣과 宋君斐로 하여금 舟師를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도록 했다. 靈光으로 내려간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을 지켰다. 조도는 영광 方面의 섬으로서 현재의 智島에 비정되며, 입암산성은 長城과 井邑 경계에 있는 요충이다. 당시 이 方面에는 두 곳으로 나누어 입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맞추어 정부군도 둘로 나누어 움직였다. 조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全州牧으로 추정된다. 전주의 군사력은 남하하여 요새인 입암산성에 일차 입보하였고, 이어 영광 方面의 조도로 들어갔다.

남도 전반에 해도 입보가 진행되면서 몽고군도 해도 공격에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라도의 押海島가 車羅大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압해도 주민은 大艦에 포를 설치하여 항전에 임했고, 몽고군의 이동공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압해도에 군사력이 입보한 것을 반영한다. 당시 車羅大가 潭陽에 주둔한 것으로 보아 압해도 공격은 조도 공격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 전라남도 서부 해안지역에는 다수의 도서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군사력 보존의 측면 외에 이들 도서의 방어를 위해서도 입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方面에서는 내륙의 군사력이 여러 섬에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압해도에는 전주목의 군대가 나누어 입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羅州牧은 珍島에 입보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는 3개 군현이 설치된 큰 섬으로서 해도 입보 후 육지의 군사 거점과의 연계성이 좋았다. 나주의 입보 상황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나 三別抄의 항쟁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진도에 자리를 잡은 삼별초는 출륙하여 나주와 전주 공격에 나섰고, 두 계수관은 서로 연락을 취하며 대응하였다. 특히 나주는 관내 군사력을 모아 錦城山城에 입보하여 삼별초에 맞섰다. 이것은 입보처로서 금성

산성과 진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시사한다. 몽고군이 남하할 때 나주목은 금성산성과 진도를 근거로 대항했을 것이다.

나주의 진도 입보는 삼별초 진압 후 진행된 주민 분간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고려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삼별초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분간하기 위해 몽고에 거듭 국서를 보냈다. 여기서 고려는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왔다가 사로잡힌 자”를 적시하여 분간하고자 했다. 삼별초 입보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삼별초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적시된 사람들은 그 전에 진도에 들어와 있던 인근주민들로 파악된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대개 나주목 관내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나주목의 진도 입보를 판단할 수 있다.

慶尙道 방면은 구체적인 입보 사례를 찾을 수 없으나 역시 해도 입보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崔沆 집권 말기 慶尙道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夜別抄를 거느리고 州縣을 순찰하며 海島 입보를 독려한 宋吉儒의 사례는 경상도 방면의 해도 입보를 보여준다.

고종 말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강화가 진전되면서 해도 입보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입보민에게 出陸 耕種을 허락한 것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서 무신정권은 북계 주진을 중심으로 해도 입보를 유지하였다. 고종 46년(1259) 西京과 黃州의 주민을 德積島로 옮긴 것은 몽고군이 서경에 주둔하며 古城을 수리하고 戰船을 제작하는 등 장기 체류와 도서 공격의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대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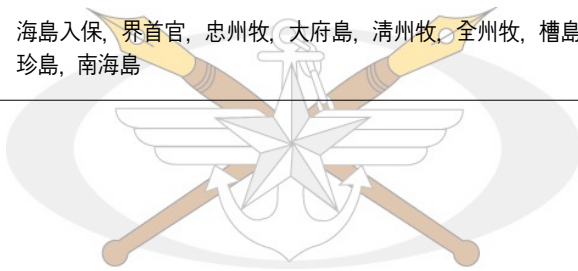
金俊을 제거하고 집권한 林衍은 원종에 맞서 다시 전면적인 해도 입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東京의 해도 입보를 추진하던 중 지역 관리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동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는 달리 晉州牧 방면에서는 해도 입보가 진행되었다. 진주목 인근의 南海島는 珍島와 함께 삼별초의 근거지가 되었는데, 이는 앞서 해도 입보를 통해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남해도에 입보한 행정단위는 인근의 진주목으로 추정된다. 반면 거제도도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해도 입보와 관련된

동경과 진주 등 두 계수관의 상황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해도 입보는 계수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 및 군사 운영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산성 입보와 유기적으로 병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각 州鎭이 개별적으로 입보하며 행정단위의 이동을 수반했던 북계의 상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海島入保, 界首官, 忠州牧, 大府島, 淸州牧, 全州牧, 槽島, 押海島, 珍島, 南海島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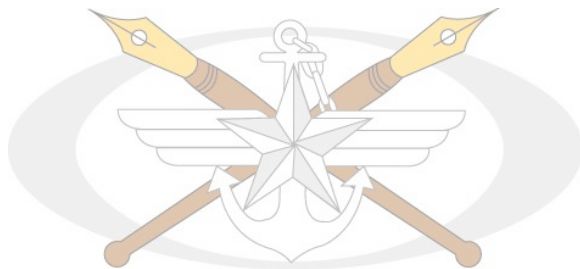
The Southern regions' Resettlements on the Islands(海島入保) in Resistance of the Mongol Invasion forces

Yoon, Kyeong ji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resettlements on several Islands in the South sea, which were necessitated by the invading Mongol forces. The local governing and military operations during the Goryeo dynasty were traditionally overseen by the local commanders(界首官), and so were the 'resident resettlements.' Some units of the primary army were positioned on the islands so that they could preserve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When it was necessary, they landed on the main land and fought the Mongol forces. Some of the forces occupied mountain fortresses in order to defend crucial inland bases.

Nam-gyeong(南京) and the Gwangju-mok(廣州牧) units of the Yang'gwang-do(楊廣道) province moved to the Gang'hwa-do island, and the Chungju-mok(忠州牧) unit entered the Daebu-do(大府島) island which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A-ju(牙州). In case of Chungju-mok(清州牧), the units in several areas entered adjacent islands, and some of them entered Chungju Sanseong fortress (忠州山城) and Gongsan-seong(公山城) fortresses as well. In the Jeolla-do(全羅道) province, the Jeonju-mok(全州牧) unit entered both Jo-do(槽島, Ji-do[智島]) and Ab'hae-do (押海島) islands and engaged in maritime defense, while the Naju-mok(羅州牧) unit entered Jin-do(珍島) island to form a defense base. Areas in the Jeolla-do province also entered Ib'am Sanseong fortress (笠巖山城) and Geumseong Sanseong fortress(錦城山城). In Gyeongsang-do(慶尙道) province the Jinju-mok(晉州牧) unit entered the Nam'hae-do(南海島) island, but was not able to enter Dong-gyeong(東京) because of the officials there would not let them into the island.

Key Word : Resettlements on the Islands(海島入保), Local government commanders(界首官), Chungju-mok(忠州牧), Daebu-do(大府島), Chungju-mok(淸州牧), Jeonju-mok(全州牧), Jo-do(槽島), Ab'hae-do(押海島), Jin-do(珍島), Nam'hae-do(南海島)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이 광 우**

1. 머리말
2.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현황과 운영 실태
3.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번수포(停番收布)와 재정아문화(財政衙門化)
4.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19세기 전반기, 즉 순조~철종 연간의 세도정권기는 굴곡된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외세의 개항 요구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인 원인을 당시 국내 정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왕조의 물리적 방어력을 결정하는 군사제도의 운영 실태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이광우, 「19세기 전반기 三軍門의 운영실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특징에 따라 제도화된 군사제도로 운영되기에, 조선의 군사제도도 정세에 따라 여러 차례 정비가 이루어졌었다. 중앙군제는 조선전기의 오위제(五衛制)에서 조선후기의 오군영제(五軍營制)로 개편되었고, 지방군제는 진관체제(鎭管體制)를 기반으로 제승방략(制勝方略)이나 영장제(營將制) 등이 실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중 중앙군제는 권력 유지 및 국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세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국방력 증강과 양역(良役) 문제 등을 이유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수어청·용호영·호위청과 같은 중앙군영을 잇달아 창설하였다. 특히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세 군영은 이른바 삼군문(三軍門)이라 불리며 18세기 이후 중앙군영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외세의 등장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전반기 삼군문의 운영 실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세기 전반기 중앙군영의 운영과 관련된 군제사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시기 삼군문은 국가 재정의 악화와 수취제도의 문란 속에 운영상의 조잔(凋殘)함을 보이며, 그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¹⁾ 여기에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관찬 사료와 19세기에 편찬된 개별 군영의 자료를 통해²⁾, 이 시기 삼군문의 운영

1)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배우성, 「순조 전반기의 정국과 군영정책의 추이」, 『규장각』12, 1992; 배향섭, 「19세기 전반의 군사제도」,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심승구, 「19세기 전반 군영의 변동과 수도방위체제의 변화」,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2002; 오종록, 「중앙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1800~1863)』(하), 청년사, 1990; 이태진, 「19세기초 세도정치와 삼군문 도성상주병제」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 훈련도감 자료로는 ‘栖碧外史海外蒐佚本 『訓局總要』(亞細亞出版社, 1986년 영인);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總要』(國防軍史研究所, 1999년 영인); 장서각 소장 『訓局總要』(藏)(2-3405); 장서각 소장 『訓局謄鈔』(藏)(2-3402)’, 어영청 자료로는 ‘軍事史研究資料集 10 『御營廳事例』(國防軍史研究所, 2000년 영인); 장서각 소장 『御營廳減番謄錄』(藏)(2-3343); 장서각 소장 『御營廳習陣謄錄』(藏)(2-3353)’, 금위영 자료로는 ‘軍事史研究資料集 10 『禁衛營事例』(國防軍史研究所, 2000년 영인); 『禁衛營來關謄錄』(藏)(2-3290)’을 활용하였다.

실태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삼군문의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19세기 전반기의 재정 악화로 삼군문이 본의(本意)와 다르게 운영되며 군사적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정치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던 삼군문 운영에 대한 시각과 태도, 나아가 군사 정책의 방향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현황과 운영 실태

1) 19세기 전반기 훈련도감의 군액과 재정 상황

삼군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창설된 훈련도감은 원래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정예 병사 양성을 위한 임시 군사기관에서 시작되었으나, 호란과 북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설화되어 중양의 핵심 군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훈련도감의 군졸은 다른 군영과는 달리 장번병(長番兵)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도성과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기다 급료를 받는 일종의 직업군인으로, 삼군문 가운데 가장 정예 병력이어서 군액과 재정 확보 및 유지에 중양의 관심이 남달랐던 군영이라 할 수 있다.

훈련도감의 군졸은 마병과 보군 4,000명 내외와 기타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세기 전반기에도 이 군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만기요람(萬機要覽)』과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된 『훈국총요(訓局總要)』를 통해 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9세기 전반기 훈련도감의 군액³⁾

구 분	만기요람 (1808)	훈국총요* (1811~1820)	훈국총요** (1829~1834)	훈국총요*** (1845~1849)
별무사(別武士)	68	68	68	68
무예별감(武藝別監)	198	198	198	198
마병(馬兵) 7조(哨)	833	833	833	833
보군(步軍) 26조	3,178	(3,178)	3,178	(3,178)
[포수(砲手) 20조]	2,440	2,440	-	2,440
[살수(殺手) 6조]	738	738	-	738
순령수(巡令手)	111	111	111	111
뇌자(牢子)	118	118	118	118
대기수(大旗手)	166	166	166	166
취고수(吹鼓手)	183	183	183	183
당보수(塘報手)	73	73	73	73
장막군(帳幕軍)	61	61	61	61
아병(牙兵)	60	60	60	60
난후초(欄後哨)	100	100	100	100
취수(吹手)	358	(358)	(358)	(358)
[사소취수(四所吹手)]	-	172	172	172
[육사취수(六司吹手)]	-	186	186	186
문기수(門旗手)	30	-	30	30
수문군(守門軍)	28	28	28	28
금송군(禁松軍)	20	20	20	20
별금송(別禁松)	-	-	2	-
포군(舖軍)	24	24	24	24
아기수(兒旗手)	38	41	41	40
원류군(願留軍)	147	105	105	87
경복궁별패군 (景福宮別牌軍)	-	2	-	2
합계	5,794명	5,727명	5,757명	5,736명

〈표 1〉과 같이 19세기 전반기 동안 훈련도감 군액 중 마병 833명, 포수와 살수로 구성된 보군 3,178명은 변동이 없었으며, 각색 표하군의 군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5,700여 명 가량의 전체 군액은 유지되고 있었다. 삼군문 중 핵심 군영이었던 만큼 군액의 안정이 보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3) 『萬機要覽』, 軍政篇, 訓鍊都監; * 栖碧外史海外蒐佚本 『訓局總要』, 摠二兵 ; **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總要』, 摠 ; *** 『訓局總要』(藏)(2-3405), 摠 .

그러나 훈련도감 보군의 내부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전투 대오에 제대로 편제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훈련도감 병력은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 따라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사(司)와 초(哨)로 편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병력이 훈련도감 내 다른 잡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1845~1849년 사이의 훈련도감 군액을 기재한 『훈국총요(訓局總要)』⁴⁾에 따르면, 전체 군액 5,736명 중 무예별감·수문군·금송군·포군·아기수·원류군·경복궁별패군을 제외한 5,337명 가운데, 명목상 대오에는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잡역에 종사하는 군액이 <표 2>와 같이 1,300명이라고 하였다.

<표 2> 군총 내 각종 잡역에 종사하는 병력

협연군(挾輦軍)	400명	삼소배기수 (三所陪旗手)	28명	패두(牌頭)	51명
어전등롱군 (御前燈籠軍)	24명	별파진(別破陣)	90명	원역(員役)	45명
협여군(挾輿軍)	80명	대포수(大砲手)	14명	착어군(捉魚軍)	10명
세자궁담등군 (世子宮擔燈軍)	16명	좌독수(坐蠶手)	9명	세악수(細樂手)	25명
겸내취(兼內吹)	12명	화전군(火箭軍)	10명	차부(車夫)	9명
삼소배포수 (三所倍砲手)	100명	서자지(書字的)	50명	복마군(卜馬軍)	332명
합계 1,300명					

<표 2>에서 확인되는 1,300명의 군액은 훈련도감의 규모가 커지고, 임무가 증가됨에 따라 별도로 초정(抄定)된 병력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력은 훈련도감의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따로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을 기존 군액, 그 가운데서도 이미 편제되어 있는 보군에서 초정하고 있었다.⁵⁾ 다른 각색 표하군과 특수한 임무를 지고

4) 『訓局總要』(藏)(2-3405), 擲 .

5) 1811~1820년의 군액을 기록한 ‘栖碧外史海外蒐佚本 『訓局總要』, 三擬兵’에 따르면, 협연군 300명은 각 초군(哨軍)에서, 등롱군 26명은 초군에서 뽑다가 후에 난후초군에서 차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보군이 주요 차정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있는 무사와는 달리 평상시 보군은 훈련과 도성 수비의 임무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보군으로 하여금 각종 잡역을 담당케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표 2>의 군액이 1840년대 후반의 사례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 문제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별다른 개선 없이 누적되어 갔다. 원래 훈련도감은 각 초(哨)별로 120명 내외의 병력을 두어, ‘초(哨)-기(旗)-대(隊)’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상하 관계의 하부 구조로 편제되어 있었다. 훈련도감 전투 병력의 편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러 잡역을 담당하는 병력을 보군에서 초정한 것은 결국 훈련도감 편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조직력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1867년(고종 4) 좌참찬(左參贊) 신관호(申觀浩)의 상소는 편제 문제가 19세기 전반기 동안 개선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갔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는 상소에서 훈련도감 보군 병력이 26초인데 이 중 협연군·별파진·배포수·서원·고직(庫直) 등 약 700여 명과 초관·사후(伺候)·서자지·패두·청령군(廳令軍) 등 213명이 대오 안에 뒤섞여 있다며, 병력 지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신관호는 잡역에 종사하는 병력을 대오 밖으로 내보내어 따로 수를 정한다면 초의 수는 20초로 줄어들지만 종전보다 병력은 정예화 될 것이라는 대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⁶⁾

이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동안 급한 인력 수요를 군액의 증액 대신 보군의 변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던 훈련도감의 재정 상황 때문이었다. 우선 19세기 전반기 군색(軍色)·군향색(軍餉色)·겸료색(兼料色)·중순색(中旬色)·조총색(鳥銃色)·궁전색(弓箭色)·

6) 『고종실록』 권4, 4년 1월 16일, “左參贊申觀浩 疏略 … 見今本局 步軍正兵二十六哨 然而有挾輦軍別破陣陪砲手書員庫直各匠手等七百餘名 哨官伺候書字的牌頭聽令軍等二百十三名 混充於作隊之內 若當動駕排衛之時 既陳應 … 臣謂宜亟 圖變通 以正軍制 挾輦軍別破陣 除出隊外 別定將領 其餘雜色五百名 分屬七色 勿混隊伍 則正兵只爲二十哨 哨數雖減 庶幾兵精而節制行矣.” 이때 개편된 훈련도감 보군의 편제는 1867년 편찬된 ‘『六典條例』, 『兵典』, 訓練都監’에 반영되어 있다.

화약색(火藥色) 등의 훈련도감 각색(各色) 가운데 재정 비중이 높은 군색·군향색·검료색의 1년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19세기 전반기 훈련도감의 재정 상황⁷⁾

구 분		만기요람		훈국총요*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군색	무명	712동 20필	710동	순전(純錢)으로 환산 185,368냥	순전으로 환산 169,097냥 6전 3푼
	삼베	25동	23동		
	돈	72,160냥	69,000냥		
	6도 포보	37,194명		37,260명	
군향색	쌀	4,451석 13두	4,441석 3두	4,590석 3두 3합	4,100석
	돈	2,703냥 4전	1,006냥	3,410냥 2전	1,400냥
	삼베	-	-	8필	-
	콩	-	-	11두 2두 2승	-
	좁쌀	-	-	15석 4두 6승	-
	6도 포보	7,000명		7,000명	
검료색	쌀	9,940석	9,640석	9,940석	7,996석
	콩	3,700석	3,700석	3,700석	3,700석

구 분		훈국총요**		훈국총요***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군색	무명	648동 31필	644동 8필 8척 4촌	648동 31필	659동 20필 7척
	삼베	37동 13필	27동 19필 14척	33동 25필	33동 25필
	돈	86,913냥 1전 3푼	75,413냥 8전 3푼	91,199냥 5전 3푼	95,419냥 6전 3푼
	계목지	6권	42권 10장	-	-
	남방사주 (藍方絁紬)	-	26필 8척 5촌	-	-
	감시 낙폭지	-	22축 6사	-	-
	상모(象毛)	-	2근 5냥 6전	-	-
	6도 포보	36,901명		36,629명	

7) 『萬機要覽』, 軍政篇, 訓練都監: * 栖碧外史海外蒐佚本 『訓局總要』, 三十四 捧下 (1811~1820); **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總要』, 軍色·軍餉色·兼料色(1829~1834); *** 『訓局總要』(藏)(2-3405), 軍色·軍餉色·兼料色(1845~1849). 한편, 순전(純錢)으로의 환산은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總要』 國防軍事研究院에 수록된 '各種折價式'을 활용하였다.

군향색	쌀	3,920석 12두 1승 5합	3,579석 6두 4승 8합	4,007석 6두 2승 5합	4,036석 4두 8승 5합
	돈	4,484냥 2푼	2,356냥 1전 3푼	4,550냥 9전 9푼	3,298냥 6전 4푼
	삼베	8필	8필	8필	8필
	무명	45필	44필	45필	45필
	콩	-	-	1,500석	1,523석
	6도 포보	6,523명		-	
검료색	쌀	8,940석	8,949석	9,040석	9,031석
	콩	1,700석	3,400석	3,700석	3,700석
	돈	3,713냥 7전 5푼	-	30,583냥 7전 5푼	29,600냥

〈표 3〉에서 확인되듯이 군색·군향색·검료색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약간의 잉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잉여분은 윤달의 경비와 기타 잡다한 경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남는 것 없이 대부분 소비되었으며, 조총색·화약색·궁전색 3색은 세입의 잉여가 없는 색이기 때문에 조총·칼·활·화살·제약(製藥) 등의 물자는 대부분 군색에서 가져다 쓰는 실정이었다.⁸⁾ 따라서 훈련도감의 1년 경비는 모두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는 경우도 찾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⁹⁾

훈련도감은 독립된 재정을 가진 아문으로, 그 경비 대부분은 전투병력과

8) 『萬機要覽』, 軍政篇, 訓鍊都監.

9) 김옥근은 『만기요람』을 바탕으로 삼수미(三手米)와 둔전의 세입을 포함시켜 종목에 따라 훈련도감 세입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입이 삼수미 60,000석·둔전세미 16,317석·환곡이자미 2,725석·양포(良布) 44,194필·군역청급대 면포 3,000필 만포 500필·미(米) 10,183석·전화(錢貨) 34,920냥이라 하였고, 이를 다시 미(米)로 환산하면 115,283석이라 하였다.(김옥근, 『조선 후기 재정사연구』, 일조각, 1987, 75쪽) 한편, 오종록은 김옥근이 밝힌 훈련도감의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일반 군사의 수로 나누면 1명당 188석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훈련도감 재정은 잉여가 없다고 하였다.(오종록, 「중앙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1800~1863)』(하), 청년사, 1990, 458~459쪽)

각색 표하군의 급료, 무기 및 제반 물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다. 별다른 수입 증대 없이 19세기 전반기 동안 훈련도감의 재정은 앞과 같이 운영되는 추세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영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역 담당의 병력을 증액하지 못하고, 보군 내의 병력을 초정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금위영과 어영청 정번(停番)으로 인한 공역(公役) 증가는 훈련도감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훈련도감의 재정 압박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군졸에게 지급할 급료 부족이었다. 훈련도감의 일반 군졸은 매월 쌀 9두에 달하는 급료를 지급받았지만¹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에 주요 당국자들이 변통을 요구하여, 1803년(순조 3)에는 훈련대장 김조순(金祖淳)이 군졸에게 지급할 지방(支放)의 부족을 호소하였고¹¹⁾, 1857년(철종 8년)에는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장사(將士)에게 지급할 급료가 부족함을 호소하였던 것이다.¹²⁾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졸 전체의 기강 해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¹³⁾

그런데 훈련도감의 재정이 처음부터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1808년(순조 8) 김조순의 계(啓)에 따르면, 당초 훈련도감의 역(役)은 번잡하지 않아 세입에 잉여가 있었으나, 점점 사역(事役)이 늘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⁴⁾ 김조순은 1807년에도 훈련도감의 대소 공역

10) 『萬機要覽』, 軍政篇, 訓練都監, 軍料.

11) 『訓局騰鈔』(藏)(2-3402) 계해, 순조 3년 2월 16일, “訓練大將金祖淳所啓 … 本局役繁人衆 而經費則本甚 不定一年所入 近支得一年 故中間有數千石 衆衆分給之法 斛分斗其耗剩 以補支放京營軍卒”

12)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8년 6월 20일, “右議政 趙所啓 卽見訓局所報 則以爲 本局各樣應下每患不足 均應給代種糶 移 若不及今變通 將士支放 其勢末由”

13)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3월 1일, “訓練大將趙萬永所達 訓局自來支用艱難 苦無矯揉之策 故近始略有所經紀者矣”

14) 『訓局騰鈔』(藏)(2-3402) 무진, 순조 8년 4월 25일, “訓練大將金祖淳所啓 … 而在昔設營之初 則舉行便簡名目不煩 故或有遺餘之時 以中古以來 事役漸煩 策應浸廣 則經費出入首尾相接不復餘也”

(公役)은 증가했으나, 세입이 늘어난 공역의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¹⁵⁾ 이러한 문제의 누적은 급료의 부족과 군졸의 기강 해이로 이어졌던 것이며, 결국 훈련도감의 재정 확충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2) 재정 확충을 위한 변통책과 운영 실태

19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훈련도감의 재정 확충 요구 사례로는 환미(還米)와 채전(債錢)의 혁파, 무예청의 접제비 마련, 주전(鑄錢)을 통한 재정 보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러한 대책들이 항시적인 변통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환미와 채전 문제는 열악했던 훈련도감의 재정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803년 훈련대장 김조순은 계를 올려, 부족한 훈련도감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군졸들에게 환곡과 채전을 놓고 있음을 지적하며 혁파를 주장하였다.¹⁶⁾ 당시 훈련도감은 군미(軍米) 3,000석과 군영 중의 돈 8,000냥으로 군졸들에게 이자를 놓고 있었는데¹⁷⁾, 이를 통해 경비 충당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군졸들의 조폐와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조순의 건의는 곧 받아들여져, 규장각 주자(鑄字)에 쓸 해서(海西)의 소미(小米), 해서 각읍(各邑) 상진(常賑)에 쓸 소미, 호남의 상진에 쓸 대미(大米)로 환곡을 놓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¹⁸⁾, 환미와 채전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훈련도감은 매년

15)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5일, “訓鍊大將金祖淳所啓 本局經費 元自不敷 而年復年來 大小公役 極其浩繁 … 歲入則不增 而費用則漸廣 每日思之 不勝惘然”

16) 『訓局臚少』(藏)(2-3402) 계해, 순조 3년 2월 16일, “訓鍊大將金祖淳所啓 … 本局役繁人衆 而經費則本甚 不定一年所入 近支得一年 故中間有數千石 衆余分給之法 斛分斗其耗剩以補支放京營軍卒 既非農氓 則還穀二字已不着題 而畢竟收捧 亦無其路 只以放料爲期 故五千軍兵 冬三朔料米 幾盡入於納 名 雖給料實 則還奪究其事情寧不哀嗟 而至於債錢 以斤二萬營錢出給 各哨官輒 殖 以資公用 各其贖 又取重殖 以濟私費一錢 有公私兩債之別 而各哨皆負債之軍矣”

17) 『訓局總要』(藏)(2-3405), 還債革罷.

18) 『訓局臚少』(藏)(2-3402) 계해, 순조 3년 5월, 「還米債錢釐革節目」, “本局以時 掖 親兵所

5,350냥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훈련도감의 군색·번소(番所)·응책소(策應所)·북영(北營)·한강진·조총색 등의 경비와 마태(馬駭)로 집행되었다.¹⁹⁾

무예청(武藝廳) 소속 군병의 접제비 마련은 환미의 채전 혁파 조치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1802년(순조 2) 장용영(壯勇營)이 혁파되자 그 군졸들은 각 군영으로 환속 및 이속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때 훈련도감에는 58명이 옮겨와 무예청 병력으로 증액되었다. 이속된 무예청 병력들의 접제 비용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 아문이 분담하였는데, 이때 훈련도감은 봉족료 11필을 부담하였다.²⁰⁾ 그러나 훈련도감은 5~6년 이래 축적한 별도의 재용이 없었기에, 1808년 훈련대장 김조순이 사세(事勢)의 부당함을 호소하게 되었다.²¹⁾

우선 김조순은 관서향모(關西餉耗) 1,500석을 획급받아 증액된 무예청의 접제 비용을 마련하였다.²²⁾ 평안도 별군향색(別軍餉色)이 보관하고 있던 소미(小米) 1,000석과 당아산성(當峨山城) 향곡(餉穀) 500석으로 환곡 이자를 얻은 뒤, 3냥 5전식으로 4,500냥을 마련하여²³⁾ 무예청 군병의 접제비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조치는 항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듯하다. 1845년(헌종 11) 훈련대장 조병구(趙秉龜)에 의해 무예청 접제 비용이 또다시 요청된 것이다. 이에 선혜청(宣惠廳) 무삼곡(貿蔘穀) 10,000석을 취모하여 1,000석을 얻고, 이것을 다시 3냥식으로

重員別 近年以來營樣 軍容漸益凋弊 而其中軍卒折糈之 卽還米債錢也 … 海西所納內閣鑄字小米一千石 價債三千五百兩 及海西各邑常賑小米四千石 湖南常賑大米三千石 海西則盡分取耗 爲四百石 湖南則半分取耗一百五十石是如乎 自今始還米債錢 材併革 ”

19)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摠要』, 軍色, 一年捧上; 『訓局摠要』(藏)(2-3405), 還債革罷.

20) 『萬機要覽』, 軍政篇, 訓練都監, 軍摠.

21) 『訓局臚少』(藏)(2-3402) 무진, 순조 8년 4월 25일, “訓練大將金祖淳所啓 … 壬戌壯營罷後 軍兵則移屬接濟 則不別區劃五六年来 若干遺儲一時告整 武藝廳增額 又至半百 其外樣舉行果倍於前入不當出 事勢倒懸”

22) 『순조실록』 권11, 8년 4월 29일, “訓練大將 金祖淳啓言 本局一年軍需之用 無以塗抹 武藝廳額 又至半百 請量宜加劃 備局請以關西餉耗一千五百石 年例劃送 允之”

23) 이 중 1,200냥은 훈련도감의 신영(新營)에 주어 무예청 접제의 비용으로 쓰고, 200냥은 태가(駄價)로, 100냥은 원역(員役)에게 지급하였다. 『軍事史研究資料集 8 『訓局摠要』, 軍色, 一年捧上.

환산해 3,000냥을 마련하여 무예청 접제 비용 등에 보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²⁴⁾

훈련도감은 직접 주전(鑄錢)을 실시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에 1828년(순조 28) 훈련대장 조만영(趙萬永)은 훈련도감과 선혜청이 함께 주전을 실시해, 남은 이득을 두 아문의 재정으로 보충하고자 진달하게 된다.²⁵⁾ 조만영의 진달은 곧 윤허를 받았고, 이듬해 주전이 이루어져 모두 60,000냥을 훈련도감 재정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²⁶⁾ 이때 보충된 60,000냥은 1857년(철종 8) 우의정 조두순의 청으로 관서와 해서에 매년 환곡을 놓아, 군수를 보충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²⁷⁾

이상의 변통 요구와 조치는 19세기 전반기 궁핍한 훈련도감의 재정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당시 당국자들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가급적 훈련도감의 본의(本意)를 지키려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금위영·어영청을 비롯한 다른 군영과는 달리 군액의 증액과 접제 마련, 중순(中旬) 실행 등과 같은 조치(措處)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19세기 전반기 훈련도감 군액 증액은 1802년 혁파된 장용영 군사들의 이속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대로 무예별감은 58명 증액으로 198명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제 비용도 적절하게 마련되었었다.²⁸⁾ 또한 이때 대장의 휘하에서 군무를 수행하는 아병(牙兵) 40명이 장용영에서 환속되었는데, 이것으로 소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그 이듬해 아병 20명을 증액하였다.²⁹⁾

그런데 훈련도감 군액의 증액 및 접제 비용을 요청할 때 보면, 다른

24) 『訓局總要』(藏)(2-3405), 中旬色.

25)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3월 1일.

26) 『增補文獻備考』 권159 財用考 6, “文祖代廳時 鑄錢所達言 明年畢鑄該所 又達言 新鑄錢七十三萬三千六百兩內 銅鐵價 及諸般應行所入五十三萬三千六百兩 則實利條 爲二十萬兩矣 十五萬兩屬之惠應 以添封不動 五萬兩屬之訓局”

27)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8년 6월 20일, “右議政 趙所啓 … 以本局鑄錢剩餘條六萬兩 作穀於兩西 每年盡分取耗 以補軍需”

28) 『萬機要覽』, 軍政篇, 訓練都監, 軍摠.

29) 栖碧外史海外蒐佚本 『訓局總要』, 三摠兵 .

군영과의 자별(自別)함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1807년 훈련대장 김조순은 각 초 원액 가운데 뽑아 쓰던, 무예청 문기수 30명의 가설(加設)과³⁰⁾ 장용영에서 이속되었으나 자리가 없어 승진하지 못한 군사들로 마병 1초를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이때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서울의 친병은 훈련도감의 병력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병 증액을 동의하기도 했다.³¹⁾

또한 김조순은 증액 된 마병 접제의 명목으로 호조로 이속 된 훈련도감 겸료미(兼料米) 환속을 청하게 되는데³²⁾, 이때도 훈련도감의 자별함을 강조하였다. 원래 훈련도감은 겸료미 800여 석과 월과미(月課米) 30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정조 연간 장용영으로 이속되었었다. 그러나 겸료미와 월과미는 장용영 혁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1801년(순조 1) 공노비(公奴婢) 혁파에 따른 호조의 재원 부족 때문에,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라는 명분하에 호조로 이속되었기 때문이다.³³⁾ 결국 겸료미와 월과미는 김조순의 청원과 당시 호조판서 서영보(徐英補)의 적극적인 동의하에³⁴⁾ 1807년이 되어서야 환속받게 된다.

그런데 서영보는 훈련도감으로의 겸료미와 월과미 환속에 동의하면서도,

30) 『訓局總要』(藏)(2-3405), 訓局 設. 한편 무예청 문기수도 훈련도감 군충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각 초에 편제된 군졸을 뽑아 충당하였다.

31) 『순조실록』 권10, 7년 7월 25일, “訓鍊大將金祖淳啓言 本局所管壯勇營以來馬步軍 今則幾盡陞實 而未及陞實者 馬軍爲一百五名 … 未陞實之馬兵 別爲一哨 設爲哨官 如他馬兵哨例 永作元額步軍 量宜填補於闕伍之哨 恐合便宜 而軍制莫重 請下詢大臣 … 左議政李時秀曰 軍門雖移 而輦下親兵 只是訓局騎步而已 其數甚少 常患苟簡 今數漸可新 增額 以壯勇營餘軍 勿爲陞實 仍爲一哨 似爲合宜 從之”

32)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5일, “訓鍊大將金祖淳所啓 本局經費 元自不敷 而年復年來 大小公役 極其浩繁 … 皆古無而今有之者也 歲入則不增 而費用則漸廣 每日思之 不勝惘然 … 壯勇營設置時本局 均廳所在本局 兼料米八百餘石 月課米三十石 每年移送矣 及至壬戌罷營之後 事當還屬本局 而入於戶曹 罷奴婢給代之需 … 還屬本局 戶曹給代 則從長另議 實爲兩便”

33) 『비변사등록』 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奴婢貢給代別單」 참조. 한편, 공노비가 혁파되자 호조를 비롯한 각 아문이 입은 재정적 손실은 장용영을 혁파하고 생긴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장용영 혁파로 생긴 재정적 여유는 호조 및 경각사(京各司)와 내수사로의 노비공 급대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특히 호조는 거의 전액을 급대받았다고 한다.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파와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1991, 69쪽.

34)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5일, “臣曹不必持難 而推去後給代充數之資 則自廟堂區劃以及”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훈련도감처럼 장용영에 재용을 이속시켰던 각영(各營)·각사(各司)가, 훈련도감의 사례를 명분으로 향후 환속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불허해야 한다는 단서다. 호조의 물력(物力)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좌의정 이시수와 다른 군영의 수장들이 동의함에 따라³⁵⁾, 장용영으로 이속되었던 재용의 환속 조치는 훈련도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훈련도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서영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신설된 훈련도감 마병 1초에 대한 접제 비용의 마련을 청하였다. 매년 마병 1초의 접제 비용으로 미(米) 1,068석과 태(太) 915석이 필요하지만 수년 후에는 접제할 것이 마땅치 않다며, 여러 도에 소재한 장용영 본영곡(本營穀) 453,000석의 절반가량으로 환곡을 놓아 접제의 비용을 마련하자고 했던 것이다.³⁶⁾ 이와 같이 호조에서 적극적으로 훈련도감에게 재정적 조치를 취한 것도 훈련도감이 가지고 있던 사세(事勢)의 자별(自別)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훈련도감에 대한 자별한 조치(措處)로는 군졸에 대한 무예시험인 중순설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훈련도감의 중순은 군졸들의 무예기량을

35)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9일, “行戶曹判書徐英補所啓 訓局兼料米八百餘石 月課米三十石 今已還屬該營矣 … 今此訓局米還屬 雖緣該營事勢之不得已 而各營各司 又若鱗次繼起 皆欲還推 則給代物力 將至無餘而後已”. 위와 같이 호조판서 서영보가 계를 올리자 좌의정 이시수를 시작으로 다른 군문의 수장인 어영대장 이득제(李得濟), 총융사 이요현(李堯憲), 금위대장 이해우(李海愚)가 차례대로 뜻을 같이하였다.

36)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9일, “又所啓 壯營移來軍之未陞實者 別爲一哨永作元額事 自該營才已筵稟蒙允矣 一哨料條 假令磨鍊則 每年所需米爲一千六十八石零 太爲九百十五石零矣 … 壯營撤罷後諸道所在 本營穀四十五萬三千餘石 並爲移屬均廳 每年半分耗二萬二千六百餘石 量宜作錢移送 戶曹及訓局 以爲移來軍兵接濟之資事”

37) 19세기 전반기의 『비변사등록』을 살펴보면, 흉년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 신포(身布) 대신 돈으로 각영·각사에 납부하는 사례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변사는 훈련도감의 포보 납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각영·각사의 신포를 모두 돈으로 내게 할 경우 훈련도감의 포보는 절반 내지 1/3만 돈으로 납부케 한다거나, 각영·각사의 신포를 절반 내지 1/3만 낼 경우 훈련도감 포보는 모두 현물로 납부케 했던 것이다. 훈련도감 포보는 가급적 현물로 납부케 하여 군수(軍需)에 지장이 없도록 했던 것인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훈련도감에 대해서는 사체(事體)·사세(事勢)의 ‘자별(自別)함’을 내세우고 있음이 확인된다.

점검하고 상을 내려 사기를 고취시킨다는 목적 하에, 1616년(광해군 8) 이래 매월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상격(賞格)으로 사용할 물력의 부족으로 3개월마다 1회, 6개월마다 1회, 혹은 1년에 1회씩 실행기간이 단축되어 갔으며, 영조 연간에는 6~7년, 심지어 10년 동안 실행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1793년(정조 17)에는 중순이 군졸에 대한 ‘위열지방(慰悅之方)’이라는 명분으로, 애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5년에 1회 실행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³⁸⁾

유명무실해진 중순의 정례화가 결정되자 이번에는 상격으로 사용할 물력 조달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9세기 전반기에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는데, 먼저 1807년 훈련대장 김조순이 중순 물력의 조달을 청하였다.³⁹⁾ 이에 비변사는 해서(海西)의 수영(水營)이 맡아 관리하고 있는 군량소미(軍糧小米) 2,860석을 무명 100동 가격 수준으로 획송(劃送)한 다음, 이것을 병조에서 저축하고 있는 무명과 바꾸도록 조치하게 된다.⁴⁰⁾

하지만 1807년의 대책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여러 해가 지나 중순 물력은 다시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828년(순조 28) 훈련대장 조만영이 항시적인 대책을 내놓게 된다. 조만영은 당시 이루어졌던 주전⁴¹⁾ 잉여조 6,000냥을 곡식으로 바꾸어 평안감영(平安兵營)과 남병영(南兵營)에 보내 환곡을 놓아, 4년마다 그 이자를 취합하여 올리면 중순의 물력으로 충분하다고 진달하여 허락을 받았다.⁴²⁾ 이렇게 환곡을 통해 정기적

38) 軍史研究資料集 8『訓局總要』, 中句式.

39)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7월 25일, “訓鍊大將金祖淳所啓 … 本局中甸五年一次設行事 曾有先朝受教矣 癸亥後今滿五年之限 當爲設行 而物力則自廟堂每爲區劃 故敢此仰達矣”

40)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8월 4일, “司啓曰 訓局中甸物力 從後區劃事 … 海西水營所管軍糧小米 二千八百六十石 準木百同價劃送 而中甸賞格 例多以木需用 兵曹儲留木中 該曹該營 從便相議 先爲量宜取用其代 則待今番區劃小米作錢 準數還報事”

41)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3월 1일.

42)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28년 10월 21일, “訓鍊大將 趙萬永所達 訓局中甸 專爲分給賞格 … 今番訓惠兩局鑄錢 當有剩餘 就其中三萬六千兩 分送平安兵營及南兵營 待春作穀名以訓局中甸穀 盡分取耗 毋入停蕩 每年除耗 以詳定例作錢上送 準四年收合 則可當中甸之資 如是遵行 則訓局無試才過期之歎”. 구체적으로 주전 잉여조 36,000냥을 평안병영과 남병영에 나누어 보내 곡식으로 만든 뒤, 이를 취모(取耗)하게 하였고, 이것을 다시 돈으로 환산해 어물전(魚物廩) 시민(市民)에게 출급하면 매년 1,000냥의 이자를 받게 된다

으로 중순의 물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중순을 관장하는 중순색(中旬色)을 설치하여 상격을 직접 관리케 하였다.⁴³⁾

이상과 같이 19세기 전반기의 훈련도감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공역(公役)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증가한 공역을 보충할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려움이 호소될 때마다 해서·관서·호남 등이 소관하고 있는 군량미, 주전의 잉여조 등을 취모(取耗)하여 보충을 하였으나 항시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였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을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군졸들의 급료 마련은 여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끝내 안정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수의 보군이 대오에 편제되지 않고 각종 잡역을 담당하던 문제도 19세기 전반기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1867년 초(哨)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편제상의 혼란은 정비되었지만, 이는 전체 보군에서 20% 가량을 축소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도감은 중앙군영으로서 가지는 차별함 때문에,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금위영이나 어영청과는 달리, 그 본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별함을 강조하며 병폐를 해결하거나 개선책을 제시했던 이들이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이다. 19세기 전반기 훈련도감의 수장인 훈련대장 직책을 맡았던 인사 대부분이 무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변통책을 제시한 인사들은 문반 출신의 세도정권 실세였던 것이다.⁴⁴⁾ 이는 당시 당국자들이 훈련도감의 병력만큼은 최소한 도성방위의 기능, 무엇보다 정권 유지를 위한 필수 물리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고 하였다.(軍史研究資料集 8 『訓局總要』, 中旬色)

43) 『訓局總要』(藏)(2-3405), 中旬.

44) 김조순[1802년 10월~1809년 4월], 조만영[1828년 윤5월~1835년 7월], 조병구[1842년 6월~1845년 11월]가 훈련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여러 변통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파(時派), 그리고 세도정권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3.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번수포(停番收布)와 재정아문화(財政衙門化)

1) 19세기 전반기 금위영·어영청 양영(兩營)의 군액과 재정 상황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훈련도감은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4,000명 정도의 훈련도감 마병과 보군의 군액으로는 중앙군영의 역할을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거기다가 급료를 받는 군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⁴⁵⁾ 군액 증강과 재정 궁핍이라는 모순된 과제 속에 당국자들은 절충안을 찾게 되고, 상번향군(上番鄉軍)으로 구성된 어영청과 금위영을 차례대로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 중 먼저 창설된 어영청은 인조 초반 향명배금책(向明排金策) 속에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국왕 친위병에서 시작하여,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중앙군영으로 새롭게 창설되었다. 금위영은 1682년(숙종 8) 기존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통합하여 창설한 군영인데, 정초군은 현종 연간 급료병인 훈련도감의 대체 군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며⁴⁶⁾, 훈련별대는 1669년(현종 10) 급료병인 훈련도감을 경번군(更番軍)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창설된 군영이다. 어영청과 금위영이 차례로 창설되면서 조선후기 중앙군영은 장번급료병(長番給料兵)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상번하는 향군 주축의 금위영과 어영청이 새의 두 날개처럼 좌우를 맡으며, 도성방위와 궁궐숙위의 임무를 가지는 삼군문을 형성하게 된다.⁴⁷⁾

45)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17세기 봉상시연구」 1985, 171~173쪽.

46) 차문섭, 「금위영의 설치와 조직편제」, 『대구사학』 7·8, 1973, 223~227쪽.

47)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18세기 왕정과 도성수비체계 및 친위군영」, 한국연구원, 1985, 230~232쪽.

그러나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은 1704년(숙종 30)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에 따라⁴⁸⁾, 어영청 86,953명, 금위영 85,274명으로 군액을 삭감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편제도 5부(部)-25사(司)-125초(哨), 매초당 군액 125명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양영 모두 10초씩 2개월간 상번하여 근무하던 것을 5초 상번으로 축소시켰다. 상번 군졸들을 줄여, 절감된 운영비용을 국가 재정에 충당하겠다는 의도였다.⁴⁹⁾ 양영에서 상번하는 향군은 총 군액에 포함된 관보(官保)와 자보(資保)의 포(布)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 상번하는 향군의 수를 줄이거나 정지시킬 경우 고스란히 상번 향군의 운영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 있었던 것이다.

먼저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을 통해 19세기 전반기 양영의 군총 상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9세기 전반기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총⁵⁰⁾

구 분	금위영	어영청
육도향군(六道鄉軍)		
정군(正軍)	15,925명	16,300명
관보(官保)	53,380명	50,175명
자보(資保)	17,050명	17,475명
별파진보(別破陣保)	774명	780명
기사보(騎射保)	2,924명	3,729명
강보(降保)	666명	-
→ 총	90,719명	88,459명
기사(騎射)	150명	150명
각색경표하군(各色京標下軍)	764명	781명
수문군(守門軍)	44명	40명
군보수직군(軍堡守直軍)	16명	16명
별파진(別破陣)	160명	160명
각종 아병(牙兵)	67명	488명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17명	-
향취수·기수·취고수	48명	-
합계	91,985명	90,094명

48) 『숙종실록』 권40, 30년 12월 28일.

49) 오종록, 「중앙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1800~1863)』 (하), 청년사, 1990, 442~444쪽.

50) 『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御營廳.

〈표 4〉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양영의 군액은 양역변통책에 따라 조정된 규모와 비슷하다. 양영 군액의 핵심은 단연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된 육도향군인데, 이들이 각각 초(哨)를 형성하여 2개월에 5초씩 4년에 한번, 도성으로 상변해서 도성방위·궁궐숙위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때 상변하는 향군은 금위영 637명, 어영청 652명으로⁵¹⁾ 장교인 별무사(別武士)를 비롯하여⁵²⁾ 각색경표하군·수문군·수직군 등 기타 병력과 합치면, 도성 상주병력은 대략 금위영이 1,935명, 어영청이 2,317명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표 4〉의 각색표하군 수는 〈표 1〉에 나타난 훈련도감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훈련도감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이 도성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19세기 전반기 이후에는 향군의 상변마저도 크게 감소함에도 각색표하군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종 잡색군의 수가 부족하여, 대오 속에 편제된 보군을 초정하던 훈련도감의 실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양영의 우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양영 향군의 정번(停番)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신 입직(入直)할 군사로 훈련도감 군졸과 더불어 양영의 표하군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수가 유지된 것이다.

한편, 19세기 전반기 1년 동안 운영되는 양영의 재정 상황을 『만기요람』,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에 나오는 각색(各色) 재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양영의 지출·수입 항목을 〈표 3〉의 훈련도감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19세기 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만기요람』과 『금위영사례』·『어영청사례』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지출이 늘어남이 확인된다.

51) 『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 除番作隊式·御營廳, 除番作隊式.

52) 금위영과 어영청 모두 별무사 30명을 보유하고 있다. 『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御營廳.

〈표 5〉 양영의 재정 상황⁵³⁾

구 분		금 위 영			
		만기요람		금위영사례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군색 (軍色)	무명	303동 5필	248동 42필 34척	303동 31필	329동 3필 17척
	베	31동 16필	11동 22필	31동 16필	11동 32필
	돈	33,416냥	24,943냥 5전	57,118냥	30,702냥 2전 2푼
향색 (餉色)	쌀	18,284석 6두	17,357석 14두	18,262석 2두 1승 3합 4석	17,579석 13두 6승
	돈	9,187냥 3전	5,955냥 9전 8푼	11,735냥 3전	6,414냥 5전
	콩	2,019석 6두	2,146석 4두	1,998석 1두	2,354석 5두
	좁쌀	38석 9두	125석 6두	38석 9두 2승	124석 6두 5승
별파진색 (別破陣色)	쌀	97석 3두	95석 3두	97석 3두	88석
	무명	6동 11필	4동 40필	6동 11필	8동 44필
	돈	890냥	492냥	890냥	108냥

구 분		어 영 청			
		만기요람		어영청사례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군색 (軍色)	무명	326동 23필	214동 15필	326동 23필	261동 3필 30척 4촌
	베	26동 40필	19동 13필 36자	26동 40필	19동 19필 7척
	돈	35,526냥	30,213냥 4전 8푼	48,932냥	33,114냥 8전 4푼
	철	2,196근 4냥	-	2,196근 4냥	-
향색 (餉色)	쌀	16,388석 2두	18,421석 11두	16,387석 11두 6승 7합 9석	19,613석 11두 4승 1합 3석
	돈	9,848냥 2전 6푼	1,077냥	12,959냥 2전 6푼	1,115냥
	콩	214석 9두	128석 9두	214석 9두 8승	158석 5두
기사색 (騎士色)	좁쌀	197석 12두	197석 12두	197석 12두 5승	197석 12두 5승
	무명	40동 41필	9동 40필	40동 41필	9동 46필
	베	4동 28필	-	4동 28필	42필
	돈	8,892냥	6,616냥전	8,892냥	6,588냥 9전 5푼
별파진색 (別破陣色)	콩	2,160석	1,985석 10두	2,160석	1,985석 10두 6승
	무명	5동 7필	4동 16필	5동 7필	4동 16필
	베	1동 16필	1동 10필	1동 16필	1동 10필
	돈	914냥	912냥	914냥	912냥

53) 『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 財用·御營廳, 財用; 軍事史研究資料集 10 『禁衛營事例』, 軍色 餉色 別破色; 軍事史研究資料集 10 『御營廳事例』, 財用. 이들 자료는 각기 편찬된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萬機要覽』은 1808년, 『禁衛營事例』는 1867년, 『御營廳事例』는 1811~1834년에 각각 편찬되었다.

또한 양영의 재정 대부분은 군색과 향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양포·환곡·균역청급대(均役廳給代)·둔전 소출이 있는데, 그 중 정군에 딸린 보인에게 거두어들이는 양포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영에서 군색과 향색의 재정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양색(兩色)의 수입에서 양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양포를 납부하는 보인은 <표 4>에서와 같이 양영에 각각 125씩 배정된 16,000명 내외의 향군 정군의 보인이었다. 향군 정군 1명에 관보 3명, 자보 1명씩 배정되어, 금위영은 74,794명, 어영청은 72,195명의 보인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보인 1명당 1필씩 납부되는 양포는 향군 정군 5초가 4년에 한번씩 2개월 동안 상변 근무할 때의 재용으로 충당되었다. 보인이 납부하는 양포가 군수물품에 사용될 경우 군색으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군료(軍料)로 사용될 경우 향색으로 납부되었는데, 이렇게 납부하는 양포가 양영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변이 이루어질 경우 보인이 납부한 양포는 양영의 잉여 재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양영의 재정 운영은 19세기 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양영 향군의 정변과 수포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에 대한 정변은 17세기부터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것은 19세기 전반기의 정변과는 성격이 달랐다. 적어도 18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향군이 거주하는 지방의 흉년·재해 등으로 상변이 어렵게 될 경우만 정변이 시행되었던 것이다.⁵⁵⁾

정변이 재정적 목적으로 장기간 실시된 것은 정조연간 화성 축조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상변 향군의 수를 축소시키면서다. 이때 양영은

54) 김옥근, 『조선후기 재정사연구』, 일조각, 1987, 79쪽·86쪽.

55) 이태진, 「19세기초 세도정치와 삼군문 도성상주병제」,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310~311쪽.

1808년까지 상변 향군 5초 가운데, 매초당 27명씩 모두 135명의 상변을 중지시켰으며, 이들의 접제 비용으로 사용할 양포와 상변하는 대신 납부하는 정군의 양포를 화성 축조 비용으로 전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화성 축조가 완료됨과 동시에 상변이 정지된 군사는 복구되어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1808년(순조 8) 8월 어영대장 이요현은 변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향군의 상변이 지방 백성에게 폐단이 되고 있으니, 상변을 조정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다. 이어 이요현은 현재 어영청의 군졸 5초가 상변하고 있으나, 각 초마다 27명씩 정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4초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그 중에 병고와 잡탈이 생기게 되면, 입직과 행진(行陣) 때 대오가 갖추어지지 않는 폐단이 생기므로, 현재의 향군 5초를 합쳐 4초로 만들고, 서울에서 따로 긴장한 자를 모집해 경중군(京中軍) 1초를 만들어 이를 보완하자고 하였다.⁵⁶⁾

이는 훈련도감처럼 도성에 상주하는 병력 1초를 만들어 향군이 정변하였을 경우 이들을 대체할 최소한의 병력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어영청의 건의가 있자, 곧이어 금위대장 이득제가 성격이 같은 금위영도 변통할 것을 청하여, 양영 모두 5초에서 4초로 상변을 감번(減番)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⁷⁾

향군 1초를 영원히 정변하고 경군이 만들어지자, 양영은 각종 표하군을 증액하게 된다. 먼저 어영청이 복구하지 않은 135명만큼의 경군을 신규로 모집한 뒤 127명으로 경중초(京中哨)를 만들었고, 남는 군병 8명은 표하군으로 삼았다. 이어 뇌자 20명, 순령수 20명, 등룡군 10명을 새로 모집하여 뇌자 110명, 순령수 111명, 등룡군 49명을 이루었으며⁵⁸⁾, 금위영 또한 비슷한 과정을 통해 표하군을 마련하였다.⁵⁹⁾ 이렇게 증액된

56) 『순조실록』 권11, 8년 8월 6일, “御營大將李堯憲啓言 … 自今十一月爲始 當爲復番徵立 而鄉軍番上 最是民邑之痼癘 雖若干名之減番 除弊不些 … 除番後 其間上來者 名數五哨 以實數論之 不過四哨之軍 其中如有病故等雜煩 則各處入直及行陣 每有隊伍不備之弊 臣意則今此除番者 仍令依前除番 以今鄉軍五哨之額 合作四哨 自京新募勇健 別作中一哨 以備五哨之制”

57) 이상의 사정은 ‘『萬機要覽』, 軍政篇, 御營廳, 除番顛末’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58) 『萬機要覽』, 軍政篇, 御營廳 鄉軍停番; 軍事史研究資料集 10 『御營廳事例』, 京標下秩.

59) 軍事史研究資料集 10 『禁衛營事例』, 京標墩軍 數, “當宁戊辰加定標下五十名減其鄉中哨

표하군은 경초군과 더불어 향군의 정변 때 입직을 대체할 병력으로 활용되어 1808년 11월부터 훈련도감 군병들과 함께 입직에 들어가게 된다.⁶⁰⁾ 새로 마련된 경중초와 표하군을 운영하는 재원은 정변된 향군 정군의 관보와 자보, 그리고 감변 정군에게서 수포한 것으로 접제 하였다. 이렇게 상주병으로 1초를 만들어버리면, 1초의 접제 비용은 이전처럼 그대로 사용되나, 향군이 상변할 때 군장으로 사용하는 자보의 비용이 절감되어 양영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표하군 증액이 양영의 운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향군 정변을 정례화 하여 재정을 전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것이다.

양영에 경중초가 만들어지자 일각에서는 급료병을 만들자는 건의도 나오게 된다. 1809년(순조 9) 대사간(大司諫) 안책(安策)은 상소를 올려 양영의 상변이 백성들에게 많은 폐를 주게 되니, 근착장년자(根着年壯者)를 모집하여, 상경 입변하는 수를 더 줄이고, 그 수에 맞추어 급료를 주는 상주 병력을 만들자고 하였다. 나머지 상변하는 향군도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민정에 많은 폐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장변급료병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미 경중초 1초를 만들었고, 수백 년 이어온 군제를 경장 할 수 없다는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⁶¹⁾

안책의 건의는 한발 더 나아가 도성방위의 건실(健實)을 위해 상주 병력을 만들자고 한 것이었으나, 이는 당시 당국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애초에 경중초를 만들고 훈련도감 군졸들과 함께 향후 향군 정변 시

新募京中哨之數除中哨上番之式 其正軍資保一依官保例收捧 以爲加定標下五十名及京中哨接濟之需 今則上番前左右後四哨”

60) 『訓局臚抄』(藏)(2-3402), 10월 25일.

61) 『비변사등록』 199책, 순조 9년 7월 25일, “左議政 金所啓 卽見大司諫安策上疏 則以爲禁御兩營及兵曹騎兵上番之弊 有不可勝言 若更禁御兩營及兵曹募得有根着年壯者 準上京入番之數 給料奉定 如他軍門例 民必樂從 仍減上番之規 而列邑軍額 依前充定 逐年納布爲辭 而批旨內令廟堂與諸將臣 聚會爛議稟處事命下矣 鄉軍上番之弊 誠如臺言 合有厘救之方 而第移作京軍 自前已有此議 漸不得變通者 以其屢百年莫重軍制 有難遞加更張 且古人之設置 必有義意今雖有切悶之弊 而有非到終 改者 諸將臣之言 亦皆如此 今姑置之何如”.

입직을 대신하는 표하군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변을 정례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수백 년 이어온 군제의 경장이 불가함을 이야기 했으나, 실은 정변을 통해 얻어지는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감변 및 정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A-① : 1816년 11월 20일, 호조판서 박종경(朴宗慶)의 청으로 1793년 (정조 17)과 같이 향군 4초의 매 초마다 27명을 15년 한도로 감변하고 양포를 징수

A-② : 1816년 12월 20일, 호조판서 박종경의 청으로 금·어 양영의 감변을 20년으로 연장

A-③ : 1835년 6월 21일, 호조판서 이지연(李止淵)의 청으로 1816년과 같은 예로 양영의 상변을 20년 연장

A-④ : 1835년 6월 22일, 20년 한도의 양영 향군의 감변을 윤희

A-⑤ : 1856년 1월 16일, 비변사에서 1816년부터 시행해 온 양영의 감변을 이제 다시 복구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며, 감변을 윤희받음

A-⑥ : 1876년 11월, 호조의 청으로 양영 향군의 감변을 지속⁶²⁾

A는 19세기 전반기의 실록·『비변사등록』·『어영청감변등록(御營廳減番謄錄)』에 산재되어 있는 양영의 감변 사례다. 1793년 화성 축조 재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례화 되었던 감변은 1808년 상주하는 경중초 1초 창설에 매초당 125명 상변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1816년에는 A-①과 A-②에서와 같이 호조판서 박종경의 건의로 매초 98명 상변으로 조정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감변된 이들을 20년 동안 정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5초에 매초당 135명이 상변하던 양영의 실제 상변은 1793년

62) A-① 『순조실록』 권19, 16년 11월 20일; A-② 『순조실록』 권19, 16년 12월 20일; A-③ 『비변사등록』 223책, 현종 원년 6월 21일; A-④ 『御營廳減番謄錄』(藏)(2-3343), 을미 6월 22일; A-⑤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월 16일; A-⑥ 『御營廳減番謄錄』(藏)(2-3343), 병자 11월.

부터 1816년까지 다음과 같이 조정되기에 이른다.

1793년 화성 축조 경비마련, 향군 5초[1초당 100명] 500명 상변

1808년, 향군 4초[1초당 125명] 500명 상변 + 경중초 1초

1816년 이후, 향군 4초[1초당 98명] 392명 상변 + 경중초 1초

향군의 상변 숫자가 조정되면서 1816년 이후에는 실제 3초만 상변하는 수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향군이 납부하는 양포, 이들에게 지급될 관보와 자보, 그리고 경중초 1초가 만들어지면서 납게 된 자보가 양영의 잉여 재용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⁶³⁾ A-②에서처럼 1816년부터 20년간 시행된 감변은 A-③·④·⑤·⑥을 통해 사실상 정례화 되었음이 확인된다. 감변 시효가 끝나는 1835년 호조판서 이지연이 감변 복구가 오히려 경외(京外)에 폐가 된다는 이유와 더불어 이대로 하는 것이 ‘유익무해(有益無害)’하다며⁶⁴⁾, 다시 감변을 20년 물린 것이다. A-⑤는 1835년에 연장한 20년 시효가 끝날 때, 그리고 A-⑥은 1856년부터

63) 1816년 감변에 따른 수입은 ‘『御營廳減番膳錄』(藏)(2-3343), 병자 11월’에 수록되어 있는 육도 관찰사의 계(啓)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감변된 육도향군의 정군이 어영청으로 납포를 하고, 그들에게 군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자보 또한 어영청으로 납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군 2,700명과 자보 2,700명이 어영청에 납포를 하는 것이 되며, 이를 ‘1필=2냥’ 식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년 감변으로 10,800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세가 비슷한 금위영도 감변으로 어영청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구 분	정 군	감 변	자보수포합전 (實保收布合錢)	실정군 (實正軍)
경상좌도	14초 반 1,868명	388명	1,512냥	1,480명
경상우도	13초 반 1,751명	368명	1,472냥	1,383명
전 라 도	21초 2,794명	585명	2,340냥	2,209명
충 청 도	26초 3,410명	711명	2,844냥	2,699명
강 원 도	5초 반 726명	152명	608냥	574명
경 기 도	8초 반 1,134명	236명	944냥	898명
황 해 도	9초 반 1,242명	260명	1,040냥	982명
합계	98초 반 12,925명	2,700명	10,800냥	10,225명

64) 『비변사등록』 223책, 현종 원년 6월 21일, “行戶曹判書李止淵所啓 禁御兩營鄉軍 限二十年減番收布 … 而今則變通稱久 規模已定 京外輶碍 之端 經費有補助之效 似此有益無害之事 雖永爲定式 無所不可”

연장한 20년 시효가 끝날 때 재차 연장을 청한 것으로, A-⑥의 1876년 연장 때에는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음이 나타난다.

B-① : 1829년 9월 5일. 호조판서 조만영이 청하여 1828년 흉년 때문에 양영의 상변을 1년간 정변한 것에 이어, 다시 3년간 정변 연장

B-② : 1830년 4월 20일. 호조판서 조만영이 청하여 1831년 끝나는 정변을 1834년까지 연장

B-③ : 1833년 10월 12일. 영의정 이상황(李相瓚)이 청하여 1835년부터 복구할 양영의 상변을 3년 연장

B-④ : 1840년 9월 10일. 호조판서 조병현(趙秉鉉)이 청하여 지난해에 이어 양영의 정변을 1년 연장

B-⑤ : 1843년 4월 20일. 우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청하여 올해 복구되는 양영의 향군 정변을 3년 연장

B-⑥ : 1846년 1월 14일. 영의정 권돈인이 청하여 양영 향군 정변을 2년 연장

B-⑦ : 1849년 9월 21일.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청하여 1828년부터 지속되어 온 향군 정변을 5년 한도로 연장

B-⑧ : 1859년 2월 13일. 영의정 정원용이 5초 제도가 폐전(廢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하기 어렵다며 정변을 청하여 5년 한도로 연장⁶⁵⁾

그런데 1초당 상변 군액을 줄임에 따른 향군의 상변도 실제로는 명목에 불과하였다. 1816년부터 4초의 향군, 그것도 감액되어 1초당 98명으로 3초와 다름없는 향군이 상변하였으나, 이들 전체를 정변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향군이 거주한

65) B-① 『순조실록』 권30, 29년 9월 5일; B-②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4월 20일; B-③ 『순조실록』 권33, 33년 10월 22일; B-④ 『비변사등록』 228책, 헌종 6년 9월 10일; B-⑤ 『헌종실록』 권10, 9년 4월 20일; B-⑥ 『비변사등록』 233책, 헌종 12년 1월 14일; B-⑦ 『비변사등록』 236책, 헌종 15년 9월 21일; B-⑧ 『비변사등록』 246책, 철종 10년 2월 13일.

지역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또는 그해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상변 대신 정포(停布)나 정전(停錢)을 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상변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기록은 세도정권 당국자들에 의해 요청된 양영 향군에 대한 정변 사례인데, B-①·⑦은 양영 향군 상변이 1828년(순조 28)부터 사실상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1859년의 기록인 B-⑧에서는 영의정 정원용이 양영의 상변이라는 것 자체가 폐전(廢典)된 제도임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육도향군 정군은 보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변으로 여유가 생긴 재정은 양영과는 무관하게 쓰여 졌다. 여러 아문들의 재정이 부족할 때 마다 전용되었는데, 대부분이 주요 재정아문인 호조의 경비로 보충되었다. 1년 정변 시 수입 규모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1819년(순조 19) 호조판서 김이양(金履陽)이 1년간의 정변을 청할 때 올린 계(啓)를 보면, 대략 돈 48,000냥, 쌀 5,000석의 잉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호조의 1년 경비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⁶⁶⁾ 19세기 전반기 정변으로 발생한 양영의 수입을 호조로 보용(補用)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C-① : 1816년 11월 20일, 호조판서 박종경이 청하여 양영의 감변으로 얻은 수입을 주전의 비용으로 전용
- C-② : 1829년 9월 5일, 호조판서 조만영이 양영의 정변을 청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번전(番錢)을 호조 경비로 전용
- C-③ : 1835년 6월 21일, 호조판서 이지영이 양영의 감변 수입을 호조로 취용하는 것이 상세(常稅)가 되었다며, 향후 이를 지속할 것을 청하여 윤허받음
- C-④ : 1843년 4월 20일, 우의정 권돈인이 양영의 정변으로 생기는

66) 『비변사등록』, 순조 19년 12월 20일, “行戶曹判書金履陽所啓 … 蓋禁御兩營鄉軍 限以周年 一體停番 則除却年例減額移送條外 本曹取用之數 錢合爲四萬八千兩 米合爲五千石 在本曹庶可爲支過一年”

수입을 해마다 저축하여, 호조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하여 윤택받음

C-⑤ : 1849년 9월 21일, 영의정 정원용이 청하여 양영의 정변을 연
장하고, 그 변전(番錢)을 호조가 수시로 취할 수 있도록 조치

C-⑥ : 1856년 11월 20일, 비변사에서 청하여 양영의 상변을 감변하
고, 이미 시행한 예에 따라 수포 취용함⁶⁷⁾

C와 같이 호조로 전용되는 사례는 A와 B에 나오는 양영의 감변 및 정
변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호조의 재정 부족과 보완이 감변 및 정변의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특히 C-④·⑤는 호조가 정변으로 저축된 양영의
재정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양영의 군사적 기능은 최소
화된 채 호조 부속의 재정아문과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⁶⁸⁾ 양영의 정변 수입은 대부분 호조의 재정으로 보충되었지만, 주
전·구휼·사신 접대·궁궐 개수 등 급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 호조를 거치
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였다.

먼저 주전은 원래 호조를 비롯하여 선혜청과 각 군문, 각도 감영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각 아문의 조폐로 19세기 이후에는 호조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호조의 재정 부족에 따라 주전이 정지되어 1806년(순조
6)에는 전황(錢荒)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⁹⁾ A-①과 C-①에서

67) C-① 『순조실록』 권19, 16년 11월 20일; C-② 『순조실록』 권30, 29년 9월 5일; C-③
『비변사등록』 223책, 현종 원년 6월 21일; C-④ 『헌종실록』 권10, 9년 4월 20일;
C-⑤ 『비변사등록』 236책, 현종 15년 9월 21일; C-⑥ 『비변사등록』 243책, 철종 7년
11월 20일.

68) 이에 앞서 양영의 재정이 호조로 영구히 넘어간 사례도 있다. 1812년(순조 12) 홍경래
의 난으로 관서 지방에 축적해 놓은 군량이 많이 소모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양서(兩
西)로 금·어 양영의 봉부동전(封不動錢) 30,000냥을 하송하여 환곡으로 첨작(添作)해
충당케 하였었다.(『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3월 4일) 그런데 이 중 환곡으로
사용된 어영청의 향곡(餉穀) 15,000냥 치가, 2년 뒤 비변사의 요구로 인해 호조에 영구히
확정되고 말았다.(『軍事史研究資料集』 10 『御營廳事例』, 關西添餉穀) 이렇게 어영청에서
관서로 보낸 향곡이 호조로 넘어간 만큼, 사체가 비슷한 금위영의 향곡 또한 호조로 함께
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69) 『增補文獻備考』 권159, 財用考 6, “純祖六年命地部惠廳輸回鑄錢 … 詢戶判徐榮輔曰 古
則內而惠廳各軍門外而各邑監營 無不皆鑄 近來則專責地部 故自多停鑄之時 每有錢荒之弊

처럼 1816년에 호조가 양영의 감번을 요구한 것 또한 주전으로 인한 재용 부족 때문이었다. 1823년에는 호조판서 심상규(沈象奎)의 청으로 호조에 비축된 왜동(倭銅)을 금위영에 넘겨주어 금위영이 주전의 역(役)을 수행하였는데⁷⁰⁾, 이 역시 호조가 주전의 여력이 없어 양영이 주전을 직접 실시한 사례다.

1812년(순조 12)에는 홍경래의 난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홀전으로 양영의 목포지전(木布紙錢)이 사용되었고⁷¹⁾, 1814년(순조 14년)에는 영남 지방에 흉년이 일어나자 양영의 정번전 60,000냥을 곡식으로 바꾸어 나누어주면서 구휼의 용도로 사용되었다.⁷²⁾ 1833년(순조 33) 청나라 칙사를 맞이할 때도 양영의 재용이 보충되었는데, 칙사 접대를 담당하는 황해도 감영의 재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영에서 각각 2,000냥을 황해도 감영에 대어해 주었던 것이다.⁷³⁾ 또한 양영 재용은 1829년(순조 29) 서궐(西闕)의 개건과⁷⁴⁾ 1833년(순조 33) 동궐(東闕)의 중수 비용처럼 궁궐 개수에도 보충되었다. 특히 동궐 중수는 1833년부터 3년간 이루어지는 정번 수입에서 집행되었기에, 실질적으로 동궐 개수가 양영 재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⁵⁾

그런데 정번으로 양영의 재정이 항상 넉넉했던 건 아니었다. 위에서처럼 수시로 호조에서 정번 수입을 전용하고, 시급한 국가 지출이 있을 때 양영이 직접 축적된 재정을 활용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마저도 궁핍해져 갔다. 양영 정번이 정례화되면서 호조를 비롯한 다른 아문의 재정 의존도 높아져 갔던 것이다. 여기서 19세기 전반기의 고질적인 수취체제의

自今爲始戶曹與惠廳間輸回 而今番則 先自惠廳與行從之”

70) 『순조실록』 권26, 23년 4월 3일, “命度支所儲倭銅 移送禁營 使之鑄錢 從戶曹判書沈象奎言也”

71) 『訓局臚抄』(藏)(2-3402) 壬申 順조 12년 3월 29일.

72) 『순조실록』 권17, 14년 10월 20일.

73) 『순조실록』 권33, 33년 6월 8일.

74) 『순조실록』 권30, 29년 11월 13일.

75) 『순조실록』 권32, 31년 7월 20일, “次對 命以戶曹錢六萬六千兩 惠廳錢六萬兩 劃爲東闕改修之費 以癸巳後兩營三年停番捧入者 逐年還報於兩衙門 從大臣言也”

문란으로 수포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856년(철종 7) 호조판서 홍재철(洪在喆)은 양영에서 감번 및 정번으로 수포한 재용을 때맞추어 제대로 이송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양영이 호조로 넘겨야 할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흥년과 재해, 무엇보다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인해, 양영의 1차 수취에서부터 호조가 원하는 수취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영의 수포가 원활하지 않자 호조는 양영에게 영을 내려 각 고을의 감번 및 정번 현황을 기록한 책문(冊文)을 납부케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까지 금위영과 어영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정군과 보인의 수포를 호조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⁷⁶⁾ 군사적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독립적이었던 재정아문의 성격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양영의 군사적 기능이 약화되자, 평상시 임무인 도성방어와 궁궐숙위의 임무는 그나마 본의가 유지되고 있던 훈련도감에 집중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훈련도감 군졸은 궁핍한 재정 상황에도 공역(公役)의 과다로 갈수록 조폐해져 가고 있어, 양영 자체적으로 군사적 변통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1829년(순조 29)부터는 금위영의 아병(牙兵)이 추가로 징발되어 조번(助番)을 하기도 했으며⁷⁷⁾, 별도로 훈련도감의 군졸들에게 입직 시 여수전(旅需錢)이라는 경비를 보충해 주기도 했으나⁷⁸⁾, 훈련도감에 과중된 공역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갔는데, 훈련도감의

76) 『비변사등록』 213책, 철종 7년 11월 20일, “行戶曹判書洪在喆所啓 禁御兩營停減番之舉專爲度支經用之不足而輒近以來 兩營輸送 漸不如初 每每愆期 未如何故 … 自今年爲始 令兩營就其當捧實數及各該邑名 修成冊文移臣曹 自臣曹句管督納事定式施行 在兩營元無所失在經用似可舒力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77) 『訓局臚少』(藏)(2-3402), 기축 12월 10일, “訓鍊大將趙萬永所達 禁御兩營鄉軍停番時外各營入直訓局軍兵督當 故曾於乙酉 以兩營無料牙兵及待年軍使之 分排建陽門 則訓局擔當入直事 … 五十名加十名移職廣智營 則以禁營助番牙兵擔當 入直料米 以鄉軍接濟條磨鍊上下 則本國大爲闕弊”

78) 금위영은 훈련도감 군졸이 건양문(建陽門)에 대신 입직 할 경우 99냥의 여수전을 지급하였는데, 비슷한 규모의 어영청도 비슷한 규모의 여수전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禁衛營來關磨鍊』(藏)(2-3290), 을유 11월·병술 1월)

조폐에 양영의 재정아문화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감번 및 정번이 정례화되던 때만 하더라도 양영은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있는 아문이었으나, 호조를 비롯한 타아문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폐해져 갔다. 다음의 <표 6>은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육전조례』 수록 양영의 1년 재정 상황인데, 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 5>와 비교해 크게 궁핍해졌음이 확인된다.

<표 6> 『육전조례』에 나타난 양영의 재정 상황⁷⁹⁾

구 분		금위영		어영청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군색	무명	286동 27필	232동 33필	314동	308동 27필
	베	18동 38필	18동 14필	24동 17필	24동 10필
	돈	60,272냥	53,448냥	60,190냥	53,014냥
향색	돈	12,987냥 7전	12,029냥	11,870냥 6푼	21,200냥
	쌀	19,800석 5두	22,800석	16,960석 11두 4승 8합 9석	22,408석
	콩	200석	2,404석	210석 7두 8승	21,200냥
	전미	38석	191석	-	-
별파진색	무명	7동 28필	4동 22필	5동 7필	4동 16필
	베	-	-	1동 16필	1동 10필
	돈	756냥	568냥	914냥	912냥
기사색	무명	-	-	40동 41필	40동 22필
	베	-	-	4동 28필	42필
	돈	-	-	5,274냥	5,150냥
	콩	-	-	1,500석	1,450석
정번색 (停番色)	돈	26,028냥	25,599냥 2전 8푼	27,258냥	27,200냥

<표 6>에서 각색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잉여가 있었던 <표 5>의 현황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름대로의 군비 확충에 힘썼던 흥선대원군은 양영의 본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아문으로부터 재정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9) 『六典條例』 「兵典」, 禁衛營 御營廳.

특히 어영청은 1866년(고종 3) 재정이 궁핍하여 40,000냥의 돈을 호조로부터 대하(貸下) 받기에 이르렀다. 원래 어영청의 세입은 넉넉함이 많았으나 용비(冗費)가 증가하여, 지방(支放)의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⁸⁰⁾, 실상은 호조의 재정을 보조하는 재정아문화로 19세기 전반기 동안 군영으로서의 자립 기반이 상실된 까닭이다.

훈련도감과 마찬가지로 홍선대원군 집권기가 되자, 군비 강화를 위해 양영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졌다. 유명무실해진 군사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에 1866년(고종 3) 전교(傳敎)를 내려 경군이 매우 소루하게 되었다며, 양영이 입직하는 초의 수를 이전처럼 증액할 것을 명하였고, 정번 대전(代錢)으로 거두는 재용은 양영의 군졸들의 요포(料布) 등으로 나누어줄 것을 명하였다.⁸¹⁾ 이 전교로 이듬해인 1867년(고종 4) 향군을 정번시키면서 만들었던 경중초에다가, 전·좌·우·후 4초를 만들어 원래의 향군 5초를 경군 5초로 대체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이때의 변동에 대해서는 어영청에서 작성한 10개조의 「본청작초절목(本廳作哨節目)」을 통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본청작초절목(本廳作哨節目)」⁸²⁾

하나, 전·좌·우·후 4초를 새로 만들어 매초당 125명, 합 500명을
신수가 장건한 자로 택한다.

하나, 경중초 1초의 127명 내에서 2명은 장막군(帳幕軍)으로 옮기고,
125명은 전례대로 그대로 두되 동가(動駕) 때와 습진(習陣) 때
합하여 5초를 만들어 조련한다.

80)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2월 18일, “府啓曰 則見御營廳所報 則備陳營樣凋殘 賀米沒策之狀 仍請米五千石區劃矣 該廳歲入 本自有裕 而料外冗費 年增歲加 甚至有賀米錢之便 作紙上空文 支放無路 安得不然乎 由來回弊 猝難一切責備 就戶曹錢中四萬兩貸下 使之限十年排報 何如 答曰允”

81) 『御營廳習陣膽錄』(藏)(2-3353), 동치 5년 병인 10월 8일, “傳曰 禁御兩營之鄉軍停番 出於爲念民弊 而京營軍制緣此疏虞 自今爲始停番代錢還付於兩營砲手 幾哨加數 磨鍊料布等節 依原軍例分給事著爲定式”

82) 『御營廳習陣膽錄』(藏)(2-3353), 병인 12월 10일, 「本廳作哨節目」

하나, 5초의 군졸은 천총이 영솔하고, 중부(中部)는 파총(把總)이 통할하며, 중사(中司)는 초관(哨官)이 관령(管領)한다. 매사(每司)는 5초의 초관을 영솔한다.

하나, 4초의 군료미는 중초군의 절목에 의거하여 처음에는 7두를 주고, 사습(私習)·포예(砲藝) 때의 우수자는 차차 올려 9두를 준다. 겸사복은 12두를 준다. 봉족은 원래의 군례에 따라 3등으로 마련하여 준다.

하나, [입직을] 도와주던 아병 60명 중에서 10명은 뇌자로 옮기고, 10명은 순령수로 옮겨, 양색의 부족한 수에 충당한다. 남은 40명은 그대로 둔다.

이하 5개조 생략 ...

어영청의 「본청작초절목」은 19세기 전반기 명목상의 도성 주둔군이 경군 1초와 감변된 향군 4초로 구성된 상황에서, 도성에 상주하는 급료병인 경군 5초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향군 125초가 돌아가며, 상변하던 것을 정지시키고 매초당 125명씩 마련한 경군 5초를 만든 것이다. 이어 급위영도 어영청과 마찬가지로 경군 4초를 더 마련하게 되어⁸³⁾, 양영이 모두 경군 5초로 도성방어와 궁궐숙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경군 5초가 마련되면서 이전에 비해 평상시 본의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양영의 임무를 대신하던 훈련도감 군졸의 고역도 어느 정도 감소되었을 것이나, 이것은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수준이었다. 새로 마련된 경군 5초가 잘 운영되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치더라도, 2개월간의 상변과 군사훈련을 통해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지만 유사시 중앙 정규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군 정군의 운영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평상시 도성을 방위하고, 유사시에는 모든 향군을 동원하여 중앙 정규군으로 활용한다는 금어 양영의 본의는 크게 상실되고, 호위군영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는 19세기 전반기

83) 軍史研究資料集 10 『禁衛營事例』, 將校員役軍兵受錄實數.

군사적 기능은 최소화한 채, 국가 재정 보충을 위해 양영을 재정아문으로 운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19세기 전반기 조선왕조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여러 아문들은 궁핍함을 면치 못하였고, 이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중앙군영으로 독립된 재정을 보유하고 있던 삼군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삼군문은 평상시 도성방위와 궁궐숙위를 담당하고, 유사시에 는 정규군의 기간 부대로 활용되어야 했지만, 19세기 전반기 국가 재정의 전반적인 궁핍에 따라 중앙군영의 본의를 상실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군문의 핵심인 훈련도감에 있어 가장 큰 재정 문제는 군졸들에게 지급할 급료의 부족이었다. 이에 당국자들은 다른 아문으로부터 급료에 필요한 재원을 획송받아, 환곡이나 주전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보충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때그때의 급한 상황을 무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훈련도감은 군졸들의 급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훈련도감은 급료뿐만 아니라 편제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다른 군문들의 재정 악화와 각종 잡역의 증가로 훈련도감 군졸에게 부여되는 공역은 갈수록 무거워져 갔으나, 재정이 부족하여 군액의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전투부대로 편제되어 있는 보군을 초정하여,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역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평상시 도성방위와 궁궐숙위는 적은 병력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군들을

초정한 것인데, 이것이 편제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대오가 무너져 훈련도감이 유사시 정규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훈련도감은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에 의해 차별함이 강조되며 일련의 변통책이 제시되고 있었다. 비록 숫자는 적으나 무예청의 병력을 증강시키거나, 특별히 채용을 다른 아문으로부터 획송 받는다거나, 군졸들의 무예 훈련과 사기 증진을 위해 중순 설행을 정례화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나, 다른 군문들이 군사적 본의를 방치하다시피한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할 최소한의 물리력인 훈련도감만큼은 본의를 유지하겠다는 당국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도감과 더불어 삼군문을 형성한 금위영·어영청 양영은 훈련도감과 달리 4년마다 2개월씩 상변하는 5초의 향군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수입은 상변 향군을 접제하기 위해, 보인들에게서 거두는 양포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양영은 상변하는 향군의 숫자를 줄이는 감번이나, 상변 자체를 정지시키는 정변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구조였다. 19세기 전반기, 국가 재정의 악화가 심화되자 당국자들은 이러한 양영의 구조에 주목하게 된다.

원래 양영의 감번 및 정변은 향군이 거주하는 지역의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세기부터는 사실상 정례화되었다. 양영의 향군이 정변하면, 향군 정군이 소비하기 위해 거두는 관보와 자보의 양포, 그리고 정군이 번을 서지 않는 대신 납포하는 양포가 고스란히 채용으로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채용은 국가 경비로 집행되었는데, 대부분은 호조에서 가져다 썼으며, 나중에는 호조가 직접 양포를 거두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사실상 호조의 재정을 보충하는 재정아문이 된 것으로, 호조의 재정적 필요가 양영 정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양영의 군사적 기능은 최소화되었다. 별도로 마련한 경중초 1초와 소수의 표하군들에게 도성방위와

궁궐숙위를 맡기고, 나머지 평상시 임무는 훈련도감이 부담하였다.

19세기 전반기의 재정 악화는 중앙군영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였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호조의 재정이 악화되자, 당국자들은 양영 소속 향군의 상변을 정지시킴으로써 발생한 잉여 재정으로, 호조의 재정을 보충하였다. 양영의 재정아문화는 군사적 기능을 약화시켰고, 그 임무는 훈련도감에게 전가되었다. 애시당초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훈련도감의 군사 임무가 가중되자, 훈련도감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군영으로서의 본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19세기 전반기 전반적인 수취체제의 문란 속에서, 당국자들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다고 인식한 중앙군영의 재정에 변통을 가하면서 비롯되었다. 군비강화를 위해 일정부분 노력했던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삼군문의 본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19세기 전반기 동안 누적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항 전후 밀려오는 외세에 대해 조선 정부는 중앙군영 차원의 물리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제어 : 19세기 전반기, 삼군문, 중앙군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재정아문화

<ABSTRACT>

Operation Status of Samgunmun(三軍門)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Yi, Gwang-woo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Samgunmun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t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the operation status of Hunryeondogam,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that formed the foundation of central military base since 18th century, to understand the inability of the Joseon government to defend against the foreign invasions. The 1st half of 19th century was the period when the country was in turmoil studded with the financial and political problems. Several public offices were severely incapable of managing the national finance due to corruption of the officials and inefficiency of tax collection system, and were barely limping along. It was also same with Samgunmun that had independent finance and budget.

First of all, Hunryeondogam was the core military base of the central military system, and the wage payment had emerged as a major problem particularly at Hunryeondogam during this period. While by borrowing budget from other public offices and exchanged it with grains or by coinage, they tried to manage the finance, but they couldn'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end, the wage had been left as a chronic problem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organization of the foot soldiers,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Hunryeondogam forces, was also a problem. Since actions should be taken to increase the military fund when the public services and various sundry services by the soldiers had increased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foot soldiers organized in the rank were inevitably diverted to public areas due to poor financial status. Since routine missions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ity and palace could be served by a small number of foot soldiers, many of them were diverted to other areas of service. Such diversion had continued throughout the 1st half of the 19th century. While it wasn't a big problem during the peace time, it became a critical issue when those soldiers joined and integrated into a regular force in the event of emer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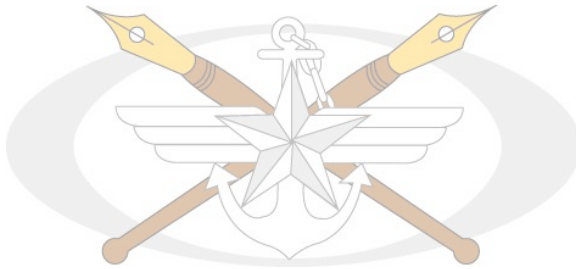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In the mean time, the officials in charge had conducted a series of policies, recognizing that they are essential forces to keep the main function of Hunryeondogam. Such policy actions include the increase in military forces in small scale, financial support from other public offices and enforcement of examination system for the military officers. While they were not groundbreaking measures, they were noticeable compared to the other public military offices that did not take any measures even when the military preparedness was disoriented. We can see clearly that the responsible officials at that time recognized Hunryeondogam as the minimal institution for maintaining their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Hyanggun(veterans), serving in turns, formed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different from Hunryeondogam. Foot soldiers were allocated to these veterans. If serving in turns stopped, calico paid by foot soldiers and that paid by veterans could be utilized as surplus finance. Accordingly, persons in authority tried to fill up the financial deficit with textiles which was paid as a kind of tax instead of military service, which became a routine while financial aggravation continued. As such, surplus finance generated by this system had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it was used as a means of finance of Hojo in particular. Due to this,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actually served as financial public office that supplemented the finance of Hojo while leaving standing army during normal times at the minimum level.

That is, the deterioration of national economy resulted in the lack of budget at Hojo and persons in authority made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military bases into financial public offices to supplement this. Military mission of the two weakened military bases was handed

over to Hunryeondogam, which caused the closure of Hunryeondogam which didn't have enough finance. These served as a vicious circle in many areas, accumulating several problem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so that the central military institution remained unavoidably helpless in the defense of the nation when the foreign powers invaded Korea in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Key Word :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Samgunmun, central military institution, Hunryeondogam, Keumwiyoung, Yeoyoungcheong, into financial public office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

김 혜 영**

1. 머리말
2.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와 「육군징벌령」의 반포
3. 대한제국의 수립과 「육군법률」의 제정
4. 일본법의 수용과 변형으로서의 「육군징벌령」
5. 자주적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과 「육군법률」
6.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된 갑오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조선의 군사조직은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분야의 개혁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부국강병의 실현과 황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육군사관학교 사학강사

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897년에는 러시아 교관단의 훈련을 받은 시위대가 창설되었고, 1899년에는 대원수인 황제가 모든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는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이 당시 군사조직의 변화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1896년 1월 24일에는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이, 1900년 9월 14일에는 법률 제4호로 「육군법률」이 각각 반포되었다. 이 두 법령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통틀어 군인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시한 유일한 군사법 법령임에도 불구하고¹⁾ 이 시기 군사정책 및 군사분야 관련 연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군징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징벌령」의 경우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비교하여 군형법인 「육군법률」의 경우는 법사학계(法史學界)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법사학계에서도 갑오개혁 이후부터 진행되어온 사법제도 발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1905년에 반포된 「형법대전」의 전사(前史)로서 「육군법률」을 조명하고 있는 정도이다.²⁾

하지만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된 시기는 전쟁을 통해

1) 1894년 7월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에 의한 고문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사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조선 정부(대한제국 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군사법 법령에는 앞서 언급된 1896년 「육군징벌령」과 1900년 「육군법률」뿐만 아니라 1900년 「육군법원관제」·「육군감옥관제」 1901년 「육군치죄규정」·「육군법원처무규칙」·「육군감옥규칙」, 1901년 「육군치죄세칙」·「육군법원소송규정」·「육군감옥세칙」 및 1900년 「육군헌병조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군사법의 작용을 위한 일종의 절차법 범주의 법령이며, 군인들의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 범주의 법령은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뿐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군사법 법령’이라고 언급될 경우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지칭함을 일러둔다.

2) 법사학계에서는 「형법대전」을 우리나라 근대초기의 최대 입법성과이자 조선왕조 최후의 종합법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기까지 작성되었던 초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형법대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지속성이라는 특징을 당대의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문준영, 「대한제국기 《刑法大全》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정진숙,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刑法大全》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한편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도면희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도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은 논의되지 않았다.(도면희,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우월한 군사력을 직접 경험한 조선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분야의 개혁에 고군분투하였던 시기였다. 즉 군사력의 증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국왕을 비롯한 조정 관료 모두가 군사분야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되었다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지 ‘일반형법의 전사(前史)’로서만 한정될 수 없다. 또한 일반형법과 군사법 법령은 그 시행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경우 당시 군이라는 조직이 가지는 상징적·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반포시기에 있었던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의 개혁정책’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조건 하에서 두 법령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그 의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 각 분야의 근대화가 일본의 것을 상당부분 수용 및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메이지(明治) 14년(1881)에 제정되었던 일본의 「육군징벌령」 및 「육군형법」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³⁾ 이를 바탕으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각 조항들이 반영하고 있었던 조선 및 대한제국의 군사력 운용 형태 및 사회상을 『관보』 및 『독립신문』·『매일신문』·『황성신문』 등에 실린 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⁴⁾

3)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동일한 명칭으로 표기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하 일본의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일본)」, 조선의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조선)」으로 표기하였다.

4) 「육군징벌령」 전문은 『군부청의서(奎17718 v.2)』에, 「육군법률」 전문은 『육군법률(奎16028)』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군부청의서(奎17718)』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군부에서 내각으로 보낸 청의문건을 내각 편록과에서 등서한 것이며, 『육군법률(奎16028)』은 1900년 9월 4일 법률 제5호로서 제정된 「육군법률」과 그 이후 수차례 걸쳐 제정된 「육군

2.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와 「육군징벌령」의 반포

1894년 6월 청일전쟁 당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 측에 제시한 5개조의 내정개혁안에서는 “국내의 민란을 진정하고 안 Ninh유지에 필요한 병비(兵備)를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⁵⁾ 또한 같은 해 7월, 조선 정부의 개혁주체였던 군국기무처는 의안(議案)을 통해 “지금 군사행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균일하지 못해 걸핏하면 규율을 위반하므로 빨리 변통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상주하였다.⁶⁾ 그리고 오토리 후임으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1894년 10월에 조선 측에 제출한 20개조의 내정개혁안에서 “군정(軍政)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 같은 해 12월, 새로운 내정개혁을 앞두고 종묘에 고한 「홍범14조」에서도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는 개혁방향이 천명되었다.⁸⁾ 이렇듯 군사부문의 개혁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1895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군사부문의 개혁은 지방제도의 개혁과 함께 지방 군사조직을 혁파

법률」의 관련 제규정을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한 법령집이다. 『육군법률(奎16028)의 간행 연도는 서문과 발문에 표기된 1902년 6월 27일로 추정된다.

일본 측 메이지 14년의 자료는 『헌병요규(憲兵要規)』에 수록 있는 「육군징벌령(1881년 達乙 제73호)과 「육군형법(1881년 布告 제69호)을 이용하였다. 『헌병요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kindai.da.ndl.go.jp>) 및 교토대학(京都大學)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것을 참고하였다. 『헌병요규』의 법례를 살펴보면 『헌병요규』는 메이지 31년(1898) 8월 31일 현행법규 가운데 직무상 참고할 수 있는 제 법령들을 편집하여 발간한 것으로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헌병요규』의 간행연도는 1898년 이후로 판단된다. 『헌병요규』의 편집자는 다야마 무네토(田山宗堯)라는 사람으로 당시 경찰과 관련된 잡지를 발행한 경력이 있다. 「육군징벌령」과 「육군형법」의 경우 『헌병요규』 제1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헌병요규』에는 「헌법」·「황실전범(皇室典範)」뿐만 아니라 「해군징벌령」·「해군형법」 및 「형법」 등 사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5) 『舊韓國外交文書』 2, 日案 제2906호, 1894년 6월 1일, 「內政改革力說 및 同綱領案提議」: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1일;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2일.

6) 『高宗實錄』 卷32, 1894년 7월 14일.

7) 『高宗實錄』 卷32, 1894년 10월 23일.

8) 『高宗實錄』 卷32, 1894년 12월 12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894년 6월 총제영 혁파를 시작으로⁹⁾ 1895년 3월에는 지방 수·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5도유수(개성·강화·광주·수원·춘천)와 각 도의 관찰사를 비롯하여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방어사가 패용하는 비밀 병부(兵符)와 각 읍·진 수령·변장들이 사용하는 병부를 반부(頒符)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각 도에 보관중인 병부도 해당 각 감영에서 회수하여 중앙으로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감영·유수영·병영·수영에 있는 마패도 일체 반납하도록 하였다.¹⁰⁾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는 감영·안무영 및 유수부의 폐지령이 반포되어¹¹⁾ 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황해·평안도와 함경남도의 8 감영과 함경북도의 1 안무영을 비롯하여 개성·강화·광주·수원·춘천의 5유수부와 전국의 관찰사·안무사·유수 이하의 관직이 폐지되었다.

지방 군사조직의 혁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895년 7월 15일에는 조선 수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전라·충청 3도 수군의 최고사령부인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한 폐지령」이 하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서 「각 도의 병영 및 수영에 대한 폐지령」과 「각 진영에 대한 폐지령」 그리고 「각 진보에 대한 폐지령」도 7월 15일에 한꺼번에 반포되었다.¹²⁾ 그 내용도 앞의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한 폐지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수령과 그 관직을 폐지하며 소속 장교와 병졸도 해산하고 그에 소속되었던 군물·선박·해사(廩舍)·토지·금전·미곡과 딸린 각종 기록·장부 및 일체 물건 등을 군부 내지 탁지부로 이송하거나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지방에 소재하고 있던 전통적인 수륙군이 일거에 폐지되었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무기나 장비들도 회수되어 중앙의 군부로 반납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전 구래의 지방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지방 최고군사령관이

9) 『高宗實錄』 卷31, 1894년 6월 22일.

10) 『高宗實錄』 卷33, 1895년 3월 1일.

11) 『高宗實錄』 卷33, 1895년 5월 26일.

12) 『高宗實錄』 卷33, 1895년 7월 15일.

라고 할 수 있는 병마·수군절도사 직책과 각 지방 요지를 방어하는 군지휘관인 영장(營將)의 직책은 관할 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는 지방관인 관찰사와 수령이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갑오개혁 이전에는 지방 군사조직이 일반 행정조직과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제도의 개혁은 지방 군사조직을 해체시키고 지방 군사조직과 일반 행정조직을 분리시켰다. 그 결과 기존에 관찰사 및 지방 수령이 겸임하고 있었던 군사지휘권도 제거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 군사조직도 해체되어 해산된 지방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기가 밀반출되어 불만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임오군란과 같은 잠재적인 폭동이나 반란을 사전에 종식시키고자 각 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895년 3월과 5월에 걸쳐 병부와 마패를 회수하고 감영·안무영·유수영 등을 폐지하고 나서는 칙령 제110호 「군기 등 관사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뇌관과 화약을 포함하는 전투용 총포와 도창을 직무상 이외에는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¹⁴⁾ 또한 삼도수군 통제영 및 병영·수영·진보를 폐지시킨 후에는 군부령 제1호를 반포하여 어떠한 사안을 막론하고 해산된 군인들이 10인 이상 모이다가 발각될 때는 주동자를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반포된 군부령 제2호를 통해서도 구영(舊營)소속의 해산 군인들이 휴대하였던 개인 군장이나 군기 등을 빠짐없이 반납하도록 하였다.¹⁵⁾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1895년 11월 단발령의 공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을미의병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다. 의병봉기 초기에는 대부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개한 유생 및 배일세력 인사들이 참여하다가 이후에는 갑오개혁 과정에서 관직을 잃은 관료·이서충뿐만이

13) 이동희, 『한국군사제도론』, 일조각, 1982, 186~187쪽.

14) 『高宗實錄』 卷33, 1895년 윤5월 3일.

15) 『官報』 제127호, 1895년 8월 2일, 部令.

아니라 지방 군사조직이 해체되면서 해산조치가 내려진 지방군도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⁶⁾ 을미의병에 참여한 군인들은 개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개혁에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의병운동의 참여를 통해 이 같은 개혁을 중단시키고, 한편으로 눈앞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해산된 군인 중 前 영장(營將) 출신의 군인은 군의 통솔과 훈련, 군기(軍器)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병의 조직적인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포수층은 포군·민정(民丁)·유림군(儒林軍)로 이루어진 의병부대에서 의병의 주전투력으로 활동하였다.¹⁷⁾

이처럼 해산된 군인들이 전국 각지에 일어난 의병봉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군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여 의병들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이에 1896년 1월 28일에는 중앙군인 친위대가 안동에 파견되어 의병부대 제1진을 격파하고, 다음날 29일에 제2진을 격파한 후 오후 8시에 안동부에 도착하였다.¹⁸⁾ 1896년 2월 17일에는 친위 제1대대 대대장 이남희와 중대장 신우균, 제2대대 중대장 이겸제, 김구현이 춘천의병을 공격하여 해산시키고 회군하였으며, 이에 고종은 2월 19일에 춘천부에서 돌아온 친위 제1·2대대와 공·마병대 사졸을 친히 포상하였다.¹⁹⁾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에 비해 파견할 수 있는 중앙군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으며 의병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진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미 1895년 9월에 반포된 「육군편제강령」²⁰⁾을 근거로 전국의 육군은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로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1896년 1월 7일에 각 지방에 남아 있는 구식군대의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총리대신 김홍집과 군부대신

16) 을미의병은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와 명성황후의 국장문제,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면서 표출된 사건이었다. 이상찬, 『1896년 의병운동의 정치적 성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17) 이상찬, 위의 논문, 156~173쪽.

18) 『高宗實錄』 卷34, 1896년 1월 31일.

19) 『官報』 제255호, 1896년 2월 22일, 彙報.

20) 『高宗實錄』 卷33, 1895년 9월 13일.

서리 겸 탁지부대신 어윤중은 고종에게 진위대를 설치할 때까지 일단 중앙에서 무관을 파견하여 구식군대를 영솔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1896년 1월 24일에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이 반포되었다. 「육군징벌령」이 조선 정부 내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반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896년 전후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한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 을미의병의 봉기 및 친위·진위대로 구분되는 전국적인 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육군징벌령」을 통해 조선 정부는 해산된 지방군사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병진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군은 「육군징벌령」을 근거로 부대의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의병진압에 전력할 수 있었다.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의사결정은 1895년 3월 21일에 제정된 「내각사무관리규정(內閣事務辦理規程)」, 「각의제출장정(閣議提出章程)」, 「청의서조사병각의안조제규례(請議書調查并閣議案調製規例)」, 「각의결정장정(閣議決定章程)」, 「재가주청급지령장정(裁可奏請及指令章程)」²²⁾에 근거하여 왕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안건은 내각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왕은 관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사후적으로 재가 또는 거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왕이 제출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내각의 결정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²³⁾ 따라서 이 당시

21) 『請議存案』, 「各地方에 所屬 鍊兵을 鎭衛隊設置前에 派員領率케 하는 件에 대한 閣議決定案」 제12호, 1896년 1월 7일 軍部大臣臨時署理 度支部大臣→議政府; 『指令存案』, 「각 지방의 舊額鍊兵을 統衛하기 위하여 將領을 파견하고 병사들의 급료를 지급하는 건은 請議한대로 파견하는 將領의 旅費와 봉급을 모두 예산 내에서 지급하라고 각의에서 결정한 후 재가를 받았다는 指令」, 1896년 1월 8일 內閣總理大臣 金弘集→軍部大臣臨時署理 度支部大臣 魚允中; 『官報』 제217호, 1896년 1월 9일, 彙報.

22) 「내각사무관리규정」, 「각의제출장정」, 「청의서조사병각의안조제규례」, 「각의결정장정」, 「재가주청급지령장정」은 모두 『편년록』(奎17723 v.2)에 실려 있다. 『편년록』은 1895년 3월 21일부터 1896년 9월 24일까지의 내각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으로 총 4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정궁식,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69~72쪽; 왕현중, 『한국근대국가의 형성과』

반포된 「육군징벌령」의 경우도 을미사변 직후 성립한 김홍집 내각이 주체가 되어 을미의병을 비롯한 각종 소요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급히 제정·반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육군징벌령」의 제정·반포 주체에 대한 특징은 후술하겠지만 「육군징벌령」의 각 조항이 메이지 14년에 제정된 「육군징벌령(일본)」의 각 조항과 거의 동일한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대한제국의 수립과 「육군법률」의 제정

「육군법률」이 반포되기 전까지 군인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대전회통』과 『대명률』에 근거하여 처벌되었다. 『대전회통』의 「병전」·「형전」과 『대명률』의 「명례율」·「병률」·「형률」에서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각 사례별로 그 형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의 법률이 군인의 범죄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군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을 제정한 경위에 대하여 「육군법률」의 서문에서는 ‘일정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육군참장 백성기는 「육군법률」 서문에서 “**군법에 이르러 오히려 한결같은 규정이 없으니 황제께서 이를 근심으로 여겨 지난 무술년 봄에 모자란 신(臣)성기에게 특명으로 위원장을 맡기셔서 군법을 기초하게 하셨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문과 함께 실려 있던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241~245쪽 참조. 한편 이와 같이 갑오개혁기의 왕권을 제약하는 내각제도의 의사결정과정은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면서부터 일본의 정치적 간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왕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896년 9월 24일에 반포된 칙령 제1호 「의정부관제 제3관 제4조에 따르면 국왕은 내각에서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왕의 의지대로 안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토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898년 6월 18일 「개정 의정부관제」, 1904년 3월 4일 칙령 제2호 및 1905년 5월 31일 칙령 제33호 「의정부회의규정」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1900년 9월 13일자 황제의 칙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완비되지 않아 군법이 일정한 조규가 없으니” 군법을 제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⁴⁾

보다 구체적인 「육군법률」의 제정경위에 대해서는 「육군법률」이 반포되기 전인 1900년 4월에 백성기가 올린 상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군법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군사는 많고 적은 데 관계없이 규율이 없으면 통솔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름난 장수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면서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 점령하였는데 이는 제정한 군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지방에는 군부(軍部)를 두고 중앙에는 원수부(元帥府)를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 군법을 제정할 것이 없으니 매우 군사를 기르는 방도가 아닙니다. 지난날 각 영의 병졸들이 간혹 죄를 짓게 되면 형조(刑曹)에 넘겨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거할 만한 법조문이 없고 또 굳어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처벌할 때마다 구차스럽게 마감(磨勘)하였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파면시키는 것도 이미 기준이 없으니, 가두거나 귀양 보내는 것인들 어찌 적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죄의 경중이 역측으로 정해지고 죄의 판결이 공의(公議)와 혹 어긋나기도 하니 언제나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탄식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각 부대의 대오가 각각 다르고 아직 일정한 규범이 없으니, 이 상태에서 군사를 통제한다면 이는 사실 법이 없는 군대이니 장차 어떻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통제하며 목숨 걸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군사에 관한 일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일입니다.²⁵⁾

백성기의 상소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군인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형조에서 일괄적으로 군인의 범죄를 판결하였으며,

24) 「육군법률」의 서문은 백성기, 민영환, 조동윤 총 3명이 작성하였으며, 「육군법률」의 서문 및 황제의 칙유는 모두 『육군법률』(奎16028)에 실려 있다.

25) 『高宗實錄』卷40, 1900년 4월 17일.

판결을 하더라도 기존 법률에는 각각의 군인의 범죄에 대하여 의거할 만한 마땅한 조문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매번 이에 대해 상주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과정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는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가질 수 없었고, 판결의 근거인 해당 법조문조차도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 군사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형법인 「육군법률」이 군징계령인 「육군징벌령」과 동일한 시기에 제정·반포된 것은 아니었다. 1895년 갑오개혁 당시부터 이미 조선 정부는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이 구분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²⁶⁾, 군법의 제정은 『대명률』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참고하여 고치는, 즉 ‘축조(逐條)·고정(考訂)’방식을 통해 제정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바 있었다.²⁷⁾ 그러나 갑오개혁 당시 「육군징벌령」이 반포된 이후 군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계처벌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수준의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제국이 수립된 1897년 이후였다.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같은 해 10월에 황제에 지위에 올라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각국 대원수의 예에 따라 황제가 육해군을 친총하겠다는 조칙을 근거로 1899년에는 원수부를 설치하였다.²⁸⁾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수반되었으며 군사부문에서도 1897년부터 이에 맞추어 기존의 군사조직이 정비되었다. 1897년 3월에는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교관단에 의해 훈련을 받은 중앙군을

26) 四十二. 懲罰令에 依 야 官吏를懲戒함과 法律에 依 야 處罰함에 二者 條理를區分하지 못할 事(『議奏』 卷5, 「官員의 懲罰·處罰을 區分하는 件」, 開國504年 3月29日)

27) 五十二. 明律 中 刑事에 屬 며 民事에 屬 며 軍律에 屬 며 行政辦理에 屬 는 者 …… 등을 分文別類 는 法에 依야 逐條 考訂 事(『議奏』 卷5, 「明律을 逐條 考訂하는 件」, 開國504年 3月29日)

28) 『高宗實錄』 卷36, 1897년 10월 12일; 『高宗實錄』 卷37, 1898년 6월 29일; 『高宗實錄』 卷39, 1899년 6월 22일.

근간으로 시위대가 새롭게 편제되었으며 시위대에는 포병·기병이 추가로 배속되어 전투능력을 보유한 부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⁹⁾ 한편 지방군의 경우 1899년에 진위대와 지방대의 편제를 개정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1898년 이전의 개편과정에서 서로 상이했던 지방대의 편제가 단일하게 정비되었다.³⁰⁾

하지만 이처럼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가 및 강력한 황권의 물리적 기반인 원수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군사부문 전반이 정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직후인 1897년 3월에 의정(議政) 김병시는 당시 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오늘의 군사 제도는 모두 다른 나라의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일(專一)하게 숭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와 군졸들은 한갓 각기 사사로이 도당을 만들어 서로 그 기예를 자랑하여 점점 시기하는 마음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보는 것 또한 후하고 박한 구별이 없지 않습니다. 후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박하게 한 사람은 원망을 품기 쉽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 힘을 전일하게 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돌봐

29) 「侍衛隊編制·豫算을 軍部·度支部로 하여금 磨鍊케 하는」件, 『詔勅』 4冊, 1897년 3월 16일. 시위대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1896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초빙한 군사교관에 의해 러시아식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을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러시아 교관들은 당시 중앙에 주둔하고 있던 5개 대대 3,300여 명 중에서 하사관 및 병사 8백 명을 선발하여 러시아식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차출당한 중앙군 5개 대대는 1896년 3월에 2개 대대를 증설하여 5개 대대로 증편된 친위대이며, 이 친위대에는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은 구 훈련대원들이 모두 편입되었다. 아직 시위대로 명명되지 않은 이들은 러시아 교관 1명에 80명이 배치되어 러시아군 신병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각개교련·체조·총기 조작법·소총 분해결합·소총사격법 등의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이듬해 189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2월에 이르러 2백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므로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 1897년 3월 16일 조칙에 근거하여 시위대로 명명되었다.(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178~189쪽)

30) 『高宗實錄』 卷39, 1899년 1월 15일.

주는 것을 고르게 하여 사사로운 데 치우치는 것이 없게 한 후에야 윗 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으려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³¹⁾

주지하다시피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근대적인 군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본의 군제가 도입되었다가 아관파천 이후에는 다시 러시아 군제가 도입되었다. 김병시는 이렇게 불과 1~2년 사이에 군제가 뒤 바뀌는 혼란으로 인해 장수와 군졸들이 서로 단합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1899년 4월 30일에는 급기야 시종원에 입직(入直)한 친위대 병사와 수도인 한성에 주둔한 평양 진위대 병사 사이에서 편싸움이 일어나 도합 10명이 크게 다쳐 제중원에서 며칠 동안 치료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³²⁾ 이 사건에 대해 군부대신서리 군부협판 주식면은 “진실로 그 군사들로 하여금 부대가 기율이 있어 두렵고 꺼릴 바를 알면 어찌 이런 의외의 일이 있사오리까, 평양 출병병과 시종원 입직병이 엄숙해야 할 때에 서로 시비를 걸어 소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가 하나이라 법률과 기율이 방자하고 군규가 없으니 이는 가히 쉽게 처단하지 못할 것이다”³³⁾라고 하며 군인이 기율이 없고 군규가 제대로 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³⁴⁾

또한 이 당시 군인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군인의 음주는 군인 간 또는 민인 및 순검의 구타로 이어졌는데³⁵⁾, 한 신문에서는 병정들이 술을 먹고 행패부리다가 순검에 잡혀가는

31) 『高宗實錄』 卷35, 1897년 3월 16일.

32) 『독립신문』 1899년 5월 3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5월 8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5월 10일 관보.

33) 『독립신문』 1899년 5월 10일 관보.

34) 당시 군인의 비행과 범죄는 순찰병정이나 경무청의 순검이 단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병정 및 순검과 군인간의 마찰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군부에서 중앙군인 시위·친위 각 대대 대대장에게 훈령하여 편싸움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폐단이 많아 경무청에서 편싸움을 금단하고 있으나 군인들이 서로 항거할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독립신문』 1898년 2월 3일 각부신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오피월급을 타가지고 처자식도 먹여 살릴 겨를이 없을 터인데 무슨 돈으로 술을 취하도록 먹고 죄를 범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더라”³⁶⁾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역토의 소출을 가지고 자체 경비를 조달하였던 지방대가 주민을 토색(討索)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당시 지방대는 역토를 운영하면서 마름을 자주 갈기도 하고, 역토를 묵혀버리기도 하고 해당 지방관서를 거치지 않고 병정들을 보내어 직접 민인들에게 그 세를 받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문에서는 “당초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 각 처 지방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지금의 일로 보자면 각 처 지방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크게 병되고 해롭게 함이라 더욱 한심하고 개탄할 일이다”라고 하며 지방대의 작폐에 대해 보도하였다.³⁷⁾

요전대 「육군법률」은 「대전회통」 및 「대명률」과 같은 기존 법률에 근거한 군사법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그 위용에 상응하는 군사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제국 수립 이후 증대된 군의 규모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 군인들의 범죄는 군정계령인 「육군징벌령」만으로는 군인의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였다. 즉 「육군징벌령」보다는 상위법 차원에서 군인의 범죄행위에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공할 군형법의 등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육군법률」에 대한 입법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4월 26일부로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법기초위원장에 임명되면서부터였다. 이때 백성기와 함께 참령 신태휴와 법무참서관 신재영, 고등재판소검사시보 윤성보, 군부마정과원 정위 김학안, 군부군법국원이사 홍우형, 前 탁지아

35) 『독립신문』 1897년 10월 2일 각부신문; 『매일신문』 1898년 1월 4일 잡보; 『독립신문』 1898년 4월 13일 잡보; 『매일신문』 1898년 11월 4일 잡보; 『매일신문』 1899년 3월 15일 잡보; 『독립신문』 1899년 8월 19일 잡보.

36) 『매일신문』 1898년 4월 13일 잡보.

37) 『독립신문』 1898년 7월 21일 잡보.

문주사 어윤적이 군법기초위원으로 임명되었다.³⁸⁾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과 『각부지령존안(各部指令存案)』의 기록에 따르면 1898년 6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군법기초위원 임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관보』에 확인한 군법기초위원들의 임명날짜인 4월 26일과 시간차가 있는 것이다.³⁹⁾ 그런데 『각부청의서존안』과 『각부지령존안』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법기초위원의 사무가 1898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부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즉 군법기초위원들이 각자 군법기초작업에 참여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군법기초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의 시점은 1898년 4월경인 것이다.

군법기초위원이 활동한지 약 3개월 후 법무대신 조병직이 법부의 업무가 번거롭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재영과 윤성보가 법부의 본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하여 신재영과 윤성보는 7월 13일부로 군법기초위원에서 해임되었다.⁴¹⁾ 이후 7월 23일부로 군법기초위원이었던 김학안이 해임되고 다시 신재영이 군법기초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신재영과 함께 법무주사 김응준도 군법기초위원에 임명되었다.⁴²⁾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이번엔 법무대신 한규설이 군부의 사무가 점점 정돈되어가나 법부의 사무는 번잡해지고 있으니 신재영과 김응준을 법부로 돌려보내 본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하여 이들은 곧

38) 『官報』 제982호, 1898년 6월 22일, 敍任及辭令.

39) 『各部請議書存案』 6冊, 「軍部 軍法局이古今을 참작하여 軍法을 기초하도록 委員長 1인과 魏源 6인을 선정하겠다는 請議書」, 1898년 6월 17일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副將 閔泳綺 → 議政府參政內部大臣 朴定陽; 『各部指令存案』 1冊, 「軍部에서 청의한 軍法局 법률 기초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을 임시로 擇定하는 일은 의정부 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1898년 6월 20일 議政府參政 尹容善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閔泳綺.

40) 『各部請議書存案』 7冊, 「사무가 5월부터 9월까지 정해진 軍法起草委員 3명의 봉급을 예산의 지출하겠다는 請議書」, 1898년 7월 27일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閔泳綺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參政 徐正淳; 『各部指令存案』 「군법기초위원 5개월 봉급 1,368원 75전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일은 의정부 회의를 거친 후 상주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1898년 8월 3일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 徐正淳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閔泳綺.

41) 『官報』 제1001호, 1898년 7월 14일, 宮廷錄事.

42) 『官報』 제1012호, 1898년 7월 27일, 敍任及辭令.

해임되었다.⁴³⁾ 그리고 다음 해 1899년 2월에는 신태휴가 군법기초위원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신태휴의 후임으로 다시 신재영과 김응준이 임명되었다.⁴⁴⁾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에는 어윤적이 해임되면서 군부관방장보 참령 한진창이 임명되었고⁴⁵⁾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에는 백성기를 비롯하여 한진창, 홍우형, 신재영, 김응준까지 모든 군법기초위원이 해임되었다.⁴⁶⁾

군법기초위원들이 임명되고 해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군법기초작업이 1차적으로 1898년 4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2개월간 중단된 후, 다시 189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차 군법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육군법률」의 초안은 1899년 6월경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군법률」 초안은 완성된 다음 바로 반포되지 않았다. 이에 백성기가 1900년 4월에 군무에 관한 14개조를 상소하면서 「육군법률」의 시행을 촉구하였다.⁴⁷⁾

한편 백성기가 위와 같은 상소를 올린 같은 해 7월에 친위대 상등병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시위대 부위를 힐난하고 구타하는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군부대신은 “병정이 하사에게 방자하게 굴고 구타를 한 것은 군기를 범한 것이므로 중과(重科)로 다스리려고 하나 군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율이 없기 때문에 군부에서 알아서 처벌함이 어떠한지” 상주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내용은 「육군법률」의 반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육군법률」의 반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고종은 1900년 7월 21일에 조서를 내려 “군법을 이미 기초하였으나 사체가 신중하여 교정하지

43) 『官報』 제1120호, 1898년 12월 1일, 宮廷錄事.

44) 『官報』 제1174호, 1899년 2월 2일, 敍任及辭令.

45) 『官報』 제1229호, 1899년 4월 7일, 敍任及辭令.

46) 『官報』 제1291호, 1899년 6월 19일, 敍任及辭令.

47) 『高宗實錄』 卷40, 1900년 4월 17일.

48) 『官報』 제1631호, 1900년 7월 20일, 宮廷錄事.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초안이 작성된 「육군법률」 초안을 교정하게 하였다.

이에 원수부회계국총장 민영환이 군법교정총재에,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법교정부총재에 임명되었으며⁴⁹⁾, 23일에는 군부관방장 육군부령 한진창, 군부경리국제일과장 육군삼등감독 신재영, 법부주사 김응준이 군법교정관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육군법률」의 초안을 완성하고 1899년 6월에 군법기초위원회에서 해임된 인원들이었다.⁵⁰⁾ 군법교정관들은 1900년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활동한 후 군법교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9월 14일과 15일 모두 해임되었다.⁵¹⁾ 그리하여 마침내 1900년 9월 4일 법률 제5호로 「육군법률」이 반포되었으며 잇달아 육군법원과 육군감육이 설치되어 군형법의 집행기구도 마련되었다.

〈표 1〉 군법기초위원 및 군법교정관 활동 시기별 구분

시기구분	활 동 인 원
제1차 군법기초위원 활 동 시 기 (1898.4~1898.12)	1898.4 군법기초위원 임명 (백성기·신태휴·신재영·윤성보·김학언·홍우영·어윤적)
	1898.7 신재영, 윤성보 해임 1898.7 신재영, 김응준 임명
	1898.12 신재영, 김응준 해임 (1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종료)
	(2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시작)
제2차 군법기초위원 활 동 시 기 (1899.2~1899.6)	1899.2 신태휴 해임, 신재영·김응준 임명
	1899.4 어윤적 해임, 한진창 임명
	1899.6 군법기초위원 해임 (2차 군법기초위원활동 종료)
군법교정관 활동시기 (1900.7~1900.9)	1900.7 군법교정관 임명 (민영환·백성기·한진창·신재영·김응준)
	1900.9 군법교정관 해임

출전: 『官報』

49) 『高宗實錄』 卷40, 1900년 7월 21일.

50) 『官報』 제1637호, 1900년 7월 27일, 宮廷錄事.

51) 『官報』 제1682호, 1900년 9월 18일, 敍任及辭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1898년에는 「육군법률」의 제정을 위한 군법기초위원이, 1900년에는 기초한 「육군법률」의 교정하기 위해 군법교정소 인원이 임명되었는데, 이때 군법기초위원과 군법교정관의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1898년 7월부터 1900년 9월까지 「육군법률」의 초안작성과 반포에 이르는 작업에 꾸준히 활동한 사람은 백성기, 신재영, 김응준, 어윤적 4명으로 이들이 「육군법률」의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백성기와 신재영의 주요관직 경력

구분	백성기	신재영
주 요 관 직 이 력	1882 ~ 1885 賜第武科, 宣傳官	1883 ~ 1885 派往日本學海關事務及政治科
	1885 ~ 1888 鐵山府使, 宣傳官	1885 ~ 1895 外衙門主事
	1888 ~ 1893 摠禦營千總	軍務衙門參議
	1893 ~ 1895 內禁衛將, 宣傳官	軍部軍務局外國課長
	1895 ~ 1898 訓鍊院都正	1895 ~ 1897 法部檢事局長
	慶尙左道兵馬節度使	法部法律起草委員
	1898 ~ 1901 甲山觀察使	1897 ~ 1898 法部參書官
	成川郡守, 軍部協辦	軍法起草委員
	軍務局長	高等裁判所預備判事
	1901 ~ 1902 軍法起草委員長	1899 ~ 1900 法部法務局長
	平理院裁判長	法規校正所委員
	軍法校正副摠裁	軍法校正官
	陸軍法院長	1900 ~ 1903 陸軍法院理事
	武官學校長署理	陸軍法院長署理
	陸軍法院長	
	軍務摠長署理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출전: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표 2>에서 제시된 백성기의 주요관직 경력을 살펴보면 1882년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철산부사·금위장·훈련원도정·경상좌도병마절도사 등 꾸준히 무관으로서 관직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관직경력도 누구보다도 무관직의 실무자로서 「육군법률」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성기의 상소가 초안 작성 이후 계속 지체되었던 「육군법률」의 반포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일을 상기하더라도 백성기가 「육군법률」의 제정과 반포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원수부가 설치된 이후 백성기는 군법기초위원장·군법교정부 총재의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육군법원장·원수부군무국총장·기록국총장·검사국총장 등 원수부 산하의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였다.⁵²⁾

백성기가 그 관직경력을 바탕으로 「육군법률」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군사실무적인 식견을 제공했다면 신재영과 김응준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으로 이를 종합하는 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표에서 1차·2차 군법기초위원의 활동이 신재영·김응준의 임명과 해임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신재영의 경우 <표 2>를 살펴보면 1883년 일본에 건너가 해관사무와 정치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외아문주사직을 수행하였으며, 1895년부터는 법무검사국장 및 참서관 등 법부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99년 군법교정관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원수부와 군부의 관직에 계속적으로 임명되었다.⁵³⁾

신재영과 비교해 볼 때 김응준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없이 1885년에 율과에 합격한 이후로 계속 율관으로서 경력을 충실하게 쌓았다. <표 3>을 살펴보면 김응준은 1895년에는 법부주사로 임명되었으나 신재영과 마찬가지로 군법기초위원에 임명된 이후부터는 1907년까지 육군법원이사직 등을 맡으며 군부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육군법률」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기존 법률 즉 『대전회통』과 『대명률』 등과의 내용을 절충하는 작업은 율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김응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⁵⁴⁾

52) 『大韓帝國 官員履歷書 17冊·30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백성기는 1900년을 전후하여 원수부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1903~1904년에는 平北觀察使·平北裁判所判事 및 忠北觀察使·忠北裁判所判事の 직책을 수행하였다. 1905~1906년에는 屬衛隊總管署理·警務使署理·軍部軍務局長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에 다시 육군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체결된 丁未條約으로 인해 군대가 해산된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

53)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23·42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신재영은 1904~1906년에 육군법원장서리, 내장원경, 육군법원이사 및 군부 참모국 및 관방장보·관방장으로 활동하였고, 1907~1921년에는 양주군수, 평양공소원 판사, 경성공소원 판사, 함흥군수, 고원군수의 직책을 맡았다. 1912년과 1915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및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54)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5·19冊, 국사편찬위원회, 1972. 김응준은 1904년 육군법원이사직

〈표 3〉 김응준과 어윤적의 주요 관직경력

구분	김응준	어윤적
주 요 관 직 이 력	1885 律科 合格	1894 度支衙門主事
	1886 ~ 1894 律學檢律, 律學審律 律學明律, 律學等第 律學別提, 慶尙道檢	1894 ~ 1898 慶應義塾 帝國大學 早稻田專門學校 留學
	1895 ~ 1897 法部主事 漢城裁判所主事	1898 ~ 1902 軍法起草委員 外部繙譯官補 外部繙譯官
	1898 ~ 1900 法部主事 軍法起草委員 軍法校正官 刑法校正官	1903 平式院祕務課長
	1902 ~ 1904 陸軍法院理事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출전: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국사편찬위원회, 1972.

어윤적의 경우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894년에 탁지아문주사로 근무하다가 1894년부터 1898년 초까지 일본에 건너가 경응의숙(慶應義塾)·제국대학(帝國大學)·와세다전문학교(早稻田專門學校) 등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는 귀국하여 외부번역관보등과 군법기초위원을 겸임하면서 주로 외부에서 번역담당 업무를 맡았다.⁵⁵⁾ 어윤적의 일본 유학경험과 외부에서의 번역업무 경력, 그리고 제2차 군법기초위원들이 모두 그대로 군법교정관에 임명됨에도 어윤적만이 군법교정관에 임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미루어보아 군법기초위원당시 어윤적이 담당한 업무는

을 맡은 이후에 1907년에는 육군법원장서리로 활동하였으며 1908년에는 대구지방재판소 판사, 대구공소원 판사직을 수행하였다. 1912년에는 전북 금산군수직을 맡았으며 이후 1941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12년과 1928년에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및 쇼와(昭和)대례기념장을 받았다.

55)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13册, 국사편찬위원회, 1972. 어윤적은 1904~1905년에 외부참서관 및 총영사관에 임명되었으며 1906~1907년에는 용천감리, 용천부윤, 용천향재판소 판사직을 맡았다. 1907년에는 學部 편집국장직을 수행하였으며 1910년부터 1935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육군법률」 제정에 참고할 만한 일본의 제 법령을 번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4. 일본법의 수용과 변형으로서의 「육군징벌령」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제1장 법례(法例), 제2장 벌례(罰例), 제3장 범행(犯行)으로 총 3개장 17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 법례에서는 「육군징벌령」의 정의와 적용범위, 징계권자의 권한 및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육군징벌령」은 군인·군속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죄를 범했을 시 적용하며, 내부적 질서유지를 통하여 군인·군속을 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제2장 벌례에서는 장교 및 상당관의 경우 중·경근신, 하사 및 상등병의

56) 外部에서는 1899년 3월 27일에 군법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어윤적을 복귀시켜 繙譯官補로 서임하였다. 이에 軍部에서는 군법기초작업이 1朔 이면 끝나게 되나 그때까지만 어윤적이 군법기초위원을 활동할 수 있도록 外部에 조회하였다. 그러나 外部에서는 日文繙譯은 어윤적 밖에 없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照覆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1899년 4월에 어윤적은 군법기초위원에서 해임되고 外部 번역관보로 활동하게 되었다. (『外部來文』, 「官報에 軍法起草委員 魚允迪, 任外繙 譯官補 敍判任官四等」이라고 게재하여 달라는 通牒 제41호, 1899년 3월 25일 外部參書官 姜華錫→議政府參書官 趙秉圭; 『軍部來去文』, 「軍部 軍法起草委員 魚允迪을 外部에서 繙譯官補로 敍任하였으나 그 사무가 1朔 이면 끝나니 일을 마치게 해달라는 照會 제12호, 1899년 3월 29일 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朱錫冕→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道宰; 『軍部來去文』, 「軍部 軍法起草委員 魚允迪을 外部에서 繙譯官補로 敍任하였으나 그 사무가 1朔이면 끝나니 일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日文繙譯은 魚允迪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照復 제15호, 1899년 3월 31일 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道宰→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朱錫冕)

57) 第一條 本令은 軍人軍屬이 故意며 過誤며 疏忽며 懈怠等으로 輕 罪를 犯호야 刑法에는 該當치 아닌 者와 倖行이 不修호야 軍人의 體面을 壞擧 者를 其上官이 懲戒 罰則이니 其主旨은 部曲의 風紀를 維持호고 軍紀의 紊亂을 豫防호으로함.

경우 중·경영창 및 금족, 병졸의 경우 중·경영창과 고역, 태벌의 벌목을 계급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벌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신이란 근무를 정지하고 외출과 일체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창은 영창에 금고되는 것이며, 금족은 영내에 근신하여 훈련 이외에는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외출과 외래인의 면접 및 통신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벌은 부대원들이 정렬한 앞에서笞를 맞는 것이며, 고역은 훈련 이외에는 근무를 정지하고 외출을 금지하되 그 부대 내의 공공지와 오예물(汚穢物)을 청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장 범행에서는 제16조 아래 총 33개항의 범행세목으로 정리하여 주로 군인으로서 복장이나 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미숙하여 제대로 직무수행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한편 메이지 14년(1881) 12월 28일 達乙 제73호로 반포된 일본의 「육군징벌령」의 경우 조선의 「육군징벌령」과 내용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우선 구성면을 살펴보면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제1장 법례, 제2장 벌례, 제3장 범행 총 3개장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일본의 「육군징벌령」은 제1장 법례(法例), 제2장 벌령(罰令), 제3장 범행(犯行) 총 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조선의 「육군징벌령」은 유사한 문구와 단어를 사용하여 각기 조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1896년에 반포된 조선의 「육군징벌령」의 경우 1881년에 반포된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육군징벌령(조선)」을 기준으로 「육군징벌령(일본)」과의 유사조항을 서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비교한 내용과 같이 「육군징벌령(일본)」의 경우 「육군징벌령(조선)」에 비해 징계처분의 절차나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상황별로 규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조항 비교

조항내용	「육군징벌령(조선)」	「육군징벌령(일본)」
적용대상과 목적	제1조	제1조
징계권자의 권한	제2조	제2조, 제3조, 제4조
징계처분이 가벼울 경우 징계권자에 의한 과벌 일수 조정	제3조, 제4조	제5조
현장 범행발생 또는 추가 범행 우려시 先영창 유치 처분 및 권한변경	제5조	없음
범행자가 소속부대를 옮긴 경우 징계처분 절차	없음	제7조
범행이 2개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한 가지 행위로 2가지 이상 범행이 발생할 경우	없음	제8조
징계처분 중에 戰時로 인해 복무할 경우 과벌일수 조정	없음	제10조
징계처분 중에 功績이 있거나 근면한 경우	없음	제11조
장교·相當官 벌목	제6조	제12조
하사·상등병 벌목	제7조	제13조
병졸 벌목	제8조	제14조
근신의 정의	제9조	제15조, 제16조
처벌의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없음	제17조
중·경영창의 정의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중·경영창 및 중·경근신 처분기준	없음	제22조
하사·상등병·병졸·생도·외역거주자가 영창처분을 받을 경우 영창을 금족과 교역으로 換刑	없음	제23조
금족의 정의	제12조	제24조
태벌의 정의	제13조	없음
교역의 정의	제14조	제25조
징계처분 이후 병졸의 佩劍 제한	없음	제26조
무관학교 생도의 처벌	제15조	제9조
범행 세목나열	제16조	제27조
시행 날짜	제17조	없음

즉 「육군징벌령(조선)」 제2조에서는 징계권자를 부대의 長에 해당하는 ‘부령이상·참령·정위 및 독립급과견대장’ 등으로 규정⁵⁸⁾하고 있는 반면에

58) 第二條 各 軍各隊의 長은 左開權限을從 야 處分하 미 可함

- 一 軍隊의 長을 當하 副領以上은 部下軍人軍屬을 五週日以內 謹慎營倉禁足苦役及一百以內 答罰에 處함
- 二 軍隊의 長을 當하 參領은 部下將校를 三週日以內 謹慎이며 下士上等兵을 一週日以內 營倉禁足이며 兵卒을 五週日以內 營倉苦役 及一百以內 答罰에 處함
- 三 軍隊의 長을 當하 正尉는 部下下士를 三週日以內營倉 或 五週日以內禁足이

「육군징벌령(일본)」은 제2조, 제3조, 제4조에 걸쳐서 징계권자를 ‘군단장·사단장·여단장·위수사령관·연대장·대대장·중대장·독립과견대장·헌병대·군악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⁹⁾ 징계권자의 설정에 대한 두 징벌령의 이러한 차이점은 당시 징벌령의 적용대상이었던 군의 형태가 상이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육군징벌령(조선)」이 반포된 시기의 조선의 군대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지방 군사조직이 해체되면서 지방군사력이 일시에 해체되고 중앙군만이 주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육군징벌령(일본)」이 반포된 당시 일본의 군대는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하여 군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의 업무 및 병종이 이미 다양한 층위로 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징계권자가 가지는 징계권한의 처벌한도를 비교해 보면 「육군징벌령(일본)」은 근신의 경우 최대 30일, 영창의 경우 최대 30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⁶⁰⁾ 반면에 「육군징벌령(조선)」은 근신·영창 모두 최대 5주

며 兵卒을五週日以内 營倉苦役 及一百以内 笞罰에 處함. 特立及派遣軍의 隊長을 當함 將校는 一等식은 上級者의 權限으로 施行함을 得함고 又上官의 職을 署理함 將校는 該職에 相當함 權限으로 執行함을 得함.

59) 第二條 各所營ノ長官軍團長師團長旅團長及ヒ衛戍司令官ハ部下ノ軍人此令ヲ犯ス者アル時之ヲ罰ス可シ

第三條 各軍隊ノ隊長ハ左ノ區別ニ從テ處分ス可シ

一 聯隊長ハ部下ノ軍人三十日以内ノ勤愼營倉

二 大隊長ハ部下ノ士官十日以内ノ勤愼下士二十日以内ノ營倉兵卒三十日以内ノ營倉

三 中隊長ハ部下ノ下士十日以内ノ營倉兵卒二十日以内ノ營倉獨立若クハ分屯ノ大隊長及憲兵隊長ハ第一項ノ獨立若クハ分屯ノ中隊長及分遣隊長タル中小尉竝ノ憲兵分隊長ハ第二項ニ軍樂隊長ハ第三項ニ同シ

第四條 前條ノ揭クルモノノ外ハ左ノ區別ノ從ツテ處分スヘシ

一 將官竝ニ獨立ノ職ニ在ル上長官ハ前條第一項ニ同シ

二 獨立セサル職ニ在ル上長官竝ニ獨立ノ職ニ在ル士官ハ前條第二項ニ同シ

三 獨立セサル職ノ在ル士官ハ前條第三項ニ同シ

四 前各項ノ場合ニ於テ將官又ハ上長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モノハ將官上長官又ハ士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モノハ上長官士官又ハ准士官ヲ以テ充ツル職ニ在ル者ハ士官ニ同シ

五 一時限り部下ニ屬シ又ハ指揮下ニ屬スルモノノ懲罰ハ前條竝ニ本條ニ同シ

60) 第十五條 勤愼ハ勤務ヲ停メ他出及外人ト接見通信スルコトヲ禁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重勤愼ハ俸給ノ半額ヲ減シ輕勤愼ハ其四分ノ一ヲ減ス

第十八條 重營倉ハ演習ノ外勤務ヲ停メ營倉ニ錮シ寢具ヲ貸與スルコトナク唯飯及水鹽ヲ給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但七十二時ノ内ニ二十四時間ハ輕營倉ニ移ス可シ

이내, 즉 약 35일을 그 한도로 정하고 있어 「육군징벌령(조선)」이 보다 상대적으로 징계권한의 처벌한도를 높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그리고 「육군징벌령(조선)」은 해당 범죄에 대한 징벌처분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장관이 과별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3조와 제4조에서 걸쳐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제4조에서는 소속장관이 상급 부대장에게 신고하기 전에 먼저 증가시킨 과별일수를 공포할 수 있게 하였다.⁶²⁾ 반면에 「육군징벌령(일본)」은 제5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징벌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에 그쳤다.⁶³⁾

또한 「육군징벌령(조선)」에는 제5조에서 범죄가 현재 발생하거나 혹은 그 혐의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연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영창에 유치하는 조항이 존재한다.⁶⁴⁾ 이것은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유사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보다 징계권자의 징계권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을 비교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계급별로 차등 적용되는 벌목의 종류에 있다. 「육군징벌령(일본)」의 경우 장교를 제외한 하사와 병졸 모두 해당되는 벌목은 ‘중·경영창’뿐이나 「육군징벌령(조선)」은 하사 및 상등병·병졸의 벌목으로 ‘금족’과 ‘고역’, ‘태벌’이 부가적으로 조항에 명시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第十九條 輕營倉ハ演習ノ外勤務ヲ停メ營倉ニ鋸ス其日數ハ一日以上三十日以下ト爲ス

61) 각주 58번 참조.

62) 第三條 凡懲罰處分을 經 거 든其長官은 卽時其所屬長官에게 報告 지니 若其犯行의 懲罰日數가 權限以外에 該當 處分을 認히 는 時라도 爲先其權限內로 處分 고 其所見을 附히야 稟告히 미 可함 稟告를接히 長官은各權限을 從히야 其所罰日數를 增加히 得함

第四條 凡懲罰處分을 經 거든 其長官 卽時其部下에 犯行과 科罰日數를 公布히 可함

63) 第五條 前二條ニ因리處分ヲ爲シタル時ハ各秩序ニ從ヒ其屬スル所ノ上官ニ申報ス可シ若シ其犯行權限外ノ日數ニ該ル者ト認ル時ト須モ先ツ其權限ニ從テ之ヲ處分シ意見ヲ附シテ申報スヘシ申報ヲ受ケタル隊長長官ハ各權限ニ從ヒ其罰ヲ變更シ若クハ日數ヲ增加スルコトヲ得

64) 第五條 凡犯罪가 現發 거나 或嫌疑에 虞 者가 其犯行을 連續 念慮가 有히 거든 姑先營倉內에 留置 是在營長官의 本權限이되음 (所屬將校는本條를援用히 得지못함)

〈표 5〉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계급간 벌목 비교

구 분	장교 및 상당관	하사 및 상등병	병졸
「육군징벌령(조선)」	중근신 경근신	중영창 경영창 금족	중영창 경영창 고역 태벌
「육군징벌령(일본)」	중근신 경근신	중영창 경영창	중영창 경영창

〈표 5〉를 살펴보면 「육군징벌령(조선)」에서는 하사 및 상등병의 벌목에 중·경영창, 금족 3가지와 병졸 벌목에 중·경영창, 고역, 태벌 4가지의 벌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하사 및 상등병, 병졸의 벌목에 모두 중·경영창만을 명시하면서 제23조를 통하여 금족과 고역의 경우 모두 영창처분으로 환형(換刑)받을 수 있는 벌목으로 따로 규정하였다.⁶⁵⁾ 즉 「육군징벌령(일본)」에 따르면 영창처분을 받은 하사, 상등병, 생도, 영외 거주자의 경우 영창처벌을 대신하여 금족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재영(在營) 병졸일 경우 이를 고역으로 바꿔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과는 달리 명확하게 금족과 고역을 하사 및 상등병과 병졸에게 적용되는 벌목조항으로서 제시하였다. 이는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육군징벌령(조선)」의 경우 징계권자의 벌목선택의 폭이 넓으며 징계권자가 영창처벌과 관계없이 금족과 고역, 태벌을 자유롭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벌은 「육군징벌령(조선)」에만 있는 벌목으로 「육군징벌령(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다. 「육군징벌령(조선)」에서는 제13조에서 태벌에 대해 대개 ‘파렴치’한 범행자에 부과하는 벌목으로서 부대원들이 정렬해 있는 앞에서 형을 집행하며, 상등병이라 할지라도 그 범행이 ‘가악(可惡)’할 경우 태벌을

65) 第二十三條 營倉ニ處ス可キ者下土上等卒諸生徒及ヒ營外居住ノ者ナル時ハ禁足ニ在營兵卒ナル時ハ苦役ニ換フルコトヲ得 禁足苦役ニ處スル時其日數ハ重營倉ノ一日三日ニ輕營倉ノ一日ヲ二日ノ折算ス 禁足苦役ニ處スル時營內居住ノ者ハ其俸給十分ノ二ヲ減ス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⁶⁾ 다시 말해 태벌의 기능은 그 범행의 동기가 고의적이고 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 부대원이 정렬하는 앞에서 태를 맞도록 하여 ‘수치심을 통한 교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추관지(秋官志)』⁶⁷⁾에서 정의하는 태형의 기능과 동일하다. 『추관지』에서는 태형에 대해 “태(笞)란 수치이며 무릇 작은 허물은 매질을 해서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笞者恥也 凡過之小者 捶撻治之)”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징벌령(조선)」에 명시된 태벌 또한 『추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심’을 통한 교화를 의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⁶⁸⁾

다음으로 해당 별목에 병행되는 감봉조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63) 第十三條 答罰은大概 破廉恥 犯行者에게 科 는 者나 其處分 는 部隊가 整飭 압히 서 諸官이 會同 머 下士가 監視 야 上等兵으로 執答케 고 (中隊에 在 야는 大概 週番下士머上等兵으로 廻 (行케호) 且其答數 每十度에 給料二十分의 一을 日排로 減息(營外居住호 者는 其半額을 減息) 答罰은 大概 兵卒의 犯行者에게만 科 는 者나 上等兵이라도 其犯行이 甚히 可惡 者에게는 行호를 得호
- 67) 『추관지』는 1781년(정조 5년)에 刑曹判書 金魯鎮이 朴一源에게 위촉하여 편찬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典章, 敎令, 명신들의 論決, 律令, 禁條 등 형조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 68) 태형을 존속시키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료는 1897년 1월에 완성된 「刑法草案」이다. 「형법초안」의 서문에서는 “頑梗호고 桀驁호고 恥心이 無호者」 갖은 罰金을 科 야도 資財가 無호 拘留호 면 도로혀 數日 食飮을 傳 호 心切喜호호는 徒는 寧히 刑罰로써 恩典에 化호는 奇觀을 莫호호 志인 答를 措호고 良刑을 何에 科 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무지하고 교활한 자와 가난하고 수치심을 잃은 자들은 벌금을 부과하여도 이를 마련할 길이 없고 拘留하면 오히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기뻐하기에 태형이 낫다는 말이다. 이는 1912년에 시행된 「朝鮮答刑令」의 근거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태형이 가지고 있는 형벌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다시피 「육군징벌령(조선)」에 태벌이라는 벌목이 명시된 배경은 「형법초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벌의 ‘형벌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추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치심을 통한 교화’에 있다.
- 「형법초안」은 1880년에 반포된 일본 舊刑法을 모방한 것으로 法部 顧問으로 활동한 호시 토오루(星亨) 및 노자와 게이이치(野澤鷗一)에 의해 1896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897년 1월에 완성되었다. 「형법초안」은 그 체계와 내용으로 본다면 최초의 서구적 형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명률」과 「대전회통」을 통해 축적된 기존의 법집서와 상이한 점이 많아 당시 조선의 입법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초안」 및 태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문준영, 앞의 논문, 36~46쪽; 엄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유흥」, 『역사와 현실』 53, 2004.

〈표 6〉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의 감봉비율 비교

구 분	「육군징벌령(조선)」		「육군징벌령(일본)」	
중근신	장교 및 상당관	봉급의 3분의 2減	장교 및 상당관	봉급의 2분의 1減
경근신		3분의 1減		4분의 1減
중영창	하사 및 상등병 / 병졸	영내거주: 10분의 8減 영외거주: 10분의 6減	하사 및 상등병 / 병졸	영내거주: 10분의 8減 영외거주: 2분의 1減
경영창		영내거주: 10분의 6減 영외거주: 10분의 4減		영내거주: 10분의 6減 영외거주: 4분의 1減
금족		10분의 5減		영내거주: 10분의 2減 영외거주: 없 음
고역	병졸	10분의 4減		영내거주: 10분의 2減 영외거주: 없 음
태별		영내거주: 매 10도에 20분의 1減 영외거주: 매 10도에 40분의 1減		

〈표 6〉를 살펴보면 「육군징벌령(조선)」이 「육군징벌령(일본)」보다 징계처분에 병행되는 감봉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육군징벌령(조선)」에서 규정된 금족과 고역의 경우 영내·영외 거주자 구분 없이 감봉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다가 「육군징벌령(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벌목보다 높은 비율로 감봉하고 있다. 그리고 태별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육군징벌령(조선)」에만 있는 벌목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매 10도마다 감봉이 되게끔 명시하였다. 즉 「육군징벌령(조선)」에 따르면 하사 및 상등병, 병졸의 경우 금족, 고역 및 태별로 인한 신체적 제재와 함께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감봉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 제16조의 33개 범행세목의 경우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에서 명시된 내용이 거의 동일한 편이나, 「육군징벌령(일본)」에는 없고 「육군징벌령(조선)」에는 추가로 4개의 범행 세목이 명시되었다. 그 세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항 刑法欸目에 準 竊만 竊 犯行으로 刑法에 該當치아닌者

제28항 營舍며 營內를 汚穢케 하야 衛生 害는 法에 違는者

제31항 技局을 設하야 金錢을 賭는者

제32항 營內의 靜肅함을 害는者

제1항은 「육군징벌령(조선)」이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행에 적용됨을 언급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제1항의 내용은 「육군징벌령(조선)」 제1조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렇게 한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만큼 군인의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의 구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8항·제31항·제32항은 영내를 더럽히거나 정숙함을 해치고 도박을 하는 군인에 대한 징계처벌을 명시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육군징벌령(조선)」이 반포될 당시 군영 또한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위생문제 개선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군인이 도박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정부차원에서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⁹⁾

지금까지 「육군징벌령(조선)」과 「육군징벌령(일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두 징벌령이 차이점보다 그 구조나 내용면에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육군징벌령(조선)」은 「육군징벌령(일본)」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앞서 「육군징벌령(조선)」의 제정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갑오개혁 당시 법령의 제정 과정이 국왕을 배제한 군국기무처 및 내각중심으로

69) 군인들이 도박을 하는 사례는 신문 기사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1899년 8월 2일자 『황성신문』 잡보란에 실린 「月終例設 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도박에 대한 당시 병정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병정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 의례히 가깝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할 요량으로 도박을 하는데 어찌 이를 금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이를 단속하러 온 순검들에게 軍物을 들고 示威하였다. (이외 군인의 도박사례에 대한 기사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28일 잡보; 『皇城新聞』 1898년 11월 2일 잡보, 「技兵被捉」; 『皇城新聞』 1899년 3월 28일 잡보, 「別別巡檢」; 『皇城新聞』 1901년 3월 22일 잡보, 「憲兵見效」 참조)

이루어졌으며, 의병봉기라는 사회적 소요로 인하여 시급히 반포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육군징벌령(일본)」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본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은 첫째, 징계권자의 징계권한이 비교적 폭넓게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 징계기간 및 징계벌목 상에서 신체적 제재의 수준이 높고, 셋째, 하사 이하의 하급군인의 경우 징계처벌시 신체적 제재와 함께 높은 감봉 비율이 병과(並科)되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요컨대 「육군징벌령(조선)」은 1881년의 「육군징벌령(일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반포되었지만, 「육군징벌령(일본)」에 비해 징계권자의 징계권한 및 징계벌목 그리고 감봉 비율이 전반적으로 군인의 비행을 통제하려는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육군징벌령(조선)」은 1906년에 새로운 「육군징벌령」이 반포됨으로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육군징벌령(조선)」의 특징이 모두 사라지고⁷⁰⁾ 「육군징벌령(일본)」, 즉 1881년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처럼 1896년의 「육군징벌령(조선)」이 폐지되고 1906년의 「육군징벌령」이 「육군징벌령(일본)」을 큰 가감·수정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반포된 배경에는 제1차 한일협약(1904.8)으로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1906년의 「육군징벌령」이 대한제국에서 일본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활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70)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육군징벌령(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육군징벌령(일본)」에서 하사와 병졸벌목에 급속과 고역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성·내용면에서 모두 동일하다.(하사와 병졸벌목에 급속과 고역을 추가한 것은 기존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조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1906년에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기존에 반포된 1896년의 「육군징벌령(조선)」보다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5. 자주적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과 「육군법률」

1900년에 반포된 「육군법률」은 「대전회통」과 「대명률」, 그리고 「육군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반포된 신 법령들과 외국 육군형법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⁷¹⁾, 제1편 법례(法例), 제2편 죄례(罪例), 제3편 형례(刑例), 제4편 율례(律例)의 총 4개편 31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부터 제3편의 내용은 일반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1편 법례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 법률 적용상 중요한 절차상 규정, 그리고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제2편 죄례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제3편 형례는 규정된 형벌과 가감례(加減例)를 제시하고 있다.⁷²⁾ 제4편은 군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군인의 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육군법률」은 이전의 「대명률」과 「대전회통」이 이·호·예·병·형·공률(전)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편-장-조 구조로 되어있으며,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899년 8월 25일에 법률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인율목록」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인율목록」은 1905년에 반포되는 「형법대전」의 초안 가운데 하나로서, 1897년부터 「구본신참」의 기치 아래 활동한 조선인 법률기초위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율목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제4편 율례 부분은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의 편명(編名), 장명(章名), 절명(節名)은 있으나 세부 조항이 없으며, 세부 조항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명률」·「대전회통」·「적도처단례」 등 기존

71) 凡例 一. 本 法律은 大典會通과 新頒法律과 附例大明律로 基礎를 作하고 外國陸軍刑法를 參互하여 集成함.

72) 특히 제1편에서는 哨兵·憲兵·豫備·後備 등 기존 법률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군사 용어들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육군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豫備·後備 등 당시 일본 군사교범에서 사용되는 군사용어들이 「육군법률」에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군법률」이 당시 일본의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 및 새롭게 반포된 법률에서 참고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⁷³⁾

〈표 7〉 「육군법률」과 「引律目錄」의 구성비교

「육군법률」		「인율목록」	
제1편 法例	제3편 刑例	제1편 法例	제3편 刑例
제1장 本法律施用權限	제1장 刑名及獄具	제1장 用法範圍	제1장 刑罰通則
제2장 告訴及聽理區域	제2장 主刑處分	제1절 本法律施用權限	제1절 刑名及獄具
제3장 拘拿格式	제3장 附加刑處分	제2절 告訴及聽理區域	제2절 主刑處分
제4장 名稱分析	제4장 獄具施用處分	제3절 拘拿及立證格式	제3절 附加刑處分
제5장 等級區別	제5장 公私罪處斷例	제4절 罪囚應禁物許條例	제4절 獄具施用處分
제6장 期限通規	제6장 知情不告 及藏匿者處斷例	제5절 期限通規	제5절 公私罪處斷例
제2편 罪例	제7장 數罪處斷例	제6절 名稱分析	제6절 知情不告 及藏匿者處斷例
제1장 犯罪原由	제8장 又犯處斷例	제7절 等級區別	제7절 數罪處斷例
제2장 數罪俱發	제9장 再犯處斷例	제8절 賊盜分類	제8절 又犯處斷例
제3장 罪中又犯	제10장 共犯處斷例	제2편 罪例	제9절 再犯處斷例
제4장 一罪再犯	제11장 未遂犯處斷例	제1장 犯罪分析	제10절 共犯處斷例
제5장 數人共犯	제12장 免罪及加減處分	제1절 犯罪原由	제11절 未遂犯處斷例
제6장 未遂罪	제13장 加減次序	제2절 數罪俱發	제12절 免罪及加減處分
제7장 不論罪	제14장 執刑禁限	제3절 罪中又犯	제13절 加減次序
	제15장 執刑及執行處分	제4절 一罪再犯	제14절 執刑禁限
	제16장 刑期計算	제5절 數人共犯	제15절 執刑及執行處分
	제17장 徵償處分	제6절 未遂犯罪	제16절 刑期計算
	제18장 收贖處分	제7절 不論罪類	제17절 徵償處分
	제19장 期滿免刑及復權		제18절 收贖處分
	제20장 保放規例		제19절 期滿免刑及復權
	(제4편 律例 생략)		제20절 保放規例

「인율목록」과 「육군법률」의 구조상 유사점은 군법기초위원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신재영의 경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895년 6월 15일에 설치된 법률기초위원회는 1897년 10월 사실상 해체되었다가 다시 1899년 5월 22일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여기에 1898년 4월부터 군법기초위원으로 활동한 신재영이 1895년 법률기초위원회활동 초창기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군법률」은 이러한 「형법대전」의 초안 형태의 「인율목록」의 구조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육군법률」 또한 「인율목록」과 마찬가지로 1897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된 자주적인 사법제도 정비과정의

73) 문준영, 앞의 논문, 46~54쪽.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육군법률」의 제4편 율례는 군인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응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군형법으로서 「육군법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육군법률」의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가 「인율목록」에 근거하였다면, 「육군법률」 제4편 율례는 「대명률」·「대전회통」 및 메이지 14년(1881)에 布告 제69호로 반포된 일본의 「육군형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육군법률」과 일본의 「육군형법」의 구성을 비교한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육군법률」의 제4편 율례는 특히 일본의 「육군형법」의 제2편 중죄경죄(重罪輕罪)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8〉 「육군법률」과 「육군형법」의 구성 비교

「육군법률」	「육군형법」
제1편 法例	제1편 總則
제1장 本法律施用權限	제1장 法例
제2장 告訴及聽理區域	제2장 刑例
제3장 拘拿格式	제3장 加減例
제4장 名稱分析	제4장 數罪俱發
제5장 等級區別	제5장 數人共犯
제6장 期限通規	제6장 未遂犯罪
제2편 罪例	제2편 重罪輕罪
제1장 犯罪理由	제1장 反亂
제2장 數罪俱發	제2장 抗命
제3장 罪中又犯	제3장 擅權
제4장 一罪再犯	제4장 辱職
제5장 數人共犯	제5장 暴行
제6장 未遂犯	제6장 侮辱
제7장 不論罪	제7장 違令
제3편 刑例	제8장 逃亡
제1장 刑名及獄具	제9장 詐僞
제2장 主刑處分	제10장 結黨
제3장 附加刑處分	
제4장 獄具施用處分	
제5장 公私罪處斷例	
제6장 知情不告及 藏匿者處斷例	
제7장 數罪處斷例	
제8장 又犯處斷例	
제9장 再犯處斷例	
제10장 共犯處斷例	
제11장 未遂犯處斷例	
제12장 免罪及加減處分	
제13장 加減次序	
제14장 執刑禁限	
제15장 執刑及執行處分	
제16장 刑期計算	
제17장 徵償處分	
제18장 收贖處分	
제19장 期滿免刑及復權	
제20장 保放規則	
제4편 律例	
제1장 結黨作亂律	
제2장 命令違抗律	
제3장 權外擅行律	
제4장 辱職律	
제5장 溺職律	
제6장 違期律	
제7장 失誤軍機律	
제8장 暴行律	
제9장 殺傷律	
제10장 規避律	
제11장 逃亡律	
제12장 詐僞律	

「육군법률」 제4편 율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육군형법」에는 보이지 않는 제5장 낙직률(溺職律), 제6장 위기율(違期律), 제10장 규피율(規避律)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직률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위기율은 각종 기한을 어겼을 경우, 규피율은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이 3개의 장은 군인들의 평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군인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 군형법이 이처럼 평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은 「대명률」과 「대전회통」의 내용을 축조(逐條)하는 과정에서 병률·병전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육군형법」의 경우 제1장과 제10장에 각각 반란과 결당(結黨)을 구분하여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육군법률」은 제1장에서 결당작난(結黨作亂)이라고 하여 결당과 반란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군인들이 당을 결성하는 행위를 반란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법률」은 본 법률 제203조, 제277조, 제285조에 걸쳐 군인들의 결당뿐만 아니라 군인이 단언(亂言)하여 일반 백성들을 동요시켜 반란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⁷⁴⁾ 또한 일본의 「육군형법」에서는 군인이 당을 결성해 난을 일으켰더라도 군수품을 지급한 자는 유가유형에 처하게 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해당 형에서 1등씩 감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⁷⁵⁾, 「육군법률」의 경우 미수에 대한 감형 없이

74) 第二百三條 軍人이 第四條의 掲載한 所犯을 除한 外에 政府를 顛覆한거나 軍紀를 紊亂한거나 其他人命財産을 侵損한 目的으로 黨을 結한야 亂을 作한 者는 死刑에 處한되 黨에 未至한 者도 同論한이다.

第二百七十七條 軍人이 上官의 命令을 違抗한거나 職務를 瀆濫한거나 常典을 違背한야 左開의 所犯이 有한 者는 並히 死刑이며 部下로 凍餓한거나 離散케한 者는 一名에 禁獄三個月이며 每一名에 一等을 加한되 死刑에 入함이라

一. 部下나 良民을 激變한야 亂을 作케한 者.

二. 敵으로 侵入케한者.

三. 地池를 失陷한 者

第二百八十五條 軍人이 亂言을 造한야 政府를 顛覆한거나 政事를 變更한기를 謀한 者는 流十五年이며 因한야 人心을 煽動한 者는 流終身이며 亂에 至케한 者는 死刑에 處함이라

75) 第五十條 軍人黨ヲ結ヒ擅ニ兵器ヲ執リ反亂ヲ爲ス者首魁敎唆者及ヒ群衆ノ指揮ヲ爲シ若

미수까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으로 논하고 예비 또는 음모를 꾀한 자만 해당 형에서 각 1등, 2등을 감하고 있다.⁷⁶⁾

군인들의 결당작난에 대한 조항과 더불어 일본의 「육군형법」과 비교했을 때 「육군법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외국과 관련된 군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육군법률」에서 외국과 관련된 규정은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6조, 제282조로 대부분의 내용이 외국에 붙어서 본국에 대해 저항하거나 본국과 공수동맹을 맺은 외국과의 화친을 저해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과 전쟁의 발단을 제공 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형량인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⁷⁷⁾

이렇게 「육군법률」이 일본의 「육군형법」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クハ樞要ノ職務ニ從事スル者ハ死刑ニ處ス其指揮ヲ爲シ樞要ノ職務ニ從事スト雖モ情狀輕キ者ハ無期流刑ニ處ス 諸般ノ職務ヲ司リ若クハ兵器彈藥其他軍需ノ物品ヲ資給スル者ハ有期流刑ニ處シ其情狀輕キ者ハ重禁獄ニ處 附和シテ其事ニ服行スル者ハ二年以上五年以下ノ輕禁錮ノ處ス

第六十二條 軍人前數條ニ揭クル所ノ罪ヲ犯サントシテ未ク遂ケサル者級ヒ其豫備ヲ爲ス者ハ各本條ニ照シテ一等ヲ減ス 其陰謀ヲ爲シ未ク豫備ニ至ラサル者ハ二等ヲ減ス

76) 第二百三條 軍人イ 第四條의 掲載호 所犯을 除호 外에 政府를 顛覆호거나 軍紀를 紊亂호거나 其他人命財産을 侵損호 目的으로 黨을 結호야 亂을 作호는 者는 死刑 에處호되 黨에 未至호 者도 同論호이라

第二百十條 軍人イ 本章諸條의 罪를 犯호는자 已行호고 未遂호는 者는 各히 本律과 同論호고 預備만호고 未行호는者는 一等이며 陰謀만호고 預備에 不至호는 者는 二等을 減호이라

77) 第二百五條 軍人イ 敵을 利케함을 爲호야 左開諸項을 犯호는者는 竝히 死刑에 處호이라
…… 九. 本國이나攻守同盟國의命令이나公信의遞傳을妨礙호거나隱匿호거나遲緩호거나變造호는者

第二百八條 軍人イ 敵前이나 軍中에 在호야 左開諸項을 犯호는 者는 竝히 死刑에 處호이라

一. 外國에 附從호야 本國을 抗敵호는 者

二. 本國에 對호야 攻守同盟이 有호 國을 抗敵호는者

第二百九條 軍人イ 本國이 外國과 宣戰에는 不至호얏스나 戰端을 將開호 時에 本章諸條의 所犯이 有호는 者는 各히 本律과 同論호이라

第二百十六條 軍人イ 外國이 互相交戰호 時에 本國의 局外中立호는 布告를 違背호는 者는 流二年이며 因호야戰端을 開케호는 者는 死刑에 處호이라

第二百八十二條 軍人イ 外國의 和親을 破호거나 外國에 損害를 加호 所爲를 行호는 者는 役十年이며 因호야 戰端을 開케호는 者는 死刑에 處호이라

일본의 「육군형법」과는 달리 군인의 결당작난과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에 군인들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을미사변에는 이노우에의 건의에 따라 편성된 훈련대의 대대장 참령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등이 가담하였으며, 특히 우범선의 경우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 시해과정에 직접 간여하였다. 그리고 1898년 6월에는 안경수가 중심이 되어 황제를 위협하여 황태자가 국정을 대리하는 쿠데타 모의에 친위 제1연대장 김재은, 친위 제3대대장 이남희, 시위 제2대대장 이종림, 전 시위 제2대대 중대장 이용한 등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이남희가 모의를 밀고함으로써 실패하고, 주모자 안경수는 진고개의 일본인 조계지로 도주하였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⁷⁸⁾

한편 갑오개혁 실패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박영효가 1898년 10월 그의 측근인 이규완, 황철을 조선에 파견하여 정변을 모의하는 계획에서도 군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포섭된 위관 신창희, 이민직 등은 정변 당일 날 부하병사들을 이끌고 대궐에 진입, 미리 준비한 폭약을 터트리고 궁궐 내 각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이들이 밀고하여 정변 모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⁷⁹⁾ 이와 같이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기에 걸쳐 각종 정변모의에 군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무력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정변의 중심에는 박영효와 같이 망명한 개화파세력과 그 배후에 일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육군법률」에는 군인들의 결당작난과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군법률」 제229조는 일본의 「육군형법」과 「대명률」, 「대전회통」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으로, 출사(出使)한 군인이 각 지방에

78) 『高宗實錄』 卷37, 1898년 8월 14일; 『官報』 제1030호, 1898년 8월 17일, 彙報; 『官報』, 제1031호, 1898년 8월 18일, 彙報.

79) 『高宗實錄』 卷40, 1900년 2월 9일; 『官報』 제1496호, 1900년 2월 13일, 彙報.

있어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사법관이 아닌데 소송을 수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⁸⁰⁾ 갑오개혁 이후 통상적으로 지방관이 겸임하던 군사지휘관이 독립된 직책으로 바뀌면서, 지방에 군사지휘관과 지방관이 양립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업무관할 측면에서 이들 간의 마찰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에 1896년 9월에 군부에서는 진위대와 지방대에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 ① 대대장은 한 곳의 사무를 주관하는 영관이나 관찰사와는 공문 왕복 시 대등하게 조회하고 각 군수에게는 훈령·지령을 하며, 대대장을 제외한 각 위관은 관찰사에게 칙임관 또는 주임관에 따라 예를 넉넉하게 하여 공경히 대하고 각 지방군수에게는 평등한 예를 따르고
- ② 하사와 병졸은 각 지방 칙·주임관에게 일체 경례하여 본대 영·위관에게 공경히 대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하고
- ③ 군인이라도 혹 소송으로 인해 재판을 할 때에는 지방 재판소에서 불러서 신문을 하기를 평민과 다름이 없게 하기로 각 지방 관원에게 훈령하였으니, 본대에서 이 사연을 알고 지방관이 소송으로 인해 병정을 불러가는 것을 월권으로 알지 말고
- ④ 병졸이 혹 군기를 가지고 무리를 모아 행동하는 자는 우두머리를 찾아 종으로 죽이고
- ⑤ 하사와 병정들이 마을에 한가히 돌아다니는 것을 엄히 금하고 다만 공사로 인해 밖에 출입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사유를 자세히 말하여 공문을 주고
- ⑥ 하사와 병정이 관가에 공문을 가지지 않고 밖에 나가 마을에 폐단을 끼치면 그 사람은 먼저 파면하고 군법으로 증치하고, 다만 이 이상의 법을 범한 병정들을 본대에서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관에게 먼저 잡힐 때에는 본 지방 재판소에 가두고 본대에 공문하거든 본대에서는 즉시 파면하고 재판소로 통첩하고

80) 第二百二十九條 出便 軍人이 各地方 에 在 리 他人의 職事를 干預ᄃᆞᆫ 거나 司法官이 아닌(四) 訴訟을 受理ᄃᆞᆫ 者는 笞八十이며 因ᄃᆞᆫ 所犯이 該ᄃᆞᆫ 者는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ᄃᆞᆫ 이라

- ⑦ 군병 등이 혹 무리를 믿고 남의 산에 억지로 장사를 지내거나(勒葬), 남의 묘를 억지로 파거나 부녀를 겁간하거나 사사로이 빚을 억지로 받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시정에서 억지로 팔거든(抑賣) 본대에서는 우선 파면하고 지방 재판소로 보내 판결하게 하고 혹 지방 관에게 먼저 잡힐 때에는 6조의 규칙을 따라 다스리고
- ⑧ 하사와 병졸 가운데 혹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술에 취하거나 잡계와 악습이 있거든 범한바 경중에 따라 등급을 짐작하되 중법은 6조, 7조 규칙을 따라 쓰라고 하였더라.⁸¹⁾

군부는 위의 내용과 같이 지방관과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의 군사지휘관의 관계를 설정하고, 군인과 관련된 소송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들 간의 분규를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위대 향관이 업무수행차 관찰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관찰사에게 ‘사또’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비가 붙을 정도로 지방관과 군사지휘관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⁸²⁾ 특히 이들 양자 간의 마찰은 군인이 민사, 즉 민송(民訟)에 개입하여 지방관의 업무 관할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98년 5월에는 “백성 다스리는 일과 군정 간섭하는 일이 각기 맡은 관원이 있으니 지방관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아 병정과 백성이 서로 싸워 군대와 각 군이 서로 갈등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⁸³⁾라는 내용의 훈령이 군부에서 각 진위대와 각 지방대에 하달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군인이 민사, 즉 민송에 개입하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이 타인의 직사에 간섭한 사례로 1901년 2월 19일자 『관보』에 실린 참위 목영석의 형사처벌 기록을 들 수 있다. 판결 기록에 따르면 진위 제4연대 제2대대 소대장 목영석 참위는 민인(民人) 신지송으로부터 김경홍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81) 『독립신문』 1896년 9월 17일 잡보.

82) 『독립신문』 1899년 4월 28일 잡보.

83) 『독립신문』 1898년 5월 24일 각부신문.

받았고, 따라서 목영석 참위는 김경홍을 여점(旅店)으로 불러들여 3차례 대질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육군법원에서는 군인이 민송에 간섭하여 민인을 불러와서 대질하였다 하여 「육군법률」 제229조에 근거하여 태80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1901년 11월 4일자 『관보』에 실린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민하식 참위의 사례에 따르면 충주 사천에 거주하는 유정환에게 사적으로 감정이 있어 민하식 참위가 병정 박영신, 구태봉을 시켜 유정환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사사로이 민인을 체포하였다. 이에 육군법원에서는 마음대로 병사를 보내어 민인을 체포하는 것은 월권한 죄가 있다고 하여 「육군법률」 제229조에 의해 태 80의 판결을 내렸다.

군인이 타인의 직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대부분 군인이 사법관이 아님에도 민송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범죄는 중앙군보다는 특히 지방에 주둔하는 지방대나 진위대 소속의 군인에게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갑오개혁 이전에 지방관이 군사 지휘관을 겸임하면서 지방의 사법업무를 담당했던 관례와 의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갑오개혁 당시 지방군사조직이 혁파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원칙적으로 군사지휘관을 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지면서 지방 사법업무는 지방관의 고유한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민송의 수요에 비해 전문화된 사법관들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방관에게 여전히 사법업무가 위임되는 상황에서 ‘지방관=군사지휘관=지방사법관’이라는 갑오개혁 이전의 관례와 의식이 남아있어 군인이 민송에 개입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이다.⁸⁴⁾

「육군법률」 제229조와 더불어 군무상의 문서에 증감하거나 오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제254조와 제308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⁵⁾ 이 두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궐 및 각 파수지에서 경계근무를

84) 도면회, 앞의 논문, 130~142쪽 참조.

85) 第二百五十四條 軍人이 上官에게 稟報 訛 文書나 磨鍊 訛 文書에 失鑿 者는 笞五十이며 其他文書에는 笞三十에 處고 因하야 人員錢糧數目을 錯亂 者는 笞一百에 處되 未施行者는 各히 二等을 減이라
第三百八條 軍人이 軍務上의 制書를 增減者는 役終身에 處되 知情하고 聽行者

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직무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관보』의 「사법」란에 실린 군인들의 범죄행위 처벌과 정에서 제254조와 제308조가 빈번히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이와 관련된 군인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육군법률」상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⁸⁶⁾

者는 同罪호고 但行移傳寫에失誤호 者는 笞八十이며 官文書를 增減호 者는 笞六十에 處호되 錢糧이나 人員에 增減이 寔 者는 禁獄三個月이며 未施行호 者는 各히 三等을 減함이라

86) 1900년 9월 「육군법률」 반포이후 1907년 8월 군대해산까지 『관보』의 「사법」란에 실린 군인의사법처리결과 중에서 「육군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은 약 110건 정도이다. 이 사건들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육군법률」 각 조항의 빈도수를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 항	빈 도 수	조 항 내 용	비 고
제18조	80회 이상	칙·주임관 拿致방법	법례
제135조	35회 이상	數罪가 동시에 俱發할 경우	죄례
제234조	20회 이상	檢束을 不嚴	율례
제99조	10회 이상	笞刑 정의	형례
제95조		死刑 정의	형례
제130조		범죄가 公罪와 관련있을 경우	형례
제308조		軍務上의 制書를 增減	율례
제221조		信地를 擅離	율례
제251조		報告 不嚴	율례
제254조		申報호는 文書나 磨勘호는 文書에 失錯	율례
제229조	5회 이상	各地方에 在호야 他人의 職事를 干預	율례
제294조		同等이나下 等된 者를 毆傷	율례
제212조		制書를 奉호야 違	율례

표를 살펴보면 「육군법률」의 제1편 법례, 제2편 죄례, 제3편 형례에 해당되는 제18조, 제135조, 제99조, 제95조, 제130조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다고 「육군법률」의 법례, 죄례, 형례편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일반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군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또는 「육군법률」 적용상의 절차 등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육군법률」의 각 조항의 적용빈도를 통해 당시 군인의 범죄행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명시한 율례편의 조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육군법률」 율례편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34조, 제308조, 제221조, 제251조, 제254조, 제229조, 제294조, 제212조로 행동을 단속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시한 제234조, 제221조, 제251조는 군인의 직무특성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인이 군무상의 문서에 오기하여 처벌받는 사례로는 1900년 4월 4일 『관보』에 실린 참위 조홍련의 판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종성대 참위 조홍련은 무산군에 주둔했을 당시 군수와 관련된 문서에 병액(兵額)과 전수(錢數)를 고쳐서 작성했고, 대대장 서리로 근무할 때 해당 문서를 결재하여 군부로 넘겼다. 그리고 군부는 해당문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대 운영비가 약 2천5백냥이 초과되어 지급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육군법원은 「육군법률」 제30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금옥 2개월의 형량을 내렸다. 또한 1902년 10월 21일 『관보』에 기록된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前 향관 이근상의 경우 이근상이 향관직에 있을 때 부대 경비를 기록하는 문서에 보속비(保續費)를 원래 수치보다 넘게 계산하고 거둬 기록하여 「육군법률」 제308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금옥 2개월의 형량을 판결받았다.

이 당시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하여 처벌받는 사례는 중앙군보다는 지방대·진위대와 같은 지방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한제국기 재정운영 방식은 지방재정을 해체하고 모든 재정을 중앙으로 집결시키는 형태였으나 지방군인 진위대의 경우는 부대경비의 일부만 군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갑오개혁 이전과 동일하게 지방의 여러 군(郡)들이 직접 해당 부대로 납부하고 있었다.⁸⁷⁾ 따라서 중앙군보다는 지방군에서 부대 운영 경비를 기록한 문서의 경우 위조를 하거나 오기를 하기 더 용이하였으며 따라서 지방군인들이 문서를 고의로 조작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요컨대 「육군법률」은 「육군징벌령」과 마찬가지로 군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으로서 제정·활용되었다. 그러나 1881년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상당 부분 수용한 조선의 「육군징벌령」과는 달리 「육군법률」은

하지만 제308조, 제254조, 제229조 등은 군인이 직무특성과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87)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의 증설과 군부예산의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5~44쪽.

대한제국기 자주적인 군사법제도의 수립노력의 한 결과물로서, 일본의 「육군형법」을 일부 수용하였지만 그 구조나 내용은 일본의 「육군형법」과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군법률」은 군인이 정변에 가담해 이에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황제권의 안정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당작난과 외국에 부화(附和)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군인의 민사간여, 군무상 문서의 증감에 대한 조항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육군법률」은 자주독립 국가자 황제국이라는 대한제국의 특성과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군사법 법령임을 알 수 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8월 26일에 칙령 제13호로 「군부소관 관청관계 및 조규를 폐지하는 건」이 하달되면서 1900년 칙령 제34호로 「육군감옥관계」, 1901년 칙령 제2호 및 제3호로 「육군법원처무규칙」·「육군감옥규칙」, 1904년에는 조칙으로 「육군법원관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육군법률」의 적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행정기관의 관제를 명시한 제도들이 모두 폐지되면서 「육군법률」도 자연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맺음말

1901년 5월 21일자 『관보』에는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이천 분점(利川分站)의 병사 임상룡이 이칠손과 함께 민인 이정을 구타 및 살상하고, 민가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실렸다. 이에 따르면 간범(干犯) 이칠손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옥사에서 죽어 따로 사건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며, 수범(手犯) 임상룡은 「육군법률」에 근거하여 포살(砲殺)형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이 두 병사의 소대장 또한 경계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 하여 해당 소대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 3주일 중근신 처벌을 내렸다.⁸⁸⁾ 이 사건은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의 운영형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군징계령과 군형법의 관계로서 서로 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된 「육군징벌령」은 1896년을 전후하여 지방제도 개혁으로 인한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 을미의병의 봉기 및 친위·진위대로 구분되는 전국적인 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해산된 지방군사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자 반포된 법령이었다. 「육군징벌령」이 반포되기까지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 당시 국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한 개화파세력 중심의 내각이 「육군징벌령」 반포의 주체가 되어 신속하게 의병봉기와 같은 불안한 정치적 국면을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육군징벌령」은 메이지 14년 일본의 「육군징벌령」과 구조 및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조선의 「육군징벌령」이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육군징벌령」과는 달리 1896년의 「육군징벌령」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범위가 넓고 태벌과 같은 신체적 제재의 벌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군인의 ‘통제’를 위한 기능이 일본의 「육군징벌령」보다는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약 2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1900년 9월 14일 법률 제4호로 반포된 「육군법률」은 1897년부터 구본신참의 기치 아래 자주적인 사법제도의 정비노력의 산물 중 하나였다. 「육군법률」은 『대전회통』 및 『대명률』과 같은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한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제가 친총하는 군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군이 재편되고 그 규모가 증대되면서 발생하였던 군인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88) 『官報』 제1892호, 1901년 5월 21일, 彙報.

특히 「육군법률」은 군인이 당을 결성하여 난을 일으키거나 외국에 붙어 쫓는 행위를 엄금함으로써 황제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즉 「육군법률」의 경우 갑오개혁 당시 내각이 주체가 되어 반포한 「육군징벌령」과 비교해 보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복고적·보수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육군법률」은 군인이 민중에 간여하거나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당시 군인들이 빈번하게 일으켰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통제하고자 했다.

이처럼 「육군징벌령」은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군징계령’으로, 「육군법률」은 징계차원으로는 부족한 군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군형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의의는 일본의 지원 아래 개화세력이 추진한 ‘갑오개혁’과 자주독립국이자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 가운데에서 보다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갑오개혁, 대한제국, 군사법, 육군징벌령, 육군법률

<ABSTRACT>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fter the Gabo Reform: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Kim, Hye-young

Military reforms during the Gabo Reform were continued even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with a goal of realizing the slogan “Rich Country, Strong Military (*puguk kangbyŏng*)” and strengthening the imperial power. The reorganized military consisted of the palace guards (*ch'inwidae*) and the imperial guards (*siwidae*) in the capital as well as the regional forces (*chinwidae*) and the local forces (*chibangdae*) in the provinces. The military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in this manner, and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manage and regulate it by modifying military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Yukkun jingbŏllyŏng*) on January 24th, 1896 (Edict No.11)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Yukkun pŏmnyul*) on September 14th, 1900 (Ordinance No.4).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proclaimed in the following context of the dissolution of local military organizations following the reforms in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wide military reorganization. Through the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prevent the dissolved local forces from joining the Resistance (*ũibyŏng*) and to encourage them into joining the newly organized military organization.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actively modeled after its counterpart in Japan (1881), but it aimed for a tighter control over the armed forces as one can see in a wider discretionary power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and the existence of physical punishments.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the military came to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emperor, and it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further to reflect this new status. These changes were accompani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soldiers committing crimes, and it became hard to control such crimes b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alone. Therefore, the imperial government proclaime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which was basically a military criminal law.

The Legal Code was legislated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under the slogan of “New Things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 (*kubon sinch'am*).” It consists of four parts and three hundred seventeen articles. When we compare it to existing legal codes such as Japan’s Army Criminal Code (1881), the Ming Code (*Da Ming lü*), and the Collection of Laws (*Taejŏn hoet’ong*), a few articles in the Legal Code stand out. For example, there is an article that deals with soldiers collaborating with political factions or foreign nations, and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involvement in past coups led by the Enlightenment Faction (*kaehwap’a*). There is also an article on how to punish an officer who acts as a legal authority in provinces.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officers still accepting and dealing with civil lawsuits and some local soldiers even forging military papers in order to embezzle some mone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used as a “disciplinary regulation” that dealt with soldiers’ misdeeds not covered by criminal law, while the Legal Code was used as a “military criminal law” that dealt with soldiers’ crimes that went beyond the scope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n short, they complemented each other in actual operation. We need to analyze them within the bigger context of the Gabo Reform and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order to appreciate fully the historical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m.

Key Word : Gabo Reform, Korean Empire, Military Law,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Legal Code for the Army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

김 선 호*

1. 머리말
2. 비행사단의 병력규모
3. 비행사단의 병력구성
4. 비행사단의 무기현황
5. 비행사단의 무기상태
6.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창설되었다. 그러나 인민군 창설 당시 공군은 창설되지 않았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도 공군은 민족보위성 예하 항공대대 수준이었다. 항공대대는 1948년 말 항공련대로 증편되었고, 1949년 말 항공사단으로 증편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비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참전했다. 개전까지 인민군에서 공군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창설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소련의 각기 다른 정세인식 때문이었다.

사실 비행사단은 인민군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무장력이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인민군 창설이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비행사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는 한편, 계속해서 소련에 공군 창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은 인민군이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소련은 인민군이 강력한 공군과 기갑부대를 함께 보유한다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해협을 건너 대마도, 나아가 사세보까지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¹⁾

하지만 북한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1948년 인민군 창설이후 북한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했다. 북한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과 조선인부대의 입북을 협의하는 한편, 계속해서 소련에 인민군 확장에 필요한 무기지원을 요청했다. 인민군은 내부적으로 항공부대를 증편하고 공군 창설에 필수적인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했다. 그 결과 인민군 항공부대는 정부수립 후 3개월만에 항공련대로 증편되었고, 1년 뒤에는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차대전 이래 현대전의 승패는 각 병종의 연합작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치는가에 달려있었다. 특히 현대전에서 공군의 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였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소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금까지 비행사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비행사단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성과는 없다. 다만, 조선인민군 연구의 일환으로 비행사단에 대한 몇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연구는 비행사단의 무장수준과, 군수충원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비행사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방부에서 진행되어 왔다.²⁾ 이같은 연구경향은 한반도가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96~297쪽.

2) 국방부에서 진행한 북한 공군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다. 국방부의 연구성과는 주로 공식전사에 집대성되었다. 대표적인 공식전사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공군본부 정훈감실, 『空軍史』 제1집, 공군본부, 19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분단된 상황에서 인민군 공군에 대한 연구가 안보에 직결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편찬연구소는 2004년 발간한 『6·25전쟁사』에서 노획문서·구소련문서·미군문서와 기존 연구성과를 망라해 비행사단의 기본편제, 부대주둔지, 비행기 보유현황, 훈련과정을 밝혀냈다.³⁾ 개인 연구자로서는 장준익이 조선인민군 창군과정의 일환으로 북한공군의 창설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⁴⁾ 최완규는 북한 공군의 창설시기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⁵⁾ 김용현은 인민군 형성과정의 일환으로 공군 창설과정을 연구하였다.⁶⁾ 김광수는 노획문서를 바탕으로 비행사단의 편제와 비행기 보유현황, 조종사 보유현황을 밝혀냈다.⁷⁾ 기존연구에서는 비행사단의 창설일, 비행사단의 기본편제, 사단장·부사단장, 조종사 훈련과정, 비행기 보유현황에 대해 밝혀졌다. 기존연구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인민군 공군이 1949년 이후 소련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고 소련비행기를 도입해 급속히 사단규모로 증강하였다. 그 결과 개전 당시 북한 공군은 남한 공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북한 공군은 훈련된 조종사 약 80명으로 극히 부족했고 수준도 떨어졌으며, 항공기는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미 공군이 보유한 제트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⁸⁾

1949년 12월 이후 북한의 조종사와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양성되었고, 1950년 4월부터 소련에서 작전용 항공기가 대거 지원된 것은 사실이다.⁹⁾ 그러나 인민군 공군이 과연 개전당시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창군전사』, 육군본부,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3~296쪽.

4)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34~37; 45~47쪽.

5)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139~176쪽.

6)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4.8, 33~62쪽.

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08, 74쪽.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47쪽; 김광수, 앞의 논문, 74쪽.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4~295쪽.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개전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북한 공군이 궤멸된 이유가 오직 미 공군과의 전력차이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북한 공군의 내부적 요인은 없었을까? 이 글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개전당시 북한 공군이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멸된 내부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통해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을 사실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력은 군사무기체계, 장비, 조직, 전술교리, 군사훈련, 기반시설¹⁰⁾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글은 북한 공군의 전력 중에서 무기체계, 장비,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시점이다. 이 시기는 비행사단이 연대급에서 사단급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다. 특히 1950년 2월 28일 비행사단 대열과에서 생산한 『일보(日報)』를 주자료로 활용하였다.¹¹⁾ 『일보(日報)』에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비행사단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와 신청서, 증명서가 편철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 속에는 전투서열, 전술규정, 인원통계, 무기통계, 인사이동 등 비행사단에서도 ‘비밀’로 분류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북한 공군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서철이다.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유산과 소련의 군사원조가 비행사단 전력에 끼친 영향¹²⁾, 비행사단의 군사훈련내용과 전술교리, 북한 지도부의 전쟁구상과 비행사단 전력의 상관관계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10) 합동참모본부, 『한글용어사전』, 『군사용어해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http://jcs.mil.kr>).

11) 師團대열과, 『일보』, 1950.2.28,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7(이하 『일보』로 줄임).

12)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일부 해명하였다. 김선호, 「북한 공군 창설과정을 통해 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15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2.8.

2. 비행사단의 병력규모

1948년 2월 8일 북한에서는 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인민군 창설직후 북조선로동당은 평양학원 항공대대를 장차 인민군 공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과 동시에 평양학원에서 독립해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었다.¹³⁾ 항공대대는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면서 조선항공대와 통합해 군사학교에서 정규 항공부대로 개편되었다. 조선항공대와 평양학원 항공대대는 민족보위성 항공대대로 통합되어 전투중대·기술중대·교도중대가 되었다.¹⁴⁾ 항공대대의 전력은 소련군이 철수한 1948년 12월 말에 급격히 증강되었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말 철수하면서 인민군에 전폭기 IL-10, 전투기 YAK-9 등 약 100대의 비행기를 인계했다고 알려져 있다.¹⁵⁾ 이를 바탕으로 항공대대는 1948년 11월 1일 항공련대로 증편되었다.¹⁶⁾

정부수립후 북한정부는 본격적으로 인민군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1949년 4월경 김일성은 인민군을 증편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1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인민군 증편에 필요한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였다. 항공사단은 1949년 9월에 편성할 계획이었다. 항공사단은 공격기와 전투기를 각각 43대씩 보유한 2개 항공련대로 구성하며, 간부양성이 가능한 “독립 비행훈련연대”¹⁷⁾를 창설할 예정이었다.¹⁸⁾ 항공사단은 계획보다 3개월 늦어진 1949년 12월에 창설되었다. 이날 항공련대는 항공사단으로 승격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8~699쪽.

14) 김선호, 앞의 논문, 276쪽.

15) 장준익, 앞의 책, 103~104; 131쪽.

16) 기존 연구에서는 항공련대가 1949년 1월에 창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항공련대는 1948년 11월 1일 창설되었다. 김선호, 앞의 논문, 277쪽.

17) 교도연대를 말한다.

18) 「쉬피꼬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49.5.1)」, 바자노프·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69~70쪽;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134~135쪽.

되었다. 항공사단 사단장은 왕련이 맡았고, 부사단장은 이활이 맡았다.¹⁹⁾ 항공사단의 부대명칭은 1950년 1월 17일 “제11비행사단”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되었고, 비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²⁰⁾

현재까지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노획 문서에서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였다. 1950년 2월 28일 비행사단 대열과에서 작성한 『日報』가 그것이다. 이 내부문서를 통해 비행사단의 병력규모를 확인해 보자.

문서에 있는 가장 빠른 통계는 1950년 1월 3일 비행사단의 인원통계이다. 1월 2일까지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603명이었다. 1월 3일 비행사단에는 “신대원” 230명이 “전사”로 편입되었다. 신대원을 포함해서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33명이었다. 신대원을 제외한 구대원 2,603명 중 군관은 531명, 하사관은 608명, 전사는 1,404명이었다.²¹⁾ 1월 25일에도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33명으로 변함없다. 예하 부대의 병력을 살펴보면, 제1기술대대는 677명(23.9%), 제2기술대대는 850명(30%)이었다. 교도연대는 439명(15.5%), 습격기연대는 205명(7.2%), 추격기연대는 203명(7.2%)이었다. 사단본부는 95명(3.4%)이었고, 사단 직속기구에는 총 364명(12.8%)이 배치되었다.²²⁾ 전체 비행사단병력 중 추격기연대에 7%, 습격기연대에 7.2%, 교도연대에 15.5%가 배치되었다. 2개 기술대대에는 사단병력의 53.9%가 배치되었다. 사단병력의 16.2%는 사단본부와 사단 직속부대에 배치되었다. 정리해 보면,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은 기술대대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교도연대에 15.5%가 배치되었고,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는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9쪽; 『(비밀) 개인비행수첩: 최현옥』, 제855군부대,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13E. 이활의 직책은 『개인비행수첩』을 참조했다.

20) 제56추격기연대 참모부, 「번호 및 대호규정에 관하여」(1950.1.17), 제2대대, 『(극비) 상부지시문첩』, 1950.5,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21) 제845부대장, 「일보표」(1950.1.3), 師團대열과, 『日報』.

22) 「人員統計表」(1950.1.25), 師團대열과, 『日報』.

교도연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만 배치되었다.

2월 2일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879명이었다. 1월 25일에 비해 46명이 증가했다. 군관수는 525명으로 1주일전과 동일했다. 하사관은 527명으로 68명이 증가했으며, 병사는 1,827명으로 22명이 감소했다.²³⁾ 보름후의 통계를 보면, 2월 17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인원은 2,935명이었다. 군관은 548명, 하사관은 798명, 병사는 1,540명이었다. 2월 2일에 비해 군관은 23명이 증가했고 하사관은 271명이 증가했으나, 병사는 오히려 287명이 감소했다. 단, 2월 17일 통계에는 2월 2일까지 통계에 없었던 부대가 추가되었다. 새로 편성된 부대는 제3기술대대, 검찰소, 정치보위부였다.²⁴⁾ 2월 17일 시점에 비행사단은 하사관을 대폭 증원하고 하사관과 비슷한 수의 병사를 감축했다. 이는 소련으로부터 비행기 도입이 증가하고 비행훈련이 강화되면서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하사관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행사단의 총병력을 부대별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50년 2월 20일 통계이다. 이 통계는 비행사단의 내부분서 중 예하부대가 모두 망라된 중요한 자료이다.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 각 구분대별 재적인원」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1> 비행사단 각 구분대별 재적인원(1950년 2월 20일 현재)²⁵⁾

구분대 직위	사단 본부	통신 중대	항공 감시소	폭격 장	촬영 소대	야전 우편 소	경비 소대	수리 소	추격 기 연대	습격 기 연대	교도 연대	제1 기술 대대	제2 기술 대대	제3 기술 대대	검찰 소	정치 보위 부	계
군관	68	8	1	1	1	1	1	21	118	141	98	51	32	6	7	42	597
하사관	22	23	1	1	3	5	2	114	85	132	72	175	155	6	2	0	798
병사	12	41	9	14	0	4	12	93	34	131	307	397	462	24	0	0	1,540
계	102	72	11	16	4	10	15	228	237	404	477	623	649	36	9	42	2,935

23) 「人員統計表」(1950.2.2), 師團대열과, 『日報』.

24) 「人員統計表」(1950.2.17), 師團대열과, 『日報』.

25) 제855부대 대열과장 김명재, 「일보표」(1950.2.21), 師團대열과, 『日報』.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2,935명이었다. 2월 2일 총병력 2,879명에 비해 56명이 증가했다. 전체 비행사단병력 중 추격기연대에 8.2%, 습격기연대에 13.8%, 교도연대에 16.2%가 배치되었다. 3개 기술대대에는 사단병력의 44.5%가 배치되었다. 제1기술대대에 21.2%, 제2기술대대에 22.1%가 배치되었다. 제3기술대대는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1.2%만 배치되었다. 사단본부에는 3.5%가 배치되었고, 사단 직속 기구에는 13.5%이 배치되어 사단병력의 17%가 이곳에 배치되었다. 사단 직속기구 중에서는 수리소에 가장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다. 정리해보면,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2월 20일과 1월 25일의 비행사단 총병력을 비교해보자. 제1기술대대는 -54명(677 → 623), 제2기술대대는 -201명(850 → 649), 교도연대는 +38명(439 → 477), 습격기연대는 +199명(205 → 404), 추격기연대는 +34명(203 → 237), 사단본부는 +7명(95 → 102), 사단 직속기구는 +32명(364 → 396)이 증감하였다. 총병력은 1월 25일에 비해 2월 20일이 56명 증가했으므로 총병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병력이 감소한 곳은 제1기술대대와 제2기술대대였다. 이것은 새로 창설된 제3기술대대의 편제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기술대대 병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기술대대의 병력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제3기술대대가 제2기술대대 병력을 기반으로 충원될 것임을 보여준다. 기술대대를 제외한 다른 부대는 모두 조금씩 병력이 증가하였다. 병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대는 습격기연대로 연대병력이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1월 25에는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의 병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 병력의 약 두 배가 되었다. 이것은 개전을 앞두고 군사 목표물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습격기연대의 비중을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행사단 병력을 직위별로 살펴보자. 군관은 총 597명(20.3%), 하사관은 총 798명(27.2%), 병사는 총 1,540명(52.5%)이었다.

비행사단 병력의 절반 이상은 병사였다. 부대별 군관수를 보면, 군관이 많이 배치된 곳은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교도연대로, 전체군관의 60%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전투부대와 교도부대에 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조종사와 항공기술자를 양성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항공감시소·폭격장·촬영소대·야전우편소·경비소대의 경우 부대장 외에는 군관이 없었다. 부대별 하사관수를 보면, 하사관은 기술대대에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습격기연대에는 추격기연대보다 많은 하사관이 배치되었는데, 습격기연대의 총병력이 추격기연대보다 많았기 때문에 두 부대의 하사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다음으로 수리소와 교도연대에 하사관이 많이 배치되었다. 유일하게 정치보위부에만 하사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부대별 하사관수를 보면, 기술부대(2개 기술대대·수리소)에 하사관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사관의 91.8%가 전투부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기술부대(2개 기술대대·수리소)·교도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본부와 사단직속기구에는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부대별 병사수를 보면, 병사가 많이 배치된 곳은 제2기술대대·제1기술대대·교도연대였다. 전체 병사의 75.7%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기술부대와 조종사·항공기술자를 양성하는 교도부대에 병사들을 집중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촬영소대·검찰소·정치보위부에는 병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직위별로 볼 때 교도부대에는 군관·하사관·병사가 직위마다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북한 지도부가 항공병력 육성에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부대별 직위구성을 보면, 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는 군관 > 하사관 > 병사순으로 구성되었다. 전투부대와 사단지휘부에 군관을 집중 배치하고, 병사는 최소인원만 배치했다. 제1기술대대·제2기술대대·통신중대는 병사 > 하사관 > 군관순으로 구성되었다. 기술부대에는 경비업무를 위해 병사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비행기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하사관을 많이 배치했다. 교도연대는 병사 > 군관 > 하사관순으로 편성되었고, 수리소는 하사관 > 병사 > 군관순으로 편성되었다. 비행학생과 기술

학생을 교육하는 교도연대에는 학생(병사)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교육을 위해 군관을 많이 배치하였다. 수리소에는 비행기 수리작업에 필요한 하사관을 가장 많이 배치했다. 정치보위부는 군관으로만 편성되었고, 검찰소와 촬영소대는 군관·하사관으로만 편성되었다. 제3기술대대는 2월 20일 시점에서야 겨우 병력충원이 시작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사단의 총인원은 1950년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월 22일 통계를 보면 총인원이 갑자기 4,135명으로 급증한다. 비행사단 대열과장 김명재(金明載)가 작성한 비밀문서인 「隊列人員證明書」에 따르면, 1950년 2월 22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가운데 2,935명은 기존병력이었다. 기존병력을 직위·직종별로 보면, 고급군관 2명, 군관 295명, 하사 및 전사 1,867명, 학생 245명, 비행사 180명, 기수 346명 등 총 2,935명이었다. 이 인원은 2월 20일 현재 사단 총인원과 같다. 2월 22일 통계에는 이와 별도로 “신입대원”이란 항목으로 1,200명이 편입되어 있다.²⁶⁾ 2월 21일 비행사단에서 1,200명의 신병을 충원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군 총참모부는 1950년 6월 25일 현재 비행사단의 총병력을 2,80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²⁷⁾ 이는 2월에 비행사단에 입대한 신병 1,200명을 제외한 통계로 보인다. 위에서 정확히 확인된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1950년 2월 22일까지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인원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이다. 이 중 2,935명은 기간병력이었고, 1,200명은 2월 21일에 편입된 신병이었다. 1950년 6월 25일자 소련군 총참모부의 정보를 고려해 볼 때 개전 직전까지 기간병력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통계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비행사단은

26) 朝鮮人民軍 855軍部隊 隊列科長 金明載, 「(비밀) 隊列人員證明書」(1950.2.22), 師團대열과, 『日報』.

27)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12.3),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1950년 2월 22일 현재 180명의 비행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개전직전 북한 공군의 비행사를 68명에서 80명으로 추정해왔다.²⁸⁾ 1949년 6월 22일 현재 항공련대에서 실전이 가능한 비행사는 11명이었다.²⁹⁾ 1949년 9월 15일 항공련대는 전투기 조종교육을 마친 조종사 26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150명의 조종사가 교육을 받고 있었고, 1949년 10월이면 조종사 50명이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³⁰⁾ 결국 훈련중이던 150명의 조종사가 1950년 2월 22일까지 조종교육을 완료해 180명의 비행사가 양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 150명의 훈련 기간은 1949년 6월부터 계산해도 약 8개월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기록상 확인되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은 4,135명이었다. 이 중 2,935명은 기간병력이었고, 1,200명은 1950년 2월 22일에 편입된 신병이었다. 비행사단은 1950년 2월 22일까지 180명의 비행사를 확보했다.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비행사단은 2월 2~17일 사이에 제3기술대대, 검찰소, 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개전직전 병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대는 습격기연대였는데, 이는 개전을 앞두고 폭격임무를 수행하는 습격기의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병력을 직위별로 보면, 군관은 20.3%, 하사관은 27.2%, 병사는 52.5%였다. 군관의 60%는 전투부대와 교도부대에 집중 배치해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항공병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하사관의 91.8%는 전투부대·기술부대·교도부대에 배치해 비행기술원·통신기술원·교육하사관으로 충원하였다. 병사의 75.7%는 기술부대와 교도부대에 집중 배치해 비행학생·기술학생·비행기술원·통신기술원·보병으로 충원하였다. 부대별 직위구성을 보면, 추격기연대·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5), 747쪽; 김광수, 앞의 논문, 74쪽.

29) 「쉬띠꼬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30) 「주북한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3쪽.

습격기연대·사단본부에는 군관을 집중배치하고, 병사는 필수인원만 배치했다. 기술부대에는 병사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실무를 담당할 기술하사관을 많이 배치했다. 교도연대에는 학생(병사)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교육을 위해 군관을 많이 배치했다.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을 국군 공군의 병력구성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군 공군의 병력구성을 보면, 1950년 6월 25일 당일 장교 242명, 사병(하사관 포함) 1,655명으로 총 1,897명이었다.³¹⁾ 개전까지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은 군관 597명, 사병(하사관·병사·신병 포함) 3,538명으로 총 4,135명이었다. 국군의 사병대비 장교비율은 14.6%, 비행사단의 사병대비 장교비율은 16.9%로 신병 1,200명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의 장교비율이 높았다. 비행사단의 장교는 국군의 2.5배였고, 사병은 2.1배였다. 국군에 비해 사병보다 장교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비행사단은 국군 공군에 비해 평균 약 2.2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공격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적군 대비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비행사단의 병력구성

다음으로 비행사단의 간부·하사관·병사가 병종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필자는 노획문서에서 비행사단의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와 「하사·병사인원 병종별 통계표」를 발견했다. 이 문서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 중 비행사단의 병력구성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비행사단의 간부·하사·전사인원이 부대별·병종별로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의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31) 공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213쪽.

〈표 2〉 비행사단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1950년 1월 28일 현재)³²⁾

병종별 구분대별	참 모			보 병			기 술			포 병			문 화			통 신			후 방			비 행			계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부 족	편 제	현 재	현 재
사단본부	25	13	12	10	7	3	14	10	4	4	2	2	19	13	6	26	21	5	14	8	6	6	3	3	118	77	41
습격기1연대	14	3	11	0	0	0	72	64	8	41	13	28	9	4	5	0	0	0	1	0	1	41	34	7	178	118	60
습격기2연대	14	0	14	0	0	0	72	5	67	41	0	41	9	0	9	0	0	0	1	0	1	41	0	41	178	5	173
추격기연대	14	5	9	0	0	0	72	65	7	32	8	24	9	3	6	0	0	0	1	0	1	41	34	7	169	115	54
교도연대	18	2	16	3	0	3	64	55	9	5	4	1	31	13	18	0	0	0	1	0	1	30	18	12	152	92	60
제1기술대대	2	1	1	20	10	10	0	0	0	1	1	0	11	6	5	3	0	3	31	16	15	0	0	0	68	34	34
제2기술대대	2	2	0	20	11	9	0	0	0	1	0	1	11	6	5	3	0	3	31	16	15	0	0	0	68	35	33
제3기술대대	2	0	2	20	0	20	0	0	0	1	0	1	11	0	11	3	0	3	31	0	31	0	0	0	68	0	68
수리소	1	0	1	8	3	5	34	12	22	1	1	0	5	2	6	0	0	0	2	1	1	0	0	0	51	19	32
기상대	0	0	0	12	9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9	3
합계	92	26	66	93	40	53	328	211	117	127	29	98	115	47	68	35	21	14	113	41	72	159	89	70	1,062	504	558

※ 군관 교·강습생 11명과 번역원 10명은 인원에서 제외하였음.

비행사단의 간부는 참모·보병·기술·포병·문화·통신·후방·비행 병과로 구성되었다. 간부의 편제인원은 1,062명이었으나 현재인원은 504명(군관 교·강습생과 번역원 21명 제외)이었다. 편제상 간부의 47.5%만 충원된 상태였다. 부대별로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을 비율순으로 보면, 기상대는 75%, 추격기연대는 68.0%, 습격기1연대는 66.3%, 사단본부는 65.3%, 제2기술대대는 50.7%, 제1기술대대는 49.3%, 수리소는 37.3%가 배치된 상태였다. 전투수행에 필수적인 기상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에 편제인원의 65% 이상을 충원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는 편제인원의 약 60%를 충원했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제1·2기술대대도 약 50%를 충원했다. 제3기술대대는 편제상 간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고, 습격기2연대는 2.8%만 배치

32) 「간부부족 병종별 통계표」(1950.1.28), 師團대열과, 『日報』.

되었다. 이는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가 편성되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대별로 배치된 간부수를 비교해보면, 습격기1연대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추격기연대에 115명, 교도연대에 92명, 사단본부에 77명, 제2기술대대에 35명, 제1기술대대에 34명, 수리소에 19명, 기상대에 9명, 습격기2연대에 5명이 배치되었다. 제3기술대대에는 한 명의 간부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투부대인 습격기1연대·추격기연대와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에 많은 간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사단의 지휘기관인 사단본부에도 다수의 간부들이 배치되었다.

간부들의 편제인원과 현재인원을 병종별로 살펴보자.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을 비율순으로 보면, 기술간부가 64.1%, 통신간부가 60%, 비행간부가 56%, 보병간부가 43%, 문화간부가 40.9%, 후방간부가 36.3%, 참모간부가 28.3%, 포병간부가 22.8% 배치된 상태였다. 기술·통신·비행간부는 50% 이상 충원되었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50% 미만이 충원되었다. 전문항공지식이 필요한 기술·통신·비행간부를 먼저 충원해 놓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유사시 다른 부문에서 충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시점까지도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병종별로 배치된 간부수를 보면, 기술간부가 211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비행간부가 89명, 문화간부가 47명, 후방간부가 41명, 보병간부가 40명, 포병간부가 29명, 참모간부가 26명, 통신간부가 21명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비행사단 하사·병사의 병종별 편성을 살펴보자. 1950년 1월 28일 현재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비행사단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1950년 1월 28일 현재)³³⁾

병종별	구분대별	사단본부 및 직속대			수리소			습격기 2개연대			추격기연대			교도연대			3개 기술대대			합계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정수	현수	부 족수
비행학생	하사													0	34	+34				0	34	+34
	병사													196	179	17				196	179	17
	계													196	213	+17				196	213	+17
기술학생	하사													0	0	0				0	0	0
	병사													180	127	53				180	127	53
	계													180	127	53				180	127	53
기술원	하사	24	6	18	135	47	88	270	86	184	108	66	42	100	0	100				637	205	432
	병사	0	4	+4	40	152	+112	0	64	+64	0	15	+15							40	235	+195
	계	24	10	14	175	199	+24	270	150	120	108	81	27	100	0	100				677	440	237
통신 기술원	하사	120	13	107													69	37	32	189	50	139
	병사	60	53	7													36	38	+2	96	91	5
	계	180	66	114													105	75	30	285	141	144
보병	하사	60	10	50	11	5	6	36	11	25	15	2	13	13	2	11	556	180	376	691	210	481
	병사	34	65	+31	36	13	23	0	34	+34	0	3	+3	0	7	+7	1,365	1,093	272	1,435	1,215	220
	계	94	75	19	47	18	29	36	45	+9	15	5	10	13	9	4	1,921	1,273	648	2,126	1,425	701
합계	하사	204	29	175	146	52	94	306	97	209	123	68	55	113	36	77	625	217	408	1,517	499	1,018
	병사	94	122	+28	76	165	+89	0	98	+98	0	18	+18	376	313	63	1,401	1,131	270	1,947	1,847	100
	계	298	151	147	222	217	5	306	195	111	123	86	37	489	349	140	2,026	1,348	678	3,464	2,346	1,118

비행사단 하사·병사들의 병종은 비행학생, 기술학생, 기술원, 통신기술원,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간부들의 병종과 비교해보면, 비행·기술·통신·보병병과에는 간부와 함께 하사관·병사들도 배치되었다. 그러나 참모·포병·문화·후방병과는 간부로만 구성되었다.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 하사·병사는 편제인원의 67.7%(2,346명)가 충원된 상태였다. 같은 날 비행사단 간부는 편제인원의 47.5%가 충원되었으므로, 하사·병사의 충원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부대별 하사·병사의 편제인원과 현재인원을 비교해 보자. 충원비율을 보면, 수리소 97.7%, 추격기연대·교도연대 70%, 2개 습격기연대 63.7%, 사단본부 및 직속대 50.5%가 충원된 상태였다. 비행사단 수리소는 거의

33) 「간부부족 병종별 통계표」(1950.1.28), 師團대열과, 『日報』.

완편되었고, 추격기연대와 교도연대의 충원비율도 70%에 달하였다.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원비율이 낮은 것은 1개 연대가 1950년 1월에 신편되었기 때문이다. 사단본부 및 직속대는 편제인원의 절반만 충원된 상태였다. 편제인원을 직위별로 살펴보자. 사단본부 및 직속대, 수리소, 2개 습격기련대, 추격기련대는 병사보다 하사관을 더 많이 편제하였다. 특히, 2개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에는 편제상 하사로만 편성할 계획이었다. 전투부대는 기술원과 통신기술원으로 구성해 전투비행과 전투기수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교도련대와 3개 기술대대는 하사관보다 병사를 더 많이 편제하였다. 특히 교도련대의 병사는 대부분 비행학생·기술학생으로 편성해 항공병력을 양성하고자 했고, 3개 기술대대의 병사는 대부분 보병으로 편성해 비행시설과 기지를 방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부대별 현재인원을 비교해 보자. 총병력 2,346명 중 1,349명이 3개 기술대대에 배치되어 하사·병사의 57.5%가 여기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력은 교도련대에 349명(14.9%), 수리소에 217명(9.2%), 2개 습격기련대에 195명(8.3%),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51명(6.4%), 추격기련대에 86명(3.7%)이 배치되었다. 기술대대·교도연대·사단수리소에 하사·병사의 대부분이 배치되었고, 전투부대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는 최소한의 경비병력만 배치되었다. 부대별 현재인원을 직위별로 비교해 보면, 하사관은 3개 기술대대에 217명, 습격기련대에 97명, 추격기련대에 68명, 수리소에 52명, 교도련대에 36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29명이 배치되었다. 병사는 3개 기술대대에 1,131명이 배치되어 병사의 61.2%가 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사는 교도련대에 313명, 수리소에 165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22명, 2개 습격기련대에 98명, 추격기련대에 18명이 배치되었다. 하사관은 각 부대에 비교적 고루 배치되었다. 병사는 3개 기술대대와 교도련대에 집중 배치되었고,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에는 소수만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의 현재인원을 병과별로 살펴보자. 비행학생은 원래 하사관

없이 병사로만 편제했으나, 실제로는 하사관 34명이 배치되었고, 병사는 편제인원보다 9%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비행학생은 비행사단 부대 중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다. 기술학생은 하사관 없이 병사로만 편제했고, 실제로도 병사 127명만 배치되어 편제인원보다 30% 부족했다. 기술학생도 비행사단 부대 중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다. 기술원은 하사관이 편제인원보다 68% 부족했고, 병사가 587% 많이 배치되었다. 기술원은 수리소에 19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고, 다음으로 2개 습격기연대에 150명, 추격기련대에 81명,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0명이 배치되었다. 교도련대와 3개 기술대대에는 기술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통신기술원은 하사관과 병사 모두 편제인원보다 7%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통신기술원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114명, 3개 기술대대에 75명이 배치되었다. 수리소, 2개 습격기련대, 추격기련대, 교도대대에는 통신기술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보병은 하사관이 편제인원보다 70% 부족했고, 병사는 15% 부족하게 배치되었다. 특히 3개 기술대대에 보병의 89%(1,273명)가 집중 배치되었다. 나머지 병력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 75명, 2개 습격기련대에 45명, 수리소에 18명, 교도련대에 9명, 추격기련대에 5명이 배치되었다. 보병은 비행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결국, 비행학생과 기술학생은 교도련대에만 배치되었고, 편제계획과 달리 비행학생에 하사관을 일부 배치해 조종사로 양성하고자 했다. 기술원은 원래 대부분 하사관으로 충원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병사가 더 많이 충원되었다. 기술원은 대부분 수리소·습격기연대·추격기연대에 배치되었다. 통신기술원은 하사관이 74% 부족했고, 사단본부 및 직속대와 기술대대에만 배치되었다. 보병은 89%가 기술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간부인원 병종별 통계표」와 「하사·병사 병종별 통계표」의 인원을 종합해보자. 1950년 1월 28일 현재 비행사단의 편제인원은 총 4,526명이었다. 이 중 간부는 1,062명, 하사·병사는 3,464명이었다. 비행사단의 현재인원은 총 2,850명이었다. 이 중 간부는 504명,

하사·병사는 2,346명이었다. 편제인원 대비 현재인원의 비율을 보면, 1월 28일까지 비행사단은 편제인원의 63%만 충원된 상태였다. 간부는 47%, 하사·병사는 68%가 충원되었다. 간부는 하사·병사에 비해 절반도 충원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행사단의 창설이 3개월 동안 지연되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창설이 지연된 이유가 사단편성에 필요한 병력 부족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창설한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도 비행사단은 완편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부부족문제는 심각했다. 기록상 확인되는 비행사단의 최대병력은 4,135명(2월 22일 현재)이었다. 비행사단의 총병력은 편제인원 4,526명에 비해 391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2월 22일 충원된 1,200명은 신병이었으므로 이들을 몇 개월 만에 정규군으로 양성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53%의 간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완편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행사단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편제인원을 충원하지 못하였고, 병력의 29%는 배치된지 4개월밖에 안된 신병이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병력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대별 현재인원을 보면, 전투수행에 필수적인 기상대·추격기연대·습격기연대·사단본부는 편제인원의 65% 이상을 충원했다.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는 약 60%를 충원했고,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제1·2기술대대는 약 50%를 충원했다.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가 창설된지 얼마되지 않아 간부가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개 부대는 개전 후에도 정상적인 부대 운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대별 간부배치를 보면, 간부는 전투부대인 습격기1연대·추격기연대와 항공병력을 육성하는 교도연대에 주로 배치되었다. 기술·통신·비행간부는 50% 이상 충원되었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50% 미만이 충원되었다. 전문항공지식이 필요한 기술·통신·비행간부를 먼저 충원해 놓고, 보병·문화·후방·참모·포병간부는 유사시 다른 부문에서 충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1월 28일 시점까지도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다. 간부병종을 보면 기술간부와 비행간부가 다른

병종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개전에 대비해 기술간부와 비행간부를 집중 배치해 기술원과 비행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비행사단의 비행·기술·통신·보병병종에는 간부·하사관·병사가 모두 배치되었다. 그러나 참모·포병·문화·후방병종은 간부로만 구성되었고, 하사관·병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1950년 1월 28일 현재 간부는 편제인원의 47.5%가 충원되었음에 비해 하사·병사는 편제인원의 67.7%가 충원되었다. 부대별 하사·병사의 현재인원을 보면, 비행사단 수리소는 거의 완편되었고, 추격기연대와 교도연대의 충원비율도 70%에 달하였다. 사단본부 및 직속대는 편제인원의 절반만 충원된 상태였다. 하사·병사의 대부분은 기술대대·교도연대·사단수리소에 배치되었고, 전투부대와 사단본부 및 직속대에는 최소한의 경비병력만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은 편제 계획과 달리 비행학생으로 하사관을 일부 배치했고, 기술원도 원래 하사관으로 충원하고자 했으나 병사가 더 많이 충원되었다. 통신기술원도 편제 인원보다 하사관이 적게 배치되었다. 원래 기술원·통신기술원으로 배치하려던 하사관을 개전에 대비해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학생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병의 89%는 기술대대에 배치되었고, 사단 병종 중 유일하게 모든 부대에 배치되었다. 비행사단의 보병은 대부분 경비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4. 비행사단의 무기현황

다음으로 비행사단의 무기현황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비행사단의 무기현황은 구소련 문서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가 밝혀졌다. 1949년 6월 22일 현재 항공편대는 총 65대의 전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투기가 48대와 훈련용 전투기가 17대였다. 반면에 실전이 가능한 비행사는 11명뿐이었다. 쉬띠코프의 평가에 따르면, 인민군 공군의 전력은 전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³⁴⁾ 1949년 9월 15일 주북한 소련대사 쉬띠코프는 인민군의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공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949년 8월 1일 현재 인민군 공군에는 “비행훈련연대”³⁵⁾가 있으며, 2개 연대로 구성된 “혼성비행사단”의 편성이 계획되어 있었다. 공군은 현재 총 74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종류별로 보면, 추격기(YAK-9) 24대, 습격기(IL-10) 24대, 훈련과 전투 겸용 비행기(Uyak & Uil) 18대, 훈련기(YAK-18)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은 전투기 조종교육을 완료한 조종사 26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50명의 조종사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10월이면 전투기 조종이 가능한 조종사 50명이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³⁶⁾ 항공련대시절 공군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74대였다. 그리고, 1949년 6월 소련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군사장비 중에는 비행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이 제공하기로 한 비행기는 총 90대였다. 종류별로 보면, IL-10습격기 30대, YAK-9추격기 30대, YAK-18폭격기 16대, Uyak & Uil 10대, PO-2훈련기 4대였다.³⁷⁾

필자는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노획문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행사단 내부문서에서 무기·기재현황을 기록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먼저, 1950년 1월 3일 현재 비행사단의 무기·기재 보유현황을 살펴보자. 비행사단이 창설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4) 「쉬띠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35) 항공련대를 말한다.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2쪽.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7쪽.

〈표 4〉 비행사단 무기·기재 보유현황(1950년 1월 3일 현재)³⁸⁾

병기명칭		보총	자동총	경기관총	권총(TT)	권총(나간)	승용차	화물차	전문차	위생차	추격 연습기	추격 전투기	습격 연습기	습격 전투기	연습기
군기재수		289	196	31	149	2	3	19	9	1	9	24	9	24	9
대내不在 ³⁹⁾		140	80	15	30	0	1	6	3	1	0	0	0	0	0
대내수리소		0	0	0	0	0	0	0	0	0	1	1	0	0	0
현재	계	149	116	16	119	2	2	13	6	0	8	23	9	24	9
	良	149	116	16	119	2	2	13	6	0	8	23	9	24	9
	不良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행사단은 1950년 1월 3일 현재 총 75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전투기가 48대, 전투연습기가 18대, 연습기가 9대였다. 기존 전사는 1949년 말 현재 북한 비행장에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연포비행장에 YAK-7B 10대, YAK-11 12대, IL-10 18대, 신막비행장에 YAK-7B 10대, IL-10 2대, 평양비행장에 YAK-7B 20대, YAK-11 2대, IL-10 48대 총 122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위 표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1949년 6월까지 소련이 제공하기로 한 90대의 비행기도 1950년 1월 3일까지 인계되지 않았다. 1949년 8월 1일 항공련대가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총 74대로 전투기 48대, 전투연습기 18대, 연습기 8대였다.⁴¹⁾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에는 연습기 1대만이 더 지급되었을 뿐이다. 위 표에 보듯이 추격연습기 1대와 추격전투기 1대는 고장이 나서 비행사단 수리소에서 수리중이었다. 북한 공군은 항공련대에서 사단으로 증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전력은 증강되지 않았다. 또한, 사단의 창설이 3개월 동안

38) 제845부대장, 「일보표」(1950.1.3), 師團대열과, 『日報』.

39) 야외훈련, 대외직일, 대외경리작업 등을 위해 사단 병력이 휴대하고 나간 병기를 뜻한다.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0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295~296쪽.

41) 「쉬피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크노프, 앞의 책, 57~59쪽.

지연된 것은 사단편성에 필요한 비행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기배당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같은 수의 비행기를 배당했다는 점이다. 위 표를 보면 추격연습기·추격전투기와 습격연습기·습격전투기의 배당 비행기수가 동일하다.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가 보유하고 있던 연습기·전투기는 각각 33대였다. 개인화기는 보총 289정, 자동총 196정, 경기관총 31정, 권총 151정이 지급되어 있었다. 군기재로는 승용차 3대, 화물차 19대, 전문차(특수차) 9대, 위생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기와 기재의 상태는 모두 양호했다. 비행사단의 개인화기는 대부분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4월 25일 현재 비행사단 교도연대 제3대대의 총인원은 248명이었다. 그러나 교도연대에 지급된 무기는 거의 없었다. 제3대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보총 10정뿐이었고, 탄환도 보총탄 155발이 전부였다.⁴²⁾ 개전직전에도 비행사단의 개인화기는 대부분 전투연대가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14일 교도연대 제3대대가 보유한 무기는 보총 4정, 권총 1정이 전부였다.⁴³⁾

사단이 창설된지 두달이 넘어서도 무기·기재현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50년 2월 20일 현재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모두 82대였다. 이 중 전투기가 46대, 전투연습기가 14대, 연습기가 22대였다. 한달 반 사이에 전투기는 2대가 줄어들었고, 전투연습기는 4대, 연습기는 13대가 늘어났다. 전투기 2대는 수리중이었을 것이다. 전투연습기와 연습기가 총 17대 증가했는데, 1월 3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소련에서 17대의 비행기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화기는 1월 3일의 보유량과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신호총 1정이 새로 지급되었다. 군기재도 큰 변화가 없었다. 위생차 1대가 다른 부대로 이전되었고, 모터사이클 1대와 트랙터 1대가 새로 지급되었다. 무기와 기재상태는 모두

42) 教導聯隊 三大隊長 김영근, 『戰鬪日報』, 1950.4.25, NARA, RG 242, SA 2007, Box 10, Item 39.

43) 三大隊長 김한옥, 『일보표』 (1950.5.8); 제3대대상급부관 리명록, 『일보표』 (1950.6.14), 항공사단 교도련대 3대대, 『일보표』, NARA, RG 242, SA 2009, Box 5, Item 70.

양호했다.⁴⁴⁾ 결국, 1950년 2월 20일까지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총 82대였다. 항공련대시절보다 전투연습기 4대, 연습기 14대가 늘어났다. 사단으로 증편된지 약 3개월이 넘는 시점에도 사단의 전력은 거의 증강되지 않았다. 다만,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연습기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비행사단 예하 연대의 비행기 보유현황도 확인했다. 1950년 2월 17일 현재 습격기연대에 배속된 비행기는 모두 40대였다. 이 중 습격전투기가 24대, 습격연습기가 9대, 연습기가 7대였다. 그러나 2월 17일 현재 습격기연대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는 27대에 불과했다. 습격전투기 8대, 습격연습기 2대, 연습기 2대(외제: 일본제)는 평양으로 보낸 상태였으며, 습격연습기 1대는 연대 수리소에서 수리중이었다. 평양에 보낸 비행기 12대 중 9대는 2월 17일 교도연대에 인계했다.⁴⁵⁾ 비행사단 추격기연대의 비행기 보유현황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 자료는 비행사단에서 작성된 비행기 현황 가운데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가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추격기연대 보유 비행기(1950년 5월 현재)⁴⁶⁾

제1대대	비행기종류	YK-9P												YK-9M				YK-11				합계
	비행기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3	4	5	04	07	08		19대
제2대대	비행기종류	YK-9P												YK-9M				YK-9V	YK-11			합계
	비행기번호	11	12	15	18	19	49	51	70	71	75	78	92	6	7	8	02	03	05	06		19대
연대지휘 중대	비행기종류	YK-9P						PO-2														합계
	비행기번호	11	64	67	69	99	100	2	3													8대

44) 제855부대 대열과장 김명재, 「일보표」(1950.2.21), 師團대열과, 『日報』.

45) 제861군부대 대열과 서기 박창용, 「일보표」(1950.2.17), 師團대열과, 『日報』.

46) 련대책임기사, 「5월간 련대전정기군무원 작업에 대한 보고서」(1950.5), 제887군부대 전정기 김영악, 『상부지도서철(No.2)』,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36.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는 총 4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에는 추격기연대 제3대대의 통계는 없는데 통계가 누락되었는지, 비행기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총 46대 중 제1대대가 19대, 제2대대가 19대, 연대지휘중대가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추격기연대의 주력기종은 YAK-9P기로 총 46대 중 30대가 이 기종이었다. 그 외에 YAK-9M기가 8대, YAK-9V기가 2대, YAK-11기가 5대, PO-2기가 2대 있었다. YAK-9P기의 비행기 고유번호를 보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사단이 총 100대 이상의 YAK-9P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추격기연대가 보유한 기종을 보면, 전투기가 44대, 연습기가 2대였다.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IL-10 전폭기(습격기)와 YAK-9 전투기(추격기) 총 60대가 추가 지원되었고, 6월 18일에는 소련 조종사들이 IL-10 전폭기(습격기) 60대를 연포비행장까지 직접 조종해서 인계하였다.⁴⁷⁾ 두 번 인계된 비행기는 추격기(YAK-9)보다 습격기(IL-10)가 많았다.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의 비행기는 추격기 44대, 연습기 2대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민군이 두 연대에 동일한 수량의 비행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습격기연대의 비행기도 습격기 44대, 연습기 2대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따라서 1950년 5월 현재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약 90~100대로 추정된다. 1950년 6월 25일 개전 당일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는 총 226대였다. 이 중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⁴⁸⁾ 따라서 이는 1950년 4월과 6월에 인계된 비행기가 총 120대였고, 추격기보다 습격기가 많이 인계되었다는 기록은 사실로 보인다. 1950년 1월 3일만 해도 인민군은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같은 수의 비행기를 배당했었다. 그러나 인민군이 개전을 앞두고 폭격에 필요한 습격기를 추격기보다 더 많이 도입했음을

47) 장준익, 앞의 책, 132쪽.

48)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12.3),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군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비행사단의 병력규모에서 1월 25에 비해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의 총병력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1월 25일에는 습격기연대와 추격기연대의 병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2월 20일에는 습격기연대가 추격기연대 병력의 약 두 배가 되었다.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습격기가 추가 제공될 것을 고려해 미리 습격기연대를 증편해 두었던 것이다.

1950년 2월 22일까지 비행사단이 육성한 비행사는 총 180명이었다.⁴⁹⁾ 개전당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226대로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 추격기(YAK-9)는 1인승, 습격기(IL-10)는 2인승이었으므로, 필요한 비행사는 총 339명이었다. 2월 22일 이후에도 교도연대에서는 비행사를 계속 양성했으나, 4개월 동안 159명을 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 비행사도 없었다. 또한, 180명의 비행사중 150명은 비행훈련기간이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1950년 2월에 배출된 비행사였다. 결국 비행사의 83%가 비행훈련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성과정을 졸업한 병력이었다. 따라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사의 전투력 자체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비행사가 부족했으므로 공군의 전력유지는 불가능했다.

비행사단의 보유 비행기현황을 국군 공군의 보유 비행기현황과 비교해 보자. 국군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L-4기 8대, L-5기 4대, T-6기 10대 등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⁵⁰⁾ 게다가 국군이 보유한 L-4기와 L-5기는 연락기, T-6기는 훈련기로 전투기나 폭격기는 한 대도 없었다.⁵¹⁾ 비행사단은 6월 25일 현재 추격기 84대, 습격기 113대, 기타 29대 등 총 22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행사단은 국군의 9.7배에 달하는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력기종은 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49) 朝鮮人民軍 855軍部隊 隊列科長 金明載, 「(비밀) 隊列人員證明書」(1950.2.22), 師團대 열과, 『日報』.

50) 공군본부 정훈감실, 앞의 책, 253쪽.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4), 388쪽.

전투기와 폭격기였다. 따라서 북한 공군은 남한 공군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갖추고 전쟁에 투입되었다.

5. 비행사단의 무기상태

1950년에 들어와 비행사단은 소련에서 YAK기와 IL-10기를 도입해 전력을 급격히 증강했다. 그 결과 개전당시 비행사단은 총 226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비행사단은 독립된 사단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비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단의 전력은 불완전했다. 그것은 비행기 보유수에 비해 비행기의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사실 인민군이 소련에서 구입한 비행기들은 2차 대전에 투입되었던 노후기종이었다.

북한정부는 소련 제9공군 군단에서 비행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비행기들이 노후기종이라는 것이 밝혀져 인민군 공군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반면에 북한정부가 이 비행기들을 구입하는데 지불한 비용은 신형 비행기를 구입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1949년 6월 22일 인민군 공군 비행훈련 고문인 추마크 소령이 쉬띠코프 대사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9공군 군단에서 인수한 YAK-9형 전투기 21대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주워모아 조립한 고철로서 1944~1945년 사이에 제조된 것들”이었다. 이 비행기들의 엔진은 모두 1~2회씩 수리된 것이며, 예비부품은 15~20%, 계기(計器) 등의 기구류는 50%만 보급되었고, 가장 필요한 부품은 대부분 부족하였다. 또한, 북한이 구입한 YAK-9형 전투기 21대 중 10대에 이상이 있었다. IL-10기의 상태는 YAK-9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추마크 소령에 따르면, 소련 제9공군 군단이 지원한 IL-10기 33대는 1945~1946년에 제조된 기종이었다. 이 전투기들은 현재 모두 사용하고 있고, 예비부품의 50%가 확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중 6기에

문제가 있었다.⁵²⁾

즉, 비행사단 추격기연대가 보유한 YAK-9형 전투기 21대는 소련 제 9공군 군단이 쓰던 중고전투기였다. 이에 비해 습격기연대가 보유한 IL-10기 33대는 같은 중고전투기였지만 YAK-9기보다 1년 뒤에 생산 되어 상태가 좀더 양호했다. 그러나 추격기 21대 중 10대, 습격기 33대 중 6대가 기체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비행사단의 전투기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북한은 이 전투기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차관형태로 제공받았고, 신형비행기 비용을 지불하고 중고비행기를 구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정부가 소련공군이 아닌 소련제조공장에서 바로 수령한 비행기들은 대체로 양호했다. 이 비행기들은 필요한 예비부품과 기구도 충분하였다. 소련대사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에 공급될 비행기 선정은 소련 제9공군 군단이 맡고 있으며, 제243호 지령에 의거해 중고비행기가 보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쉬피코프 대사는 북한에 수리공장이 없으므로 수리해서 써야할 비행기를 보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스크바에 전달하였다. 또한, 그는 인민군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비부품과 훈련기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소련 제9공군이 새로운 비행기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제조공장에서 직접 북한에 비행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⁵³⁾ 결국,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 중 YAK-9기 21대와 IL-10기 33대는 소련 제9공군 군단이 사용하던 중고비행기였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예비부품은 YAK-9기의 경우 15~20%만, IL-10기의 경우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종은 모두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프로펠러기였다. 특히 항속거리가 짧아 200마일의 전투 행동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IL-10기만 한반도 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군 극동공군은 B-26경폭격기 73대, B-29중폭격기

52) 「쉬피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53) 「쉬피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6.22), 토르쿠노프, 앞의 책, 57~59쪽.

27대, F-51전투기 47대, 제트전투기인 F-80전투기 504대, F-82전투기 42대, 수송기 179대, 정찰기 48대, 기타 항공기 252대 등 총 1,17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⁵⁴⁾ 기종은 차치하더라도 비행기 보유량만 북한 공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개전 직전까지 비행사단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획문서에는 비행사단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에서 생산한 『중대 전정기계부분 고장과 불완전작업 통계부』가 들어있다. 이 문서는 1950년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2대대 지휘중대가 보유한 전투기의 전정기계부분 고장을 수리한 기록이다. 수리한 비행기는 모두 YAK-9기였다. 추격기연대의 수리기록을 살펴보자.

1950년 5월 7일 YAK-9 제11호기의 전정기부분 각실 접속통 2곳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한곳은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했으나 다른 한곳은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였다. 이날 YAK-9 제69호기의 전정기부분 두 군데에서도 고장이 발생했다. 5월 10일 YAK-9 제64호기의 전정기부분 송신기변압기가 동작하지 않아 수리하였다. 5월 17일에는 YAK-9 제69호기의 전정기부분에서 유격이 발생되어 수리하였다. 5월 19일에는 YAK-9 제63호기의 전정기부분 2곳이 고장났다. 한곳은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었고 한곳은 발동기 진동으로 고장이 발생해 부품을 교환하였다. 5월 22일에도 YAK-9 제64호기의 전정기부분 3곳이 고장났다. 한곳은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었고, 다른 2곳은 진동으로 인해 고장나거나 유격이 발생해 수리하였다. 5월 22일 YAK-9 제100호기의 전정기부분 다섯 군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세 군데는 진동으로 인하여 부품이 끊어지거나 파손되고 유격이 발생하였다. 두 군데는 장기간 사용으로 부품이 파손되었다. 이 중 네 군데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고정시켜서 수리하였으나 한 군데는 부품이 없어서 고장난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였다. 5월 24일에는 YAK-9 제11호기의 전정기부품 두 곳이 고장났다. APT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2005), 747; 763쪽.

계전기는 장기간 사용으로 볼트가 불량했고, 한곳은 발동기 진동으로 유격이 발생하여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였다. 5월 25일 YAK-9 제69호기가 다시 고장났다. 이날 무기가감계가 파손되었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제69호기를 제1대대로 인계하였다. 6월 13일에는 YAK-9 제67호기의 속도계 고무도관이 파손되어 부품을 교환해 수리하였다. 6월 19일에는 YAK-9 제100호기에서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다. 6월 21일에는 YAK-9 제12호기의 전정기부분 한곳이 파손되었다. 제2대대는 부품이 없어 제1대대로부터 부품을 받아 수리하였다.⁵⁵⁾

수리기록을 정리해보면, 45일동안 고장이 발생한 전투기는 YAK-9기 제11·12·63·64·67·69·100호기 등 모두 8대였다. 이 중 제11·64·100호기는 45일동안 두 번이나 고장났다. 제69호기는 모두 세 번의 고장이 발생해 결국에는 추격기연대 제1대대로 인계되었다. 1950년 5월 현재 추격기연대 제2대대가 보유한 비행기는 총 19대였다.⁵⁶⁾ 이 중 8대가 고장난 것이다. 이 비행기들은 모두 소련에서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비행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원인 중 다수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었다. 소련에서 도입된 전투기들이 중고비행기였음을 증명해 준다. 또한, 추마크 소령이 지적했듯이 전투기 수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의 부족문제도 매우 심각했다. 수리기록을 자세히 보면, 부품이 고장났으나 예비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대대로부터 부품을 빌려 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추격기연대의 YAK-9기는 개전직전까지 계속해서 기체결합이 발생했고,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한 기재에도 문제가 있었다. 1950년 5월 19일 현재 비행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 47대였다. 차종별로 보면,

55) 김일현, 『비밀(No.1) : 중대전정기계부분 고장과 불완전작업 통계부』,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 1950.6.21, NARA, RG 242, SA 2007, Box 8, Item 63.

56) 런대책임기사, 「5월간 런대전정기근무원 작업에 대한 보고서」 (1950.5), 제887군부대전정기 김영악, 『상부지도서철(No.2)』,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36.

운수차 29대, 휘발유보차 8대, 승용차 3대, 일반특수차 3대, 무전차 2대였다. 이 중 2대가 고장난 상태였다.⁵⁷⁾ 문제는 비행사단이 보유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비행사단 후방부 자동차관리과에서 접수한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에는 자동차수리에 지출된 비용이 적혀있다. 1950년 5월 한달동안 자동차수리에 지출된 비용은 총 7,727,070원이었다. 그런데 총수리비 지출액 중 국영기관에 지출한 금액이 130,000원이었음에 비해, 개인상점에 지출한 금액은 7,597,070원이었다.⁵⁸⁾ 총수리비용 중 개인상점에 지출한 금액이 98.3%였다. 다시 말하면 5월 한달간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공구·부속품·소모품의 98.3%를 개인상점에서 조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기재의 공급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무기상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사단이 소련에서 인계받은 YAK-9기 21대는 노후기종이었으며, 이 중 10대에 문제가 있었다. 예비부품은 15~20%만 보급된 상태였다. IL-10기 33대는 종전후 생산되었으나 이 중 6대에 문제가 있었다. 이 기종의 예비부품도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결국, 비행사단이 보유한 습격기 113대 중 21대와 추격기 84대 중 33대는 중고비행기였다. 추격기연대 제2대대 지휘중대의 수리기록을 보면,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비행기의 고장원인이 대부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었다.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2대대가 보유한 19대의 비행기 중 8대가 고장났으며, 여전히 예비부품이 부족해 전투기 수리가 어려웠다. 결국 추격기연대의 YAK-9기는 개전직 전까지 계속해서 기체결합이 발생했고, 전투기의 노후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예비부품 부족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행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종은 모두 2차대전 때 사용하던 프로펠러기로 항속거리도 짧았다. 비행사단은 미 공군의 주력기인 제트기는 한 대도

57) 리화천, 「자동차손보통계표」(1950.5.19), 제871군부대 자동차중대장 김두히,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 1950.6.7,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2.

58) 자동차관리과장 리화천, 「월말자동차중합통계표」(1950.6.7), 제871군부대 자동차중대장 김두히, 『3월분 자금신청보고서』,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42.

없었고, 비행기 보유량도 1/5에 불과했다. 비행사단이 완편되었더라도 객관적 전력상 북한 공군은 미 공군에 대적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6. 맺음말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군의 전력은 국군 공군에 비해서는 압도적 우위였으나 미 공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다. 기존연구에서 북한 공군이 개전 초기에 궤멸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미 공군과의 전력차이를 꼽아왔다. 그러나 북한 공군이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멸된 데에는 내부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군노획문서를 통해 북한 공군의 병력과 무기를 살펴본 결과, 개전당시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북한 공군은 정규군이 아니라 정규군 창설 도중 전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력이 불완전했다. 먼저, 비행사단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편제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창설 중이라 병력의 29%는 배치된 지 4개월밖에 안된 신병이었다. 특히 하사·병사에 비해 간부충원 비율이 떨어졌는데, 그 중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참모간부가 28.3%만 충원된 것은 비행사단 전력에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비행사단은 1950년 1~2월 제3기술대대와 습격기2연대를 창설해 부대를 증편하고 있었다. 신편부대에는 간부가 거의 배치되지 않아 개전당시 정상적인 부대운용이 불가능했다. 병력배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비행사단에서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기술대대였고, 다음은 교도연대,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였다. 실제 전투를 수행할 전투연대에 가장 적은 병력이 배치된 것은 북한 공군이 실전에 투입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전투연대와 사단본부에 군관을 집중 배치했는데, 이는 향후 정규군 창설시 병사를 급속히 충원해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처럼 정규군으로 창설되는 도중에 전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 공군은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 지도부는 이같은 전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쟁 직전 군사목표물을 폭격하는 습격기연대의 병력과 비행기를 두 배로 증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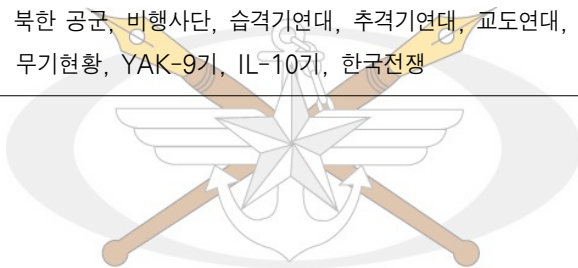
둘째, 북한 공군이 보유한 무기·기재와 비행사의 실제전력은 장기전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개전당시 비행사단이 보유한 비행기는 총 226대였다. 이 중 추격기가 84대, 습격기가 113대, 기타가 29대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기 규모는 남한 공군에 비해 압도적 우세였다. 그러나 미 공군에 비하면 양과 질에서 완전한 열세였다. 북한 공군의 비행기 보유량은 미 공군의 1/5에 불과했고, 모두 프로펠러비행기로 미 공군의 주력인 제트기는 한 대도 없었다. 비행사단은 개전 직전까지 보유한 전투기만큼의 비행사도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비행사의 83%는 속성과정을 졸업한 병력이었다. 따라서 비행사의 전투력 자체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대체할 비행사도 없었다. 또한, 비행사단이 보유한 습격기 113대 중 21대와 추격기 84대 중 33대는 고장이 잦은 중고비행기였다. YAK-9기의 예비부품은 15~20%, IL-10기의 예비부품은 50%만 확보된 상태였다. 개전 4일 전까지도 비행사단은 노후기종의 잦은 고장문제와 예비부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단소유 장비 수리에 필요한 기재를 대부분 개인상점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개전시 수리에 필요한 기재의 공급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은 사단규모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전쟁에 돌입했으나 전체적으로 북한 공군의 실제전력은 불완전했다. 비행사단은 비행기의 성능과 상태, 비행사 보유인원과 전투력, 예비부품의 보유량, 장비수리 기재 등 전투를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전력요소를 완비하지 못했다. 공군의 실제전력을 보면, 북한 지도부는 장기전이 아니라 선제타격을 통한 단기전을 계획한 후, 공군을 주력이 아닌 보조전력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이같은 군사전략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군을 통한

기동공격이라는, 프룬제 이후 소련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⁵⁹⁾ 북한 지도부는 기계화부대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 전력 양성에 주력하였고, 이에 따라 공군 전력 양성은 지연되었다. 게다가 개전당시 북한 공군은 보조 전력으로서 지상군을 지원할만한 전력조차 완비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 공군은 정규군의 전력과, 장기전을 수행할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한국 전쟁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북한 공군이 한국전쟁 초기에 궤멸된 내부적 요인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북한 공군, 비행사단, 습격기연대, 추격기연대, 교도연대, 병력현황, 무기현황, YAK-9기, IL-10기, 한국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 이정하, 「미하일 프룬제의 군사사상과 총력전 구상」, 『서양사연구』 제27집, 한국서양사 연구회, 2001.4, 134쪽.

<ABSTRACT>

A Study on Actual power of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force and weapon status of the Flight Division -

Kim, Seon-ho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49. There had been 4,135 soldiers in the flight division right before the Korean War. Among all troops in the flight division, the technical battalion had the greatest number of soldiers and the training regiment was the next. Then the fighter-bombers and the fighter Regiment were in sequence. Under the direct command of the Flight Division, the repair section had the most. 60% of officers in the flight division were intensively deployed in the combat unit and the training unit. 91.8% of sergeants were deployed in the combat unit, the training unit, and the technical unit. 75.7% of soldiers were heavily deployed in the technical unit and the training unit.

In 1950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airplanes in the Flight Division was 226. The flight division produced 180 pilots by February 22, 1950. However 83% of the pilots only had 6 or 7 months of flight training. Therefore, the level of skill of the pilots was low and they had no alternative pilots. Moreover, 21 of 113 fighter-bombers and 33 of 84 fighter-planes of the Flight Division were second hand planes. Until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flight division didn't solve problems such as the malfunction of the decrepit planes and lack of spare parts.

Fighting power of the flight division had been builded up through weapons from the Soviet Union since 1950. Nevertheless, the flight division still had a lot of problems in terms of actual power. The flight division couldn't prepare supporting elements of force integration such as planes, pilots and spare parts. And only 63% of a full strength were recruited to

the flight division by January 28, 1950. Especially, the fact that only 28.3% of staff officers were recruited to the flight division was a serious problem. And a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9% of soldiers in the flight division were new recruits who had been deployed 4 months before. The flight division had 9.7 times more planes than the Air Force of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war, but much less than the Air Force of U.S.A. Finally the Flight Division was engaged in warfare with no prepared regular power. And it was an internal cause of the Air Force of North Korea's failure in the earlier part of the Korean War.

Key Word : Air Force of North Korea, Flight Division, Fighter-bombers Regiment, Fighter Regiment, Training Regiment, Personnel Status, Weapon Status, Unit formation, YAK-9 Fighter, IL-10 Fighter-bombers, Korean W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과정 고찰

이 신 재*

1. 연구의 목적
2. 전쟁초기 북한공군 현황과 괴멸
3. 6·25전쟁기 북한공군 재건과정
4. 휴전 이후 재건전력의 북한 반입
5. 맺음말

1. 연구의 목적

6·25전쟁은 현재의 한반도 구조를 정형화시킨 중대한 사건(critical event)이었다. 6·25전쟁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진 한반도의 분단을 보다 공고화시킴과 동시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군사적 대결구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남북한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6·25전쟁과 남북한 군대의 성장과정에 주목하고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상당부분은 한국군에 관련된 것이었다. 전쟁의 상대방이었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북한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문제는 창군이후부터 북한군의 시기별 성장과정을 살펴보거나, 혹은 전쟁이전의 창군과정과 전쟁이후의 증강문제를 다루는 정도였다.¹⁾ 정작 6·25전쟁기간 중 북한군의 변화와 성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²⁾ 특히 북한 군사력 중 규모면에서는 소수지만, 현대전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는 공군력의 증강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³⁾

이러한 경향은 북한공군이 전쟁초기 미 공군의 참전 이후 전투력을 소멸하였다는 사실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제공권을 상실하였고, 이후 한반도에서의 공중전은 1950년 11월 소련공군의 참전을 계기로 실질적으로는 소련과 미국공군의 대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전쟁초기 괴멸된 북한공군의 전쟁기간 중 활동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공군은 전쟁초기 괴멸되었지만 전쟁기간 재건의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휴전 무렵에는 전쟁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였다. 또 휴전이후에도 계속 성장하여 1970년에는 한국공군과 단순수량비교에서 약 2배 이상의 우위를 갖게 되었다.⁴⁾ 북한은 이 같은 공군력의 성장을 통해 1967년 베트남전쟁과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전투조종사를 파병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점에서 6·25전쟁기간 동안의 군사력 증강은 전후 군비증강 역사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주의

1) 이들 연구들로는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 2006, 63~165쪽;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통일연구원, 1991, 139~176쪽 등 이 있다.

2) 전쟁기간 중 북한군의 전쟁수행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이 독보적이다.

3) 이런 현실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1~11권은 6·25전쟁기간 북한의 공군작전을 다룬 독보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4) 이런 격차는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남북한 공군전력은 단순한 수량비교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61% 수준이었고, 질적 요소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82~90%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영호, 「북한 군사력의 해부: 위협의 정도와 수준」, 『전략연구』 제4권 3호, 1997, 191쪽.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함택영의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전쟁시기 북한공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또 다른 측면은 보통의 북한 연구가 그러하듯 이 시기 북한공군의 활동을 규명해 줄 자료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전쟁시기 공군활동을 비롯해 전반적인 전쟁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할지라도 심도 깊은 연구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 구소련과 중국자료의 공개, 그리고 현재 발간된 북한 공간사(公刊史)들을 활용한다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시도할 정도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쟁시기 북한공군의 궤멸과 재건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공군의 전쟁기간 중 재건과정이 전후 북한 공군력 발전의 기본토대가 되었음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쟁기간 북한공군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이해함은 물론 전쟁기간이 남북한 군비경쟁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연구의 목적이며, 2장은 전쟁초기 북한공군의 전력현황과 활동, 그리고 미 공군의 참전 이후 궤멸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은 궤멸된 북한공군이 소련공군의 참전과 이후 휴전협상 기간 동안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을 김일성의

5)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 1998, 147쪽.

6) 이들 자료들로는 1997년 러시아 군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인 군사편찬위원회 편, 『6·25 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 활동 약사』, 군사편찬연구소,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제18비행기동사단 지원업무 종결보고 1951년 6월~1953년 9월』, 2011;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6·25전쟁』, 200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등이며, 북한의 김일성 전집류 및 노동신문, 귀순조종사 노금석의 회고록인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A MiG-15 to Freedom*, McFarland&Company, Inc., 1996과 미 공군 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홈페이지(<http://www.afhra.af.mil>) 게재자료,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11권 등을 들 수 있다.

공군력에 대한 인식,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참전, 북한공군의 조종사 양성, 항공기 지원, 항공시설의 복구노력, 작전활동의 변화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4장은 전쟁기간 중 만주와 소련에서 재건된 북한의 공군력이 휴전을 전후하여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5장은 이 논의의 결론이다.

2. 전쟁초기 북한공군 현황과 괴멸

전쟁초기 북한공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남한공군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군은 1개 비행사단과 병력 2,800명, 비행기 226대(추격기 84대, 습격기 113대, 기타 29대)를 보유하였다.⁷⁾ 북한공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전쟁초기 남한의 여의도, 김포, 수원비행장 등 주요 군사시설과 도로, 철도, 초차장 등 교통시설을 공격하였으며, 지상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⁸⁾ 심지어 북한공군의 Yak기는 1950년 6월 29일 전선시찰을 위해 수원비행장을 찾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의 전용기 C-54 바탄(Bataan)호를 공격하는 ‘용맹함’을 보이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북한공군의 ‘용맹함’은 미 극동공군 전력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당시 미 극동공군은 일본에 주둔하던 제5

7)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이 작성한 조선에서의 전투행동개관에서 발췌,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현황(1951.12.3)」,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군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일반적으로 습격기는 폭격기를 지칭하며, 추격기는 전투기를 말한다. 참고로 개전당시 한국공군은 1,897명의 병력과 경비행기 22대(L-4 8대, L-5 4대, T-6 10대)를 보유하였을 뿐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군사편찬연구소, 2005, 751쪽.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754쪽.

9) 북한 Yak기의 공격은 호위 중이던 미 F-51 전투기에 의해 제지되었다. 공군본부 역, 『스트레이트메이커 장군의 6·25전쟁 일기』, 공군본부, 2005, 49쪽.

공군의 F-82 전투기를 한반도로 급파해 주한 미국인들의 후송을 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6월 26일 F-82전투기 5대가 북한공군 Yak기 3대를 격추시키면서 6·25전쟁 중 공중전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였다.¹⁰⁾ 이후 미 극동공군은 6월 27일 B-26 경폭격기 2개 대대, F-80전투기 4개 대대, F-82전투기 2개 대대를 출격시켰다. 한반도에 참전한 미 극동공군은 처음 며칠 동안 구체적인 공격계획 없이 공중방어를 수행하는 정도였다.¹¹⁾ 그러나 이것은 이후 본격적인 미 공군의 참전을 위한 것이었고, 북한공군의 공격은 미 제5공군의 참전이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시들해지고 있었다.

미 공군자료에 따르면 1950년 6~10월까지 미 공군은 총 56,558회의 작전을 실행했다.¹²⁾ 이 시기 격추(격추추정 및 손상을 입힌 항공기 포함)한 북한 항공기는 총 143대(격추 78대, 격추 추정 31대, 손상 34대)였다. 월별로는 6~7월 81대, 8월 48대, 9월 14대의 항공기를 격추했고, 10월에는 격추한 항공기가 없었다.¹³⁾ 산술적으로는 전쟁초기 총 226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던 북한공군이 약 4개월여 만에 전체 항공기의 63%인 143대를 잃거나 손상을 입었고 약 83대의 항공기만이 남았을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¹⁴⁾

10) 공군본부 역, 『UN공군사(상)』, 공군본부, 1975, 30~31쪽.

11) 위의 책, 35쪽.

12) 미 공군의 월별 비행 횟수는 1950년 6~7월 총 8,499회, 8월 15,586회, 9월 15,839회, 10월 16,634회였다. A Timothy Warnock edito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2000, p.69.

13) *ibid.*, pp.68~69.

14) 물론 이 숫자에는 습격기, 추격기 이외의 항공기와 전쟁개시 이후 소련으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북한 항공기의 숫자도 개전 초기와 이후 손실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개전이후 계속해서 소련에서 항공기가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소련이 개전이후 계속해서 항공기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1950년 7월 7일 북한주재 소련대사는 김일성을 만나 “항공무기와 무기 및 탄약이 수송 중에 있으며, 7월 8일경에는 국경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또 8월 28일경에는 스탈린이 주북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필요하다면 소련은 조선항공대를 위해 습격기와 추격기들을 추가로 더 보낼 수 있다”고 통보한다.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10월 21일까지 북한에 공급된 무기종류 목록에는 기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비행기

북한공군의 괴멸은 소련의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1>은 1950년 8월 26일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에 보고된 북한 공군현황이다.

<표 1> 1950년도 북한 공군현황

번호	명 칭	전투개시 당시 총수	7월 20일 상황		8월 24일 상황	
			손실 수	잔류 수	손실 수	잔류 수
1	습격기	93	36	57	109	34
2	추격기(전투기)	84	49	35		2
3	습격기 조종사	25	10	15	8	17
4	추격기 조종사	26	15	11	16	6

* 출처: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1950.8.26)」,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93쪽.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공군은 개전당시 습격기와 추격기를 177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0일에는 이 중에서 85대가 손실되고 92대만이 남았고, 8월 24일에는 약 36대의 항공기와 23명의 조종사만이 남게 되었다. 이 자료는 북한공군의 습격기, 추격기와 그 조종사에 대한 자료만을 담고 있지만, 개전 2개월 당시 북한공군의 괴멸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공군의 괴멸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자료는 미 공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 공군은 1950년 10월 단 1대의 북한 항공기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1950년 6~7월 81대, 8월 48대, 9월 14대를 격추 또는 손상시키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급기야 10월에는 격추한 항공기가 없는 것이다. 유엔군이 공세적으로 북진하던 10월에 북한 항공기를 단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미 공군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공군기 중 더 이상 작전에 사용할 항공기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62대가 실제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7~78, 94, 185쪽.
15) 이후 미 공군의 적 항공기 격추는 11월에 들어서면서 9대, 12월에 10대가 나오고 있다.

미 공군의 신속한 참전과 이에 따른 북한공군의 괴멸적 상황은 김일성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미 공군의 폭격에 대한 김일성의 충격은 7월 19일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날 김일성은 전선 상황에 대해 분개한 어조로 “전선의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아마도 **파국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은 **미 공군 때문**”¹⁶⁾이라고 했다. 미 공군 폭격에 대한 김일성의 우려는 소련에 공군 파견요청으로 나타났다. 1950년 8월 18일 김일성은 개인비서 문일(소련계 한인)을 슈티코프(T.E.Shtikov) 대사에게 보내 항공력의 파견을 요청한다.¹⁷⁾

그러나 소련은 1950년 11월이 되어서야 만주에 제64전투비행군단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까지 북한공군은 미 공군의 공격 앞에서 일체의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괴멸상태에 빠지게 된다. 북한공군의 괴멸은 북한의 지상군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1950년 9월 15일 이후 급속도로 붕괴되던 것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조기에 붕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6·25전쟁기 북한공군 재건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김일성의 공군력 재건의지

김일성의 공군력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스탈린(Joseph V. Stalin)이었다. 육군경험이 많았던 김일성은 해방초기 공군력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겼지만, 스탈린의 2차 세계대전 경험을 통해 공군력의 군사적

특히 12월 10대 중 8대는 MiG-15기였다.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68~69.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1950.7.20)」,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87쪽. 진한 글자는 저자 강조.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1950.8.19)」, 위의 책, 92~93쪽.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⁸⁾ 그러나 김일성은 개전초기 공군력의 궤멸을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 공군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공군력 재건의지를 피력하게 된다.

김일성의 공군력 재건에 대한 의지는 전쟁기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1950년 8월 18일 소련에 공군력 파병을 요청했던 김일성은 이후 계속해서 소련에 조종사 양성을 요청하는 등 공군력 재건에 매진하게 된다.

김일성의 전쟁기간 중 공군력에 대해 강조한 내용은 소위 ‘별오리 회의’로 불리는 1950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정기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회의는 지난 전쟁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지난 6개월간의 전쟁과정에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엄중한 결함”¹⁹⁾에 대해 8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다섯째가 공군과 해군의 문제였다. 김일성은 “우수한 공군과 해군과 포화들을 소유한 적들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전투를 진행할 줄 몰랐다”²⁰⁾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질이 좋은 비행사, 땅크수, 포병 등 ‘후비부대’를 제 기한내에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²¹⁾

또 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6월 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군정간부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군력 강화를 재차 강조한다. ‘인민공군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우리 공군부대는 조직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며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휘관, 비행사, 기술근무원들은 물론 공군부대의 모든 군인들의 기술 수준을 더욱

18) 김경록, 「해방이후 남북한의 공군력 인식과 한국전쟁 준비과정」, 『군사 제67호, 군사편찬연구소, 2008, 190~192쪽.

19) 조선중앙통신사, 「현 정세와 당면과업-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1950.12.21)」, 『조선중앙연감 1951~52』, 조선중앙통신사, 1952, 25쪽.

20) 위의 책, 28쪽.

21) 위의 책, 34쪽.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²²⁾

김일성의 공군력 재건에 대한 의지는 미 공군에 대한 두려움과 북한공군의 괴멸, 그리고 북한군의 계속되는 패전 속에서 더욱 절실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군력 재건 작업에 착수한다.

2)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참전과 북한공군 재건

소련자료에 따르면 제64전투비행군단은 참전기간 동안 10개 전투비행사단 29개 전투비행연대가 전투를 수행했고, 각 사단의 투입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였으며, 총 64,300회를 출격, 유엔 공군기 1,106대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한다.²³⁾ 6·25전쟁시기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했던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은 실질적인 공산군 측의 공군력으로 미 공군을 상대하였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이런 전투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북한공군을 지원하면서 북한공군에게는 재건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0년 11월 중국 선양(沈陽)에서 창설된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 12월까지 주둔하였다.²⁴⁾ 군단의 명시된 임무는 “선양, 안산(鞍山), 안둥(安東, 현재의 단둥: 저자 주), 지안(集安), 동펑(東丰)지역에서 미 공군의 공중타격과 공중정찰로부터 정치, 행정 및 경제중심, 산업시설, 철도거점, 교량, 군대집결지 그리고 다른 중요한 대상들을 엄호하고, 압록강 교량과 안둥지역의 발전소 엄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²⁵⁾이었다.

그러나 부차적으로 제64전투비행군단은 중국 및 북한공군의 양성 임무도

22) 김일성, 「인민공군을 더욱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52.6.20.)」, 『김일성 전집 제1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50쪽.

23)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정보조사서(1953.11.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99쪽.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역사, 군사편찬연구소, 2011, 10쪽.

25) 「1950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행동개관(1951.1.9)」,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33쪽.

맡고 있었다. 창설 당시 군단은 제28, 제50, 제151전투비행사단 등 3개 예하 사단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 중 제28, 제151전투비행사단은 예하 각 연대에서 재교육실시를 위해 경험 있는 교관들로 충원된 비행대대 1개씩을 선발하였었다. 특히 제151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8월 동북 중국의 대상물 엄호와 중국공군 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의 재교육 수행임무를 띠고 선양비행장에 도착했었다.²⁶⁾

북한 공군조종사들에 대한 재교육 임무는 12월 말에 도착한 소련 제324전투비행사단에게 부여되었는데, 그 임무는 1951년 1월 5일부터 착수하였다.²⁷⁾ 제324전투비행사단은 1952년 1월 만주에서 철수한 뒤 제190전투비행사단으로 대체되었다.²⁸⁾

이 당시 소련의 구상은 자신들이 직접 미 공군과 대결하는 대신 중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켜 그 임무를 중국이 대신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소련은 중국이 9개 사단을 조선 국경지대에 배치할 경우 그 부대의 엄호를 위해 중국 측에 124대의 제트전투기로 편성된 비행사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소련은 자국 조종사들의 원조하에 2~3개월 동안 중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킨 다음 중국 측 조종사들에게 모든 장비를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²⁹⁾

소련의 이 같은 계획은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북한공군 또한 소련으로부터 당시 최첨단 제트전투기인 MiG-15를 인수받고, 조종사양성을 비롯해 공군력을 전수받으면서 괴멸된 공군력의 재건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26) 「소련 육군상이 소련 내각회의 부의장에게 보낸 보고서(1950.8.31)」,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99쪽.

27) 「1950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행동개관(1951.1.9)」, 위의 책, 134쪽.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활동 약사』, 5~6쪽.

29)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문(1950.7.13)」,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81쪽.

3) 북한 공군의 재건 과정

전쟁초기 괴멸된 북한공군의 전력은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안정을 되찾고, 11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참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북한공군의 재건과정을 공군작전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조종사 양성, 항공기 도입, 비행장 건설 / 복구 측면과 이 시기 북한공군이 미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했던 작전적 측면, 즉 대공방어와 PO-2 항공기를 이용한 전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종사 양성

(가) 소련에 조종사 양성 요구

조종사는 공군작전의 핵심요소이다. 항공기는 소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종사는 북한이 양성해야 할 중요과제였다. 항공기의 지원이 하드웨어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조종사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다. 북한에게 전투기 조종사의 부족은 개전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오래된 문제였다. 조종사는 이론교육과 함께 조종기술 습득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조종사의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조종사 양성의 이 같은 시간적 소요와 기술적 문제는 북한이 해방 후 타 분야에서는 일제청산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항공기술 분야에서는 일제시기의 인력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³⁰⁾ 전쟁초기 습격기와 추격기가 177대였지만, 이 기종의 조종사는 51명에 불과했다는 소련군 총참모부의 보고는 조종사 확보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30) 김선호, 「북한공군 창설과정을 통해본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 『현대북한연구』, 제 15권 2호, 북한미시연구소, 2012, 249~294쪽.

31)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93쪽.

이점에서 김일성도 공군력의 핵심요소로 조종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1951년 3월 18일 한 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비행사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비행기는 형제국가들에서 원조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놈들이 배운 기술을 우리가 배우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우리도 배우면 됩니다.”³²⁾라며 조종사 부족에 대한 고충과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공군이 괴멸된 상황인 1950년 9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 양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1953년 9월 21일 MiG-15로 귀순한 북한 조종사 노금석에 따르면, 1950년 9월 조종사 선발을 위해 당시 자신이 다니던 청진의 해군군관학교에 군의관들이 찾아와 80명의 인원을 선발해 갔다고 한다. 공군조종사 선발을 위해 해군군관학교까지 찾아온 것이다.³³⁾ 시기적으로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북한군이 만주로 이동해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북한공군이 괴멸되어가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소련에 가장 먼저 요구한 내용도 조종사 양성문제였다. 김일성이 소련에 조종사 양성을 요청한 것은 10월 9일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소련에서 유학중인 학생들 중 2~300명과 소련계 조선인들 중 2,000명의 조종사양성을 요청한다.’³⁴⁾ 계속해서 김일성은 1950년 10월 10일 주소련 북한대사 주영하를 통해 소련 외무성 제1부상 그로미코(Andrei A. Gromyko)를 만나 소련에서 공부하는 모든 조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및 소련의 기업들에서 생산기술 실습을 하는 조선기술자들을 소련 항공학교로 이전하도록 요청한다.³⁵⁾

32) 「인민군대내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 당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51.3.18)」, 『김일성 저작집』 제6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357쪽.

33)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p.69~70. 물론 학생들에게는 해군조종사 양성이라고 설명되었다고 한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1950. 10.9)」,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72쪽. 이 전문에는 조종사 외에도 탱크병 1천명, 무선병 500명, 공병군관 500명의 양성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35) 주영하는 이 만남에서 ‘현재 소련에 있는 조선학생들은 모두 738명이며, 이 중 남자는

소련주재 북한대사 주영하는 약 한 달 뒤인 1950년 11월 13일 소련 외무성 제1극동과 부과장을 만나, 지난 번 소련에 유학중인 북한학생들과 조선계 한인들에 대한 조종교육에 대해, 이들이 5개월 후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종사 선발과 교육을 서둘러 달라는 김일성의 ‘특별한 부탁’을 전달한다.³⁶⁾ 김일성은 1950년 11월 16일, 스탈린에게 공군 지원을 재차 요청하는 전문을 보낸다. 이 전문에서 김일성은 기존에 요구했던 2~300명의 북한 유학생 조종사 양성을 재차 요구한다. 그리고 소련 영토내에서 교육받고 있는 북한군 조종사 119명 가운데 제트기 2개 연대와 폭격기 1개연대의 편성을 위한 비행요원을 양성해 줄 것, 현지에서 양성이 불가능한 항공기술자 90명과 습격기 조종사 30명의 양성을 위해 총 120명을 소련에 파견해 줄 것, 1951년 1월 1일까지 이론과정을 마칠 조선조종사 170명을 항공실습을 위해 소련에 추가로 파견해 줄 것 등을 새롭게 요구한다.³⁷⁾

소련에서도 조종사 양성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소련측 자료에 따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조종사 양성과 관련하여 1950년 11월 20일 전문을 보낸다. 전문에는 ① 만주 영토 연지(延吉)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비행학교에서 조선학생 중 200~300명을 조종사로 훈련시킬 것. 추가로 양성되는 인원을 위해서는 소련 교관이 지원될 것임 ② 2개 제트전투비행연대에 필요한 조종사는 만주에 있는 우리의 MiG-15기로 구성된 비행사단들 중 1개 사단 내에서 훈련시킬 수 있음. 조종사가 훈련을 마치면 MiG-15기가 제공될 것임. 1개 폭격비행연대의 조종사훈련은 연해주 소재 조선학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군수기재와 폭격연대용 Tu-2기 또한 제공될 예정임 ③ 우리는 연해주 소재 조선인 비행

669명, 여자는 69명’이라고 대답했다. 「소련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의 접견에 대하여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의 일지에서 발췌(1950.10.10)」,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73쪽.

36) 「소련 외무성 제1극동과 부과장의 일지에서 발췌(1950.11.13)」,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95쪽.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1950.11.17)」, 위의 책, 210쪽.

학교에 추가로 120명을 수용하여 항공정비 기술자와 습격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동의함 ④ 조선인 조종사들의 비행실습장소로는 그들이 훈련 받게 될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더 나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³⁸⁾

김일성은 1950년 11월 27일 또다시 북한주재 소련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소련정부에 연지의 항공학교에 La-9기 교관 20명, Yak-9기 교관 10명, IL-10기 교관 10명 등 총 40명의 소련교관을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³⁹⁾

스탈린은 북한 조종사 양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1년 6월 스탈린은 만주에 주둔하던 제64전투비행군단장과 중국군 총군사고문에게 전문을 보내 북한 조종사를 소홀히 교육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과거 전쟁시에는 5, 6개월 사이에 러시아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는데, 왜 7, 8개월이 지났는데 중국 조종사들의 훈련을 마치는 못하느냐고 조종사 양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⁴⁰⁾

스탈린의 지적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에서 '1개 북조선 전투비행사단 조종사 총원 65명, 8월 15일 전투준비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한다. 또 일부 중국 전투비행사단의 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기간 중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군 총군사고문 크라스프스키가 북한 비행사단을 직접 관할 할 것⁴¹⁾이라면서 스탈린의 지적에 대책을 보고한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어느 정도 규모의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까? 또 언제쯤 전선에 투입할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김일성과

38) 「소련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보낸 전문(1950.11.20)」,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66~567쪽.

39) 「조선인 조종사들과 기술자들의 교육을 위해 중국으로 소련 군사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각서(1950.11.27)」, 위의 책, 220~221쪽.

40)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총군사고문에게 보낸 전문(1951.6.13)」, 위의 책, 584쪽.

41)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1951.6.15)」, 위의 책, 585~586쪽.

스탈린 사이에 오고갔던 전문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 북한이 구상했던 조종사의 규모와 전선투입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소련에 유학중인 북한 유학생 중에서 200~300명, 소련계 조선인 학생 중 2,000명, 기존에 엔지와 연해주 지역에서 교육 중이던 조종사 등을 포함해서 약 2,500명에서 최대 3,000명 규모의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중도 탈락률 등을 감안했을 때 약 2,000명의 조종사 양성을 희망목표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리고 이들 신규 조종사들에게 약 5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1951년 4~5월에는 전선에 투입시키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은 조종사 양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비서인 문일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조종사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반년이, 또는 일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⁴³⁾ 소련측에 요구한 5개월은 희망이었을 것이다.⁴⁴⁾ 그러나 이런 희망을 통해, 김일성은 북한공군을 최소 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가진 군대로 키우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조종사 양성 과정

전쟁 당시 북한 조종사들은 어디에서 양성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확인하기 힘들다. 다만, 스탈린과 김일성의 전문내용과 소련측 보고자료, 그리고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조종사들은 중국 엔지, 만주 주둔 제64전투비행군단,

42) 약 30%의 중도 탈락률을 적용한 것이다. 2,000명 정도의 조종사는 단좌(單坐)항공기의 경우 2대당 약 3명, 복좌(複座) 항공기의 경우 1대당 4명(2명 탑승, 2명 예비)으로 가정한다면, 2,000명의 조종사는 약 500~800대 정도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1950. 10. 6)」,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66쪽.

44) 그러나 노금석의 경우를 보면, 1950년 9월에 선발되어 양성과정을 거친 후 1951년 11월 의주로 전개되어 첫 전투에 참전하였다. 따라서 당시 MiG-15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는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 연해주, 그리고 소련의 기타지역 등 크게 네 지역에서 교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지역별 양성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엔지지역이다. 엔지에는 북한공군의 항공학교가 위치해 있었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 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0월 14일 현재까지 엔지비행장에서 수료한 조종사는 57명(Yak-9기 16명, IL-10기 26명, PO-2기 15명)이며, 69명(추격기 60명, 습격기 9명)이 엔지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⁵⁾ 이미 이곳에서 북한 조종사들이 양성되고 있었고,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조종사 양성과정은 계속된 것을 의미한다.

엔지 항공학교의 규모에 대해서는 약 2,600명으로 되어 있다.⁴⁶⁾ 그리고 엔지 항공학교에서는 주로 초급수준의 비행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항공역학, 항공기 기관, 항공법 등의 지상교육과 Yak-18 프로펠러기로 비행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⁴⁷⁾ 스탈린은 이곳에 소련 교관을 보내 조종사 양성교육을 지원했다.

둘째, 만주에 주둔했던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에서 이루어진 조종사 교육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4전투비행군단은 당초 압록강 및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방호와 중국 및 북한공군의 양성을 임무로 파견된 부대였다. 특히 제64전투비행군단 이하 제324전투비행사단 같이 북한공군을 전담하는 부대가 편성되어, 조종사 양성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엔지 항공학교에서 이론 및 Yak-18기를 이용하여 비행실습을 마친 인원을 제64전투비행군단에 보내 MiG-15기 조종훈련을 시켰고,

45)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의 정보보고서(1950년 10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83~184쪽.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소련대사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전문(1950. 10.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62~563쪽. 김일성도 스탈린에게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군내 잔류를 요청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1950. 11. 2)」,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64쪽.

47)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76.

훈련이 끝나면 MiG-15기를 제공했었다.⁴⁸⁾

셋째, 연해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종사 양성이다. 1950년 10월 26일,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의 정보조사서에 따르면, 연해주 군관구에서 201명이 조종사 훈련 중에 있다고 되어 있다.⁴⁹⁾ 스탈린은 1950년 11월 20일 전문에서 “1개 폭격비행연대의 조종사훈련은 연해주 소재 조선학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군수기재와 폭격연대용 Tu-2 또한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연해주 소재 조선인 비행학교에 추가로 120명을 수용하여 항공정비 기술자와 습격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동의”하고, “조선인 조종사들의 비행실습장소로는 그들이 훈련받게 될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더 나을 것”⁵⁰⁾이라며 연해주지역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해주 어느 지역에 비행교육시설이 있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소련 연해주 ‘하바롭스크(Khabarovsk) 특수임무항공소에서 45명의 조선인이 교육을 받았다’⁵¹⁾는 내용을 고려시 하바롭스크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해주를 제외한 소련 본토의 기타 도시에서 이루어진 조종사 교육이다. 이곳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소련 유학중인 조선학생들과 소련계 조선인들 중에서 조종사를 양성해 달라는 것은 상당부분 소련 영토 내에서 해 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쟁 이전 소련에 파견되었던 북한 조종사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키예프(Kiev)와 모스크바 근교의 제2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았기

48) 스탈린도 1950년 11월 20일 전문에서 언급했듯, “2개 제트전투비행연대에 필요한 조종사는 만주에 있는 우리의 MiG-15기로 구성된 비행사단들 중 1개 사단 내에서 훈련시킬 수 있음. 조종사가 훈련을 마치면 MiG-15기가 제공될 것임”이라고 했다. 「소련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보낸 전문(1950.11.20.)」,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566~567쪽.

49)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의 정보보고서(1950년 10월 26일)」,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83~184쪽.

50) 「소련내각회의 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보낸 전문(1950.11.20.)」, 위의 책, 566~567쪽.

51) 심현용, 『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365쪽(재인용).

때문이다.⁵²⁾ 그러나 이 외에도 레닌그라드의 비행교육부대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⁵³⁾ 이뿐 아니라 소련 본토의 다른 도시인 츠칼로프(중부지역) 군항공양성소에서 45명의 조선인 비행사가 교육되었고, 이르쿠츠크(몽골 위) 항공학교에서도 30명의 조선인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⁵⁴⁾

이처럼 북한의 조종사 양성은 1~2곳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엔지, 만주, 연해주, 그리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영토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항공기 기종 및 교육 수준별로 교육장소를 달리해야 하는 조종사 교육의 특성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에 많은 수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지역에서 양성된 북한공군 조종사들은 소련공군과 함께 단계적으로 작전에 참가하면서 실전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중국, 북한공군이 소련공군의 엄호하에 함께 작전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중국과 북한공군이 1제대로, 소련이 이들을 엄호하는 방식, 3단계는 책임구역을 구분해 중국공군은 서해안에서, 북한공군은 동해안에서 운용되며, 소련공군은 공중상황의 전개에 따라 연합공군을 지원하는 단계였다.⁵⁵⁾

(다) 조종사 양성 결과

전쟁기간 중 실제 양성된 북한 조종사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김일성이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746쪽.

53) 장학수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 11월경 소련 유학생 중 러시아어를 잘하고 신체 건강한 자 수십 명을 선발하여 레닌그라드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 양성대로 보내 전투기 조종사 과정을 이수시켰다 한다. 이들은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고 6·25전쟁에 조종사 또는 정비사로 참전하였으며 이들 중 전사한 유학생이 50명가량 되었다고 한다. 장학수, 『붉은 별 아래 청춘을 묻고 - 북한과 소련에서의 성공과 좌절 42년의 기록』, 문학사상사, 1990, 191-192쪽.

54) 심현용, 위의 책, 365쪽(재인용).

55) 「제64전투비행군단장이 소련군 공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 발췌문, 1951년 6월~1953년 7월 27일(보고일자 미상)」,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45~446쪽.

계획했던 2,500~3,000명의 조종사는 양성된 것일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일정 시점에 누적된 조종사 숫자를 통해 전쟁초기 보다 늘어난 조종사 숫자를 전쟁기간 중 양성한 조종사 규모로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쟁초기 습격기와 추격기의 조종사는 총 51명이었다. 물론 북한의 조종사는 이 기종 외에 PO-2 같은 경량항공기들이 있었다. 이들 항공기 조종사까지 포함하면 약 200명 전후까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⁶⁾

1951년 10월 20일 북한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는 제1전투비행단(MiG-15), 제2전투비행사단, 제11혼성항공사단, 폭격사단 등 4개 사단의 군관 숫자가 2,115명 편제에 1,336명으로 되어 있다.⁵⁷⁾ 이 군관이 모두 조종사는 아닐 것이다. 대략 전체 군관의 10%를 조종사로 가정하면 약 130명 선이다.

1953년 4월 기준 북한공군의 전력은 대규모로 증가하였다. 북한공군은 소련의 지원을 토대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전력재편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평양의 공군사령부 예하에 3개 전투비행사단, 1개 폭격기 사단, 2개의 독립폭격연대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기종별 북한공군 조종사는 MiG-15 179명, IL-28 42명, TU-2 3명+45명(소련 교육중, 5월말 완료), Yak-18과 PO-2 24명, 예비 비행연대(IL-10, La-9) 70명 등 총 363명이었다.⁵⁸⁾

1953년 4월 기준 363명이라는 북한 조종사 숫자는 전쟁초기 괴멸된 북한공군 수준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이다. 이는 개전당시 조종사 숫자를 뛰어넘는 것으로 전쟁기간 중 북한공군의 재건을 다음에서 살펴볼 항공기 증가와 더불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6) 1968년 발행된 국내 자료에 의하면 개전초기 북한 조종사를 20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45~'68』,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523쪽.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군사편찬연구소, 2001, 260~261쪽.

58)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1953.4.30)」,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29~630쪽.

(2) 항공기 확보 / 지원

전쟁기간 항공기는 소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항공기는 조종사와 같이 양성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소련에서 북한지역 또는 북한공군이 위치해 있던 중국 만주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로 했다. 이동 방법은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해 조종해서 오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항공기 지원은 무상은 아니었다. 북한은 항공기를 지원받는 것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전쟁시기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항공기 지원 사항과 대가지불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항공기 지원이다. 전쟁이전부터 북한에 항공기를 지원해 주었던 소련의 원조는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 김일성은 1950년 8월 18일 소련에 공군력을 요청한데 이어 1950년 10월 25일 소련에 PO-2기 20대를 11월 15일 이전까지 중국 안둥(安東)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⁹⁾ 또 1951년 10월에는 스탈린에게 3개 보병사단을 위한 무기 공급, 자동차 1천대와 함께 Tu-2 항공기를 요청한다.⁶⁰⁾

북한의 공식문헌에도 소련으로부터 항공기를 지원받았음을 언급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김일성은 1951년 4월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에게 한 지시를 통해 “공군사령관에게 지시하여 비행기를 접수하러 가는 성원들을 빨리 현지에 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⁶¹⁾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군무력을 새로운 비행기와 최신 기술장비들로 강화하여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미제침략들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아야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서한(1950.10.25)」,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88쪽.

60)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 육군상에게 보낸 전문(1951.10.17)」,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260쪽.

61)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에게 준 지시(1951.4.4)」, 『김일성 전집 제1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5, 338쪽.

합니다.”⁶²⁾라고 강조한다.

개전초기 비행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은 1951년 10월 기준 3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전초기 상당수의 항공기가 미 공군에 의해 손실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학교의 교육 및 전투용항공기 141대(기중불상)와 전투부대에 MiG-15 52대, LA-9 48대, PO-2 12대, YK-9B 2대, YK-11 2대, YK-17 2대, YK-18 1대, IL-10 30대, YK-9 32대 LA-2 연습기 2대, IL-10연습기 1대 등 총 184대이다. MiG-15는 당시 최신의 제트전투기로서 전쟁초기에는 없던 것이었으나, 1951년 10월 52대를 보유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⁶³⁾ 1952년 7월 24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서한을 보내, 항공기 40대 대신에 Tu-2 항공기 30대의 제공을 약속하고⁶⁴⁾ 김일성은 이에 대해 스탈린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명한다.⁶⁵⁾

이후에도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항공기 지원은 계속되었다. 특히 이 시기 언론에는 1952년 9월 소련이 중국과 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내용에는 향후 1년간 중국에 대해서 구형기 Yak로부터 MiG-15까지 1,500대에 이르는 항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⁶⁶⁾ 이 내용은 소련과 중국간의 협정이었지만, 항공기 지원이 북한에도 비슷한 조건과 수준으로 제공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2〉는 1953년 4월 현재 북한공군의 부대 편성 및 보유항공기 기종별 현황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공군은 항공학교 소속의 항공기를 제외하고도 386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62) 김일성, 위의 책, 338쪽.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60~261쪽.

64)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총군사고문에게 보내는 전문(1952.7.24)」,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70쪽.

65)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 라주바예프가 소련 육군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1952.7.25)」, 군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270~271쪽. 김일성은 이 전문에서 Tu-2 항공기를 조선 조종사들이 소련에서 수령하여 여름에 만주로 몰고 오게 할 것을 요구한다.

66) 『동아일보』, 1952년 9월 17일자.

전쟁이전에는 한 대도 없었던 MiG-15의 개량형인 MiG-15bis를 158대나 보유하게 되었다.

〈표 2〉 1953년 4월 1일 현재 북한공군 현황

부 대	항공기 기종	대수		합계
공군사령부				386+α
제1전투비행사단	MiG-15bis	54	158	
제2전투비행사단	MiG-15bis	63		
제3전투비행사단	MiG-15bis	41		
제10제트폭격사단	IL-28	39		
제1독립폭격연대	TU-2	37		
제2독립폭격연대	Yak-18, PO-2	48		
예비 비행연대	IL-10, La-9	104		
항공학교	전투기 및 훈련기	?		

북한공군의 전력증강은 1953년 6월에 10,547명의 병력에 독립전투비행사단 3개, 독립폭격비행사단 1개, 독립폭격비행연대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 항공기는 MiG-15bis 110대를 비롯해 MiG-15 39대 등 215대와 기타 항공기를 포함해 총 49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전쟁초기 괴멸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항공기 도입은 비약할 만한 성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기종별 보유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953년 6월 15일 기준 북한공군 항공기 보유현황

구분	비행기종	대수	합 계
전투기	MiG-15bis	110	215
	MiG-15	39	
	La-9	66	
습격기	IL-10	55	55
폭격기	IL-28	39	76
	Tu-2	37	
기타	·	146	146
총 계			492

* 출처: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의 보고서(1953.8.25)」,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43~644쪽.

다음으로 소련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기에 대한 대가 지불문제를 살펴 보자.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항공기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有償) 판매였다.

이점에서 김일성은 여러 차례 항공기 관리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51년 4월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에게 한 지시를 통해 “이번에 들어오는 비행기들은 우리 인민이 푼전을 아껴가며 마련한 귀중한 외화를 주고 가져오는 것인 만큼 공군사령부에서는 비행사와 기술근무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비행기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부속품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고 아껴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⁶⁷⁾라고 강조한다. 김일성은 1952년 6월 20일 “인민공군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동무들이 다루고 있는 비행기들은 우리 인민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을 제대로 못 입으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곤란을 이겨내고 투쟁하여 마련하여준 가장 귀중한 인민의 재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 비행사들을 사랑하는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자기의 비행기를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⁶⁸⁾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소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항공기 대금으로 지불했을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측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소련의 항공기를 포함한 전쟁물자에 대한 대가지불은 차관이나 현물상환 형태인 유상판매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과 소련은 1949년 3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1949년 3월 11일자로 소련의 조선문제위원회가 작성된 「설비, 자재 및 군사장비의 대금 결제를 위해 소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게 될 차관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초안 양국간 협정

67)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남일에게 준 지시(1951.4.4)」, 『김일성 전집 제13권』, 338쪽.

68) 김일성, 「인민공군을 더욱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2.6.20)」, 『김일성 전집 제1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51쪽.

(안)」에 따르면, ‘1949년 7월 1일부터 1952년 7월 1일까지 사용될 루블(금액은 미기재, 저자 주) 상당의 차관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하며, 북한은 ‘1952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액수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그 수단으로는 ‘철, 비철금속, 화학제품을 비롯한 기타 제품으로 차관액과 이자를 상환한다. 양국의 동의하에 금으로도 대부 상환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⁶⁹⁾

협정내용은 1950년 2월 4일 소련으로부터 3개 보병사단 추가 편성을 위한 무기를 소련에서 구입하려고 북한의 계획에 따라 1951년분 차관을 1950년에 앞당겨 이용해 달라는 김일성의 요청으로 일정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⁷⁰⁾

무기면에서 예를 들면 1950년 3월 북한정부는 북한군의 무장과 증강을 위해 소련정부에 1억 2천~1억 3천만 루블 상당의 군사기술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당해연도에 금 9톤, 은 40톤, 모나즈석 농축광 1만 5천 톤 등 1억 3천 8백 5만 5백 루블 어치를 소련에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사고문의 현지급여 및 숙박음식 등 체재비도 북한측이 전담했다. 또한 전쟁 중 소련 군사학교에 파견된 조종사, 통신 등의 북한 수련생 훈련비도 모스크바 계좌를 통해 정식 지불되었다.⁷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항공기를 군사차관형식으로 도입했고, 그 상환 수단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69) 「소련 내각회의 제1부의장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첨부 메모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되는 설비와 자재대금 지불을 위한 소·조간 협정(안)(1949.3.11)」, 군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7~29쪽.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소련 정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내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북조선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1950.2.7)」, 위의 책, 56쪽.

71)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2, 418~419쪽.

(3) 북한지역 비행장 복구/신설

북한은 개전 당시 북한지역에 비행장 2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5개의 비행장이 인공포장을 해 놓은 이착륙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MiG-15 기지로 적합한 비행장은 없었다.⁷²⁾ 그리고 이들 비행장마저 미군의 공습으로 모두 작전불능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1951년 4월 말 순안, 순천지역에 새로운 4개의 비행장 건설을 시작하였으나, 미 공군의 공습으로 복구와 파괴를 반복하였다. 1951년 9월에는 태천지역에 비행장 3개의 건설을 시작, 9월에 완공하여, 5일간 MiG-15 기지로 운용하였지만, 이 또한 미 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1951년 7월 의주 비행장 건설이 시작되어 11월 초에 22,000미터 길이의 콘크리트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이 건설되었다. 북한은 만주에서 MiG 기 훈련을 마친 북한공군 제1항공사단 제2항공연대(첫번째 제트기 연대)를 1951년 11월 7일 의주기지로 이동시켰다. 이 시기 김일성도 의주를 방문했다고 한다.⁷³⁾ 그러나 북한 항공연대는 미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 1951년 12월 15일 의주기지를 포기하고 안동으로 다시 이동했다.⁷⁴⁾ 그리고 안동에서 소련, 중국공군과 기지를 공유했다.⁷⁵⁾ 의주 전개 및 안동 복귀이후 북한과 공산공군은 더 이상 북한지역에 대한 비행장 건설을 추진하는 대신 동북지방에 비행장 건설을 시도하게 된다.⁷⁶⁾

소련자료에는 북한지역에서 비행장 복구작업 시 유엔공군의 활동이 잘 나타나 있다. 미국공군은 북한의 비행장 복구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2단계 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단계는 단독이나 항공기 4~12대의 작은 그룹

72) 「제18비행기술사단장이 제64전투비행군단장에게 보낸 보고서 발췌(1953.9월)」,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476쪽.

73)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p.106~107.

74) 그러나 소련측 자료에는 의주에서 체류 기간은 16일이었다고 되어 있다. 노금석의 증언에 비해 짧은 기간이다. 「제18비행기술사단장이 제64전투비행군단장에게 보낸 보고서 발췌(1953.9월)」,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477쪽.

75)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107.

76) 「제18비행기술사단장이 제64전투비행군단장에게 보낸 보고서 발췌(1953.9월)」,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477쪽.

으로 주야 공습을 실행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비행장을 파괴하지 않은 채 공중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개별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비행장 건설이 완공에 다다른지나 혹은 완공시점에 제2단계 공격을 감행해 지금까지 건설되었던 비행장을 완파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작전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개별성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생산성을 축소시켰다고 한다.⁷⁷⁾

결과적으로 북한 영토내에 비행장 복구 및 신설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공산공군은 북한 영토내에서는 땅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항공기를 제외하고 제트전투기의 작전이 가능한 비행기지를 단 한곳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모든 잔여 항공전력을 만주로 이동하게 했으며, 만주에서 한반도에 대한 공군작전은 전투기 체공시간 등에서 제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포함 공산공군의 작전을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북한공군 작전 활동

소련공군의 소극적인 작전은 미 공군이 주축이 된 유엔공군의 적극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적 항공기에 대한 대공방어 강화와 제트항공기가 아닌 구형 항공기를 이용한 특수전술이었다. 이점은 전쟁이후 북한 공군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대공방어 강화활동과 PO-2를 이용한 특수작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공방어 강화사항이다. 유엔공군에 의해 한반도 제공권이 장악된 상황에서 북한은 대공방어에 주력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일성은 대공방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비행기 사냥군조’, ‘반항공반어처’, ‘전시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제18비행기동사단 지원업무 종결보고 1951년 6월~1953년 9월』, 군사편찬연구소, 2011, 51쪽.

철도복구연대’ 등 다양한 조직을 설치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8월 유엔공군의 폭격에 대처하기 위해 방공사업 강화를 지시⁷⁸⁾한데 이어, 12월 29일에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비행기 사냥군조 조직’을 지시한다.⁷⁹⁾ ‘비행기 사냥군조’는 미 공군 항공기를 소총으로 격추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김일성은 이 조직을 1951년 1월 5일까지 각 보병연대에 2~3개씩 조직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각종 격려대책을 약속한다.⁸⁰⁾ 이후 ‘비행기 사냥군조’의 전과에 대한 보도는 1953년 7월말까지 노동신문에 약 35건 가량이 보도된다.

김일성의 대공방어 대책은 현실적으로 공군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직후인 1951년 7월 13일 최고사령부 간부들과 한 담화에서도 반항공방어를 강조하면서 최고사령부에 ‘반항공방어처’를 신설한다. 그러면서 이 조직이 전선부대들의 반항공방어뿐만 아니라 후방의 반항공방어까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⁸¹⁾ 이어서 ‘항공감시 및 통보연락체계 수립 및 통일적 지휘’⁸²⁾, 항공감시를 위한 대책 강화⁸³⁾, ‘평양 반항공 방어정형’ 검토 등을 지시한다.⁸⁴⁾ 또 비행대의 강화도 지시하는 데, 그 내용에는 아직

78) 김일성, 「방공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명령 제39호 (1950.8.1)」, 『김일성 전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5, 194~195쪽.

79) 김일성, 「비행기사냥군조를 조직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 (1950년 12월 29일)」, 『김일성 전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5, 501~502쪽.

80) 당시 비행기 사냥군조에 대한 격려책으로는 타 군인들에 비해 봉급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고 솜옷과 신발을 보장하여 주며 식사의 질을 높여주는 것 등이다. 또 적기 1대를 격추한 사수(혹은 포수)와 개별적 전사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2급을 수여하고, 그 외 인원들에게는 국기훈장 제3급을 수여하며 적기 2대를 떨군 사수(혹은 포수)와 개별적 전사에게는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고 그 외 인원들에게는 국기훈장 제2급을 수여하며 적기 3대를 떨군 사수에게는 공화국 영웅칭호 수여, 3개월 동안에 비행기사냥군조에서 적기 3대 이상 떨군 병사, 하사관 및 군관들에게는 15일간 휴가를 주어 집으로 보내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81) 김일성, 「반항공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간부들과 한 담화 (1951.7.13)」, 『김일성 전집 제14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11쪽.

82) 위의 책, 11쪽.

83) 위의 책, 12쪽.

84) 위의 책, 14쪽.

항공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반항공비행대와 지상부대의 전투행동을 지원하는 전선비행대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며, 집중과 통일의 방법을 강조하였다.⁸⁵⁾

‘전시철도복구련대’는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철도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철도복구를 강조하는 조치였다. 교통성 산하에 조직하고, ‘이동복구대와 공무공작대’로 구성되며, 이들에겐 제복을 입히고 군사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⁸⁶⁾

미 공군자료에 따르면 6·25전쟁기간 작전활동 중 격추된 미 공군 항공기의 격추원인에는 적의 대공포에 의한 것이 550대, 공중전이 139대로 대공포에 의한 격추가 월등히 높았다.⁸⁷⁾ 이것은 물론 제64전투비행군단 예하 고사포사단의 역할도 있었으나, 북한의 대공방어 노력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공군은 전투기를 이용한 공격이외에 PO-2라고 하는 구형 경량항공기를 이용한 특수전술을 사용하여 유엔군을 위협하고자 하였다. PO-2를 이용한 야간 공격은 6·25전쟁기간 북한공군이 시도한 가장 효과적인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PO-2를 이용한 야간 특수공격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 11월경이었다. 북한공군은 소련공군이 독·소 전쟁 시 적용했던 전술 중 일부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그 일환으로 PO-2 항공기를 이용한 야간 폭격을 전개했다.⁸⁸⁾ PO-2는 합판과 가죽 천으로 만들어진데다 저공으로 비행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고, 일반 땅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였다.

북한은 야간에 PO-2를 이용해 미군부대나 비행장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 1953년 6월 15일 밤에는 9대의 경량항공기가 이승만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⁸⁹⁾ PO-2

85) 김일성, 앞의 책, 14~15쪽.

86) 김일성, 「전시철도복구련대를 조직할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한 결론(1950.7.8)」, 『김일성 전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5, 105~106쪽.

87)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74

88)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2002, 672쪽.

공격은 미 공군이 PO-2 이착륙 비행장을 대규모로 폭격함으로써 1953년 7월초 이후에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PO-2는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으며, 전쟁이후 북한이 An-2를 이용한 전술활용은 PO-2의 성공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 북한공군의 재건 결과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공군은 전쟁초기 괴멸된 상황에서 소련의 지원하에 전쟁기간 중 재건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53년 7월 당시 북한의 공군 재건결과는 양적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성공했지만, 질적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적측면에서 북한공군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당시 1개 비행사단과 병력 2,800명, 비행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 6월 15일 기준 병력 10,547명에 3개 전투비행사단과 1개 폭격사단, 2개 독립폭격연대를 구비하게 되었고, 항공기는 전투기 215대, 습격기 55대, 폭격기 76대, 기타 146대 등 492대를 보유하게 되었다.⁹⁰⁾ 조종사는 1953년 4월 기준 약 363명이었다. 산술적으로는 개전초기보다 병력은 약 3.7배, 조종사와 항공기는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전쟁초기 북한공군이 괴멸된 상황을 고려하고, 개전당시 단 1대도 없었던 당시 최첨단 제트항공기인 MiG-15기 149대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은 비약적인 성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측면에서 북한공군은 아직 완전한 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했었다. 개전초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공군은 질적으로도 충분한 재건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측면에서 이룩한 성장에 비해 질적측면의 성장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89) 공군본부, 앞의 책, 674쪽.

9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의 보고서(1953.8.25)」,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643~644쪽.

당시 북한공군의 질적 수준은 군사고문단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대부분의 사단 및 연대 참모부는 고문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각급 전투비행부대 참모부는 대공방어지휘체계에서의 전투 지휘는 가능하나, 공격작전의 조직 및 실행은 고문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⁹¹⁾

1952년 말에 이르러 중국, 북한의 연합공군은 이미 전투준비를 갖춘 충분한 수의 부대를 보유하고 소련 전투기들과 협조하에 적 공군의 대규모 공격에 대한 반격에도 참여하였다.⁹²⁾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북한 조종사들은 미 공군에 희생되거나, 스스로 겁을 먹고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⁹³⁾

김일성도 북한공군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김일성은 “지금 어떤 비행사들은 하루바삐 싸움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투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군부대의 중요한 과업은 적과 무리하게 대항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 지상부대와와의 긴밀한 협동동작으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 있습니다.”⁹⁴⁾라며 아직은 미 공군에 대적할 수준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53년도 소련 군사고문단의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예로써, 북한 공군사령관과 참모그룹을 비롯해 각 사단, 연대 단위의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북한공군 지휘관들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련 고문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점진적으로 그 의존도를

91)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1953.4.30)」,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625쪽.

92) 「제64전투비행군단장이 소련군 공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 발췌문, 1951년 6월~1953년 7월 27일(보고일자 미상)」,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45~446쪽.

93) A. Timothy Warnock Editor, *Op. Cit.*, pp.59~60.

94) 김일성, 「인민공군을 더욱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2.6.20.)」, 『김일성 전집 제1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58쪽.

낮추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개 비행중대를 선발해 야간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조종사들에 대한 재교육 등이 진행되었다.⁹⁵⁾

결론적으로 정전협정 체결직전 북한공군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비록 전투능력을 비롯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성장에 비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 또한 개전초기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4. 휴전 전후 재건전력의 북한 반입

북한은 전쟁초기 괴멸의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기간에 공군력을 재건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재건해 놓은 공군력은 북한영토가 아닌 중국 만주와 소련에 이루어놓은 결과였다.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다면 북한은 공군력의 북한 반입을 할 수 없었다. 정전협정 13항 2목은 한반도 안으로 군사장비의 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휴전당시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경우 같은 성능과 유형의 물건으로 1:1로 교체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 및 지정된 출입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⁹⁶⁾ 조종사의 입북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힘든 부분이었다. 그러나 장비의 입출입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점이 북한에게는 해결해야 할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재건한 공군력을 비밀리에 북한영토로 반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기간 재건한 공군력을 정전협정을 위반해 가면서 북한으로 이동시켰을까?

95)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1953.4.30)」,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623~625쪽.

96)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1953.7.27)』

이 과정에 대해서 1953년 9월 자신의 MiG-15를 몰고 귀순한 노금석의 진술은 매우 유익하다. 노금석에 따르면, 항공기 반입이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 시기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 27일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금석은 정전협정 체결 일주일 전 북한공군 최고정치위원인 김한전 장군이 당시 노금석이 주둔해 있던 기지(안동: 저자 주)를 방문하여 1953년 7월 27일 이후에는 북한 내로 무기나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하면서, 그 전에 공군 전체를 만주에서 북한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동장소는 중국군이 복구해 놓은 의주비행장이라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북한 조종사들이 7월 19일부터 MiG기를 의주에 몰고 간 후 트럭을 타고 안동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북한은 MiG기가 착륙하자마자 남쪽의 산속으로 옮겨 위장했다고 한다. 또 7월 26일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는 안동에 있는 모든 인력, 즉 소련군, 중국군, 북한군, 조종사, 정비사, 지휘관 할 것 없이 모두 MiG기를 분해하고 포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MiG기를 바지선에 싣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다음 일주일 동안에도 나머지 비행기를 트럭, 기차, 바지선에 싣고 북한 안으로 옮겼고, 이런 작업은 1953년 8월에도 계속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항공기는 의주비행장에서 내륙 운송을 통해 구성, 평양 순안비행장 등으로 배치되었다.⁹⁷⁾

항공기의 북한 반입 후 1953년 8월과 9월 비행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⁹⁸⁾ 노금석은 1953년 9월 21일 순안비행장을 이륙, 남한에 귀순했는데, 당시 순안비행장에는 16대의 제트전투기가 있었다고 하였다.⁹⁹⁾

그렇다면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어느 정도의 항공기를 북한으로 반입한 것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55년

97) No Kum-Sok with J. Roger Osterholm, *Op. Cit.*, pp.139~143.

98)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광복절인 1953년 8월 15일, 노금석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각각 8대로 구성된 2개의 밀집대형으로 평양에서 축하비행을 했다고 한다.

99) *ibid.*, pp.143~144.

9월 7일자 조선일보에는 당시 한국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300대의 MiG기가 불법으로 반입되었다고 하였다.¹⁰⁰⁾

일부 자료에 따르면, 1958년 북한은 제트전투기 622대를 포함 약 8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행기지는 28곳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¹⁰¹⁾ 스톡홀름 평화문제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수백 대의 MiG-15와 MiG-17 전투기, 그리고 약간의 IL-28 경폭격기를 제공했다고 나와 있다.¹⁰²⁾

북한의 항공기 밀반입과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측도 휴전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¹⁰³⁾ 그러나 1957년 6월 21일 제75차 군정위 회의에서는 양측간 상대적 군사역량의 균형을 명분으로 공산군 측이 이 조항을 준수할 의사를 증명할 때까지 정전협정 13항 ㄱ목의 준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¹⁰⁴⁾ 이 시점에서 유엔사측은 더 이상 북한의 항공기 밀반입을 묵과하기 힘들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북한이 전쟁기간 만주지역에서 재건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북한 영토내로 반입했으며, 이후에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항공기 지원을 통해 공군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0) 『조선일보』, 1955년 9월 7일자. 이 자료는 한국정부가 북한출신 군인 및 민간인의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일부 항공기의 숫자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101) 한승주,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김준업·로버트 스칼라피토 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1982, 249쪽.

102) SIPRI, *Arms Trade Registers: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Cambridge: MIT Press, 1975), pp.10~12. 함택영, 앞의 책, 160쪽.(재인용)

103)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엔사측이 공산군측에 정전협정 13항 ㄱ목에 대해 항의한 것은 1957년 제57차까지 최소 3차례 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55년 2월 21일 제55차 군정위 회의, 1955년 7월 5일 열린 제60차 군정위, 1956년 2월 14일 제68차 군정위 등이다. 함참 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4집』, 1999.

104) 위의 책, 53~54쪽

5. 맺음말

지금까지 6·25전쟁기 북한공군의 초기 전력현황과 괴멸, 그리고 재건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공군의 성장을 확인하였다.

북한공군은 개전초기 남한공군에 비해 전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미 공군의 참전으로 개전 4개월 만에 괴멸 되었다. 이후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건과정을 거쳐 1953년 6월에는 병력 10,547명에 3개 전투비행사단과 1개 폭격사단, 2개 독립폭격연대를 구비하게 되었고, MiG-15 149대를 비롯해 총 49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였으며, 약 363명(4월 기준)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등 개전초기와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정전협정 체결 전후 기간에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재건 공군력을 비밀리에 북한지역 안으로 반입하였으며, 이를 공군력 성장의 공고한 토대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 기준 남한 공군력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게 이르렀고, 1967년 베트남전쟁, 1973년 중동전쟁에 전투조종사를 파병하는 등 전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북한공군의 전쟁기간 중 이같은 성장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War made states, states made war)’라며 전쟁과 군대, 그리고 국가성장과의 관계를 지적한 국제정치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연구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쟁기간 중 북한공군의 괴멸과 재건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쟁기간 중 북한공군의 재건과정이 현재 북한 공군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이 점에서 오늘날 남북한 군비경쟁의 시작점이 휴전이후가 아닌 전쟁기간 군사력 증강과정부터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6·25전쟁기간 중 북한공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현실에서 이 분야 연구의 시작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논문으로서 양적인 제한으로 전쟁기 북한공군의 성장이 전후 공군력 성장으로, 그리고 해외파병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생략되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자료가 아닌 소련측 자료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북한공군에 대한 연구에서는 6·25전쟁기간 재건된 북한 공군 전력의 휴전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지 보다 상세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에서 철수와 김일성의 동의과정에서 북중관계의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한 북한 공군력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과 소련간 항공기를 비롯한 군사무기 지원과 대가 지불에 대한 연구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전쟁기간 공군력 재건과 전후 성장이 이후 북한공군의 해외파병과 군사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⁵⁾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북한공군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6·25전쟁, 조선인민군, 북한공군, 김일성, 스탈린, 조종사, 항공기, 공군성장, 공군재건, 정전협정

105) 북한공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할 것. 김일성, 『애급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5.28)』, 『김일성 전집 제5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2003; 김일성, 『비행대전투원동무들에게-애급에 가 있는 비행사들에게 보낸 서한(1973.11.7)』, 『김일성 전집 제5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2004; 『노동신문』, 2011년 2월 12일자; 김일성, 『수리아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한 담화(1973.10.23)』, 『김일성 전집 제5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2003 등이다. 또한 미 우드로윌슨센터 국제냉전사프로젝트(CWIHP)의 연구성과도 참고할 만하다. 북한은 1950년대 말 이후 고위급 공군관들을 공산주의 및 비동맹국가들에 보내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초 부터는 공군 조종사들을 기술고문 또는 훈련 목적으로 이집트, 이란, 캄보디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니카라과아, 수단, 베트남, 짐바브웨 등에 보냈었다. 조셉 S. 버뮤데즈 저, 김광수 역, 『북한군: 구조와 변동』, 황금알, 2007, 200쪽.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of North Korean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Lee, Sin jae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during Korean war made the foundation of reinforcement of the military buildup after war. And so we can evaluate the period of Korea war by starting point about military buildup. But, the study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during Korean war is not enough. Particularly the study of North Korean Air Force(NKAF) nearly could not find.

In this paper, we study NKAF during Korean war. Especially, Reconstruction process of NKAF is main study point. For this study check the status of the beginning of the war power of the Air Force look at North Korea, Kim Il Sung, in the circumstances of the initial devastating air power will rebuild, the Soviet 64th Army combat flight status and support of the war, North Korea's air force pilot training in the reconstruction information, aircraft acquisition, airfield repair and new, and in a situation that could not be equipped with air power air defense activities, such as PO-2 aircraft using lightweight operations discussed NKAF.

Through this process, troops increase about 3.7 times, 2 times the pilot, and 2 times the aircraft than at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growth of NKAF continue after the cease-fire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 out the growth of NKAF during Korean war make the start point of military buildup in Korea peninsula.

Key Words : Korean War,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North Korea Air Force(NKAF), Kim Il Sung, Joseph V. Stalin, Pilot, Aircraft, Air Force growth Process, Air Force Rebuilding, Armistice Agreement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기 미 육군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 활동

정 용 욱*

1. 머리말
2. 제1~8군사지대의 편성과 한국 부임(1950.10~1951.3)
3. 제1~8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1951.2~1953.1)
4. 8086부대로 통합과 이후 활동(1953.1~1954.1)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미 극동육군 8086부대 군사지대는 1953년 1월 24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작전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에 표창한다. 극동에서 미 육군 편사 계획의 책임을 맡아서 지대 요원들은 전선의 진지를 누비고 다녔고, 독특한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야전에서 군사 집필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다. 혹한과 실제 전투상황에서 작전해야 하는 위험에도

* 서울대 국사학과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전 역사기록에 포함되거나 각종 군사학교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사후보고서, 전투증언과 전술작전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군사지대의 모범적 기여와 군인정신은 요원들의 개인적·집단적 공로를 반영하며 군복무라는 존중받는 전통을 유지시키고, 세계 평화를 향한 국제연합의 전진을 촉진시켰다.”¹⁾

위의 인용은 미 극동육군 군사지대(US Army Forces Far East, Military History Detachment, 이하 ‘군사지대’)에 대한 공훈부대(Meritorious Unit Commendation) 표창사다. 이 부대는 처음에는 제1지대부터 제8지대까지 8개의 지대로 편성되었으며, 1953년 1월 8086부대라는 하나의 지대로 통합되었다. 이 표창사는 군사지대가 1950년 10월 미국 본토에서 처음 편성된 후 1954년 1월 표창을 받은 시기까지 이 부대가 수행한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6·25전쟁사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 특히 전문 연구자들은 제임스 슈나벨의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로이 애플만의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월터 허미즈의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빌리 모스만의 *Ebb and Flow* 가운데 한두 권을 들춰본 적이 있을 것이다.²⁾ 이 책들은 6·25

1) Hq. AFPE General Order No. 23, “The Meritorious Unit Commendation,” 1954.1.29. 이 표창사는 Project MHD-35,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 Prepared by 8086 Army Unit (AFP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APO 301, 1954.6.25. Written by 1st Lt Donald P. Grand & Cpl Richard A. Hill로부터 재인용. 이하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는 「연대기」로 약칭. 이 자료의 출처는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Box 28

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66. 이 책들의 분석 대상 시기는 슈나벨과 애플만의 책이 1950년 6월에

전쟁 연구자들이 연구의 초입에서 일차적으로 의지해야 할 입문서 또는 미국 측 자료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 책들은 워싱턴의 정책에서부터 미 극동군·유엔군 사령부의 전략, 작전, 병참은 물론 미 8군과 전선의 전술부대의 작전 수행에 이르기까지 6·25전쟁 당시 미국 정부와 군부, 특히 육군의 활동 전반을 보여준다. 또 이 책들은 꽤나 치밀하게 사실을 고증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필자들은 지휘현장 또는 작전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해당 작전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위 네 책은 미 육군의 공식 한국전사로서 그 발행 주체는 미 육군 군사감실이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각각 출간되었다. 이 책들 가운데 앞의 세 권은 이미 1950년대 후반 또는 1960년대 중반에 집필을 완료했지만 검열과 감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미 육군 군사감실이 펴낸 최초의 6·25전쟁 관련 서적은 위의 책들이 아니고 *Korea 1950*이라는 책이다.³⁾ 이 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병들과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이 수행한 전투와 전장에서 겪은 일들을 설명해준다는 차원에서 급히 만든 일종의 화보집이었고, 그런 면에서 일종의 홍보용 출판물이었다. 이 책을 제외한다면 미 육군 군사감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11월 사이, 허미즈의 책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다. 이렇게 보면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51년 7월까지가 공백인 셈인데, 이후 전쟁발발 40주년이 되는 1990년에 출간된 Billy Mossman, *Ebb and Flow*,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가 그 공백을 메꾸었다. 저자 빌리 모스만은 이 글에서 다룬 군사지대의 지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책들은 모두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미 육군 군사감실 編, 로이 E. 애플만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1집: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陸軍本部, 1963.

미 육군 군사감실 編, 윌터 G. 헤어메스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선 막과 싸우는 전설』 陸軍本部, 1967.

미 육군 군사감실 編, 제임스 F. 슈나벨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3집: 정책과 지도』, 陸軍本部, 1973.

빌리 모스만 저·백선진 역, 『밀물과 썰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3) Center of Military History, *Korea 1950*,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53.

편찬에 직접 관계한 공식전사로서 최초로 출간된 책은 휴전 직후인 1954년 간행된 러셀 구겔러의 *Combat Actions in Korea: Infantry, Artillery, Armor*였다.⁴⁾ 이 책은 미 육군이 편찬한 제2차 세계대전사의 중요한 구성부분 중 하나였던 “Americans in Action”을 본따서 만들었고,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6·25전쟁 중 미군의 대표적 소부대 활동을 병과별로 다룬 전투사였다. 이 책은 특히 실전경험이 없는 초급장교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구겔러로 되어 있지만 그는 이 책의 편자에 가까웠고, 이 책 각 장의 집필자, 또는 초고와 자료 제공자들은 전선을 누비고 다닌 군사시대 군사관들이었다. 즉, 미 육군 최초의 6·25전쟁 공식전사는 군사시대의 활동이 없었으면 출간될 수 없었다.

미 육군은 6·25전쟁 발발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매일 매일의 전황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이러한 자료 수집과 역사 기록 활동을 전체 6·25전쟁 역사 편찬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야심 찬 기획을 마련했다.⁵⁾ 미 육군은 이러한 한국전사 편찬 계획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미 육군 군사감실(Office of Center for Military History)→극동군·유엔군 군사과(Military History Section, GHQ FNC/UNC)→미 8군 군사과(Military History Section, 8th Army)→군사지대(Military History Detachments)로 이어지는 지휘·통제체계를 활용했다. 이 글에서 분석할 군사지대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말단에서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자료 생산과 수집, 정리를

4) Russel A. Gugeler, *Combat Actions in Korea : Infantry, Artillery, Armor*, Washington, D.C.: Combat Forces, 1954. 이 책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 A. 구겔러 著·金鎮宇 譯, 『(韓國에서의) 小部隊戰鬪』, 兵學社, 1977(영한대역); R. A. 구겔러 著·강창구 譯, 『(韓國에서의) 步·砲·機甲의) 小部隊戰鬪』, 兵學社, 1990; 러셀 A. 구겔러·저 조상근 편역, 『(한국전쟁에서의) 소부대 전투기술 BG북겔러』, 2008.

5)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Entry A1-141, Box 8, “Plan for History of Korean Conflict”, 1950.8

위해서 활동했다.

이 글은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사지대의 편성에서부터 해체에 이르는 조직 변화와 그 활동 전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지대의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만큼 이 글은 무엇보다 사실 이해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둘 것이다.

2. 제1~8군사지대의 편성과 한국 부임(1950.10~1951.3)

6·25전쟁에서 미 육군의 첫 전투가 7월 5일 스미스 특별부대의 오산 전투였고, 미군의 참전은 당장 미군에게 한국전선에서 미군 활동의 기록 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군사지대의 편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전선의 미 8군 사령부 군사과였다. 1950년 8월 29일, 8군 군사과는 2개의 B형 역사팀과 3개의 C형 역사팀을 파견해줄 것을 극동군사령부 군사과를 통해 군사감실에 요청했다. 더불어 전쟁발발 이후 확대된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의 소령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극동군 군사과도 8군 군사과의 군사지대 파견과 인력 증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군사감실은 8군 군사과와 극동군 군사과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지대의 편성을 서둘렀고, 마침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미국에 주둔하던 일부 군, 군단, 사단 사령부에 제1지대부터 제8지대까지 8개 지대가 창설되었다. 유형별로 A형 역사팀 1개, B형 역사팀 3개, C형 역사팀 4개가 창설되었다.⁶⁾

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History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A1-140, Box 2, IOM(Inter-Office Memorandum), From Dr. Prange to Gen Willoughby, Sub: Eighth Army Historical Program, 1951.2.10 중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윌러비 장군과 군사감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지대를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했고, 6·25전쟁에 동원한 8개 군사지대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했다. A형은 다른 군사지대들의 일종의 관리본부 격이었고, 중령 1명, 사병 3명, 수석 서무병 1명, 차량관리 하사관 1명, 속기사(stenographer) 1명으로 구성되었다. B형은 군단과 병참사령부에서 연락과 조사업무를 담당했고, 소령 1명, 사병 2명으로 구성되었다. C형은 사단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대위 1명, 사병 2명으로 구성되었다.⁷⁾ 역사팀 A, B, C는 편성 규모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로 임무와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인원 구성도 편제상의 규정에 불과했고, 한국에 부임한 8개 지대의 초대 지대장은 대위 아니면 중위가 많았다. 그 가운데 2차대전에 군사관으로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처음에 1지대장을 맡았으나 한국에 도착한 후 7지대장으로 부임한 윌리엄 폭스(William J. Fox) 대위 1명 뿐이었다. 지대장들은 민간인 시절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거나 또는 부전공했던 학력이 있고, 사회에서는 기자, 통신원 경력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병들은 대부분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병이었다.

〈표 1〉을 통해 먼저 각 지대의 편성에서 한국 부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알아보자.

8개 군사지대 가운데 제일 먼저 편성된 지대는 제1, 2, 6 세 개 지대였고, 편성일자는 1950년 10월 9일이었다. 제5지대의 편성 일자는 1950년 10월 1일로 일자상 제일 먼저 편성되었지만 거의 두 달 동안 서류상의 조직에 불과했고, 1950년 12월이 되어서야 지대장이 부임했다. 제7, 8지대는 1950년 11월 15일 편성되었고, 가장 늦게 편성되었다.

실 워드 장군의 1950년 8월 29일, 9월 25일, 12월 5일자 교신 전문
7) 「연대개」, p.iv

〈표 1〉 제1~8지대의 편성과 한국 배속까지의 활동

지대 (형태)	초대 지대장	편성일, 편성지	편성 직후 훈련 내용	일본 도착일	일본에서 훈련과 활동	한국 도착일
1(A)	Capt. William J. Fox	1950.10.9, Fort Bragg, N. Carolina	5군단 1950년 지휘보고서 편찬 지원, 차년도 지휘보 고서를 위한 참모부서와 예하 부대의 지휘보고서 제출 절차 비망록 편찬	1951. 5.22	8군 군사과가 진행 중인 한국전사 편사에 대한 준비 교육	1951. 6.12
2(B)	Capt. William J. Fox, 이후 Pierce W. Briscoe (1951.3.12)	1950.10.9, Fort Bragg, N. Carolina	위와 같음	1951. 5.22	위와 같음	1951. 6.12
3(B)	1st Lt. Martin Blumenson	1950.10.12, Fort Hood, Texas		1951. 1.16	요코하마와 오사가 육군병원 에서 부상자들 사후증언 채 록. 1월 7~20일 원주에서 작전한 2사단 부상병 대상.	1951. 3.8
4(C)	Capt. Edward C. Williamson	1950.10.11, Camp Pickett, Virginia.		1951. 1.16	요코하마와 도쿄 육군병원 에서 부상자들 사후증언 채록. 2사단의 원주 방어 전, 반격전 관련.	1951. 3.8
5(C)	Lt. Harry J. Middleton Jr.(1950.12. 12 부임)	1950.10.1, Fort Campbell, Kentucky	거의 두 달 동안 서류상의 조직에 불과	1951. 2.13	4개월 간 8군 군사관의 일 원으로 인터뷰와 지휘보고 서(인력 부분) 작성에 종사. 제천 전투 AAR 작성을 위 해 요코하마, 도쿄 병원에 서 부상병 증언 채록.	1951. 6.12
6(C)	1st Lt. William D. Magnes (1950.12.12 부임)	1950.10.9, Camp Atterbury, Indiana	기지 일지, Camp Atterbury 소개 전단, 28사단 훈련일지 작성에 종사.	1951. 2.13	8군 군사관으로서 증언 채록법, 사후보고서 작성법, 지휘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적 지식을 교육 받음. 제천 전투 AAR 작성을 위해 요코하마, 도쿄 병원 에서 부상병 증언 채록. 8군 지휘 보고서 군수 부분 집필.	1951. 7.21
7(B)	Capt. William T. Crawford	1950.11.15, Fort Meade, Maryland	예비군과 해외 파송 2군 요원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1951. 1.16	일본에서 교육-훈련	1951. 2.15
8(C)	1st Lt. John Mewha	1950.11.15, Fort Meade, Maryland	예비군과 해외 파송 2군 요원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1951. 1.16	요코하마와 도쿄 육군병 원에서 부상자들로부터 사후증언 채록	1951. 3.12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군사지대는 195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모두 미국에서 편성되었지만 1, 2지대는 편성 이후 지대장 임명까지 1개월, 6지대는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대부분의 지대가 11월이 되어서야 지대장이 배치되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대 편성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자질 있는 군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개 지대는 편성 후 8군사령부 군사과가 주둔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받았다. 각 군사지대는 1951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대별로 1개월에서 4개월간 재차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부임지인 한국에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도착했다. 1차로 2월과 3월에 걸쳐 3, 4, 7, 8지대가 부임했고, 2차로 6월과 7월에 1, 2, 5, 6지대가 부임했다. 한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2월에 도착한 7지대였고, 가장 나중에 도착한 것은 7월에 도착한 6지대였다. 원래 제1군사지대가 여타 군사지대들을 감독하고 그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1951년 6월이나 되어서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임시로 미 8군 임시군사지대가 편성되어 그들을 대신하여 감독과 조정 임무를 수행했다. 미 8군 임시군사지대는 한국에 부임한 다른 지대들로부터 인력을 충당했다. 제1군사지대가 한국에 도착한 뒤에 1지대는 미 8군 임시군사지대로부터 업무를 인계 받았고, 이 부대는 1951년 말부터 1953년 1월 해산할 때까지 서울에서 작전을 수행했다.⁸⁾

8개 지대는 애초 미국 본토에 설치된 직후 소속부대인 군, 군단 또는 사단 사령부에서 지휘보고서 편찬, 소개 책자 발간, 훈련 일지 작성 등 해당 부대의 일상 업무에 종사했다. 일본에서는 8군 사령부 군사과에 배속되어 지대별로 지휘보고서 작성 훈련, 한국전선으로부터 후송된 부상병을 대상으로 한 사후증언 작성, 인터뷰 훈련,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준비와 교육 등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이 시기 극동군 사령부나 8군사령부, 또 전선의 전술부대 지휘부에 양질의 지휘

8) 「연대기」, p.1.

보고서 작성이 계속 강조되었고, 각급부대 사령부에게 지휘보고서 편찬은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 일본에서 각 지대의 훈련내용은 각 지대 군사관들에게도 지휘보고서 작성과 편찬 지원업무가 무척 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증언 인터뷰(AAI)의 확보였다. 이것은 이 시기 각 지대 훈련의 중점 사항 가운데 다른 하나가 사후보고서의 작성과 편찬, 소부대 전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3, 4지대는 2사단의 원주 방어전과 반격전 관련 증언을 채록했으며, 5, 6지대는 제천전투의 사후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언을 채록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직접 연루된 미 8군 군사과나 극동군 군사과는 물론 미 육군 역사 편찬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워싱턴의 군사감실 할 것 없이 미 육군의 역사 편찬기구가 모두 군사지대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50년 가을에 미국에서 한국 전선 파견을 목표로 8개의 군사지대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8개 지대가 한국 전선에 부임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대체로 각 지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이전 수개월 동안 상부로부터 적절한 지침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판단 하에 임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다.⁹⁾ 미 8군사령부 군사과에 배속된 1951년 초부터 한국 전선에 배치되기 이전의 시점에 각 지대는 지휘보고서 작성·정리, 부상병들로부터 사후증언 채록, 그리고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준비와 교육 등을 통해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였다.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사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흥미 있는 것은 유엔군이 수세에 몰려 있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과 한창 공방을 치르고 있을 무렵인 1950년 8월에 이미 미 육군부 군사감실은 방대한 한국전사 편사 계획을 마련했고, 아울러 군사지대의 설치를 준비했다. 계획상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전사에 대한 전체적 구상이 군사감실 차원에서 존재했고,

9) 「연대기」, p.1

전선의 군사 관련 부서들도 이른 시기부터 군사지대의 파견을 원했지만 군사지대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침이 처음부터 뚜렷하게 마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군사감실, 전선의 군사 관련부서, 그리고 지대 간의 소통이 지대 창설 초기에 그리 원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지대장 폭스 대위는 지대 편성 시 지대의 임무, 파견지역과 목적에 관해 군사감실로부터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폭스 대위는 사적으로 국방부 관리로부터 지대 창설 목적에 관해 들었을 뿐이고, 자비로 워싱턴을 몇 번 방문한 뒤에야 지대의 목표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폭스 대위는 수차례 워싱턴 방문 끝에 군사감실의 워드(Orlando Ward) 중장으로부터 한국전사 전체 편사계획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제2지대장에게도 전달했다.¹⁰⁾ 거기에서 자질 있는 군사관의 부족, 지대 편성과 이송 과정에서 지지부진함 등 실무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대 소속 군사관들의 전선 파견이 초기에 집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지대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조절할 A형 지대인 제1지대가 제일 마지막에 파견됨으로써 미 8군 군사과는 그 임무를 담당할 임시군사지대를 설치해야 했다. 이와 같이 편성초기 지대의 운용은 상부와 관리기구의 구상만큼 그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제1~8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1951.2~1953.1)

8개 지대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임무를 시작한 것은 7지대였다. 1951년 2월 한국에 부임한 7지대는 처음에는 군단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1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 392,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중 '1st Historical Detachment (Type A)' p.3

유일한 A형 지대인 1지대의 부임이 지연됨에 따라 미 8군 군사과에서 조사,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7지대는 1951년 1월 1·4후퇴 시 14공병전투중대가 수행한 한강다리 파괴 작전 등 1군단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 작성, 편찬 활동을 조력했다. 지대장 윌리엄 크로포드 대위는 다른 군사지대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1951년 4월 1일부로 임시로 편제한 미 8군 임시군사지대(the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의 초대 지대장을 맡았다.¹¹⁾ 이어 1951년 3월에 부임한 3, 4, 8지대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각 9군단, 1군단, 10군단에 배치되었다. 각 군단에 배치된 이들 3개 지대는 사단 등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 3개 지대는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사이에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투입된 소부대들의 전투사를 집필하거나 그와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작성했다.¹²⁾

제1, 2, 5, 6지대는 195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국에 부임했다. 제1지대는 1951년 12월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했고, 제2, 6지대는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사이에는 소부대 전투사 집필에 조력했다. 제5지대는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도 지휘관 없는 상태로 2개월을 허비했지만 1951년 6월 15일 대구에 있는 미 8군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도 지휘관 미들턴 중위만이 유일하게 정식으로 임명된 요원이었을 정도로 시종 인력 확보 및 편성과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¹³⁾

다음 표는 초대 지대장들의 경력을 조사한 것이다. 1951년 6월까지 한국에 도착한 7명의 지대장들의 학력,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을

11) 미 8군 역사임시지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위의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참고.

12) 「연대기」, pp.1~7. 또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 “Historical Reports” 참고.

13) 「연대기」, pp.7~14.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제6지대장의 경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초대 지대장들의 학력,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

이름(소속지대), 군사주특기, 복무기간, 연령	학력과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
William T. Crawford 대위(7지대, 미 8군 임시역사지대), 2421(역사편집자), 8년 6개월, 39세	- 1924~29, 뉴욕주 소재 군사학교 - 1929, 학군단, 입관자격증명서 취득(1934년 만료) - 1930, 콜게이트 대학 - 1930~33, 플로리다 마이애미 대학, 영어 전공 - 1934~40, 뉴욕 증권거래소 중개인 - 1940~42, 항공기 제작소(Aviation Plant) 직원 - 1947~49 국무원 해외청산위원회(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 필리핀군도 마닐라지부에서 근무	- 1942.10, 이병으로 입대 - 1943.9.3, 간부후보학교 졸업 후 소위 입관 - 1943~1946, 준장부관 역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유엔회의에서 복무하기도 했음. - 1947.1~1947.4, 예비역으로 소장부관 역임. - 1950년 재소집. - 1950.11, 메릴랜드 조지미드기지에서 제 7군사지대장으로 부임
Martin Blumenson 중위(3), 2421, 4년 6개월, 32세	- 1935, 뉴저지의 버나즈빌 고교 졸업 - 1939, 버크넬 대학 학사 - 1940, 同 대학 석사 - 1942, 하버드 대학 석사, 사학 전공 - 1948~50, 뉴욕 킹스포인트(Kings Point) 소재 해양대학에서 역사학 강사. 해양청(US Maritime Service) 근무 - 1950, 뉴욕 햄프스테드 소재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역사학 강사 - 『토요문학비평』(Saturday Review of Literature)에 때때로 기고	- 1942.6~1946.4, 2차 대전 참전하여 복무 - 1944.12.6, 소위 입관. 미 육군 유럽전구 사령부 군사와 근무. - 1947.3~1950.12, 예비역 장교로 325 군사탐장 역임 - 1950.12, 현역 복귀, 텍사스 소재 후드기지(Fort Hood)에서 제3군사지대장으로 부임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Edward C. Williamson 대위(4), 2421, 未詳, 35세,	- 1916. 4. 26,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출생 - 1935, 플로리다 데이тона 비치 시브리즈 고교 - 1939, 플로리다 대학 학사, 학군단 소위 입관 - 1939~1941, 플로리다 밀턴 고등학교 사회과학 강사 - 1945~46, 플로리다 대학에 복학하여 석사 취득.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과정 지원자로 선정됨. - 1948~50,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 강사, 『플로리다 수고』(Florida Manuscripts) 편집원	- 1941, 시민보호청년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근무 - 1941년 현역복귀명령을 받은 후, 1941년 8월 29일부터 1945년 9월 23일까지 8보병사단 45야전포병대대에서 복무. - 1942~1943, 오클라호마 실기지(Fort Sill)에서 야전포병통신학교를 다녔고, 동기지에서 야전포병장교 기본과정을 마침 - 1943, 통신기지 주파수변조무선학교에서 수학 - 1943.11~1945.7, 45세대 소속 전투포병연락장교로 유럽 전구에서 복무 - 1950년 오클라호마 실기지에서도 야전포병 고등과정 수료, 同年 육군부 육군역사가 학교 참가, 제4군사지대장으로 부임
John Mewha 중위(8), 2421, 9년, 34세	- 1937, 펜실바니아주 체스터 고등학교 졸업. - 1942, 징집 전까지 신용조사관 - 1946.9~1950.5,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소재 밥존스 대학에서 수학, 우등 졸업, 라디오 대본 창작 및 연출 전공, 역사학 부전공 - 1950.6, 템플 대학에 등록	- 1942~46, 4년 2개월 간 육군 복무, 그 중 7개월 간 유럽 사령부에서 해외복무. 동성훈장, 공훈메달, 중군기념청동성장 2개 - 1946.5.5, 전역 - 1950.11.3, 현역 복귀 - 1950.11.10, 제8군사지대장으로 부임

William J. Fox 대위(1), (기분)1542/ (근무)2421, 9년, 33세	- 1918.8.14, 뉴욕 브록클린 탄생 - 뉴욕 소재 성어거스틴 고등학교, 콜롬비아 대학, 랜드 사회과학대학에서 수학 - 1936~37, 뉴욕 브록클린 『데일리이글』(Daily Eagle)의 스포츠기자 및 『뉴욕아메리칸』과 『뉴욕헤럴드트리뷴』의 비상근 기자 - 1937~42, 1945~46, 뉴욕 합동통신사 특파원, 1946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국과 테네시 멤피스 지국으로 전근했으며, 연말에는 지국장으로 부임. 미국신문조합(CIO) 현역 조합원 - 1947, 미국 남동부 남서부 통신사(UP-AP-INS)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텍사스 댈러스에서 임금협상에 참여 - 1948,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근무 - 1949,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근무 - 1950, 워싱턴 디스에서 열린 17차 미국신문조합 전국대회 대표. - 1950~51, 멤피스 신문조합 조합장	- 1942. 7. 29, 소위 임관 - 1944. 2. 1, 중위 진급 - 1944. 11. 1, 대위 진급 - 1942~44, 소총부대 소대장, 중대장, 1보병사단과 29보병사단 참모장교 역임. 29사단역사 서술 - 1944~45, 유럽전구에서 전사관(combat historian)으로 복무, 교전 중과 교전 후 소부대활동연구 생산에 배속된 첫번째 장교였음. 이 보고서 중 일부는 발간됐고, 일부는 발간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군사학교에서 활용되었음. 이 유럽전구에서 작업은 미8군이 현재 추진하는 연구의 기초가 되었음. - 2차대전 참전 기간은 1942.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16일까지 40개월, 그 중유럽 전구에서 32개월간 근무 - 1950,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 1951.1.3, 21개월 간 사단급 제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현역 복귀
Pierce W. Briscoe 대위(2), (기분)2110/ (근무)2421, 8년, 33세	- 1934, 버지니아주 하이랜드 스프링스 교교 졸업 - 1942, 조지아 대학 졸업, 경영학 전공 - 플로리다 소재 밀러 베어링스(Miller Bearings) 판매원 경력 소지	- 1942.11~1946.12, 2차 대전 복무 - 1943.12.7, 소위 임관 - 1946.1~1951.2, 예비역 장교 - 1951.3, 현역 복귀, 제2군사지대장으로 부임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Harry J. Middleton Jr. 중위(5), 2421, 5년, 29세	- 1947,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언론학 학사 - 1947.9~1948.9, 뉴욕시 연합통신사(Associated Press) 기자, - 1948. 9~1950. 9, 『타임』(Time)지 뉴스 편집	- 1943.3~1946.1, 전 기간 사병으로 2차대전 참전, 대부분 텍사스 소재 미4군 홍보과에서 복무, 간부후보학교 - 1949.3.11, 예비역 장교로 소위 임관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 1950.9.15, 현역 복귀, 알라바마주 러커 기지 소재 301군수사령부 배속. - 1950.12.12, 켄터키주 캠벨 기지로 전근. 제5군사지대장 부임 - 1951.4.25, 중위 진급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별 “Historical Reports”

앞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력이 조사된 지대장들의 군사주특기 번호는 대부분 '2421'이었다. 당시 미 육군 군사주특기 번호 2421은 '역사편집자'(historical editor)였다. 1지대장 폭스 대위와 2지대장 브리스코 대위의 기본 군사주특기는 2421이 아니었으나 근무 주특기는 어쨌든 2421이었다. 폭스 대위의 기본 군사주특기는 '역사가'(1542, historian)였다. 지대장들의 연령은 29세부터 39세 사이였으며, 7명의 평균연령은 33.6세였다.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대장은 1지대장 폭스 대위와 8지대장 메와 중위로 현역과 예비역을 합해서 모두 9년이었다. 복무기간이 미상인 1명을 제외한 6명의 평균 복무기간은 7년 4개월이었다. 이는 모든 지대장들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음을 의미했다.

지대장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3지대장 블루멘스 중위와 4지대장 윌리엄슨 대위는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윌리엄슨 대위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두 사람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학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5지대장 미들턴 중위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그와 1지대장 폭스 대위는 언론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특히 폭스 대위는 미국신문조합 전국대회 대표 중 하나로 선출된 적이 있는 베테랑 언론인이었다. 8지대장 메와 중위는 대학에서 라디오 대본 창작과 연출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역사학을 공부했다. 7지대장 크로포드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특이하게 군사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2지대장 브리스코 대위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지대장들의 민간 활동경력 또는 직업은 증권거래소 중개인, 강사, 기자, 신용조사관, 판매원 등 다양했으나 굳이 따지자면 역사학 강사가 2인, 기자가 2인으로 이 두 가지 경력을 가진 지대장이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지대장들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했거나, 언론학 전공 또는 언론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로포드 대위, 블루멘스 중위, 브리스코 대위는 사병으로 징집되어서 2차대전에 참전했고, 2차대전 중에 간부후보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했다. 반면 미들턴은 2차대전 중에는 전기간 사병으로 복무했으나 종전 뒤 예비역 장교로 소위 임관했다. 윌리엄슨 대위와 폭스 대위는 장교로 2차대전에 참전했고, 메와 중위는 언제 장교가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윌리엄슨 대위는 학군단(ROTC) 출신이었다. 지대장들 가운데 2차대전 이전에 직업군인 경력이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의 지대장들이 2차대전 참전을 통해서 장교가 되었다. 2차대전 중 지대장들의 군대 내 보직은 다양했다. 6·25전쟁 이전에 군사편찬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3지대장인 블루멘스 중위와 1지대장인 폭스 대위였다. 그러나 블루멘스 중위는 2차대전 종전 후에 예비역 장교로 군사탐장을 역임했고, 2차대전 중 전사 편찬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1지대장 폭스 대위 뿐이었다. 특히 폭스 대위는 1944~45년, 유럽전구에서 전사관(combat historian)으로 복무했고, 소부대 활동 연구에 배치된 첫 번째 장교였다. 지대장들의 군 복무경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1명을 제외한 모든 지대장들이 1950년 6월 육군부에서 주최한 미 육군 군사관학교(School for Army Historian)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 시점은 지대장들이 현역으로 복귀하기 이전이었고, 모두 예비역 장교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지대의 한국 부임 후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 표는 각 지대의 역대 지휘관과 주요 활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8개 군사지대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대별 활동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시기별로 활동의 초점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 1차로 한국에 부임한 제3, 4, 7, 8지대만이 활동하던 1951년 7월 이전에 이 4개 지대는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에 주력했다. 이 시기 지휘부는 8군 임시군사지대였다. 3지대는 9군단, 4지대는 1군단, 8지대는 10군단에 각각 배속되어 예하 사단 이하 각급 부대들의 작전 중 또는 작전 후 사후보고서, 사후증언을 작성했다. 이 시기에는 미 8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8군 임시군사지대 역할을 맡았던 7지대도 1군단 예하 부대들의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에 조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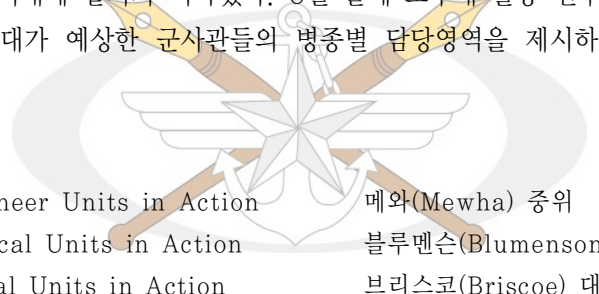
〈표 3〉 제1~8지대의 주요 활동(1951.2~1953.1)

지대 (형태)	역대 지휘관	파견 부대	주요 활동
7(B)	Capt. William T. Crawford (1950. 11. 15) Capt. William J. Fox (1951.6.17) 1st Lt Michael Dopudja (1952.11.23)	8군 사령부	- 8군 군사과에서 조사, 연락 업무 - 1군단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AAR) 작성, 편찬 - 1952년 초 클램업 작전(Operation Clam Up) 편찬 - 1951.9.14, 서울의 법원 건물로 근무지 이동 - 1952년 5월에 이르러 더 이상 인력 보충이 되지 않음
3(B)	1st Lt Martin Blumenson (1950.10.12) Major Billy C. Mossman (1952.4)	9군단	- 1951. 12~1952. 3, 사단 내 소부대 전투에 집중. 제24사단 중심으로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 집필 - 지대 해체 직전인 1952년 12월까지 모스만 소령은 "미 8군 선전 작전", "야전군 활성화를 위한 기지로서 병참관구 조직"이라는 논문 작성
4(C)	Capt Edward C. Williamson(1950.10.11) 2nd Lt Joseph J. Comps	1군단	- 1951.9.14, 서울의 법원 건물로 근무지 이동 - 1951.12~1952.3,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관련된 소부대 전투사 서술. - 1952.3, 윌리엄슨 소령은 "클램업 작전" 편찬 지원
8(C)	1st Lt. John Mewha (1950.11.15) 2nd Lt Joseph P. Fields (1952.11.25)	10군 단	- 1951.12~1952.3,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 - 매와 중위가 1952년 3월 14일 떠날 때까지 인력보충이 되지 않음
1(A)	Capt. William J. Fox (1950.10.9) Capt William T. Crawford Jr. (1951.6.17) Lt Col Arthur S. Daley	8군 사령부 군사과	- 1951.12.1,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
2(B)	Major Pierce W. Briscoe (1951.6.17) Major William S. Mullins (1952.12.3)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1951.12~1952.3, 브리스코 대위가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사 편찬을 조력. - 의무 장교 멀린스 소령이 한국에서 의무 활동에 관한 논문을 작성. 그의 첫 임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인공심장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고, 그것을 촬영하는 것. 제 7군사지대의 도무자 중위가 촬영을 지원.
5(C)	Lt. Harry J. Middleton Jr. (1950. 12. 12) 2nd Lt Bevin R. Alexander (1951. 6. 17) 1st Lt Robert E. Whedon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미 8군 임시군사지대 소속으로 한국에서 면담 팀으로서 임무 수행
6(C)	1st Lt. William D. Magnes (1950.12.12) Capt Billy C. Mossman (1951.8.1) 2nd Lt Samuel M. Kind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1951. 9. 11, 서울의 법원 건물로 사무실과 근무지 이동 - 1951. 12~1952. 3, 사단의 소부대전투 활동 집필 - 모스만 대위는 1952년 봄, 클램업 작전 편찬작업을 조력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 별 "Historical Reports"

나머지 4개 지대가 모두 한국에 부임한 1951년 7월 이후에도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 작업은 계속되었다. 2차로 한국에 부임한 지대들 가운데 1지대는 8군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나머지 2, 5, 6지대는 8군 임시군사지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8개 지대는 8월 말부터는 소부대 활동, 특히 근무부대(small service unit) 활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전선이 고착되고, 이 무렵부터 전선의 지대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모든 지대들이 미 8군 전선사령부가 위치한 서울의 법원 건물로 사무실과 근무지를 옮겼다. 대부분의 지대들이 9월에 서울로 옮겨왔다. 또 9월부터 미 8군 군사과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연구논문(Monograph) 집필을 부분적으로 지대에 맡기기 시작했다. 8월 말에 소부대 활동 연구와 관련해서 군사지대가 예상한 군사관들의 병종별 담당영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¹⁴⁾



Engineer Units in Action	메와(Mewha) 중위
Medical Units in Action	블루멘슨(Blumenson) 중위
Signal Units in Action	브리스코(Briscoe) 대위
Ordnance Units in Action	윌리엄슨(Williamson) 대위
Chemical Units in Action	폭스(Fox) 대위
Quartermaster Units in Action	알렉산더(Alexander) 중위
Transportations Units in Action	모스만(Mossman) 대위

14)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History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A1-140, Box 1, Eigh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 "Coverage of Small Units in Action," by Harold W. Brown, Lt Col. Commanding, 1951.8.29; Box 2, Memo for: Chief of Staff, GHQ FEC, "Preparation of Monograph by EUSAK," 1951.9.25; Box 2, "Letter from Col Hartman to Gen Ward", 1951.12.31

1951년 12월 1일 제1지대가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군사지대의 임무는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 작성 외에 소부대 활동 연구, 전투사(Combat Narrative) 집필, 연구논문(Monograph) 작성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에 걸쳐 여러 지대가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 활동 집필 및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에 매진하는 등 소부대 활동 연구와 전투사 집필에 힘을 쏟았다. 전황이 정돈상태로 들어간 이후 전선 고착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후적인 자료 수집 외에 전술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작전을 기록하고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소부대 활동 연구와 전투사 집필이 강조되었다. 소부대 활동 연구는 기록의 생산과 보존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젊은 장교들에게 전술적 교훈을 제공한다는 실용적 의미가 강조되었고, 기획과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 시기에 다루어진 주제는 정찰 연구, 전선에서 겨울철 경계 근무 방식 등이었고,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철의 삼각지대’ 등 진지전 단계의 주요 전투 기록 편찬이 강조되었다.

각 지대의 위와 같은 활동은 8086부대가 창설되어 8개 지대가 하나의 부대로 통합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8지대의 경우 지대장 메와 중위가 1952년 3월 임지를 떠날 때까지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5월이 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8지대의 예에서 보듯이 1952년에 들어 각 지대는 교체 인원을 제때에 보충하지 못하는 등 유능한 군사관을 구하지 못한 채 계속 지대의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휴전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 8군 군사과는 지대의 단계적 철수를 예상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대의 조직적 개편을 준비해야 할 사정에 봉착했고, 미 8군 군사과는 군사지대를 완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개점휴업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¹⁵⁾

15) 「연대기」 pp.7~8.

4. 8086부대로 통합과 이후 활동(1953.1~1954.1)

8086부대는 1951년부터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8개 군사지대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부대의 안정적 관리와 인력 절감을 위해서 8개 지대를 하나의 부대로 통합한 것이다. 8086부대는 미 극동육군(AFFE) 사령부 지원부대(Headquarters and Service Command) 일 반명령 6호에 의해 1953년 1월 24일자로 창설됐고, 미 극동육군 군사과 장(Chief, Military History Section)의 통제를 받았으며, 미 8군에 배속되었다. 미 8군 특수병력사령부(Eighth Army Special Troops)가 행정 및 군수지원을 담당했다. 8086부대로의 통합은 기능과 임무에서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기보다 지대 인력의 감소 등 운영상의 문제와 전선 고착이라는 전황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기능과 임무의 부분적 변화를 반영했다. 1952년 내내 인원 부족으로 시달리던 각 지대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선의 고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주한 군사지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 목표와 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⁶⁾ 어쨌든 군사지대는 미 8군의 지휘통제로부터 극동육군의 지휘 통제 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활동은 극동육군 차원의 편사 계획과의 연관성이 강화되었다.

8086부대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장비, 보급품 등을 8개 지대로부터 획득했다. 부대 인원 편성을 요약하면 초대 부대장은 아더 데일리(Arthur S. Daley) 중령, 부부대장은 데이비드 레이나(David J. Reina) 중령이었고, 군사관은 빌리 모스만(Billy C. Mossman) 소령(보급관, 차량장교 겸보)부터 윌리엄 멀린스(William S. Mullins) 소령, 마이클 도푸자(Michael Dopudja) 중위(사진담당), 로버트 위든(Robert E. Whedon) 중위(우편장교 겸보), 사무엘 카인드(Samuel M. Kind) 소위, 조셉 콤프(Joseph J. Comps) 소위까지 모두 6명

16) 「연대기」 p.17.

이었다.¹⁷⁾ 이 가운데 모스만 소령은 1951년 8월 6지대장으로 군사편찬 업무를 시작했고, 군사관들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군사관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했다. 멀린스 소령은 1952년 12월 3일 부임했고, ‘한국 전역에서 의무대 활동’이라는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었다.¹⁸⁾ 도푸자 중위는 1952년 11월 23일 7지대장으로 부임했고, 위든 중위, 카인드 소위, 콤스 소위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5, 6, 4지대장으로 부임했다.

인력 부족 현상은 8086부대 창설 이후에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 부대의 첫 번째 상황보고서는 조만간 서너 명의 장교들이 전역하면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주특기 2421(역사편 집자)이 부족하면 만족할만한 군사적 경험을 쌓은 장교, 가능하면 병과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사실적 서사나 설명을 위한 글쓰기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자, 예컨대 기자, 교사, 연구자, 변호사, 대학원생’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¹⁹⁾ 초대 부대장이었던 데일리 중령을 대신하여 1953년 5월 29일 웬델 로켓(Wendell W. Lockett) 소령이 잠시 부대장을 맡았고, 이어서 1953년 6월 27일 토마스 맥크라켄(Thomas E. McCracken) 중령이 부대장으로 취임했다.²⁰⁾

새로 창설된 8086부대의 임무는 “야전에서 작전을 수행중인 조직들에 의해 기록된 사건들에 관해서 사실적 설명을 보충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육군부(DA)와 극동군사령부(FEC)의 군사계획을 지원하는 것”이었다.²¹⁾ 이 임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8086부대는 지휘관,

17) 「연대기」 pp.17~18.

18)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 398, “Summary of Historical Detachment Activities for December”, prepared by 1st Historical Detachment, 1953.1.4.

19)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Monthly Status Report” No.1,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1.31.

20) 「연대기」 p.21.

21) 앞의 “Monthly Status Report”, No.1,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1.31.

참모 및 여타 인원과의 면접을 통해 기록들을 보충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사후보고서와 역사, 그리고 연구논문을 준비했다. 부대 창설 후 8086부대는 그 이전에 완성된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미 8군 사령부의 특별과제와 극동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FEC/UNC) 차원의 작전으로 과제를 나누어 수행했다. 그리고 부대 창설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MHD-일련번호’로 새로운 식별번호를 붙여나갔다.

1953년 4월 이후 8086부대가 가장 많은 힘을 쏟은 활동 중 하나가 부상장병 포로 교환 과정의 기록이었다. 그 작정명은 “Operation Little Switch”였다. 1953년 4월 6일,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지대의 관심과 활동을 우선적으로 이 주제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극동육군 군사과로부터 하달되었고, 이후 다른 모든 과제들은 “Operation Little Switch”의 기록화에 자리를 내주었다. 모든 장교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었고, 실제 부상장병 포로 교환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문산리와 판문점, 부산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송환 관련 활동 패턴이 명료해짐에 따라 편찬 계획이 수립되었다.²²⁾ “UN사령부 전진기지와 문산리 임시사령부에서 활동과 준비”는 데일리 대령과 로켓 소령, “언론 취재를 위한 준비와 공보 관련 활동”은 로켓 소령, “미 8군과 1군단의 문산리 임시사령부를 위한 군수 및 여타 지원활동”은 로우 소령과 카인드 소위, “송환된 유엔 병력의 의료 수속과 수송”은 멀린스 소령과 위든 중위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이 과제들은 전체적으로 MHD-2, “UNC PW Repatriation(Little Switch)”로 분류되었다.

6월 말에는 “Operation Little Switch”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던 장교 중 1명만이 부대에 남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과제는 계속 8086부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집필자를 바꾸어가며 10월 말경 대체로 집필을 마쳤다. 원고는 4개장으로 구성되었고,

22)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Monthly Status Report”, No.4,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5.1.

각 장의 제목은 각각 I. “Base Camp-Panmunjom Operations and Public Relations”, II. “The Medical Processing and Evacuation of Repatriated Prisoners”, III. “KCOMZ Operations”, IV. “Logistical Support”였다.²³⁾

1953년 9월 극동육군 군사과장은 새로운 임무를 지대에 부과했다. 그것은 전체 미 육군 한국전사의 일부 장이 될 군수와 인사관련 문제들이었다. MHD-23부터 MHD-32까지 10개의 일련번호가 붙은 각 과제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 문제”

MHD-23 “Helicopters in Korea”

MHD-24 “Transport of Supplies”

MHD-25 “Equipping the ROKA”

MHD-26 “Offshore Procurement”

“인사 문제”

MHD-27 “The Pipeline vs. Unit Rotation”

MHD-28 “Assignment and Reassignment”

MHD-29 “Casualties, Casualty Reporting”

MHD-30 “Maintenance of Troop Strength; Bodies and Spaces”

MHD-31 “Morale During Stalemate”

MHD-32 “Personnel Economy Measures”

23) 「연대기」 pp.23~26; 최종원고는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Entry A1-224, Box 1661, 1662에 소장되어 있다.

이 과제들은 1953년 10월부터 8086부대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들은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중 일부가 미 육군 태평양방면군 군사실 편사문서철에 완성된 원고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완성된 과제들의 최종제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²⁴⁾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소장 문서상자 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MHD-26,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Problems and Solutions, June 25, 1951-July 31, 1953”, 1954. 10(Box 76)

MHD-28, “Assignment & Reassignment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4. 7, Major Henry A. Jeffers Jr.(Box 67)

MHD-29, “Casualty Reporting July 51 - July 53”, 1954.4. 6, 1st Lt. David W. Hart(Box 67)

MHD-31, “Welfare and Morale Activities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12. 10, Lt. Col. Walter R. Padrick(Box 67)

MHD-32, “Personnel Economy Measures in Korea July 1951 to Jan 1954”, 1954.12.10, 1st Lt Thomas P. Barbera(Box 70)

군사지대가 한국에 부임한 이후 8086부대가 그 활동을 마감할 때까지 이들 부대가 작성한 한국전사 관련 각종 편사기록물을 열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는 8086부대가 작성한 “Digest of Historical Projects of Korean Conflicts”에 의거해서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를 ‘문서 제목, 작성자, 작전일시’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4) Record Group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표 4〉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사계획 목록²⁵⁾

AAI	Task Force BYORUM	Martin Blumenson	1951. 5. 17~19
AAI	Task Force GROWDON	Edward C. Williamson	1951. 3. 21~27
AAI	Tanks Above Kapyong	Martin Blumenson	1951. 4. 23~24
AAI	Battle of SOYANG	John Mewha	1951. 5. 16~18
AAI	Task Force GERHARDT	John Mewha	1951. 5. 24
AAI	Operation DOUGHNUT	William J. Fox	1951. 7. 1~4
MO	Tank Employment in Positional Warfare	Robert E. Whedon	1953. 1. 10~20
AA	KUM River	Martin Blumenson	1950. 7. 4~16
AA	Ambush of Battery C, 99 Field Artillery Battalion	Edward C. Williamson	1950. 10. 29~11. 2
AAI	Action at KUNU RI	Edward C. Williamson	1950. 11. 24~12. 1
AAI	Hill 128	Edward C. Williamson	1951. 4. 22
AAI	POBWON NI	Edward C. Williamson	1951. 4. 22~24
AAI	Artillery in Perimeter Defense	Martin Blumenson	1951. 4. 24
AAI	Task Force Lindy Lou	Martin Blumenson	1951. 5. 4~21
MO	I Corps Counterbattery Operations	Bevin R. Alexander	1951. 5. 30 ~ 1952. 6. 1
AAI	The Mechanical Flame Thrower in Action at YONGDAE	William J. Fox	1951. 8. 24
MO	Tactical Use of Chemical Smoke Generator Companies	William J. Fox	1950. 6. 19 ~ 9. 14
AAI	Destruction in Hamhung and Hungnam	John Mewha	1950. 11. 11~12. 19
AAI	Dismantling and Destruction of Han River Bridges	B. C. Mossman	1951. 1. 1~4
AAI	Withdrawal from Wonju	John Mewha	1951. 1. 6~7
SUA	Winterization of a Water-Point	W. Briscoe, John Mewha	1951. 10. 9
SUA	Rehabilitation of Tidal Locks, INCHON, KOREA	Pierce W. Briscoe, B. C. Mossman	1951. 1. 4 ~ 11. 24
AAI	KILRA-CHON Bridge	John Mewha	1951. 4. 1~20
SUA	Recon Dailey	John Mewha	1951. 4. 2~8
AAI	Engineer Construction of Gen. L. K. LAUDE Bridge	Bevin R. Alexander	1950. 4. 14 ~ 1951. 6. 13
SUA	Building Concrete Culverts	Pierce W. Briscoe	1951. 6
AAI	Black Cat Number One	Pierce W. Briscoe	1951. 7. 3 ~ 8. 1
SUA	"Access Road"	John Mewha	1951. 7. 15 ~ 9. 8
AAI	Kum River Defense	Martin Blumenson	1950. 7. 16
AAI	Withdrawal from TAEJON	Martin Blumenson	1950. 7. 20
AAI	Action at Chinju	Martin Blumenson	1950. 7. 31
AAI	Action at Waegwan	Frod Mitchell	1950. 8. 9~10
CAR	Turkish UN Brigade Advisory Group		1950. 11. 20~12. 13
CN	Task Force KINGSTON	Martin Blumenson	1951. 11. 22~29
AAI	CHOSIN Reservoir	Martin Blumenson	1950. 11. 24~30
AAI	Chinese New Year's Offensive	Martin Blumenson	1951. 1. 3
AAI	Action at WONJU	Edward C. Williamson	1951. 1. 5~20
AAI	Hill 312	Martin Blumenson	1951. 1. 28~30
AAI	The 26th Infantry Scout Dog Platoon	A. S. Daley	1951. 1. ~ 1952. 11.
CN	A Battalion Raid on the T-Bone	Samuel M. Kind	1951. 1. ~ 1952. 11.
AAI	Twin Tunnels	John Mewha	1951. 1. 31 ~ 2. 1
AAI	Changbong NI to Hoengsong	John Mewha	1951. 2. 11~12
CN	Defense of Perimeter	Edward C. Williamson	1951. 2. 13~15
AAI	Task Force Crombez	Martin Blumenson	1951. 2. 14~15
AAI	Breaking the Hongchon Defense Line	Martin Blumenson	1951. 3. 13~20

25) "Digest of Historical Projects of Korean Conflicts", Booklet prepared by 8086 Army Unit, (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1954.6.1.

AAI	Grenade Hill	Pierce W. Briscoe	1951. 3. 15
AAI	Operation TOMAHAWK	William T. Crawford Jr.	1951. 3. 22~29
AAI	Operation SWING	John Mewha	1951. 4. 4~13
AAI	HWACHON Dam	Martin Blumenson	1951. 4. 7~12
AAI	Hant'an River Crossing	Edward C. Williamson	1951. 4. 10~13
AAI	Combat Outpost	Pierce W. Briscoe	1951. 4. 19~22
AAI	Hill 902	Pierce W. Briscoe	1951. 4. 22~23
CN	Gloucestershire Battalion		1951. 4. 22~25
AAI	Action on Hill 628	Martin Blumenson	1951. 4. 25
AAI	Peaceful Valley	Bevin R. Alexander	1951. 5. 16~18
AAI	Action on the General Defense Line	Martin Blumenson	1951. 5. 17~18
AAI	Task Force HAZEL	Martin Blumenson	1951. 5. 24~25
AAI	Attack on Hill 451	Bevin R. Alexander	1951. 6. 2
AAI	Hill 1073	Martin Blumenson	1951. 6. 13~14
AAI	Hills 717 and 682 in the "Iron Triangle" Area	William J. Fox	1951. 6. 23~24
AAR	Objective QUEEN	Pierce Briscoe	1951. 6. 26
AAN	Bloody Ridge	Pierce W. Briscoe	1951. 8. 14~9.5
AAI	Successful Defense of Company Patrol Base	William J. Fox	1951. 8. 16~17
AAI	Battalion Raid	William J. Fox	1951. 8. 17~18
CN	Defense of a Patrol Base	William J. Fox	1951. 9. 5~6
CN	Patrol Base Overrun	William J. Fox	1951. 9. 5~7
CN	Heartbreak Ridge	Edward C. Williamson	1951. 9. 12~10.15
CN	Daylight Patrol North of MAGO RI	William J. Fox	1951. 9. 22
AAN	The Battle of Bloody Angle	Bevin R. Alexander	1951. 9. 29~10.6
AAN	Night Raiding Patrol	B. C. Mossman	1951. 12. 11~12
CN	Platoon Raiding Patrol	B. C. Mossman	1951. 12. 19~20
AAI	Christmas Patrol	B. C. Mossman	1951. 12. 25
AAI	Defense of OUTPOST EERIE	B. C. Mossman	1952. 3. 21~22
CN	Combat Patrol	Edgar Denton II	1952. 4. 3~4
CN	Night Defense of a Listening Post	Edgar Denton III	1952. 4. 8~9
CN	Night Combat Patrol by Company K, 15th Infantry	Robert H. Fechtman	1952. 4. 16~17
CN	Night Defense of Hill 200	Edgar Denton III	1952. 5. 26
CN	Action on Hill 117	Edgar Denton III	1952. 8. 13~15
AAI	Recapture of a ROKA Outpost	Robert E. Whedon	1952. 10. 12~13
CN	Chinese Counterattack on Hill Jane Russell	Joseph J. Comps	1952. 10. 16~20
AAI	A Rifle Company in Winter Defensive Positions,	Robert E. Whedon	1953. 1.
CN	Operation SMACK	Samuel M. Kind	1953. 1. 12~25
CN	An Enemy Assault on an Ambush Patrol	Joseph J. Comps	1953. 2. 12
AAI	Surprise Attack on a Combat Patrol	B. C. Mossman	1953. 2. 22~23
CN	An Enemy Raid on Outpost Harry	Joseph J. Comps	1953. 4. 3
AAI	Guerrilla Attack on Hospital Train	Fred Mitchell	1950. 8. 24
SUA	Innovations in the Medical and Dental Services	Martin Blumenson	1953. 4.
SUA	Medical Dispensary facilities in the CHUNCHON Area	Martin Blumenson	1951. 2.
SUA	Medical Company Under Attack	Martin Blumenson	1951. 5. 27

SUA	8076th MASH	Martin Blumenson	1951. 9.
SUA	Medical Planning and Support Attack on Hill 538		1952. 10.
SUA	The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in Korea	William S. Mullins	1950. 7.~1953. 2.
SUA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William S. Mullins	1951. 8.~1953. 4.
AAI	Helicopter Evacuation	John Mewha	1951. 1. 26~1951. 8. 22
SUA	Guerrilla Attack on Ordnance Company	Edward C. Williamson	1950. 9. 20
SUA	Evacuation of 44th Ordnance Depot Company from PYONGYANG	Edward C. Williamson	1950. 11. 30~12. 4
SUA	Field Expedients of an Ordnance Company	Edward C. Williamson	1951. 6.
SUA	Evacuation of Disabled Tank	Edward C. Williamson	1951. 10. 5
SUA	Movement of 44th Ordnance Depot Company from TOKSAN NI to UIJONGB	Edward C. Williamson U	1951. 11. 1~17
AAI	PYONGANG	Edward C. Williamson	1951. 11. 29 ~ 12. 6
SUA	Operation 8th Army QM Service Center Number 3	Bevin R. Alexander	1951. 5.~9.
SUA	Quartermaster Field Service Platoon in Action	Bevin R. Alexander	1951. 10.
AAI	VHF Relay on Hill 1157	Pierce W. Briscoe	1951. 5. 24~25
SUA	Construction of Pole Line Between Tempest and Jade,	Pierce W. Briscoe	1951. 9.
AAI	VHF & Radio Installations at Headquarters, 24th Infantry Division	Pierce W. Briscoe	1951. 9. 29~10. 7
SUA	Activities of 3d TMRS	B. C. Mossman	1951. 1.
MO	Operation of Highway Traffic Regulation Points	B. C. Mossman	1951. 2. 6~7. 1
MO	EUSAK Combat Propaganda Operations, 13 July 1950 - 1 September 1952	B. C. Mossman	1950. 7. 13 ~ 1952. 9. 1
AAI	Supply Battle of the SOYANG River	John Mewha	1951. 5. 10~6. 7
Narrative	Operation CLAM UP	Robert. H. Fechtman	1951. 2.
MO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mmunication Zone		1952. 7. ~ 11.
MO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Henry A. Jeffers Jr	1950. 6. ~ 1951. 1.
CN	Inception and Growth of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upport Group	William J. Fox	1952. 7. ~ 1953. 2.
MO	Operation Little Switch	Wendell W. Lockett	1953. 3. ~ 1953. 4.
MO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A. S. Daley, B. C. Mossman	1951~ 1952
MO	Construction of Libby and Teal Bridges	William R Farquar JR	1952. 10. ~ 1953. 7.

위 표에서 AAI는 사후증언(After Action Interviews), AAR은 사후 보고서(After Action Reports), CN은 전투사(Combat Narratives), MO는 연구논문(Monograph), SUA는 근무부대 활동(Service Units in Action), CAR은 전투활동보고(Combat Action Report), AAN은 사후서사(After Action Narrative)를 나타내는 약어다. CAR은 AAR과 같은 형식의 글이다. AAN은 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CN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란 주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전투경험을 작전 중이나 사후에 기록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즉,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의 생산은 일차적으로 전투경험 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그 목적이 있고, 군사지대의 기본적 임무는 이와 같이 해당 작전의 실제 진행정형을 기록으로 만들어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반면 전투사란 이러한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이외에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나 일일보고서(Daily Journal) 등 다른 기록들을 활용하여 해당 전투를 역사적 서사(narrative)의 형태로 서술한 것이다. 서사는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달리 작전계획, 작전활동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포함한다. 미 육군의 군사편찬 원칙에 따르면 전투사 서술 역시 충실한 사실적 기초에 입각해야 하지만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전투사는 그 형식이 다른 것이다. 근무부대 작전(SUA)은 전투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근무부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²⁶⁾

군사지대가 한국에 부임한 직후 활동의 중심은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 작성이었다. 또 1951년 8월 말부터 소부대 활동 연구를 시작했고, 미 8군 특별과제를 논문이나 역사서술의 형태로 작성했다. 또 1951년 12월 경부터 전투사를 집필했다. 그리고 8086부대로의 통합 이후 군사지대의 활동은 전투사(Combat Narrative) 집필 마무리와 연구논문(Monograph) 작성에 모아졌고, 특히 연구논문 작성이 강조되었다. 그 작업은 이제 미 8군의 특별과제가 아니라 육군부와 극동군사령부 차원의 한국전사 편사 계획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 정형은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편사기록물에 그대로 나타난다.

〈표 4〉에 의거해 군사지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군사지대가 생산한 편사기록물 총 116건 가운데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가 62건으로 가장 많은 수와 비중을 차지한다. 사후증언, 사후보고서의 작성과 수집은

26) RG 338, Entry A1-224, Box 1657, "Mission of Historical Detachments"

군사지대의 기본 임무였고, 군사지대는 이 작업에 가장 많은 활동기간을 투여하였다. 다음으로 전투사가 22건, 근무부대 작전이 21건으로 양자를 합하면 도합 43건이다. 견수와 비중으로 보면 사후보고서·사후증언 다음으로 중요한 셈이다. 사후증언·사후보고와 전투사 양자를 합하면 모두 105건인데, 군사지대의 활동이 주로 사후증언·사후보고서, 소부대 전투사와 근무부대 작전사의 작성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논문은 모두 10편이다. 연구논문은 편수는 가장 적지만 그 작업량이나 강도가 다른 형식의 편사기록물보다 작거나 낮은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들었던 MHD-2 “UNC PW Repatriation(Little Switch)”는 단일한 연구과제로 취급되었지만 사실은 총 4장의 원고로 이루어졌고, 군사지대 군사관들이 1953년 중반에 거의 6개월가량 작업한 것이다.

총 116건 가운데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소부대 전투사, 근무부대 작전사, 그리고 연구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군(Army) 차원의 작전을 서사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그 제목은 “Operation CLAM UP”이다. 이 작전은 1952년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중국군과 북한군을 다수 유인하여 매복으로 생포하기 위한 작전이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²⁷⁾ 어쨌든 이 작전은 유엔군사령부가 군 차원에서 기획했던 만큼 소부대 전투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고, 1952년 봄에 몇 개 지대가 이 작전사의 작성에 투입되었다. 116건을 병종별로 분류하면 기갑 7건, 포병 8건, 화학 2건, 공병 11건, 보병 57건, 의무대 9건, 보급 6건, 병참 2건, 통신 3건, 수송 2건, 심리전 1건, 군수 1건, 일건 7건으로 보병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 영역을 다루었고, 또 분석대상 역시 다양했다. 군사지대의 활동은 그야말로 6·25전쟁에서 미군 활동영역 전반을 포괄했다.

〈표 4〉는 8086부대가 활동을 종식하기 약 9개월 전의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표가 만들어진 뒤에도 몇 건의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생산

27) Clint Munding, “CLAM-UP, Operation”, Spencer C. Tucker ed.,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Checkmark Books, 2002, p.151.

되었다. 위 표에 나타나지 않으나 편사 계획이 수립되었던 과제의 수는 모두 15과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번호 MHD-23부터 MHD-37까지가 그것에 해당한다. MHD-23부터 MHD-32까지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군수문제와 인사문제 관련 기획이었고, 그 가운데 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의 목록은 앞에서 제시한 대로다. 그 외에 MHD-33부터 MHD-37까지 과제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가운데 MHD 33, 35, 36, 37은 최종 보고서를 미국 국립문서관 문서집단 550, 편사문서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 목록 역시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소장 문서상자 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8086부대는 마침내 1955년 3월 18일 활동을 중단했다.²⁹⁾

MHD-33,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9. 15 (Box 80)

MHD-34, “Utilization of Minority Groups”

MHD-35,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 1954. 6. 25 (Box 28)

MHD-36, “Real Estate Problems and Activities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8. 25 (Box 70)

MHD-37, “Salvage in Korea July 1951-Sep 1953”, Major Thomas A. Hotchkiss (Box 76)

28)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29)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HQ, 8086th AU, Military History Detachment Historical Reports”

5. 맺음말

미 육군의 한국전사는 크게 1부 전쟁사, 2부 작전사, 3부 특별과제, 4부 소부대의 전투 활동, 5부 소부대의 기술지원 작전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가운데 3부 특별과제를 구성할 특수주제에 관한 연구논문 집필과 4·5부 소부대 활동 연구에 군사지대 군사관들이 관계했다. 하지만 한국전사 편찬과 관련해서 군사지대 활동의 중요성은 소속 군사관들의 특수주제 관련 논문 집필이나 소부대 활동 연구가 아니라 이들이 각종 자료의 생산과 수집, 정리에 종사함으로써 한국전사 편찬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꼽으라면 각종 정책 문서와 전문들 외에 극동군·유엔군사령부에서부터 미 8군, 군단, 사단 등 각 지휘·통제 단위가 생산한 지휘보고서, 전투 현장에서 직접 작전활동을 벌였던 각종 전술부대와 지원부대의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은 전적으로 군사지대의 활동에 의해 생산, 수집되었고, 전선 차원에서 집필할 수 있는 특별과제들도 대부분 군사지대가 집필했다.

즉, 워싱턴의 군사감실이 한국전사 편찬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공식 ‘전쟁사’를 편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극동군·유엔군사령부 군사과와 미 8군사령부 군사과는 지휘보고서 생산을 통해서 전구(戰區) 차원의 전략과 지휘, 작전 통솔, 실제 작전수행 정형과 전황을 기록하고, 이에 입각해서 ‘작전사’ 편찬 작업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군사지대는 야전에서 수행된 각종 작전 활동을 기록하거나 그것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그러한 기초 자료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비유하자면 한국전사 편찬의 골격을 제공한 것이 워싱턴의 군사감실이었고, 그것에 살을 붙인 것이 극동군·유엔군사령부 군사과와 극동육군사령부 군사과였다면 그러한 미 육군 차원의 한국전사 편찬에 혈액을 공급한 것이 다름 아닌 군사지대였다.

이 글은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전혀 해명되지 않았던 군사지대의 조직과 활동을 새로 발굴하고 소개했다. 이 글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군사지대의 편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는 조직 변천, 활동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동시에 미 육군 한국전사 편사 활동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를 해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 미군의 한국전사 편찬에 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 향후 분석 과제를 몇 가지 제기하고 싶다.

먼저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자료와 편사기록물들에 대한 해제와 정리, 비판 작업이 필요하다. 머리말에서 밝혔지만 군사지대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물론 군사지대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들이 미국 국립문서관에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공간되었지만 아직 공간되지 않은 채 원고(Manuscript) 상태로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도 많다. 그 원고들은 6·25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6·25전쟁을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 육군 한국전사 편사체계와 편사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워싱턴의 군사감실이 기획하고 출간한 각종 한국전사 관련 저술들과 군사지대 편찬 보고서의 관련성, 군사지대의 상위기구인 군사감실, 극동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군사실, 극동육군 군사과, 미 8군 군사과 등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활동과 군사지대 활동의 관련성 등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 육군 군사감실이 편찬한 한국전사 관련 저서들의 편찬 경위와 과정, 내용에 대한 분석, 사학사적 의미와 성격 등도 새롭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6·25전쟁, 미 육군 군사감실, 미 극동군 / 유엔군사령부, 미 육군 군사지대, 군사관, 사후증언, 사후보고서, 소부대 활동 연구, 전투사, 근무부대 활동 연구

<ABSTRACT>

Historians on the Frontline: The Activity of US Army Military History Detachment during the Korean War

Chung, Yong 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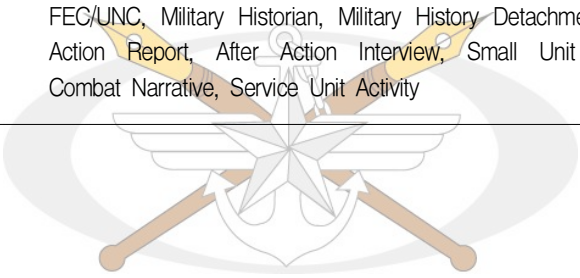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newly discovered organization and projects of Military History Detachment(MHD), which had been to the fore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comprehend not only the formation and the completion of MHD's mission but also the transition and overall projects, which could not be clarified up to this date. Moreover the research explains one of the important links of the Korean War history project.

Eight MHDs were formed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of 1950, which would be dispatched to Korean front. The MHDs arrived in South Korea between March and July 1951 via Tokyo, Japan. In early months of the war, the eight MHDs concentrated on writing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and later turned them into historical records on the basis of battle experiences. By December 1951, small unit activities, combat narratives, and monographs became another crucial task. These eight MHDs amalgamated into one in January 1953 and was named the 8086 army unit. By that tim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8086 unit was the writing research papers later to be part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had five parts: war history, history of operations, special tasks, combat narratives, small unit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service units. Among those parts, military historians took part in the writing of monographs concerning special subjects of part three and research of part four and five. But the importance of MHD activities in regard to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is not that military

historians wrote thesis on special task or studied small unit but that they provided the foundation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producing, collecting and arranging various data. From all sorts of policy document and statements to reports done by FEC/UNC, Eighth Army, corps, and divisions, finally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are the most important data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Among those,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were wholly produced and collected through MHD activities.

Key Words : The Korean War, Office of Center for Military History, FEC/UNC, Military Historian, Military History Detachment, After Action Report, After Action Interview, Small Unit Activity, Combat Narrative, Service Unit Activity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폴레옹의 기병전술에 관한 연구

주 정 율*

1. 머리말
2.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
3. 나폴레옹의 기병운용 방안
4.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승패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류역사에 일대변혁이었다. 자유, 평등의 이념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근대사회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전쟁사에 전환점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기동전과 섬멸전이라는 작전개념¹⁾을 중심으로 후세사람들이 언급한 5대 작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1) 군사적 천재로 칭송받고 있는 나폴레옹의 주요 전략은 기동전략과 섬멸전략으로 구분된다. 혁명의 기운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 한 유럽의 군주국들은 대불동맹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였다. 적에게 포위된 프랑스는 주변국들이 힘을 합치기 전에 신속하게 적들

원칙²⁾, 산개전술, 사단 및 군단편성, 포병화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전쟁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략적, 전술적 업적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³⁾

이에 필자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쟁사에서 오랜 시간 전장의 주역이었던 기병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의 전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동력과 충격력의 특성을 이용한 기병의 대규모 돌격은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데 매우 훌륭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정찰(reconnaissance), 추격(pursuit)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지휘관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병종이었다. 반면 기병은 방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돌격 이후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보병과 달리 말이라는 동물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의 전투기량이 단기간에 숙달될 수 없는 한계⁴⁾ 때문에

을 각개격파하고 무너진 군사력이 쉽게 재건될 수 없는 전략을 세워야 하였다. 이에 나폴레옹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서 결전을 하기 위해 주변국 군대보다 신속하게 기동하고 기습을 통해 적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이용재 「아우스터리츠의 태양」, 『서양사연구』 제35호, 2006, 50~55쪽.; Claus Telp,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Art*(New York: Frank Cass, 2005), pp.56~58). 따라서 나폴레옹은 기동전략과 섬멸전략을 함께 구사하기 위해 기존 보병중심의 부대보다는 적에 대한 포위 돌파, 추격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기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이텐전투(Battle of Leuthen, 1757)에서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 1712~1786)가 기병으로 적을 기만하고 적 예비대를 공격해 승리를 거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을 볼 수 있다. Norman Jarymowycz, *Cavalry from Hoof to Track*(West Virginia: Stackpole Books, 2009), pp.64~69).

- 2) 나폴레옹은 전쟁의 원칙에 대해 종종 말로써 설명하였지만 실제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5대 작전원칙은 후세사람들이 그의 전역을 보고 연구한 결과이다. 공격에 대한 완벽한 믿음(invariable reliance on the offensive) ②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동의 믿음(trust in speed to economize time) ③전략적 기습의 효과(effect strategic surprisals) ④공격의 결정적 지점에 대한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superiority of force on the battlefield, at the decisive point of attack) ⑤병참선에 대한 보호(carefully thought out protective system)(J.F.C. Fuller, *The Conduct of War 1789~1961*(New York: Da Capo Press, 1992), pp.48~49.).
- 3) 기존연구는 나폴레옹의 전략사상, 군사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서정복, 「나폴레옹 전투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제국시대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21집, 2009, 117~149쪽.; 이정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군사전략 사상」, 『군사논단』 제10호, 1997, 266~279쪽.).
- 4) 숙련된 기병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병 훈련은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기병훈련은 매우 어려웠는데 웰링턴(Wellington, 1769~1852)은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기병의 개인과 공격대형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짜증나(teinous)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전투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든 병종이었다. 따라서 전쟁사에서 기병을 완벽히 운용한 지휘관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⁵⁾ 더욱이 나폴레옹이 등장한 18세기는 화약무기 발달로 기병이 갖는 충격력이 저하되어 유럽 내 각국에서는 기병이 쇠퇴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⁶⁾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기병의 양적 규모와 질적 능력은 유럽에서 훌륭한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기병이 중세 이후 근대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툴롱전투(Battle of Toulon, 1793)⁷⁾에서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혁명정부에 가담하면서 26개의 기병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기병장교 선발⁸⁾, 기병 조직의 개편⁹⁾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프랑스 기병을 유럽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경험이 필요하다. 전투에서 기병이 유용하려면 기병 훈련보다 좋은 것은 없고 불충하게 훈련된 기병보다 값비싸고 쓸모없는 것도 없다”(Philip J. Haythornthwaite, *Napoleonic Cavalry*(London: Cassell, 2002), p.26.).

- 5) 러일전쟁에서 기병여단을 이끈 일본 기병장교 아키야마 요시후루가 프랑스에서 유학 당시 기병교관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사상 기병의 특성을 알고 정확히 운용한 사람은 칭기즈칸 프리드리히 2세, 나폴레옹 프로이센의 몰트케 밖에 없다”(나카자토 유키 이규원 역, 『전쟁 천재들의 전술 들춰, 2006, 24쪽.).
- 6)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기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다음 두 가지 구술에서 보여진다. 전투 현장에서 한 장군이 “대규모 기병의 운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폴레옹은 “만약 방어전에서 적군 기병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세인트헬레나(St. Helena)에서 그는 “기병 없이 어떠한 전투의 결과가 없다”라고 지난 전투들을 회고하였다(John Ellis, *Cavalry*(Somerset: WestBridge Books, 1978), pp.138~139.).
- 7) 1793년 12월 19일 혁명군의 툴롱 탈환작전 성공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그해 장군으로 진급하였다(Marid 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79), pp.445~447.).
- 8) 혁명 전 프랑스 기병은 귀족가문의 자제만이 복무할 수 있었다. 혁명 후 귀족장교가 모두 추방되고 숙련된 기병장교가 부족하자 나폴레옹은 신분에 대한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장교를 임관 및 진급시켰다(Robert B. Bruce, Iain Dickie, Kevin Kiley,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1815*(London: Amber Books, 2008), p.72.). 기병 장교단의 강화가 프랑스 기병의 전투력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 9) 나폴레옹은 6천 명에서 9천 명 수준의 보병사단을 편성하면서 보병사단에 소속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기병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대규모로 기병을 운용하기 위해 기병(군 사)단을 창설하였다. 전자의 조직에는 후술하게 될 輕기병위주로 편성하고 후자의 조직에는 中

내 다른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병으로 성장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기병을 나폴레옹전쟁(1805~1815) 기간 동안 주요 전투 및 전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투에서 그가 기병을 어떻게 운용하였으며 전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기병운용에 대한 나폴레옹의 군사적 업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기병 병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을 포함한 유럽 근대시기 기병에 대한 이후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당시 유럽 내 타국의 기병은 중기병(heavy cavalry), 중기병(media cavalry), 輕기병(light cavalry)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프랑스 기병은 輕기병에서 랜스기병(lance cavalry)을 따로 분류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¹⁰⁾ 3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언어적,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전쟁수행에 관한 원칙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¹¹⁾ 그가 구상한 전투의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기병운용과 구술로 남겨진 기병운용을 통해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기병전술의 핵심을 추론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직접 수행한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3장에서 추론한 기병운용의 핵심을 비교분석해 기병이 전투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병과 중기병을 편성하였다 버나드 로 몽고메리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4, 590~591쪽.』.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나폴레옹은 언어적 문제(코르시카인으로 태어나 모국어가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완벽한 프랑스어 사용의 어려움), 정치적 문제(자신과 같은 군사적 천재의 등장으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으로 그가 구상하고 수행한 전쟁에 대한 원칙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남긴 주요 표현은 그의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던 5명의 비서관 등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유배지인 세인트헬레나에서 그가 구술한 것이 전부이었다(나폴레옹 데이비드 G. 찬들러 편 원태재 역 『나폴레옹의 전쟁 금원 책세상 1998, 13~15쪽.』).

2. 나폴레옹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

프랑스 혁명 직전 프랑스군에서 기병의 역할은 미미하였고¹²⁾ 모든 기병대는 장갑이 없는 용기병(Dragoon)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¹³⁾ 그러나 혁명전쟁¹⁴⁾이 시작되면서 프랑스 혁명군은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병대 증강을 꾀하였고 나폴레옹은 마렙고전투(Battle of Marengo, 1800)에서 승리할 때 기병여단의 활약¹⁵⁾을 보고 프랑스군 기병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당시 프랑스 기병의 종류에는 크게 중기병, 中기병, 輕기병, 랜스기병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¹⁶⁾

12) Ellis, op. cit., p.138.

13) 16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프랑스군에 다음 설명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기병이 존재하였다. 1558년에 총기병(carabin)이 생겨났고 용기병은 앙리 2세(Henri II, 1519~1559)때 창설되었다. 그리고 1693년 흉갑기병(cuirassiers)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화약무기 발달로 전장에서 기병의 전술적응용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혁명 직전에는 기병의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최갑수 외 9명,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162~169 쪽.).

14) 1792년 혁명사상이 전파될 것으로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동맹을 결성하였고 1793년 영국 수상 피트(William Pitt, 1759~1806)에 의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1차 대불동맹을 결성하여 프랑스를 공격하였다 (Herold J. Christopher, *The Age of Napoleon*(Maryland: American Heritage Publishing, 1963), pp.49~50).

15) 마렙고 전투에서 켈러만(Francois Kellermann, 1770~1835)이 오스트리아군 6,000명의 측면으로 기병 400명을 돌격시켜 승리의 전환점이 되었다(Ellis, op. cit., p.140).

16) 중기병, 中기병, 輕기병 구분하는 기준과 종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통상 기병이 착용하는 장갑과 무기 말의 크기에 따라 기병의 유형이 구분된다고 하나 필자의 판단은 임무유형에 따라 구분된다고 본다(Haythornthwaite, op. cit., pp.17~18). 예를 들어 輕기병은 경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중기병은 돌파 돌격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말의 크기와 착용하는 장비가 달라졌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기병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랜스기병을 輕기병의 한 종류로 보지 않고 따로 구분한 이유는 랜스기병이 기존 輕기병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Vuksic, Z. Grbasic, *Cavalry: The history of a Fighting Elite*(London: Cassell, 1993), p.31).

1) 重기병

重기병의 역사는 로마 멸망 이후 중세유럽을 지배했던 철갑기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기병은 무거운 갑옷을 자신의 몸과 말에 두르고 돌격하여 충격력으로 보병방진을 무력화시키고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시전투(Battle of Crecy, 1348)에서 영국 장궁병대에 프랑스 기사단의 돌격이 무력화되고¹⁷⁾ 화약무기 발달과 함께 전통적 기병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18세기 이후부터는 重기병을 전장에서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에서 重기병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네(Michel Ney, 1769~1815)¹⁸⁾와 켈레르만은 나폴레옹에게 장갑으로 무장된 重기병 창설을 건의하였고 혁명전쟁을 경험한 나폴레옹의 의지에 따라 프랑스 육군에 흉갑기병부대를 창설하였다.¹⁹⁾ 1799년 프랑스 육군이 보유한 25개의 기병 연대 중 흉갑을 착용한 것은 1개 연대에 불과하였지만 1802년에는 12개의 연대가 흉갑기병으로 증강되었다.²⁰⁾ 이후 흉갑기병대는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전장을 지배하고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변화하였다. 흉갑기병은 전투시 갑옷이 주는 불편함보다는 기병의 몸을 보호하는 방어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철로 된 흉갑과 헬멧을 앞가슴과 등, 머리에 착용하여 적과 교전시 보호²¹⁾를 받았지만 팔은 행동의 자유를 위해 흉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브레(Sabre)²²⁾를

17) 크레시전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나카자토 유키, 앞의 책, 87~104쪽).

18) 네는 1787년 후사르기병대에 입대하여 1789년 장교로 입관하였다. 1796년에는 장군 1804년에는 원수로 진급하였다.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지휘관으로 활약하여 명성을 떨쳤으나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기병의 우발적인 공격과 비이성적 행동으로 프랑스군의 패배를 초래하였다(Chandler, op. cit., pp.312~315).

19) 당시 유럽 내 군주국에는 장갑으로 무장한 重기병이 존재하였지만 프랑스에는 重기병이 존재하지 않았다(Jarymowycz, op. cit., p.72).

20) 리처드 홀즈 김지원 역 『나폴레옹의 영광』 청아, 2006, 36쪽

21) 흉갑은 당시 표준 화약무기의, 탄 적군 기병의 칼로부터 기병의 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었다(Bruce et. al., op. cit., p.99).

22) 사브레의 종류는 적을 공격하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적을 벨(slash, cut) 경우에는 칼날에 곡선이 있고 자루보다 칼날이 무겁다. 둘째, 적을 찌를(thrust) 경우

주로 소지하였으며 권총과 카빈(carbine)은 사브레에 비해 부차적인 무기로 간주되었다.²³⁾ 그 이유는 돌격전술에 주로 운용되는 흉갑기병이 적에게 돌격을 할 때 권총이나 카빈은 소지할 경우 1차 사격 이후 재장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말 위에서 재장전이 어려웠고 적과의 근접전에서 사브레로 무장하는 것이 살상력을 더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군 중기병에는 흉갑기병 이외에도 황제 호위를 전담으로 하는 척탄기병(Grenadier a Cheval)이 있었다. 1676년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가 보병연대 인원 중 척탄병(grenadier) 250명을 선발하여 근위기병연대를 창설한 것이 시작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임무는 황제에 대한 호위 및 아군 보병, 기병 돌격시에 최선두에서 돌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혁명전쟁이 끝날 무렵 행정부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근위 보병·기병부대(Foot and Mounted Grenadiers of the Consular Guard)라는 2개의 호위부대를 창설하였으며 1804년 황제가 되었을 때 척탄기병의 이름을 근위기병(Grenadier a Cheval de la Garde Imperiale)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편성은 4개의 기병대대로 구성된 1개 연대로 1,018명이었으며 황제 근위기병인 만큼 기병의 키는 최소 176cm 이상 이었고, 상위계급 장교의 추천이 있어야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엘리트부대였다. 근위기병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역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⁴⁾

에는 칼날이 곧게 뻗어 있고 칼날보다 자루가 더 무겁다 전자는 輕기병, 후자는 重기병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사브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aythornthwaite, op. cit., pp.29~41. 영국왕립 무기박물관 공동제작 정병선 이민아 역, 『무기』, 사이언스북스 2010, 180~184 쪽.).

23) Bruce et. al., op. cit., p.98.

24) Vuksic et. al., op. cit., p.182.

2) 中기병

중기병의 대표적인 형태는 용기병²⁵⁾이다. 용기병은 17세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소지 가능한 화기가 등장하면서부터 편성되었으며 적과 전투할 때는 말에서 내려 개인용 화기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고 이동할 때는 말을 타는 보병과 기병의 혼합된 형태였다.²⁶⁾ 따라서 그들은 중기병과 輕기병의 중간 형태로 전장에서 중기병과 輕기병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특성으로 인해 중기병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 1791년 18개였던 용기병연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30개로 확장되었지만 1811년 이 중 6개 연대가 창기병으로 전환되면서 용기병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²⁷⁾ 용기병의 복장은 표범가죽 터번을 두른 황동투구를 쓰고 초록색 제복을 입었으며 기병대 내에 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모든 부대원이 말을 타는 것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도보로 전쟁에 참가하여 말이 생기면 타고 전투에 참가하였다.²⁸⁾ 나폴레옹은 전쟁기간 동안 용기병을 자신의 주전장인 중부유럽보다는 주로 에스파냐전역에서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베리아반도가 건조하며 토양이 매우 거칠어 프랑스 중기병이 활약하기에 부적합²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흉갑기병을 무장하기 위한 군마가 부족해짐에 따라 용기병이 중기병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하였다.³⁰⁾

25) 용기병이라는 명칭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비잔티움이나 카롤링왕국에서 사용되었던 용문양의 패넌트(깃발)를 용기병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드래군이라는 소총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유래했다는 설이다(p.122).

26) Haythornthwaite, op. cit., p.19.

27) 리처드 홀즈 앞의 책 36 쪽

28) 위의 책 36 쪽

29) 중기병은 장갑무게로 인해 中, 輕기병들에 비해 기동속도가 느렸고 이베리아 반도와 같은 거친 토양에서는 속력을 내기가 더 어려웠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중기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용기병을 에스파냐전역에서 주로 운용하였다(Haythornthwaite, op. cit., p.139).

30) Haythornthwaite, op. cit., p.19.

3) 輕기병

정찰, 전초전, 추격, 적 병참선에 대한 습격, 교량 등 중요 지역을 확보하는 등에 임무를 수행하는 輕기병은 무장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중 프랑스 輕기병을 대표하는 것은 후사르(hussar), 輕기병(chevau-leger)이 있다. 후사르는 헝가리 輕기병(Hungarian light horse)이 오스트리아 황제군에 복무하면서 생겨났다. 이후 유럽 내 각국이 이를 모방하면서 퍼져나갔고 프랑스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 내에서 후사르 기병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91년부터 1795년까지 혁명정부가 혁명전쟁에 대비하고자 13개의 후사르 기병대를 창설하면서 부터였다. 그들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으며³¹⁾ 무장은 카빈과 가벼운 사브레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소규모 교전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활약상은 예나전투(Battle of Jena, 1806)에서 프로이센군이 패배하고 후퇴하자 나폴레옹은 추격을 지시하였는데 후사르 제5, 제7연대가 여단으로 편성되어 프로이센군을 추격하였다. 이때 22일 동안 하루 평균 50km를 질주하여 프로이센이군 6,000명을 생포하고 야포 160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³²⁾

輕기병(chevau-leger)은 프랑스가 러시아 공격을 준비하던 시기 6개의 용기병연대를 창기병으로 개편하면서 탄생하였다.³³⁾ 이는 러시아군에 소속된 코사크(Cossack)기병³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넓은 러시아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여 重기병을 보호하고자 한 나폴레옹의 전략적 판단

31) 그들의 복장은 헝가리 輕기병의 스타일을 따라 하였다. 주로 여성용 긴 윗pelisse)이나 여성용 망토(dolman), 모피모자(fur cap)를 착용하였다(ibid., pp.20~21).

32) Vuksic et. al., op. cit., p.192.

33) 리처드 홈즈 앞의 책 36 쪽

34) 코사크 기병은 러시아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말을 사용하였으며 적 정규군 기병과 상대할 경우에는 전투력이 미약하였으나 낙오병 적 정찰병에게는 전투력이 매우 높았다. 이에 코사크 기병은 수색 및 정찰 소규모 교전 전초전 등에 주로 운용되었고 특히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전역 실패 이후 프랑스군의 대후퇴시 프랑스군을 끊임없이 습격하고 추격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그레고리 프리몬 반즈 토드피셔 박근혜 역 『나폴레옹 전쟁, 플래닛미디어 2009, 198 쪽.』.

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창설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역 당시에 병사 대부분은 신병이었고 초급장교들 또한 새롭게 임관한 기병이었다. 하지만 상급지휘관 대부분이 전투 및 지휘경험이 풍부하여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용기병부대를 기반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輕기병은 복장과 무장에서 용기병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다른 점은 무장에 있어 검(sword)을 장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병사의 경우 랜스를 착용하였다.

4) 랜스기병

기병의 전통적 무기였던 랜스는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사브레가 기병의 근접전에서 주요한 무기로 변화하였다.³⁵⁾ 그러나 후술하게 될 폴란드 랜스기병 등 일부만이 명맥을 유지하였고 나폴레옹이 랜스기병의 전술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를 적극 운용하게 되면서 유럽 내 전장에서 랜스기병이 다시 등장하였다. 나폴레옹이 랜스기병을 중용한 이유는 첫째, 고대로부터 기병을 방어하기 위한 보병부대의 노력은 방진 형태의 변화와 무기의 발달로 이어져 왔다. 반대로 기병은 보병과 방진에 대한 돌파를 위해 노력했는데 랜스가 보병과 방진에 대한 기병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사브레보다 파괴력이 강한 랜스가³⁶⁾ 기병

35) lance와 spear 모두 창으로 변역되나 모양과 공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창으로 변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여기서 설명하는 랜스기병은 lance로 무장한 기병만을 의미한다. 랜스의 길이가 약 4m 내외이고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훈련과정이 길었고 훈련이 부족했던 랜스기병은 랜스를 전투 중에 자주 떨어뜨렸다 그리고 전투 중 적이 랜스 거리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적을 공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브레가 더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화약무기가 발달하면서부터 랜스기병의 가치는 하락해 “7년전쟁(1756~1763)” 이후에는 여기서 설명하는 폴란드 기병과 코사크 기병 정도만이 남아 있었다(Jarymowycz, op. cit., p.60).

36) 방진을 형성하고 있는 보병을 돌파할 때 베거나 찌르는 방식의 사브레 길이: 0.7~1.2m, 무게: 1.7~2.4kg) 보다는 돌격해 오는 힘을 이용해 밀고 나가는 방식의 (랜스 길이: 3.6~4.2m, 무게: 3.5~4kg)가 더 효과적이었따 이치카와 사다하루 이명환 역 『무기와 방어구』, 들녘, 2000, 21~25쪽, 167~168쪽.; 이치카와 사다하루 이명환 역 『무기사전』, 들녘, 2004, 162~163쪽.).

돌격 시 보병을 공격하는데 유용하였다.³⁷⁾ 둘째, 랜스기병은 輕기병의 장점인 속력과 重기병의 장점인 충격력을 모두 갖고 있는 기병대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재발견되면서 1813년 이후 프랑스 적국인 오스트리아³⁸⁾, 러시아에서도 랜스기병을 증강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되었고 랜스기병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영국조차도³⁹⁾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랜스기병대를 창설하여 전장에서 운용하였다. 셋째, 나폴레옹이 180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입성하면서 폴란드 랜스기병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근위대(Imperial Guard)에 폴란드 랜스기병을 포함시켰으며 야전군 기병대에 폴란드 복장을 한 랜스기병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폴란드 기병들은 1808년 에스파냐전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⁴⁰⁾ 당시 에스파냐 전역에 참가한 영국기병은 폴란드 랜스기병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¹⁾



37) 랜스기병을 활용한 가장 훌륭한 전투는 드레스덴전투(Battle of Dresden, 1813)에서 나폴레옹이 랜스기병대를 출격시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방진을 공격해 보병들을 무참히 짓밟고 병참시설을 파괴하였(Bruce et. al., op. cit., p.118).

38) 오스트리아 랜스기병을 지칭하는 단어는 “Uhlán”이다. 이 용어는 “젊은이”라는 의미의 터키어 Oglan에서 유래되었는데 14세기 셀주크투르크에서 처음 등장하여 16세기에는 술탄의 호위병이었으며 이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輕기병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791년 오스트리아는 사단 중 일부를 폴란드 방식에 따라 Uhlán연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연대는 4개의 기병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2개 대대는 랜스로 무장하였고 나머지 2개 대대는 카빈으로 무장하였다. 1789년 제2연대를 창설하였고 1801년에는 3번째 연대 1813년에는 4번째 연대를 창설하였다(Muksic, et. al., op. cit., p.184).

39) 각주 37번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랜스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 훈련소요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영국 내 기병전문가들은 랜스기병 양성을 꺼려하였다(Bruce et. al., op. cit., pp.117~118).

40)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 3차(1772, 1793, 1795)에 걸친 분할정책으로 멸망한 폴란드는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3개 국가가 패배하자 나폴레옹에게 제한적 독립을 인정받고 바르샤바공국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지원하기 위해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포함된 폴란드 기병을 에스파냐 전역에 참가시켰다. 폴란드 멸망과정 바르샤바공국의 성립 프랑스군에 폴란드군 편입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상철 『유럽의 중원 폴란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117~145 쪽.』

41) Jarymowycz, op. cit., p.75.

“그들은 매우 컸고 말을 잘 탔다. 깃발을 붙인 긴 창으로 무장한 그들에 대해 우리의 말들은 매우 놀랐고 우리 기병들은 말을 진정시키거나 도망가기 바빴다. 그들은 완벽한 야만인(barbarians)이었고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3. 나폴레옹의 기병운용 방안

앞서 설명하였듯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수행에 관한 원칙에 대해 글로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병운용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나폴레옹이 구상한 이상적인 전투모습 속 기병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기병에 대해 남긴 구술과 편지 등을 분석해 그의 기병운용술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투 속에서의 기병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프랑스군 보병은 두 줄 또는 세 줄의 횡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방에는 다수의 척후병들(skirmisher)이 차장(screen)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대기하고 있던 포병은 화력으로 적을 괴롭히며 이 때 포병의 목표는 보병 및 부대 지휘관들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측면 공격을 위해 측면에 있는 적에 대해 종사(enfilading fire)⁴³⁾를 실시한다. 적의 전방 횡대가 포병화력 및 척후병에 의해 감소되면 프랑스 보병대대들은 종대대형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척후병은 지속적으로 화력을 유도한다. 진출하는 보병중대의 측면과 후방은 기병을 통해 보호하고 반대로 기병은 기마포병(horse artillery)의 보호 하에 이동한다. 보병횡대가 총검으로 적을 압박하고 만약 이런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지속한다. 적들이 무질서해질 때 기마포병에 의해 보호받는 기병이 공격하여 적을 궤멸시킨다.”

42) Telp, op. cit., p.50.

43) 횡대를 이루고 있는 적 보병부대에 대해 측면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종적인 사격이 되기 때문에 종사라고 표현됨

다음은 나폴레옹이 전투현장에서 구술하고 주고받은 편지 등을 통해 나타난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 ① (49장, 기병의 보호(protection of cavalry)) 소부대에서 보병과 기병을 혼합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병은 보병 때문에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병도 기병이 떠나고 난 뒤 고립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기병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보병이 측방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② (50장, 기병의 돌격(cavalry charges)) 기병의 돌격은 전투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어느 때나 가능하다. 기병 돌격은 항상 가능하지만 전투중인 보병부대 측면에서 운용시 더욱 효과적이다. ③ (51장, 기병의 추격(cavalry pursuit))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전과를 확대하고 적의 재편성을 방지하는 것은 기병의 임무이다. ④ (52장, 기마포병(horse artillery)) 기병은 자체 방어를 위한 화력이 없고 오직 사브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병에게는 보병보다 포병이 더 중요하다. 기병과 포병의 상호 의존이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다. 따라서 기병은 공격, 집결, 진지 배치 등을 불문하고 반드시 포병과 연합해야 한다.

위 내용들을 통해 나폴레옹의 기병운용은 크게 3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유럽에서 기병운용의 목적은 부대방호(screen), 정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기병운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적 부대에 대한 돌격으로 보았다.⁴⁵⁾ 나폴레옹은 섬멸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술적 수준에서 적 부대를 강하게 타격하여 적 방어전열을 무너뜨리고, 전과확대 및 추격을 통해 적을 전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병돌격을 활용하기로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따라 기병의 가장 큰 장점인

44) 나폴레옹 앞의 책 190~197 쪽.

45) 1812년 러시아 원정 이후 군마보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병의 수가 감소하자 나폴레옹은 이전 전투에서 기병을 통해 실시한 전략적 정찰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돌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병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Vuksic et. al., op. cit., p.33.). 이를 통해 볼 때 나폴레옹은 돌격을 기병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기동력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흉갑 등으로 무장해 방호력을 극대화하여 적에게 가능한 많은 기병이 돌진하도록 하였고 소총에 의한 공격보다는 사브레, 랜스와 같은 직접 타격무기를 운용하여 살상력을 극대화하였다.⁴⁶⁾ 그리고 나폴레옹은 기병돌격의 대상을 적 보병, 기병, 포병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보병부대에 대해서는 정면보다는 측면에서 돌격하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전투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해 야전방 보병부대 후방에 기병을 배치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폴레옹을 군사적 천재라 칭송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나폴레옹전쟁을 경험한 이후 기병 돌격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⁴⁷⁾

“적절한 방어지역을 공격할 때는 보병과 포병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보병이 이미 전투를 실시하고 있을 때 기병 단독으로 돌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은 기병돌격의 시점과 효과성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투 전 기병돌격은 보병과 기마포병의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고 전투 중 기병돌격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대 편성시 기병은 보병과 혼합편성하지 않고 단일병종으로만 편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물론 부대 규모가 소규모라는 전제가 있지만 보병과 함께 편성될 경우 기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나폴레옹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병의 단점인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기병의 측방 보호를 위해 보병부대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적절한 수의 보병부대를 기병진출로 측방에서 이동시켜 측면에서 공격하는 적을 차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기마

46)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2장 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47) *ibid.*, p.34.

포병을 편성해 기병돌격 전, 중, 후 지원사격을 통해 적의 반격을 약화시켜 기병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다. 이 방안의 추가적인 장점은 기병이 적 부대를 향해 돌격을 할 때 근접지원사격으로 적 부대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⁴⁸⁾

셋째, 나폴레옹은 기병운용의 부차적인 목적을 부대방호(screen)⁴⁹⁾, 정찰, 추격 등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본진 전방 및 측방에 배치 및 운용하여 적정을 살피고, 주요 기동로 상태를 확인하고, 후퇴하는 적에 대해 신속한 추격을 하여 적을 격멸하는 등의 임무에 기병을 적절히 운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폴레옹은 각각의 임무에 맞게 특성화된 기병부대를 양성 및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과확대와 추격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1807년 이후에는 빠른 기동력과 보병부대에 대한 파괴력을 보유한 랜스기병을 중용한다. 또한 정찰임무를 위해서는 원거리 공격이후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카빈이나 권총으로 무장한 용기병을 적절히 활용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점은 고대로부터 야전전투의 최강자였던 기병이 화약무기 발달 이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시기 기병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임무에 특화된 기병을 양성하려는 나폴레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나폴레옹 기병운용술의 3가지 핵심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직접 수행한 전투에서 실제 기병을 어떻게 운용하였으며 그것이 전투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48) 나폴레옹은 기병 1사단에 포병을 편제에 반영하였으며 기병의 기동력을 감안하여 말이 끄는 기마포병을 조직해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마포병은 사람들이 직접 끄는 포병에 비해 가벼운(1.3kg 또는 2.7kg)를 장착하였다(Bruce et. al., op. cit., p.116).

49) 올름전투(Battle of Ulm, 1805)에서 나폴레옹은 'Black Forest'라 불리는 대규모 수풀지대에 뮌헨을 지휘하는 기병군단을 배치시켜 오스트리아군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단을 수풀지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올름북방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섬멸하였다(Jarymowycz, op. cit., pp.79~80).

50) 1806년 나폴레옹이 라이프치히(Leipzig)로 진출할 때 뮌헨을 지휘하는 선봉정찰대로 경기병 3개 여단과 용기병 2개 사단을 편성하였다(ibid., p.33).

4. 주요 전투에서의 기병운용과 승패에 미친 영향

1) 아일라우전투(Battle of Eylau, 1807)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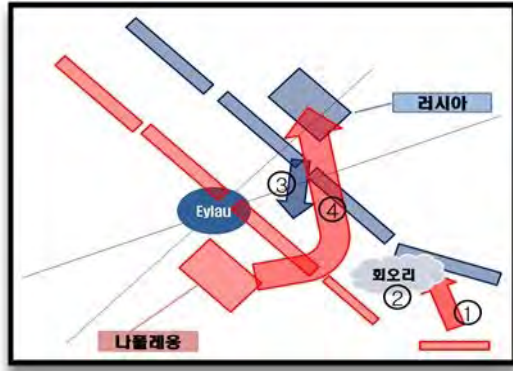
아우스터리츠전투(Battle of Austerlitz, 1805)⁵¹⁾와 예나전투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을 구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폴란드지역까지 진출하자 나폴레옹은 1807년 2월 8일 아일라우 근처에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나폴레옹은 전투 초기 다부(Louis-Nicolas Davout, 1770~1823)의 제3군을 러시아군의 좌익으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3군이 효과적 인 공격을 하여 러시아군 좌익일부에 균열이 생기자 나폴레옹은 러시아 군 좌익 중앙에 오주로(Pierre Augereau, 1757~1816)의 제7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거대한 눈보라가 전장을 뒤덮자 오주로의 제7군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었다. 눈보라가 잠잠해지자 오주로의 제7군은 러시아군 포병대에 자신의 우측면을 노출시켰고 기회를 포착한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였다. 그 결과 1시간 만에 오주로를 포함한 약 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프랑스군 중앙에 거대한 간격이 발생하였다.⁵²⁾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러시아군 지휘관 베닝젠(Levin Bennigsen, 1735~1826)은 보병과 기병 예비대를 프랑스군 간격에 투입시켰고 나폴레옹은 위기에 처하였다. 나폴레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병 예비대 지휘관인 뮈라(Joachim Murat, 1767~1815)⁵³⁾에게

51) 아우스터리츠전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593~602 쪽.).

52) Bruce et. al., op. cit., pp.77~78.

53) 뮈라는 1787년 기병으로 복무를 시작하였으며 1792년 루이 16세의 근위대로 활동하였으나 그해 10월에 흉갑기병이 되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차있던 그는 1795년 10월 나폴레옹과 처음 만났고 1796년에는 네의 기병 예비대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1800년에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라(Caroline Murat, 1782~1839) 과 결혼하였으며 1804년에는 원수로 승진하였다 러시아 전역 이후 1813년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뮈라는 자신의 왕국인 나폴리로 도망을 쳤다 1815 년 나폴레옹이 복귀하자 뮈라는 나폴레옹에게

프랑스군의 중앙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을 공격 목표로 부여하였다. 무라는 제2혼합기병사단, 제1, 제2, 제3용기병사단, 근위기병사단을 소집하여 돌격을 개시하였다.⁵⁴⁾ 돌격 명령이 하달되자 프랑스 기병 예비대는 신속하게 돌격을 감행하여 접근해 오는 러시아군 보병대와 용기병연대를 전멸시켰다. 그리고 본진에서 방어 중인 러시아군 보병대를 향해 공격하여 방어진형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후방에서 대기 중인 러시아군 예비대



〈아일라우 전투 상황도〉

인 보병대와 기병대가 프랑스 기병 예비대를 측면에서 포위하였으나 프랑스 기병 예비대의 충격력은 러시아의 방어력보다 강했고 무라는 기병부대 대형을 변화시키면서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계속 진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맨 후방에 위치한 포병대를 격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전 전선에 걸쳐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다. 날이 저물자 전투는 소강상태가 되었고 네의 제6군이 프랑스군 쪽으로 근접해 오면서 러시아군이 철수하여 아일라우전투는 종료되었다.⁵⁵⁾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나폴레옹 기병운용의 전형(全形)이었다. 첫째, 무라가 지휘

다시 지휘관으로 자신을 중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폴레옹은 이를 거절하였다. 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 pp.294~295).

54) 약 80개 기병대대 및 근위기병대로 편성된 약 만7천여 기병이 제파식 공격을 준비하였고 이는 사상 최대의 기병돌격으로 평가되었다. 그레고리 프리몬 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143쪽.).

55) David R. Stone, *A Military History of Russia*(California: Praeger, 2006), p.99.

하는 기병 예비대의 돌격은 시기상 전투 중에 이루어졌으며 대상도 적 기병부대로 매우 적절하였다. 그리고 돌격 이후 적 보병부대에 의해 일부 포위가 되었으나 러시아군 보병이 완벽한 방진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기병은 돌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출하여 적 후방 포병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둘째, 부대 편성에 있어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병부대와 혼합된 편성을 하지 않고 기병단독으로 편성하였다. 당시 상황은 프랑스군 중앙에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군이 기회를 포착하여 예비대가 돌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느린 보병보다는 기병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기마포병을 대동하지 않았던 점이 교리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상황상 기마포병의 사전지원 후 돌격하는 것은 반격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전술적 융통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나폴레옹은 반격을 위해 군단급 수준의 대규모 기병부대를 조직하였고 독립작전이 가능하도록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운용되도록 하였다. 즉, 규모적·지휘 통제적 측면에서 기병운용을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는데 이것은 나폴레옹전쟁 이전 전쟁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 내 적국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서도 기병은 연대규모로 보병 군(사)단의 예비로서만 임무 수행하는 등 전술적 수준에만 머물렀다.⁵⁶⁾ 프랑스군 기병 중 약 1,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아일라우 전투에서 프랑스군 기병 돌격이 의미없는 자원낭비이며 기병을 오용하였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전투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폴레옹의 전술적 판단과 군단급 수준의 역습을 기병 예비대를 통해 성공시켰다는 사실이다.

56)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하면서 기병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느낀 유럽 각국은 기병군(사)단을 조직하였다. 1811년 러시아는 흉갑기병으로 구성된 두 개의 기병사단과 3개의 코사크군단을 조직하였고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1814년 기병군단을 조직하였으나 프랑스와 달리 독립지휘관 하에 운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같은 기병운용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Tymowycz, op. cit., p.72. p.33).

2) 소모시에라 전투(Battle of Somosierra, 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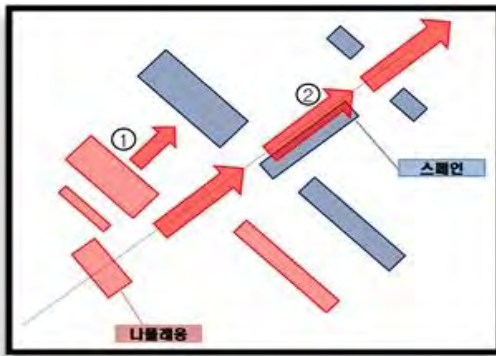
(1) 전투상황 속 기병운동

밀라노 칙령⁵⁷⁾을 통해 영국을 고립시키기로 한 나폴레옹의 의도가 에스파냐에서의 내부분란으로 어렵게 되자 나폴레옹은 에스파냐를 직접 공략하였다. 1808년 나폴레옹은 네, 술트(Nicolas-Jean de Dieu Soult, 1769~1851), 마세나(Andre Massena, 1758~1817) 등과 같은 지휘관과 함께 마드리드로 향하기 위해 피레네산맥 정상의 소모시에라 마을로 진출하였다.⁵⁸⁾ 11월 29일 나폴레옹은 산맥의 중턱부터 정상까지 도로를 따라 중심으로 배치된 포병과 보병을 발견하게 되고 러핀(Francois Ruffin, 1771~1811)의 보병사단으로 공격하였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와 폭이 좁은 도로, 중심 깊게 배치된 에스파냐군 때문에 쉽게 전진 할 수 없었고 나폴레옹은 피레(Hippolyte Pire, 1778~1850)에게 중기병을 활용한 공격을 시켰으나 좌절되었다.⁵⁹⁾ 이에 그는 코이제툴스크(Jan Koziatulsk, 1761~1821)(폴란드 랜스기병대대의 지휘관)에게 공격을 명령하였다. 프랑스 기병부대가 코이제툴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으나 그는 기다리지 않고 폴란드 랜스기병 1개대대를 4열

57) 영국에 대한 봉쇄를 위해 나폴레옹은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동맹국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의 항구에 영국 상선이 입항하지 못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1807년 12월 영국과 통상하는 상선의 나포명령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부국가에게 반발을 샀고 특히 영국과 전통적 동맹 국가였던 포르투갈은 영국 물품에 대한 밀수를 지속 시행하였다 그레고리프리몬 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355~362 쪽.)

58) 이베리아반도는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시에라 모레나(Sierra Morena)의 황무지까지 척박한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 국토 대부분이 산맥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해 프랑스군의 강점인 대규모 기병의 돌격전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다 (이용재 「나폴레옹 전쟁과 에스파냐 ‘궤양」」 『동국사학』 제49집, 동국대학교 사학회 2010, 404~405쪽.). 특히, 이 글에서 제시된 소모시에라 지역은 기병이 우회할 수 없는 단일한 도로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레네산맥의 중턱에서부터 정상까지 에스파냐군이 중심방어를 실시하였다

59) 피레가 나폴레옹에게 에스파냐군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나폴레옹은 “불가능? 나는 그 말에 의미를 모른다Impossible? I don'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라고 답하였다(Bruce et. al., op. cit., p.92).



〈소모시에라 전투 상황도〉

중대로 배치하여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공격하였다. 에스파냐군의 포병과 머스켓이 지속적으로 발사되자 폴란드 랑스기병의 선두가 저지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폴란드 랑스기병들은 멈추지 않고 신속히 공격을 하였으며 에스파냐군 포

병 및 보병부대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었다. 폴란드 랑스기병은 에스파냐군 방어전방의 보병부대 일부를 돌파하였고 이후 계속 돌파를 시도하여 결국에는 정상까지 올라 에스파냐군 방어의 균형을 흔들었다.⁶⁰⁾ 그리고 러핀의 보병사단과 프랑스군 기병대가 폴란드 랑스기병대를 후속하여 에스파냐군의 중심 깊은 방어를 붕괴시켰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는 그 동안 나폴레옹이 보여준 기병운용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였다. 기병돌격이 보병부대 간 전투로 혼란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 측방, 후방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고 적 기병 및 포병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닌 보병부대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기병운용의 위대성은 이 전투를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작전지역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에서 고지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리고 적은 지연전을 위해 도로 중심으로 중심 깊게 방어부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기존 중기병은 기동속도가 느려 적에게 근접하기 전에 적 보병과 포병공격에 많은

60) Bruce et. al., op. cit., pp.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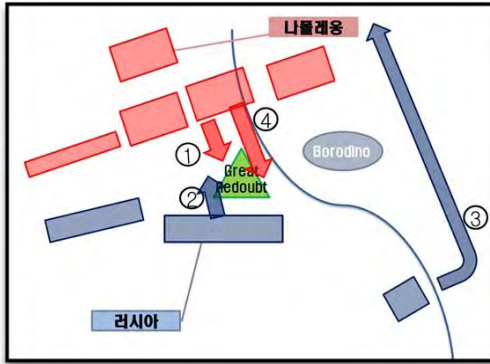
피해를 입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랜스로 무장해 보병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아 기동속도가 뛰어난 폴란드 랜스기병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나폴레옹은 동일한 임무라 할지라도 지형과 기상 등 주변 요소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부대를 선정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준비해 전투에 참가시켰다. 둘째, 공격부대를 편성하면서 폴란드 랜스기병 단독으로 편성해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프랑스 기병과의 조합은 폴란드 랜스기병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무디게 하여 극대화된 전투력을 제한할 수 있었다. 즉 같은 병종이라도 각 기병만의 특별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혼합 편성할 경우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었다. 셋째, 돌격하는 기병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형을 확보 및 붕괴된 적을 소탕하기 위해 보병부대를 후속공격시켰다. 만약 후속부대의 적절한 공격이 없었다면 폴란드 랜스기병이 어렵게 확보한 기동로가 폐쇄되고 폴란드 랜스기병이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상황에 부합된 기병운용의 묘를 통해 나폴레옹은 소모시에라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마드리드로 진격할 수 있었다.

3) 보로디노 전투(Battle of Borodino, 1812)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시 러시아군 주력을 조기에 섬멸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지연전을 펼쳐 좌절되었다. 그러나 국내여론 악화로 조기 결전을 결심한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점인 보로디노 근처에서 방어를 준비하였다. 작은 언덕과 하천, 나무로 우거진 지역인 보로디노는 상대적으로 경무장한 러시아군에게는 유리하고 중무장한 프랑스군에게는 불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전선 중앙에 3개의 보루를 만들어 프랑스군 공격에 대비하였다. 9월 7일 새벽 프랑스군 13만 명, 러시아군 12만 명이 약 5마일에 걸쳐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전투가 시작

되었다.⁶¹⁾ 나폴레옹은 네의 제3군과 다부의 제1군에게 러시아군 중양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다부의 제1군은 특히 3개의 보루에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을 하였다. 그 중 가장 남쪽에 있던 보루를 점령하지만 러시아군 중기병이 반격하여 다부의 제1군 보병대대를 파괴하였다. 이후 다부



〈보로디노 전투 상황도〉

의 제1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전투시작 1시간여 만에 보루 3개를 모두 점령하였으나 러시아군의 반격에 의해 모두 다시 빼앗겼다. 이때 외젠(Eugene de Beauharnais, 1781~1824)의 제4군(프랑스군 좌익)이 보로디노를 점령하여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위 대보

루(Great Redoubt)⁶²⁾를 측방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네와 뮐라는 러시아군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나폴레옹에게 전갈을 보내 황제 근위대(예비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⁶³⁾ 이때 프랑스군 좌측에서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자⁶⁴⁾ 나폴레옹은 네와 뮐라의 전갈에게 황제 근위대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병예비대를 러시아군 기병의 공격방향으로 보내 측방보호에 주력하였다. 러시아군 기병 공격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나폴레옹은 대보루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한다. 이에 외젠의

61) David, op. cit., p.104.

62) 전쟁 후 프랑스인들에 의해 “Great Redoubt”라고 불리게 되었다

63) 당시 나폴레옹은 심한 고열과 감기로 인해 병상에 누워 있어 전장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Christopher, op. cit., p.345).

64) 당시 러시아의 플라토프(Platov Matvei Ivanovich, 1751~1818) 장군은 나폴레옹의 좌측방과 후방의 병참선을 위협하기 위해 輕기병을 운용하였다(Bruce et. al., op. cit., p.106).

제4군이 측방에서 공격하고 중앙에서는 기병사단, 2개의 흉갑기병 연대가 선두에서 요새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고 다부 제1군의 제1, 제3보병사단이 후속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도 요새 안에서 방진을 형성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프랑스군은 3개 흉갑기병연대와 3개 보병사단을 추가로 투입하여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때 러시아는 2개 기병군단을 투입하여 러시아군 본진 전방이 붕괴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⁶⁵⁾ 이 시기에 프랑스군 전방 지휘관들은 나폴레옹에게 러시아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근위대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나폴레옹은 이 요구를 묵살하였다.⁶⁶⁾ 결국 해가 지고 러시아군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후퇴하면서 보로디노 전투는 종료되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운동은 전술적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나폴레옹은 적 방어진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병돌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장에 있는 3개의 보루는 러시아군 방어진형의 중심(Center of Gravity)라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보병부대의 지원과 기마포병의 적절한 지원으로 보루를 공격하였다. 후속하는 보병부대 지원이 없어 확보한 지역을 내주었지만 연이은 공격으로 보루를 확보할 수 있었고 러시아군 진형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특히 대보루 지역은 가장 치열한 난타전(dog-fight)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기병의 대규모 돌격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감, 압박감을 받은 러시아군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군 기병이 측방 우회공격 시에 나폴레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력이 있는 기병을 투입하여 측방을 보호하고 러시아군

65) David, op. cit., p.105.

66) 근위대 공격 전과확대 또는 추척 이 무산되면서 러시아군은 더 큰 피해없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후퇴할 수 있었고 프랑스군은 결정적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 나폴레옹은 그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부대로써 근위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근위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레고리 프리몬 반즈 토드피셔 앞의 책 292 쪽.)

기병을 격퇴시켰다. 만약 기병이 아닌 보병을 투입했다면 반응시간이 늦었고 적절하지 못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러시아군 기병의 접근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피해없이 자신의 병참선과 우측을 보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전술적 수준의 기병운용은 성공적이었으나 이것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병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나폴레옹은 대보루가 무너지고 있을 때까지 자신의 근위대(기병예비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기병예비대에겐 전과확대 임무를 부여하였다면 전과확대뿐 아니라 아우스터리츠, 예나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섬멸전도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었다면 러시아군 주력은 보로디노에서 섬멸되었고 모스크바 점령 이후 나폴레옹이 후퇴를 할 때 러시아군이 빠르게 프랑스군을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4)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1815)

(1) 전투상황 속 기병운용

1815년 황제로 복귀한 나폴레옹은 영국 중심의 동맹국들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재모집하였고⁶⁷⁾ 6월 15일 벨기에 국경을 넘었다. 이때 프로이세군 소속의 전초부대와 프랑스군이 일부 접촉하였으나 나폴레옹은 기병의 차장(screen)을 통해 부대를 3개로 나눌 수 있었다. 6월 16일 카트르-브라전투((Battle of Quatre-Bras)⁶⁸⁾와 리니전투(Battle of

67) 당시 프랑스군은 128,000명, 야포 366문으로 구성되었다. 기병편성은 각 군단 내에 輕 기병과 中기병사단 기병예비대에는 감소편제의 4개의 기병군단 근위대에 2개의 기병사단이 있었다(David 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London: Osprey Publishing, 1998), pp.52~53). 당시 부대의 세부적인 편성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Ray Johnson, *Napoleonic Armies*(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84), pp.38~41).

68) 네는 웰링턴군의 방어진형을 파괴하기 위해 3차에 걸쳐 기병대의 중앙돌격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군 방어진형이 일부 붕괴되었으나 기병은 돌격 이후 방어력이 전무해 영국군의 반격이 실시된 이후 차지한 지역을 지켜낼 수 없었다. 그 결과 네의 계획은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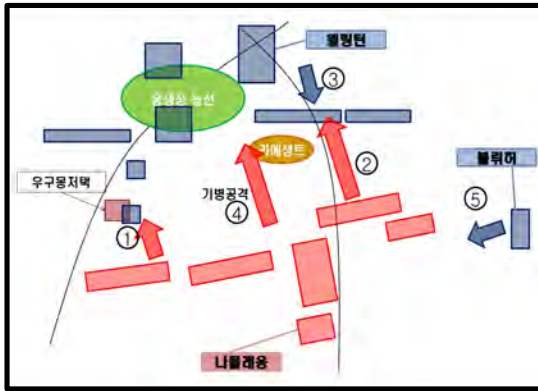
Lyni, 1815)에서 양측은 성과없이 전투가 종료되었고 18일 워털루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서쪽으로 19km 떨어진 프로이세군을 견제하기 위해 구르시(Emmanuel de Grouchy, 1766~1847)의 1개 군단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7만 2천 명으로 감소한 병력과 함께 웰링턴군이 방어⁶⁹⁾하고 있는 몽 생장 능선 쪽으로 이동하였다. 11시 30분 프랑스군의 야포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자 레유(Honore Charles Reille, 1775~1860)의 제2군단 보병대가 전선의 중앙에 위치한 우구몽 저택을 공격하였다.⁷⁰⁾ 성과 없이 끝난 이 공격을 뒤로하고 에를롱(Drouet de Erlon, 1765~1844)의 제1군단이 제4기병군단의 일부 기병연대를 지원을 받아 웰링턴군의 우측 중앙을 향해 공격하여 방어진형을 일부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때 웰링턴군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국군 용기병 7개 연대가 반격하여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⁷¹⁾ 오후 4시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네는 보병과 포병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5,000여 기병으로 구성된 40개의 기병대대를 이끌고 능선에 위치한 영국군 보병을 향해 돌격하였다. 그러나 잘 조직된 보병방진에 대한 기병의 돌격은 소모적 행동에 불과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병대 돌격의 충격은 약해져 갔고 방진 내 보병들이 갖는 심리적 공포감은 사라져 갔다. 나폴레옹은

되었다. 이 전투는 프랑스기병 돌격의 파괴력과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제파식 기병돌격은 당시 영국군의 방진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 후속하는 보병과 포병이 확보한 지역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기병은 신속히 후방으로 이동해 다음 임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보병과 포병의 지원없이 기병단독으로 차지한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Brice et. al., op. cit., pp.119~129).

69) 프랑스군 보병 49,000명, 기병 15,750명, 야포 246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웰링턴군은 총 68,000여 명으로 그 중 3분의 1만이 영국군이었으며 보병 50,000명, 기병 12,500명, 야포 156문을 보유하고 있었다(Chandler, *Dictionary of the Napoleonic Wars*, p.481).

70) 우구몽저택에 대한 프랑스군의 집착은 워털루 전투 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저택에 대한 공격을 위해 프랑스군은 13,000명을 투입하였으나 영국 군위대는 2,000명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다른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집중할 병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 pp.133~139).

71) 이때 웰링턴군 기병의 1/3이 파괴되었지만 방어정면을 고수할 수 있었다(Jarymowycz, op. cit., p.85)



〈위털루 전투 상황도〉

네의 기병돌격으로 군열이 생긴 영국군 방어 진형을 레유의 제2군단 8천 명을 포병지원 아래 투입하여 공격하지만 이미 시기를 상실하였다. 오후 5시 30분 블뤼히어의 전위부대인 제4군단 일부가 프랑스군 우측으로 접근해 오

자 나폴레옹은 마지막 예비대인 근위대 7개 대대로 저지를 시도하였다. 이때 네가 웰링턴 군 중앙에 일부 군열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근위대의 지원을 요청하지만 이미 근위대는 우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오후 7시 전선의 중앙에서 프랑스군과 웰링턴군의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프로이세군이 프랑스군 본진으로 이동해 오면서 프랑스군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2) 승패에 미친 영향

위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기병운동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기병운동의 원칙이 거의 무시되었다. 첫째, 네의 기병돌격 시기는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방향이 문제였다. 네가 선택한 돌격방향은 웰링턴군의 보병부대 정면이었기 때문에 기병대의 피해가 컸고, 기동로는 우구뭉 저택과 라 에 생트라 불리는 농장 사이의 협소한 공간으로 옥수수밭과 진흙탕길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기병이 본연에 속도를 내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⁷²⁾ 기병의 돌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넓은 횡대대형을 이루고 전속력으로

72) 제프리 우텐 김홍래 역 『위털루 1815』, 플래닛미디어 2007. 132 쪽

질주(gallop)해야 한다. 하지만 네의 오판으로 기병돌격을 위한 적절한 방향과 기동로가 올바르게 선정되지 못했다. 둘째, 편성자체는 기존 전투와 동일하게 기병 단독으로 편성하였지만 기마포병, 보병부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형태의 방진을 형성하고 있는 보병부대에 대한 돌격은 무모하였다.⁷³⁾ 그리고 기병 돌격시 보병부대의 후속이 없어 차지한 지역에 대한 확보 및 전과확대가 어려웠다.⁷⁴⁾ 셋째, 군마부족으로 인한 기병의 질적 저하가 돌격력을 약화시켰다. 과거부터 프랑스는 유럽 내 주요 군마 생산국이 아니었다. 나폴레옹 등장 이후 프랑스군은 유럽 내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군마 징발을 실시하여 기병을 강화하였다. 특히 러시아 전역을 준비하면서 나폴레옹은 2만 여필에 말을 구입하고 프랑스와 중부유럽 내 각국에서 군마 징발을 계속하여 95,000명의 양질의 기병을 양성할 수 있었다.⁷⁵⁾ 하지만 러시아 전역 실패로 기병의 급격한 감소와 점령국 대부분이 전쟁터로 바뀌면서 기병 확충을 위한 군마 생산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1813년부터 기병 양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병 전술의 다양성과 파괴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1813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은 주요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⁷⁶⁾ 1815년 나폴레옹이 다시 등장하고 군마수입을 늘렸으나 정예기병을 얻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 결국 과거의 기병보다 질적으로 저하된 기병의 돌격은 전술적 운용의 패착과 함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⁷⁷⁾

73) *ibid.*, p.148.

74) 챈들러는 워털루전투 패배의 원인을 나폴레옹의 심리적 육체적인 요소 리더십 참모조직)와 조직 무기, 전술적인 요소 병력집중 기후문제 등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육체적 능력 저하로 인해 실패했던 국면 중 하나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돌격하는 기병을 선정하였다(Chandler, *Waterloo-The Hundred Days*, pp.187~190).

75) 리처드 흄즈 위의 책 36 쪽

76) 1813년 라이프치히전투(Battle of Leipzig) 초기 교착상태가 진행되자 뒤라는 기병 10,000명을 돌격시켜 오스트리아 보병군단을 무너뜨렸으나 오스트리아 기병예비대의 반격으로 추가적인 진출이 제한되었다. 이후 프랑스 흉갑기병이 재차 오스트리아군의 측면을 공격하였으나 추가적인 기병예비대 부족으로 전과확대를 할 수 없었다(Ellis, *op. cit.*, p.143).

77) Vuksic et. al., *op. cit.*, p.33.

5. 맺음말

유럽 내 기병강국이 아니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 등장 이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병강국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나폴레옹은 기병이 갖는 고유한 장점에 주목하였으며 전술적 임무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병운용술을 발전시켰다. 첫째, 나폴레옹은 기병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돌격을 통해 적을 붕괴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돌격을 보장하기 위해 기병부대는 보병과 혼합편성하지 않고 단일 지휘관에 지휘를 받는 독자적인 부대로 양성하였다. 셋째, 기병돌격 간접 방어부대를 와해시키고 돌격 이후 방어력 부재를 극복하고자 기동성을 갖춘 기마포병을 함께 편성하고 측방에서 보병부대가 방호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동일한 임무도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병대를 준비하고 임무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기병은 보병에 비해 빠른 반응속도와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융통성을 갖고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병의 전술적 운용을 통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황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기병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기병 역사에 큰 군사적 업적을 남겼다. 첫째, 18세기 화약무기 발달로 인해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기병을 다시 전장의 정면에 등장 시켰다. 이를 위해 그는 임무에 맞게 기병의 종류를 분화시켰다. 정찰, 추격, 본진에 대한 보호 등에 임무는 중기병과 輕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기병돌격을 통한 적 방어진형을 돌파하는 임무는 重중기병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나폴레옹은 흉갑기병을 창설하였고 랜스기병을 중용해 그의 기병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을 끼워 맞췄다. 둘째, 기병운용을 전술적 수준의 제대 규모에서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보병이 없이 기마포병에 지원을 받는 기병군단을 창설해 기병을 대규모로 집중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럽 내 다른 국가는 시도하지 못한 작전적, 전략적 기동과 공격이 가능

하도록 기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셋째, 1815년 이후 화약무기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규모 기병 돌격이 무력화되면서 기병은 수색 및 정찰 임무에만 운용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병이 갖는 유용성을 찾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전차가 전장에 주역이 되는 2차 세계대전까지 기병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나폴레옹의 대규모 기병돌파 전술은 기병의 대체물인 전차가 출현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 대규모 전차부대의 돌파전술이 탄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나폴레옹의 군사적 업적 중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근대시기 기병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기병병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나폴레옹, 전술, 기병, 중기병, 경기병, 용기병, 아일라우, 소모시에라, 보로디노, 워털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 Study of Napoleon's Cavalry Tactics

Joo, Jung youl

The advent of Napoleon was a turning point in the war history. Tactics and war principle he established became the basis of the current military theory. However, one military achievement that has not been noticed for a long time is the return of the cavalry as a leading force in the battlefield, which had been in decline after the development of gunpower weapons. The main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 the application and the effect of the cavalry used by Napoleon, focusing on the art of his cavalry operations.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cavalry relatively lacked both quality and quantity compared to the other cavalries in Europe. Nevertheless, thanks to Napoleon, the French cavalry was able to hold its leading position in Europe. Napoleon especially focused on the intrinsic advantages that cavalry holds, and by reflecting from his concerns and experiences, he developed his own cavalry operation methods. Based on these new methods he was able to win the battle of Eylau, the battle of Somosierra and battle of Borodino. However in the battle of Waterloo, his decision not to follow the principle rules in his cavalry management methods had lead to defeat.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more attention could be paid on cavalry operation, and wish that more studies will be conducted on modern cavalry operation.

Key words : Napoleon, tactics, cavalry, heavy cavalry, light cavalry,
Dragoon, Eylau, Somosierra, Borodino, Waterloo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경제참모본부’

박 성 진*

1. 서론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총력전
3.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군수국·국세원
4. 총력전 장교의 탄생과 자원국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1914년 유럽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양상과 규모면에서 그 이전 전쟁들과는 양적·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다. 총력전(total war)으로 상징되는 1차대전의 양상은 전쟁 과정은 물론 종전 후에도 세계 각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전 체제 구축을 국가의 당면 과제로 부상시켰다.¹⁾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에릭 홉스봄(저), 이용우(역),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상)』, 까치, 1997, 72쪽; 가타야마 모리히데(저), 김석근(역),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2013, 38~42쪽.

아니었다. 물론 일본의 경험은 교전 당사국이었던 유럽에 비해 간접적이기는 했지만, 일본 자체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1차대전 전까지 10년마다 전쟁을 겪었고, 2차대전 전까지는 5년마다 전쟁을 치루면서 전쟁과 함께 발전해 온 일종의 ‘전쟁국가’²⁾였기 때문에 1차대전의 영향은 일본에게도 특히나 중요한 것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일본에 등장한 총력전 구상과 그 체제의 형성과정을 군수국(1918~1920), 국세원(1920~1922), 자원국(1927~1937)이라는 ‘경제참모본부’(economic general staff)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당대에 경제참모본부라는 용어가 등장한 맥락이 중요한데, 넓은 의미에서 경제참모본부는 “경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사들이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정부에 조언하는 정부 기구”³⁾를 의미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용어가 일본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17년 9월 일본 육군에서 발간한 『전국동원계획필요의의(全國動員計劃必要ノ議)』에서였다. 이 문건에서 “전국동원계획 책정과 입안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독일에서 이미 운용 중인 경제참모본부(經濟參謀本部)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것이다.⁴⁾ 이 문건에서 사용된 경제참모본부라는 용어는 앞서 언급한 일반적 정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한 것이었다. 즉 당시 일본 군부는 메이지헌법에서 규정한 천황의 통수대권에 따라 통수권이 국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문제에서 경제참모본부를 통해 군부의 독립적 권한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경제참모본부라는 초기 구상은 1차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총력전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⁵⁾, 군수라는 좁은 범위를

2) 이성환, 『전쟁국가 일본』 살림출판사, 2005, 7~8쪽.

3) 小峯敦, 「戰時期日本の經濟參謀論」, 『經濟學論集』 45卷 2戸, 龍谷大学經濟学会, 2005, p.109.

4) 參謀本部, 『全國動員計劃必要ノ議』(1917), 額顯厚, 『總力戰體制研究: 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 社會評論社, 2010, p.213. 여기서 언급한 경제참모본부는 1차대전 당시 독일 육군성 산하의 전시국(Oberstes Kriegsamts)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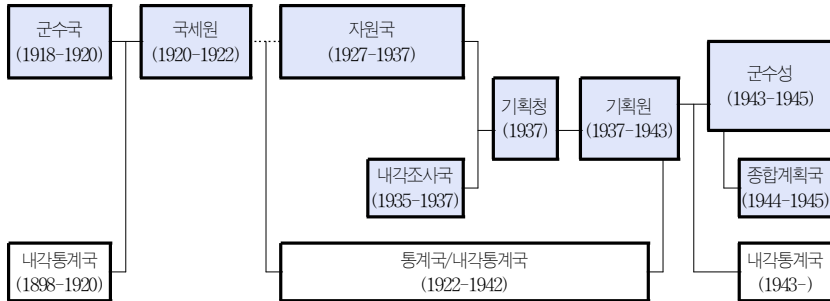
5) 1920~30년대 세계 각국의 총력전 대비 기구로는 프랑스의 고등국방회의(1921) 및 전국경제회의(1925), 이탈리아 국방최고회의(1923) 및 전국협동조합회의(1926), 독일의 잠정

넘어 경제 전반, 즉 군수와 민수 모두를 기획·통제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참모본부 구상으로 확대되었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대중들에게도 공유되었다.⁶⁾ 특히 일본의 경우, 메이지헌법에서 국무와 통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이 군사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편으로 군부가 내각이 다루는 경제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일종의 결함과 한계를 갖고 있었다.⁷⁾ 이러한 결함과 총력전 대비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내각 직속기관으로서 경제참모 본부의 설치였다. 내각으로서는 경제참모본부의 창설을 통해 군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군부도 경제참모본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군수를 비롯한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내부에서 경제참모본부의 운영을 둘러싼 국무와 통수의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지만, 군부와 내각은 경제참모본부의 창설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던 것이다. 191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서 등장한 경제참모본부의 제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방경제회의(1920) 및 연방경제회의(1933),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1921) 및 노동국방회의(1922), 영국의 경제자문회의(1930), 미국의 최고부흥회의(1933) 등을 들 수 있다. 松井春生, 『經濟參謀本部論』, 日本評論社, 1934, pp.71~177; 防衛 防衛研究所戰史室, 『陸軍軍需動員(1) 計劃』, 編纂新聞社, 1967, pp.228~231.

- 6) 1920년대 일본에서 ‘경제참모본부’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된 데는 영국에서 ‘economic general staff’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economic general staff’이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베버리지(William H. Beveridge)가 1923년 12월 29일과 1924년 1월 5일에 자유당의 기관지인 *The Nation and the Athenaeum*에 “An Economic General Staff(1·2)”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부터였다. 小峯敦, 「ベヴァレッジにおける経済参謀」, Sangyo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No.26, 2002, pp.6~10. 베버리지의 이 제안은 1930년 제2차 노동당 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Economic Advisory Council)로 실현되었다. Susan Howson & Donald Winch, *The Economic Advisory Council 1930~1939*(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p.17~29.
- 7) 신동준, 『근대일본론: 근대 일본의 국가제도와 그, 운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32~277쪽; 이노세 나오키(저), 박연정(역), 『쇼와 16년 여름의 패전』, 추수밭, 2011, 122쪽; 가타야마 모리히데, 앞의 책, 7장

〈표 1〉 일본 경제참모본부의 계보(1918~1945)



특히나 본 논문에서 시기적으로 1920년대에 등장한 경제참모본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1930년대에 비해 1차대전의 여파가 보다 직접적이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1920년대에는 군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료측에서도 총력전과 경제참모본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군부의 독주와 본격적 전쟁 돌입에 앞서 1920년대 이루어진 다양한 총력전 인식과 경제참모본부에 대한 논의 속에는 1930년대의 것과 한편으로는 ‘연속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것이다. 우선 연속성의 측면에서 1920년대 경제참모본부는 1930년대는 물론 전후 통산성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참모본부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⁸⁾, 이를 이해하는 것은 2차대전 시기의 일본은 물론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⁹⁾ 단절성의 측면에서 1920년대는

8) 군수국·국세원을 경제참모본부의 원형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모로하시 에이치(諸橋英一)는 군수국·국세원을 ‘경제기획관청’의 원형으로 보는 입장은 2차대전기 기획원으로 상징되는 이미지를 1차대전의 상황으로 역규정한 해석으로, 군수국과 국세원의 본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諸橋英一, 「第一次世界大戦期における總動員機關設置過程にみる政軍關係」, 『法學政治學論究』 96号,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學研究科, 2013, pp.244~246. 그러나 본 논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그의 주장대로라면, 군수국 설치 이후 육군 내 군수동원을 담당한 병기국 공정과의 존재와 국세원의 폐지, 그리고 자원국의 설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그 체제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9)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연구로는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Janis Mimura,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정치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역동성’이 나타나 경제참모본부에 대한 논의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즉 1920년대 경제참모본부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에 따른 ‘변용’은 1930년대 군부 주도의 경제참모본부와는 상당히 다른 단절성 또한 보여주었던 것이다.¹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¹¹⁾을 바탕으로, 192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진 군수국-국세원-자원국이라는 ‘경제참모본부’의 형성과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1차대전이라는 역사적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총력전 장교’(total war officer)¹²⁾들의 아이디어(idea)가 경제참모본부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Planning for Empir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일본측 연구로는 井出嘉憲, 『非常時體制と日本<官>制』,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ファシズム期の國家と社會(6): 動員と抵抗(上)』, 東京大學出版會, 1979; 脚 貴, 「國策統合機關設置問題の史的展開」, 近代日本研究會(編), 『昭和期の軍部』, 山川出版社, 1979; 山口利昭, 「國家總動員研究序説: 第一次世界大戰から資源局の設立まで」, 『國家學會雜誌』 92卷 3・4戶, 國家學會事務所, 1979; 古川隆久, 『昭和戰中期の總合國策機關』, 川弘文館, 1992.

10)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일본 총동원론을 다룬 최근 연구는 본 논문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1920년대만을 강조할 경우, 총력전이라는 1930년대와의 ‘밀연적’ 연속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 안재익, 「1920년대 일본 총동원론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해서는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제2판)』, 다산출판사, 2011 참조. 일본 발전국가의 진화를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한 최근 연구로는 Hironori Sasada,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Institutions locked in by ideas*(New York: Routledge, 2013) 참조.

12) ‘총력전 장교’는 주로 러일전쟁을 전후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육군대학교를 거쳐 참모본부의 요직에서 근무하며, 총력전 체제 건설을 위한 일본의 군사전략과 기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엘리트 군인들을 의미한다. 1차대전 이후 등장하게 되는 총력전 장교들은 1930년대에 들어 황도파와 통제파로 나누어 격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글은 1930년대 황도파와 통제파로 나뉘기 전, 총력전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공유했던 중견 장교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들은 ‘군인관료’, ‘군사관료’, ‘혁신장교’, ‘정경장교’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총력전 장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Michael Barnhart, *Japan Prepares for Total War*(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87) 참조.

2.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총력전

1) 총력전 개념

총력전 개념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 왕당파 기관지 『악시옹프랑세즈(*Action Francaise*)』의 편집자였던 레온 도데(Leion Daudet)는 191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총력전(*La Guerre Totale*)』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도데는 1차대전을 총력전이라 규정하고, 총력전은 “전쟁이 각국의 정치·경제·상업·산업·학계·법률·금융 등 모든 영역들로 확대되어 격렬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군대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전통, 제도, 관습, 관례, 정신은 물론, 특히 은행들까지도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그 성격을 규정했다.¹³⁾ 이러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차대전 당시 독일군 참모장을 지낸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가 1935년에 『총력전론(*Der Totale Krieg*)』을 발간한 이후부터였다.¹⁴⁾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정의도 도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루덴도르프의 저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그때까지 유럽의 전쟁사 연구를 지배해왔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이론의 폐기를 선언하며, 정치와 군사의 일체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총력전은 그 본질상 국민의 총력에 의하여 지향되는 것이며, 문자 그대로 국민의 총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쟁의 본질이 변화한 것처럼 법적으로 정치의 임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치 그 자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정치는 총력전과 똑같이 총력전의 성격을 지녀야**

13) Leion Daudet, *La Guerre Totale*(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18), p.8. 도데는 총력전이라는 용어가 1917년 7월 22일 당시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의 의회 연설에서 제시 되었다고 언급했다. *ibid.*, pp.7~8.

14) 후지와라 아키라(저), 엄수현(역),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1994, 173쪽.

한다. ...전쟁의 본질이 변화하고, 정치의 본질도 변한 이상 정치와 전쟁 지도와의 관계도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가 세운 모든 이론은 이제는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정치는 전쟁지도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¹⁵⁾

당시 루덴도르프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 군부에 큰 주목을 받았다. 즉 군사보다는 정치 우위의 관점을 갖고 있던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 달리 루덴도르프는 ‘정치는 전쟁의 연장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노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

1차대전이 단순히 무기와 군대를 동원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그 사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자원 및 인적자원을 총동원한 전쟁이라는 교훈은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 국가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방대하고는 복잡한 계획을 기획·입안하고 사회 통제와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사회의 전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¹⁷⁾ 이른바 ‘총력전 체제’의 등장이었다. 이는 현실에서 미국의 뉴딜형 체제,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체제, 이탈리아의 파시즘 체제 그리고 일본의 국가총동원 체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 체제들이 기반을 둔 이념의 차이는 국가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로 나타났지만, 볼프강 쉬벨부시(Wolfgang Schivelbusch)가 날카롭게 지적

15) 루덴도르프(저), 최석(역), 『국가총력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972, 31~32쪽.

16) 기모토 다케시(저), 이석원(역), 「총력전의 이율배반」, 『역사문제연구』 23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299쪽. 루덴도르프에 대한 일본 육군의 관심은 이 책이 독일에서 발간된 지 3년만인 1938년에 일본 육군에 의해 번역·출간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반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On War)』의 경우, 일본 육군이 이 번역에 착수한 것은 1886년경이었지만, 이후 작업은 상당기간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내용의 난해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군사에 대한 정치 우위의 사상을 일본 군부가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종학, 「일본군국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군사』 37호, 국방부, 1998, 208~209쪽.

17) 川口淳, 「革新官僚の思想に関する一考察」, 『一橋論叢』 121卷 6号, 日本評論社, 1999, p.901.

했듯이, 이들 체제들은 일종의 ‘친족관계’(Kinship)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특히나 총력전 체제가 이전의 전쟁체제와 가장 구별하는 특징이 평시부터 전시를 대비한 강력한 동원체제의 형성과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경제의 전반적 관리·통제라는데 있었기 때문에, 1차대전 이후 2차대전의 시기는 세계 각국에게 ‘또 다른 전쟁’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¹⁹⁾ 이런 의미에서 20세기는 ‘총력전의 시대’(The Age of Total War)였다.²⁰⁾

2) 일본의 총력전 구상

일본에서 총력전이라는 전쟁 양상에 군부가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분명했지만, 일본의 정치가들도 이 전쟁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었다. 총력전과 경제참모본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당대 정치가는 고토 심페이(後藤新平)였다. 고토는 대만총독부 민정국장과 장관(1898.3~1906.10)을 거쳐 초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총재(1906.11~1908.6)를 역임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 근거로 삼을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²¹⁾ 이러한 고토의 인식은 ‘문’과 ‘무’의 결합이라는 ‘문장적 무비’(文狀的 武備)로 재현되었는데, ‘문장적 무비’란 “문사(文事) 설비를 이용해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고 사변이 돌발했을 때 무단적(武斷的) 행동을 겸하게 하는 것”이었다.²²⁾ 이러한 점에서 고토가 1907년 4월 설치한 만철 조사부와 1908년 1월 도쿄에 설치한 만철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문사 설비의 핵심적

18) 볼프강 쉬벨부시(저), 차문석(역), 『뉴딜, 세편의 드라마』, 지식의 풍경, 2009, 45~77쪽.

19) Janis Mimura, *ibid.*, p.44.

20) 에릭 홉스봄, 앞의 책, 제1장 참조.

21) 스테판 다나카(저), 박영재·함동주(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346쪽.

22) 고바야시 히데오(저), 임성모(역), 『만철滿鐵: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림, 2004, 47~49쪽

기관이었다. 특히나 만철 조사부는 일본 최초의 對아시아 조사를 담당했던 국책기관으로²³⁾, 1939년에 조사부 소속 인원이 2,489명에 달했던 일본 최대의 ‘국책조사기관’이었다.²⁴⁾

특히 당시 일본의 데라우치(寺内) 내각은 1차대전을 목도하며 군비충실과 경제력의 발전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는데, 이를 위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들을 설치하여 대외정세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벌였다. 1917년 2월에는 외무성 임시조사부, 대장성 임시조사국, 농상무성 임시산업조사국, 체신성 임시조사국 등이 신설되었고, 9월에는 체신성 임시선박관리국이, 1918년 5월에는 인구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 수상 직속의 임시국세조사국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18년 5월 군수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된 것이었다.²⁵⁾

특히 데라우치 내각에서 외무대신과 내무대신을 역임한 고토는 1920년 12월 정부에 만철 조사부와 같은 대조사기관설치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위정자를 비롯해 지식인은 제1차대전의 기운과 더불어 실제 세력의 요구를 정밀하게 관찰 연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의 지속적인 통제와 산업에 종사하는 각 계급의 조화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국제적 대전쟁에서 승리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²⁶⁾고 언급하며 조사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기관에서 원료문제, 동력문제(석탄·석유·수력), 식료·생필품 분배문제, 인구문제, 위험사상, 각종 사회사상, 국가관념 등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구미 각국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⁷⁾ 이러한 대조사기구설치안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구상은 이후 군부의 국가총동원기관설치 구상으로

23) 末廣昭, 「アジア調査の系譜」, 末廣昭(編), 『「帝国」日本の学知(6):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6, pp.23~29.

24) 광철장·관첩(주편)·한준영(부주편), 신태갑(외 역),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사(3)』, 선인, 2012, 343~344쪽.

25) 木坂順一郎, 「軍部とデモクラシー」, 『国際政治』 38号, 日本国際政治学会, 1969, pp.9~10.

26) 鶴見祐輔, 『後藤新平云(9) 国民指導者時代 前期(上)』, 太平洋協會 出版部, 1944, p.162.

27) 「産業国策調査機関」, 後藤男提出原案, 《福岡日日新聞》, 1920.12.13.

이어졌다.²⁸⁾

이와 더불어 총력전을 대비한 독립된 부처의 설립도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데라우치의 최측근 인사였던 니시하라 가메조(西原龜三)가 1917년 3월 『전시경제동원계획사의(戰時經濟動員計畫私議)』에서 제시한 ‘군수성’ 설치안이었다. 여기서 군수성은 군수품의 생산·구매·배급과 관련된 통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개전과 동시에 긴급치령을 통해 군수성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총력전을 치르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²⁹⁾

이렇듯 총력전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은 군부에 의해서였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전쟁발발 직후인 1914년부터 1924년까지 220여 명에 달하는 시찰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여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1,145건 이상에 달할 정도였다.³⁰⁾ 이와 함께 육군 참모본부는 1915년부터 1차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들의 전쟁 교리 및 동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1917년 8월 참모본부 제2부 제5과 병요지지반장(兵要地誌班長)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집필한 『제국국방자원(帝國國防資源)』이다. 고이소가 소속된 참모본부 제2부 제5과는 중국자원조사를 맡은 부서로, 1915년 9월 병요지지반장에 취임한 고이소는 기존 병요지지반의 업무인 중국의 지리적·지학적(地學的) 조사 이외에 원료 및 자원 조사로까지 업무를 확대하여, 전시에 부족한 자원의 공급지로 중국과 몽고지역의 자원 파악에 주력했다. 실제로도 몽고를 직접 조사한 고이소는 이후 중국과 몽고를 국가총동원체제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자원획득지로 주목하게 되었다.³¹⁾ 그의 이러한 인식은 1917년에 제출된 『제국국방자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8) 額額厚, *ibid.*, pp.32~33.

29) 木坂順一郎, *ibid.*, pp.7~8; 額額厚, 「軍需工業動員法制定過程における軍財關係の立と妥協(上)」, 『政治經濟史學』, 229号,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85a, pp.19~21.

30) 심호섭,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군사』 86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02쪽.

31) 額額厚, *ibid.* (1985a), pp.28~29; 도베료이치(저), 이현수·권태환(역), 『근대 일본의 군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3, 196쪽.

장기전쟁의 최종 승리가 총과 칼을 사용하는 결단을 감행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것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전시자족경제를 경영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어떠한 수단에 의존해서라도 제국 존립의 절대조건인 **전시경제의 독립을 반드시 평시부터 준비해야 한다.**³²⁾

이를 위해 고이소는 평시경제와 전시경제 간의 조정을 언급하며, 주요 국방경제정책으로 수입무역의 제한, 수출무역의 촉진, 국내자원의 보존 및 증수(增收), 원료의 저장, 공업 전환을 위한 준비계획, 대륙과의 교통 연락 확보 등 6대 정책을 제시했다.³³⁾ 이를 통해 고이소는 “국가총동원 정책의 추진자”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³⁴⁾

참모본부 차원의 총력전 연구는 육군성 차원의 연구로 확대·강화되었는데, 육군성은 1915년 12월 임시군사조사위원회의를 설치하여 1차대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³⁵⁾ 위원회는 총 8개 반, 약 25명 정도로 구성되었고³⁶⁾, 위원회의 각종 조사 자료 및 연구 성과는 『임시군사조사위원회월보(臨時軍事調査委員會月報)』를 통해 육군 내외에 배포되었다. 위원회가 폐지된 1922년 8월까지 총 115명(상근위원·겸임위원 포함, 중복자 제외)의 중견 장교들이 이곳을 거쳐 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원회를 거쳐 간 육사 출신 위원 101명 가운데 육사 16기가 17명으로 최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⁷⁾ 육사 16기생은 1차대전의 충격을 예민하게 느낀 “새로운 세대”로 그들은 군의 근대화와 총력전 체제의

32) 參謀本部, 『帝國國防資源 (1917), pp.9~10.

33) *ibid.*, 13~21쪽.

34) 額綱厚, 「小磯國昭: 國家總動員政策の推進者」, 富田信男(ほか著), 『政治に干渉した軍人たち』, 有斐閣, 1982.

35) 해군도 1915년 임시해군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1916년 2월부터 각종 보고서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해군의 1차대전 연구에 대해서는 齋藤聖二, 「海軍における第一次大戦研究とその波動」, 『歴史学研究』 530号, 歴史学研究会, 1984 참조

36) 額綱厚, 「臨時軍事調査委員の業務内容: 『月報』を中心にして」, 『政治経済史』 174号, 日本政治経済史研究所, 1980, pp.46~47, 56.

37) 黒沢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みすず書房, 2000, pp.25, 48~56.

건설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16기의 대표 주자가 임시군사조사위원회에 상근위원으로 참여했던 나가타 데츠잔(永田鉄山)이었다.

한편 육군성은 병기국 총포과 과원 스즈무라 기치이치(鈴木吉一)를 유럽에 파견하여 각국의 군수공업동원 현황을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1917년 9월 『전국동원계획필요의 의(全國動員計劃必要ノ議)』로 발간했다.³⁹⁾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 일본의 현황에 대해 “군사당국자가 담당하는 우리 군의 정비 운용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유감스러움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에 수반한 전국 동원의 대사업에 이르러서는 미숙한 하등의 계획조차 나타나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대규모 국방계획과 전국동원계획의 책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⁴⁰⁾ 이를 위해 스즈무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동원 계획의 실시를 지도하는 ‘통일기관’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이 ‘통일기관’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대신과 참모총장, 군령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 담당자들과 군수당국이 협동 처리하는 계획안이었는데, 스즈무라는 이 기관이

38) 山口利昭, *ibid.*, p.116.

39) 이 보고서의 집필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실제 집필자가 스즈무라가 아닌 당시 참모본부 소속 모리 고로쿠(森五六)라는 것이다. 육군의 공식전사인 『육군군수동원』에서는, 스즈무라의 유럽 출장 보고서를 참모본부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防衛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44~45. 이에 대해 고바야시 유키오(小林幸男)는 1960년 경에 이루어진 모리의 회고에서, 자신이 이 보고서를 집필했다는 언급과 모리가 참모본부 과원으로 1916년 11월부터 1917년 8월까지 근무했던 기록, 그리고 1917년 9월에 유럽에서 귀국한 스즈무라가 동월에 이 보고서를 과원 집필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고바야시는 육군성이 총동원문제에서 참모본부를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육군군수동원에서 그 집필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오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小林幸男, 「嘉仁天皇大権空洞化(統治大権 統帥権 皇族監督權)」と「摂政」設置へ,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 所紀要』, 82号,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 所, 2003, pp.67~69. 필자는 이 지적에 일정 동의하면서도, 『전국동원계획필요의 의』에서 언급된 유럽 각국에 관한 상세한 전시동원의 실태의 경우, 모리는 유럽의 사정에 그리 밝지 못했고, 스즈무라가 이후 「군수공업동원법 과 군수국 설치의 실무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육군 내 최고 전문가였다는 점 그리고 1967년 간행된 『육군군수동원』에서 실제 집필자를 왜곡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은 공식전사의 기록을 따른다.

40) 參謀本部, 『全國動員計劃必要ノ議(1917), 額顯厚, *ibid.*, p.211; 防衛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44~48.

1916년 독일 육군성 내에 설치된 전시국과 같은 ‘경제참모본부’라고 설명했다.⁴¹⁾

이와 더불어 1920년 5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시군사조사위원회의 성과들을 종합하여, 나가타가 작성한 『국가총동원에 관한 의견(國家總動員に關する意見)』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총력전 체제의 “청사진”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당대 육군의 총력전 구상이 집약된 것이었다.⁴²⁾ 나가타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총동원을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국가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자원과 기능을 전쟁 수행에 가장 유효한 형태로 통제·안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⁴³⁾, 국가총동원을 국민동원, 산업동원, 교통동원, 재정동원, 정신동원으로 분류하고 평시부터 이를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평시 국가총동원 중앙통제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 산하 ‘국방원’ 설치를 제안했다는 점이었다. 국방원의 수장은 대신급 인사가 맡고, 육해군 통수부 및 각 부처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평의회를 부속으로 설치하여, ① 자원조사 및 기타 총동원에 필요한 조사의 통일, ② 국방자원의 보호·증강에 관한 심의, ③ 국가총동원 전반에 관한 계획과 정책의 수립, ④ 국가총동원에 관한 각 부처의 업무 통제, ⑤ 중요 국가총동원 법안의 책정, ⑥ 각 부처의 요구 조정, 자원 배당에 관한 안의 결정, ⑦ 국방과학연구 및 총동원 준비에 필요한 각종 실험 및 연구의 통일 등을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국방원의 조직은 6개국 11과 안이 제시되었다.⁴⁴⁾ 국방원에는 문무관의 책임자들이 상근으로 함께 근무하는 형태를 제시했는데, 이는 ‘거국적 국방의 요체(要諦)’로서 문무관의 ‘융합일치’를 실현하는 부서가 바로 국방원임을 의미했다.⁴⁵⁾

41) 參謀本部, 『全國動員計劃必要ノ議(1917)』, 額顯厚, *ibid.*, p.213.

42) 森松俊夫, 『總力戰研究所』, 白帝社, 1983, pp.18~19; 額顯厚, *ibid.*(1980), p.44.

43) 臨時軍事調査委員, 『國家總動員に關する意見(1920)』, p.3.

44) *ibid.*, pp.173~176.

45) *ibid.*, p.77.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방원 설치의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국무와 통수의 분리라는 메이지헌법의 근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특히나 기존 각 부처의 업무를 상당부분 국방원으로 이관하는데 따른 타 부처들의 반발 그리고 군부의 주도권 확대에 대해 정부는 물론 재계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⁶⁾ 다만 이 보고서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군수국과 내각통제국의 통합 구상⁴⁷⁾은 곧장 실현되어, 1920년 5월 군수국과 내각통제국은 국세원으로 통합되었다. 국방원 구상은 기존 군수국의 확대·개편 필요성이 이미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참모본부의 ‘변용’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구상이었다.

3. 1920년대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군수국·국세원

1) 군수국의 설치와 재편

이러한 일련의 1차대전에 대한 각종 연구와 조사, 특히 일본의 동원현황에 대한 1917년 9월 스즈무라의 보고서는 육군 수뇌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독일식 군사제도를 근간으로 육군을 발전시켜 온 육군에게 독일군의 패전은 큰 충격이었고, 패전의 중요한 원인이 국가총동원계획의 불충분에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가총동원 체제의 구축을 군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키게 만들었다.⁴⁸⁾ 나아가 제정러시아의 붕괴 이후 시베리아 출병을 계획하고 있던 육군의 입장에서 군수동원의 개편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이에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육군 참모총장은 1917년 12월 오오시마

46) 横山久幸, 「日本陸軍の軍事技術 略と軍備構想について(2): 第一次世界大戦後を中心として」, 『防衛研究所紀要』, 3卷 3号(防衛省, 2001.2), p.98.

47) *ibid.*, p.176.

48) 大久保弘一, 『陸軍読本』, 日本評論社, 1938, pp.257~263.

겐이치(大島健一) 육군대신에게 “러시아군의 붕괴와 관련하여 혹여 제국 군을 움직이는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 힘든 정세에 직면”하여 대규모 파병을 대비한 「군수품관리법」의 제정을 요청했다.⁴⁹⁾ 이에 병기국 총포과의 요시다 도요히코(吉田豊彦)와 스즈무라가 중심이 되어 법안을 마련했고⁵⁰⁾, 이후 논의를 거쳐 1918년 4월 「군수공업동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전시 산업 동원은 물론 평시에도 군수공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6월에는 이 법의 실행을 전담할 기관으로 내각 직속의 군수국과 군수평의회가 설치되었다. 육해군도 군수동원을 담당하기 위해 6월에 해군성 함정국 제6과와 육군성 병기국 공정과를 설치했다. 군수국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 최초의 “조사계획의 통일기관”⁵¹⁾으로 서무과, 제1과, 제2과 등 총 3과로 구성되었고, 자원 조사, 공업 동원 기획, 관련 법규의 입안 및 심사, 군수산업 장려 등의 방대한 업무를 담당했다.⁵²⁾

다만 군수국은 많은 업무에 비해 전담 직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군수국 총재는 수상이 겸임했고, 육군성과 해군성 차관이 군수차관을 겸직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는 군수국에서 육군성과 해군성이 일종의 ‘동일한 지분’을 갖고자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³⁾ 전임 직원은 국장(1인), 서기관(2인), 기사(技師)(2인), 속기술(屬技手)(10인) 등 15인 정도로 구성되었고, 이들 외에도 각 부처의 참여(參與) 11명과 사무관 15명이 임명되었다. 이는 공업동원 업무 자체가 농상무성, 체신성 등 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⁵⁴⁾ 한편으로

49)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51~53.

50) 頼綱厚, 「軍需工業動員法制定過程における軍財間の対立と妥協(下)」, 『政治經濟史學』, 231号, 日本政治經濟史學研究所, 1985b, p.33.

51)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73.

52) 「軍需局處務規程 (1918.6.5)」,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655~656.

53) 육군과 해군은 1차대전 직후인 1920년대에만 해도 총력전 인식과 경제참모본부 설치와 운영에 대해 상당히 일치된 입장을 공유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육군이 독주하면서 자원국 개편 및 기획원 설치를 둘러싸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군의 반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54)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68~69.

「군수동원법」과 군수국은 그 논의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데서 보듯이, 추진 속도가 매우 빨랐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내 타 부처들과 충분한 협의의 수행 여부, 그리고 이후 방대한 업무에서 타 부처들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특히 1918년 6월 신설된 공정과로 인해, 병기국은 육군성 최대의 부처가 되었는데, 동원 업무를 둘러싼 병기국과 군수국 간에 업무 중복 및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상존하고 있었다.⁵⁵⁾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군수국 설치 1년 만에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1919년 7월에 국세원 신설이 논의 중이라는 언론 기사에서는 “(군수국이) 그 제도상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냈다”고 보도했고(강조-필자)⁵⁶⁾, 이어 11월에는 국세원 관제가 추밀원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⁵⁷⁾ 그러나 실제로 국세원이 설립된 것은 국세원 신설 보도가 나온 약 1년 후인 1920년 5월이었다. 군수국이 논의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설치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원 설립에는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당시 하라 다카시(原敬) 총리대신과 군부의 총력전 수행 주도권을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1918년 9월 데라우치에 이어 평민 출신으로는 처음 총리대신에 오른 하라는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을 구성하고, 1차대전에 따른 염전 분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1918년 쌀 소동으로 인한 반정부 운동 등을 정당정치를 확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⁵⁸⁾ 특히 그는 현실 정치에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을 바탕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힘의 정치가’로 평가받았는데, 이러한 당시 그의 정치 활동은 “결국 입헌정치는 전쟁에 의해서 진전될 것”으로, 향후 정당이 일본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55) 안재익, 앞의 논문, 31~32쪽.

56) 「国勢院: 新設に決定す, 《大阪時事新報》 1919.7.17.

57) 「鉄道省と国勢院両官制公布近し, 《大阪朝日新聞》 1919.11.25.

58) 도오야마 시게키(외 저), 박영주(역), 『일본현대사』, 한울, 1988, 26쪽.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⁵⁹⁾ 특히 하라는 1918년 「군수공업동원법」 제정과 군수국 설립 당시, 이것이 군부가 주도하는 ‘경제생활의 군국주의화’를 통해 결국 자유주의 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국가통제경제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부정적 시각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국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했다.⁶⁰⁾ 이는 초대 국세원 총재에 임명된 오카와 헤이키치(小川平吉)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군수국은 제작년(1918년-필자) 「군수공업동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군수국 총재는 총리대신이 겸직하고, 차관에는 육·해군의 두 사람을 두어, 그 밑에 군수국장을 두고 사무를 진행시키도록 했지만, **다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계 사무와 함께 국세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또한 공업동원을 수행하면서 **단순히 육해군의 결합만을 목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다.** 즉 일반 국민의 생활을 제일의 기준으로 한 후, 군수품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육해군의 요구에만 치우치고 국민 생활의 발전·향상에 영향을 미칠 듯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이것이 육해군에서 독립된 관청이 설치된 이유이다(강조 필자).⁶¹⁾

한편 군부로서도 「군수공업동원법」 제정과 군수국 설치를 통해 동원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각 부처와의 협력에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 1월부터 매주 2회씩 부처 간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⁶²⁾ 특히 동원체제의 핵심인 전시 재정의 운용 계획에서 군수국은 대장성의 반대에 부딪혔다.⁶³⁾ 이와 같은 한계는 육군 군수공업동원업무를

59) 한상일, 『日本の軍國主義』, 까치, 1988, 20~23쪽.

60) 木坂順一郎, *ibid.*, p.10.

61) 「工業動員と産業奨励(下): 国勢院總裁 小川平吉氏談」, 《満州日日新聞》 1920.6.18.

62)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144.

63) Michael Barnhart, *ibid.*, p.24.

맡은 병기국 공정과 담당자가 “이러한 업무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현재의 공정과 인원으로는 속히 그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배가하여 속히 조사를 완료함이 요구”⁶⁴⁾된다고 완곡히 언급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육군성 최대 부서였던 병기국 공정과 조차도 인원 부족으로 동원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수공업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군수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은 분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군부는 1920년 5월 나가타가 작성한 『국가총동원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방원 설치와 같은 군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총력전중앙기관 설치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상 ‘군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⁶⁵⁾ 현실에서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내각통계국과 군수국의 통합을 추진했고, 이의 실현은 군부가 ‘국방원’이라는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하라 총리대신을 비롯한 정치권과 군부 간의 군수동원을 둘러싼 주도권 문제가 국세원의 실제 설립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세원의 출범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20년 5월 출범한 국세원은 총리대신이 총재를 겸임했던 군수국과는 달리, 총리대신이 지명한 정우회 인사인 오카와가 총재로 취임했고, 육해군성 차관들이 겸임했던 군수차관직을 폐지하는 한편, 2명의 부장을 두어 총리대신-총재가 직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국세원은 2부로 구성되었는데, 내각통계국의 업무를 인계한 제1부장에는 행정재판소 출신의 우시즈카 도라타로(牛塚虎太郎)가, 군수국의 업무를 인계한 제2부장에는 군수국 국장을 맡았던 법제국 출신의 하라 쇼이치로

64) 防衛庁 防衛研修所戰史室, *ibid.*, p.98.

65) 額綱厚, *ibid.*(1985b), p.45; 木坂順郎, *ibid.*, p.11.

(原象一郎)를 임명했다.⁶⁶⁾ 국세원은 총 64명의 전담 직원을 두었고, 이외에 군수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의 사무관들과 참여들이 존재했다. 제1부는 감리과, 원표과(原表課), 심사과 등 3과로 구성되었고, 제2부는 제도과, 공장과, 수품과(需品課), 산업과 등 4과로 구성되었는데, 3과였던 군수국에 비해 1과가 증원된 것이었다. 이러한 직제에서 드러나듯이 국세원은 군부가 주도했던 동원계획 추진을 총리대신이 지휘 감독하는 형태로 개편하여 총리대신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다.⁶⁷⁾

이후 국세원은 군수국 시절부터 당면 과제였던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20년 10월부터 부처 사무관 회의를 200여 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결국 1921년 7월 29일 「군수공업동원법에 관한 각 청 관계 업무 강요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총리대신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 협정에서조차도 「각의요청 이유서」에서 이 협정을 ‘잠정적 협정’으로 명시했고, 추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만큼 부처 간 협조 체제가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대신이 바뀔 경우, 협조 자체가 와해될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⁶⁸⁾ 더군다나 당시 국세원이 내각통계국 출신 인사들과 군수국 출신 인사들 간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⁶⁹⁾,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은 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결국 하라 총리대신이 1921년 11월 암살된 이후,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내각 하에서 1922년 10월 국세원은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국세원 폐지의 표면적 이유는 국제적으로 1차대전 종전 후 국내외의 반전평화 기운의 고조와 1922년 2월 서명된 워싱턴 군축조약이 상징

66)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143.

67) 額綱厚, *ibid.*, p.68.

68)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145~146; 안재익, 앞의 논문, 33~34쪽.

69) Chalmers Johnson, *ibid.*, p.117.

하는 군비 축소의 방침, 국내적으로 전후 불황으로 인한 재정긴축 정책에 따른 행정정리의 일환이라고 내세웠지만⁷⁰⁾, 보다 직접적 배경으로는 1920년대 중반까지 군부의 총력전 인식과 구상이 아직까지는 미완상태였다는 점과 군부에 독주에 대한 정치사회적 우려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1차대전이 일본 군부에 ‘총력전’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했지만, 그 대응방향에서 군부가 확실한 구상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력전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군수공업동원법」의 제정 및 군수국-국세원의 설치 등의 제도적 정비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907년 군부의 최고전략문서로 제정된 「제국국방방침」은 1차대전이 마무리되는 1918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장기 총력전에 대한 전략과 구상을 명확히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제국국방방침」에서는 장기 총력전의 구상이 후퇴하여 단기 총력전, 즉 단기결전과 속전속결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장기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총력전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던 일본의 공업 수준 그리고 1차대전이 유럽이라는 대륙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군 수뇌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물론 당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육군대신을 중심으로 장기 총력전을 대비한 경제력의 강화와 국가총동원 체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서 이들도 개전 초반에 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인식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⁷¹⁾ 이러한 점에서 당시 군부의 수뇌부들은 ‘루덴도르프의 신봉자들’이었다.⁷²⁾

70) 額綱厚, *ibid.*, p.70.

71) 黒沢文貴, *ibid.*, pp.295~310; 가토 요코(저), 박영준(역),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 태학사, 2003, 201~207쪽; 가타야마 모리히데, 앞의 책, 5장. 「제국국방방침」의 개정에 대해서는 黒野耐, 『帝國國防方針の研究』, 總和社, 2000; 장형익, 「일본의 총력전 체제 도입과 전개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72) 루덴도르프도 총력전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도 개전 초반 군의 전력적인 무력전 감행을 통한 승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174~175쪽.

이러한 군 수뇌부의 인식은 군수국-국세원의 추진한 군수동원계획이 단기적 전시 물자의 통제와 배분 문제에 주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총력전 체제에는 당연히 전시 대비 물자조달체제의 구축이 포함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총력전의 핵심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 전시물자의 생산력 확충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초중반 군부의 인식과 제도적 대비는 장기 총력전보다는 단기 총력전에 주력한다는 인식에 따라 군수국-국세원의 업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게 되었다. 이는 국세원 폐지에 대해 당시 병기국 공정과장을 맡고 있던 요시다 도요히코가 “(국세원) 폐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수공업동원법」이 당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⁷³⁾라고 회고한데서 보듯이, 육군 내부에서는 1920~22년도 육군군수공업동원계획을 작성하면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육군 단독으로도 군수동원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⁷⁴⁾

1920년대 초중반 군부의 단기 총력전 구상과 더불어 군부의 독주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발도 국세원 폐지를 이끌었던 주요한 원인이었다. 「군수공업동원법」 제정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1918년 8월 군부의 시베리아 출병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채, 치욕적 패배만을 남기고 1922년 철병으로 막을 내렸다.⁷⁵⁾ 1920년 9월 하라 내각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대장대신이 『내외국책사건(内外国策私見)』을 통해 참모본부의 폐지를 주장한 것도 군부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⁷⁶⁾ 특히나 1차대전 이후 고조된 염전 분위기와 군부의 시베리아 출병 실패와 맞물리면서, 일본 사회에서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73)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152.

74) 額顯厚, *ibid.*, p.70.

75)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167~169쪽; 도베료이치, 앞의 책, 207~208쪽.

76) 木坂順一郎, *ibid.*, p.14.

실례로 1916년 4,328명에 달했던 육사 지원자는 1923년 1,172명으로 급감했고⁷⁷⁾, 당시 “서리가 녹아서 길이 좋지 않은 것은 군벌의 죄다. 날씨가 계속하여 건조해서 기침이 난다. 이것도 군벌이 나쁘기 때문이다”⁷⁸⁾는 비유가 유행할 정도로 군부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정부 부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육군대학교 군제강의록(陸軍大學校軍制講義錄)』에서는 국세원의 폐지 이유 및 각 부처와의 협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국세원이 너무 영역을 넓혀서 과다하게 각 청의 주요 업무에까지 침범해서 통제하려고 해서 싫어했던 것 같다.… 원래 자원의 통제와 이것의 취득에 관한 준비 업무는 그 관계하는 바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군부 이외의 각 부처와 민간과의 협조를 유지·협동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유감스럽게 당시 상황에서는 군부 이외의 각 부처와 민간 관계자들이 군부에 호응하여 함께 이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큰 곤란과 더불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했다.⁷⁹⁾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반발은 한편으로 총력전에 대해서 군부가 느끼는 것과 다른 온도차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 군부가 단기 총력전의 관점에서 신속한 군수동원체제를 갖추기를 원했지만, 1차대전이 이제 막 종료된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급속한 군수동원의 필요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과 관료들의 판단이었다.⁸⁰⁾ 즉 급속한 군수동원체제 구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력의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당 총재였던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는 1921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육·해군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산업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전쟁은 할 수 없다.… 그것보다는 평소의 전력을 산업의

77) 도베료이치, 앞의 책, 211쪽.

78)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176쪽.

79) 防衛庁 防衛研究所戰史室, *ibid.*, pp.151~152.

80) 額綱厚, *ibid.*, p.70.

발달에 사용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국력 전부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 두는 것이 급선무이다.⁸¹⁾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국 국세원은 폐지되었고, 군축에 대한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편으로 당시 군 수뇌부는 군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와 군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군 근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다.⁸²⁾ 이러한 군 수뇌부의 대응은 군축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우가기 파벌로 집결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또한 군부가 일본의 총력전 구상을 다시 한 번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 주체가 바로 총력전 장교들이었다.

4. 총력전 장교의 탄생과 자원국

1) 총력전 장교의 탄생

1926년 쇼와(昭和)시대의 개막은 이전 다이쇼시대를 상징하던 정당정치와 자본주의가 그 저변에서부터 동요되는 시대의 개막을 상징했다. 물론 정당정치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고, 이는 1930년 4월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런던해군군축조약을 체결하는 ‘저력’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1930년 11월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총리대신의 저격사건과 1931년 9월의 관동군의 무단적 유조호(柳條湖) 사건 강행 그리고 결국 1932년 5·15사건으로 정당내각이 종말을 맞이한

81) 도베료이치, 앞의 책, 200쪽.

82) 우가키 육군대신은 1925년 군축을 단행한 이후, 5월 1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군축) 이면의 이유로서는 여론에 선수를 친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국군의 혁신에 이용하고 지도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에서 군부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요시다 유타카(저), 최혜주(역), 『일본의 군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논형, 2005, 140쪽.

데서 보듯이, 그 영향력이란 그 내부에서조차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시작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군부에 새롭게 등장한 ‘총력전 장교’와 관련이 깊었다.

그 출발은 1921년 10월 유럽 출장 중이던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러시아 주재 무관 오바타 토시히로(小畑敏四郎), 스위스 주재 무관 나가타 데츠잔, 그리고 독일 주재 무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이 독일 바덴바덴에서 만나, 조슈벌(長州閥)을 해체하여 인사를 쇄신하고, 통수를 국무에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정치가 군의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국가총동원체제의 확립을 기한다고 약속한데서 비롯되었다. 일명 ‘바덴바덴 밀약’의 탄생이었다.⁸³⁾

한편 1922년 조슈벌의 최고 지도자이자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죽음과 함께 육군 내 조슈벌은 무너지게 시작했고, 1924년 우가키 육군대신의 등장과 더불어 조슈 출신은 오히려 육군 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⁸⁴⁾ 우가키는 1922년부터 1925년까지 3차례에 실시된 군축의 실질적 입안자로서, 당시 93,458명에 달하는 군인을 퇴역시켜 군 근대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육군 내부의 반발도 커져 갔다. 당시 군축을 반대했던 우에하라 유사쿠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마사키 진자부로(眞崎甚三郎) 등이 반우가키 파벌로 결집했던 것이다.⁸⁵⁾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타와 오바타 등 육군에서 촉망받던 장교들의 향방은 육군 수뇌부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이들이 유럽에서 귀국한 이후 1923년부터 육사 15~16기 장교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1927년에는 이엽회(二葉會)라는 명칭으로 정기적 회합을 갖기 시작했다.

83) 稻葉正夫, 『永田鐵山と二葉會・一夕會』 夫永田鐵山刊行會(編), 『秘録・永田鐵山』, 芙蓉書房, 1972, p.434.

84) 호사카 마사야스(저), 정선태(역),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신페이퍼로드』, 2012, 82~88쪽.

85)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182, 219~221쪽; 한상일, 앞의 책, 73~75쪽.

당시 이엽회에는 육사 15~18기 약 20여 명 장교들이 참여했다. 또한 1927년 10월에는 이엽회 구성원들보다 젊은, 육사 22기 스즈키 데이이치(鈴木貞一)를 중심으로 육사 30기까지의 장교들로 구성된 목요회(木曜會)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육군대학교 교관이었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21기)를 비롯해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원인 츠치하시 유이츠(土橋勇逸, 24기) 등이 참여했고, 이엽회와도 교류했다. 결국 1929년 5월에는 이엽회와 목요회가 통합되어 일석회(一夕會)가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육사 14기부터 25기까지 약 40명의 장교들이 참여했다.⁸⁶⁾ 이른바 “제1차 세계대전 세대”⁸⁷⁾로서 ‘총력전 장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⁸⁸⁾

이들 총력전 장교들의 향방은 우가키와 반우가키 파벌 간의 대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들의 파벌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⁸⁹⁾ 그러나 이들 총력전 장교들의 입장은 미묘한 것이었다. 당시 우가키계와 우에하라계의 갈등의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육군 4개 사단의 감축을 둘러싼 평시 상설 사단의 유지 문제였지만, 그 대립의 근저에는 “군인의 국방” 혹은 “군대만의 국방”을 주장하는 우에하라와 “국민의 국방” 혹은 “국가 총력전으로서의

86) 稲葉正夫, *ibid.*, pp.438~442. 이형철, 『日本軍部の 政治支配』, 법문사, 1991, 53~56쪽; 도베로이치, 앞의 책, 236~241쪽.

87) 黒沢文貴, *ibid.*, pp.26~27, 342.

88) 대표적인 총력전 장교들은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세대는 육사 16~22기가 중심으로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16기), 오카무라 야스지(16기), 오바타 토시히로(16기),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 16기), 나가타 테즈잔(16기), 도조 히데끼(17기), 야마시타 토모유키(山下奉文, 18기), 요코야마 이사무(横山勇, 21기), 이시하라 간지(21기), 스즈키 데이이치(22기), 무타구치 렌야(牟田口廉也, 22기) 등이었고, 2세대는 육사 23~31기가 중심으로 네모토 히로시(根本博, 23기), 하시모토 킨고로(橋本欣五郎, 23기), 가와부 토라시로(河部 虎四郎, 24기), 츠치하시 유이츠(24기), 다나카 신이치(田中新一, 25기), 도미나가 요지(富永恭次, 25기), 무토 아키라(武藤章, 25기), 가계사 사다아끼(影佐禎昭, 26기), 다나카 료키치(田中隆吉, 26기), 쇼이사무(長勇, 28기), 아키나가 츠키토(秋永月三, 27기), 이케다 수미히사(池田純久, 28기), 사토 겐료(佐藤賢了, 29기), 이와쿠라 히데오(岩畔豪雄, 30기), 가타쿠라 다다시(片倉夷, 31기) 등이었다. 총력전 장교들의 명단과 세대 구분은 古川隆久, 『革新官僚の思想と行動』, 『史学雑誌』, 99卷 4号, 史学会, 1990, pp.464~465.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정경(政經)장교’라 칭하고 있다.

89) 호사가 마사야스, 앞의 책, 92쪽.

국방”을 주장하는 우가키 간의 갈등에 있었다. 이 지점에서 총력전 장교들의 입장은 우가키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⁹⁰⁾ 그러나 총력전의 지향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총력전 장교들과 우가키계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당시 목요회 멤버였던 츠치하시의 회고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가키 군축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지 못했더라면 우리 육군의 근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 군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다이쇼 후반부터 쇼와 초기의 상황을 망각하고, 우가키의 4개 사단 감축을 비난하게 된 것은 **작은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⁹¹⁾

즉 총력전 장교들에게 우가키의 4개 사단 감축은 단순한 ‘작은 견해 차이’를 넘어서 ‘통수와 국무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덴바덴의 밀약에서 통수와 국무의 분리는 총력전 장교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우가키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군축을 단행한 것은 통수권 독립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군령을 종속시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었다.⁹²⁾ 결국 이들 총력전 장교들의 최종 입장은 1929년 5월 19일 이엽회와 목요회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합에서 “첫째, 육군의 인사를 쇄신하고 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둘째, 만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셋째, 아라키 사다오, 마사키 진자부로,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세 장군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결정되었다.⁹³⁾ 반우가키계에 ‘결정적 힘’을 실어준 준 사건이었다.

90) 渡辺清志, 『『総力戦』準備段階における字垣軍縮の意義』, 『学習院史学』 17卷, 学習院大学, 1981, p.73.

91) 土橋勇逸, 『軍服生活四十年の想出』, 勁草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1985, pp.130~131.

92) 호사카 마사야스, 앞의 책, 94쪽.

93) 稲葉正夫, *ibid.*, pp.439~440.

2) 자원국의 설치

1922년 5월 국세원 폐지 이후 공백상태에 빠졌던 국가총동원 중앙기구의 설치 문제는 나가타와 이시하라 등의 '총력전 장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⁹⁴⁾ 1925년부터 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도 총동원중앙기관의 설치 요구가 이어졌고, 1926년 4월에는 내각에서도 국가총동원기관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간의 문제점과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연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육군도 이러한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위원회에 군무국장 하타 에이타로(畑英太郎)를 위원으로, 군무국 과원인 나가타를 육군측 간사로 추천했고, 1926년 10월에는 기존 육군성 병기국 공정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동원과와 통제과로 구성된 정비국을 설치했다. 이는 향후 설치될 국가총동원기관에서 육군측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사전 포석이었다. 당시 초대 동원과장에는 나가타가 임명되었다.⁹⁵⁾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총동원기관으로 자원국이 설치된 것은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후 1년여가 지난 1927년 5월이었다. 이토록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했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당시 군부와 정치권 및 관료들 간에 드러난 국가총동원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군부는 직접적인 전시체제와 결합한 국가총동원체제의 정비를 주장했던데 반해, 정치권과 관료측은 국력 증강과 자원의 보육(保育)을 위한 계획 및 통제를 통해 평시의 국력 증강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⁹⁶⁾ 이러한 점은 법제국 소속으로 나가타와 함께 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마츠이 하루오(松井春生)의 회고에서도 드러난다.⁹⁷⁾

94) 小林英夫, 『帝國日本と總力戰體制有劔』, 2004, p.107.

95) 古川隆久, *ibid.*, p.27; 額顯厚, *ibid.*, p.72.

96) 伊藤彰浩, 「戰時期日本Tにおける‘人的資源’政策: 戰時動員と高等教育をめぐる政治過程」, 『大衆論集』 18集, 広島大学 大学教育研究センター, 1989, p.132.

97) 「座談會: 日本行政の回顧(4)」, 『行政と經營』 3号, 行政調査協會, 1962, p.7.

육군에서는 마즈키 중장을 비롯해 후에 군무국장이 된 나가타, 그리고 후에 국무대신이 된 야스이 토오지(安井藤治) 등의 인사들이 국가총동원을 직접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주장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군축은 아니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국력 증강 보육을 목표로 그 기초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부 인사들과 정치권 및 관료층의 시각차는 국가총동원기관설치준비위원회 설립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926년 4월 위원회 설립 결정에서 그 목적을 ‘국가총동원’과 ‘산업 조장,’ ‘사회 정책’ 등으로 나열했는데, 이는 당시 군부측과 정치권 및 관료층이 양자의 갈등으로 인한 기관 자체의 출범이 와해될 것을 우려해 서로 다른 시각을 상호 절충·병기하는 수준에서 일단 위원회를 출범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⁹⁸⁾

한편 자원국 설치 과정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나가타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가타는 이미 1922년 독일 출장 보고서에서 독일의 패전은 “통수부의 필요 이상의 권력 확대”에 있으며, 통수사령은 “국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항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한 바 있었다.⁹⁹⁾ 그의 이러한 입장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및 관료층의 주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가타는 군수국 당시 부처 간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군수동원이 육해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¹⁰⁰⁾

국가총동원의 준비는… 단순히 국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국력의 통제, 능률의 증진 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른바 진정한 경제적 국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통계의 완비는

98) 渡辺清志, *ibid.*, p.74; 御野貴, *ibid.*, p.125.

99) 諸橋英一, *ibid.*, p.273.

100) 永田鉄山, 『國家總動員』, 大阪毎日新聞社, 1928, pp.37~38.

각종 정책 확립에 크게 공헌할 수 있고, 부족 자원의 조장(助長), 산업 조직의 개선, 각종 제식 양식 표준 방식 등의 통일은 직접적으로 **산업 경제계에 이익**을 가져오며, 직업 중개 기관의 정비, 각종 관구(管區)의 통일, 폐품 대용품의 이용, 재해 응급 준비제도의 설정 등은 **사회 정책 색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입니다(강조-필자).¹⁰¹⁾

위 언급에서 보듯, 나가타는 국가총동원이 산업정책 및 사회정책과 대립되는 것이 아닌 양자의 조화도 가능하다는, 즉 정치권 및 관료층의 입장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원국은 표면적으로 주요 부서에 관료들이 기용되고, 자원국의 업무 영역도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 운용 계획의 입안과 수행 및 관련 조사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군이 자원국 설립을 추진한 논리가 “전쟁을 유리하기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여, 최대 국방 능력을 발양(發揚)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²⁾는 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군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결과였다.

〈표 2〉 군수국(국세원)과 자원국의 차이¹⁰³⁾

구분	군수국(국세원)	자 원 국
목적	군수 충족	총자원의 통제 운용, 군수 및 민수의 충족
임무	「군수공업동원법」의 실시	국력 배양 및 발휘와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조사, 보육, 평시시설 및 통제운영 계획 등의 연계·통일
권한	불명확	각 부처와의 자료 정비와 사무 연계 통일
조직	육·해군 차관이 군수차관 겸임	문관장관, 무관은 수뇌부에 미참여
자문기관	군수평의회	자원심의회

101) *ibid.*, pp.55~56.

102) 「資源局並資源審議會設置ノ必要ナル理由」, 渡辺清志, *ibid.*, p.75 재인용.

103) 防衛庁 防衛研究所戦史室, *ibid.*, pp.251~252; 안재익, 앞의 논문, 41쪽 재정리.

이러한 군의 논리는 ‘군수’ 차원에 머물렀던 군수국(국세원) 시절에 비해 그 논리가 상당히 치밀하게 ‘변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1차대전기 구미 각국을 시찰한 나가타 등의 ‘총력전 장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였다. 이는 군수국(국세원)과 자원국을 비교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이렇듯 자원국의 출범은 1차대전 과정에서 등장한 총력전 구상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나 1930년부터 본격화된 자원국의 총동원계획 입안은 「총동원기본계획강령」(1930.4.8)과 「총동원기간계획강령」(1930.4.1)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¹⁰⁴⁾ 그러나 한편으로 총력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던 군부측과 정치권 및 관료측이 1927년 5월 자원국 설치를 통해 이루어진 ‘물리적 결합’은 ‘화학적 결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즉 군부의 입장에서 전시계획의 중추적 입안 기관으로서 자원국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기획기관’에 머무르는 자원국으로서는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여전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⁵⁾ 또한 정치권 및 관료들의 입장에서 자원국에서 입안한 계획은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즉 관료들이 추구한 국력의 증강이라는 측면에서 자원 비축, 과학연구의 진흥, 생산 장려 등의 여러 정책은 예산의 제약에 따라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측이 추진한 정책 과제들로 인해 관료들이 추진한 정책들은 자원국 내부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던 것이다.¹⁰⁶⁾

특히 1929년 「자원조사법」 제정 이후 기획부와 총무부 체제로 개편된 자원국은 자원 보육(保育)이라는 추상도가 높은 경제적 논리를 추구하는 문관 관료들은 총무부에, 실현가능한 국가총동원을 준비하는 군사적 논리를 추구하는 군부 인사들은 기획부로 나누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104) 額顯厚, *ibid.*, pp.75~76; 古川隆久, *ibid.*, pp.27~28.

105) 防衛庁 防衛研究所戰史室, *ibid.*, p.549.

106) 古川隆久, *ibid.*, p.29.

취하게 되었다.¹⁰⁷⁾ 이러한 자원국의 내부적 갈등 확대는 1920년대 후반부터 국책을 총괄하는 또 다른 ‘경제참모본부’의 설치 주장으로 이어졌고¹⁰⁸⁾, 1929년 세계대공황, 정당정치의 몰락, 군부의 권력 강화 등의 여러 요인과 맞물려 1930년대 들어 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5. 결 론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국가들 간 총력전으로 치러진 1차대전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파괴를 가져온 후 막을 내렸다. 이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한편으로 미래의 총력전을 대비한 국가적 체제 정비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이른바 총력전 체제의 전지구적 확산이었다. 다만 개별 국가들이 처한 역사와 환경 그리고 제반조건들의 차이는 총력전 체제 구축의 방법에서 민주주의적 기획(democratic planning)과 파시스트적 기획(fascist planning) 그리고 사회주의적 기획(socialist planning)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일본은 바로 파시스트적 기획(fascist planning)의 선두주자였다.¹⁰⁹⁾ 독일과 달리 1차대전을 간접적으로만 체험했던 일본이 파시스트적 기획에 주력한 데에는 무엇보다 당시 일본의 지도층은 물론 군부와 대중들이 일종의 불안감과 초조감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아시아 제일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이었지만 1차대전을 목도하며, 서구 강대국들과의 국력 차이를 절감했고, 더욱이 1922년 체결된 워싱턴해군군축조약으로 해군력 증강이 제한되면서

107) 御厨 貴, *ibid.*, pp.128~129.

108) 1928년 7월 다나가 기이치(田中義一) 수상은 외교, 교육, 경제, 사회정책을 포함한 모든 국책을 총괄하는 ‘국책대조사기관’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좌절되었다. 《동아일보》, 1928.7.7.

109) Janis Mimura, *ibid.*, p.3.

일본의 정계와 군부 지도자들은 서구 강대국들의 압박에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1920년대 내내 지속된 극심한 경제 불황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를 타개할 국가적 전략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듯 1차 대전 이후 총력전 체제 구축의 시급성과 지속된 경제 불황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정부와 군부의 견해가 수렴된 것이 바로 ‘경제참모본부’의 창설이었다. 1차대전이라는 역사적 중대 국면에서 일본 정부와 군부는 위로부터의 파시스트 기획을 통해 총력전은 물론 국력 증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기획의 입안자들이 바로 ‘총력전 장교들’이었다. 물론 당시 군수국-국세원-자원국 등의 내각 직속 기구들은 전쟁동원 계획의 입안과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군부측 의견과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력의 증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료와 정치권의 시각 차이 앞에서 일정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1920년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독주했던 군부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시기’¹¹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20년대 경제참모본부들과 총력전 장교들 사이에서 나타난 파시스트적 기획은 단기적인 전시 동원 문제는 물론 장기적인 국력 증강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첫 번째 단계였고, 이후 이들의 계획은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실행에 옮겨져, 이후 일본으로 ‘역류’하게 되었다.¹¹¹⁾ 결국 1937년 창설된 기획원은 군부가 애초에 구상했던 평시의 경제참모본부로서, 아시아국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잔혹한 전쟁과 제국으로의 길로 치닫는 일본의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3. 8. 16,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제1차 세계대전, 총력전, 총력전 장교, 경제참모본부, 군수국, 국세원, 자원국, 나가타 데츠잔(永田鉄山)

110)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176쪽.

111) 임성모, 「『國防國家』의 實驗: 滿洲國과 日本파시즘」, 『中國史研究』 16집, 중국사학회, 2001.

<ABSTRACT>

A Study on Total War Plan and ‘Economic General Staff’ of Japan in the 192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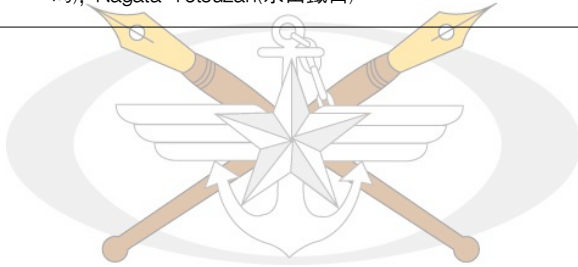
Park, Sung-ji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otal war plan emerged in Japan in the 1920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such 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economic general staff including the ‘Munitions Bureau’(軍需局, 1918-1920), the ‘National Strength Evaluation Board’(國勢院, 1920-1922) and the ‘Resources Bureau’(資源局, 1927-1937) and its history of change. The entire Japan was severely concerned about how to cope with the First World War symbolizing the total war in the 1920s. The military authorities had shown the most sensitive response and the political circle couldn’t be excluded from such trend. In particular, the army sincerely examined the aspects of the total war and clarified how to cope with the war. However, such an approach was inevitably led to a total war plan due to the limit of industrial capability at that time and insufficient resources. Nevertheless, some middle-level officers in the army gathered momentum and formed a group of ‘the total war officers’ and presented a longer-term and more in-depth plan.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political circles agreed on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national power for the total war. To this end, the Economic General Staff including the Munitions Bureau, the National Strength Evaluation Board and the Resources Bureau were established on the institutional level. However,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mong the military authorities insisting to quicke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hort-term war plan and the political circle asserting to strengthen the national power in the longer term restricted the activities of the Economic General Staff.

The military authorities which were politically restricted in the 1920s couldn't help withdrawing their insistence due to the political barrier. In this aspect, the 1920s could be the only period which could curb the military authorities. Meanwhile, the total war officers emerging since the late 1920s provided the theory enabling to overcome such barriers and their theory was earnestly implemented in the 1930s.

Key Words : The First World War, Total War, Total War Officer, Economic General Staff, the Munitions Bureau(軍需局), the National Strength Evaluation Board(國勢院), the Resources Bureau(資源局), Nagata Tetsuzan(永田鐵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박 태 군*

1. 서론
2. 한미관계의 허니문 시대
3. 한미관계의 균열
4. 닉슨 독트린과 한미 간 갈등의 재현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63년과 그 이듬해는 한국 정부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1962년의 한해(旱害)로 인한 1963년의 보릿고개는 군사정부의 박정희 의장이 스스로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도록 만들었고¹⁾, 민정이양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낼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했다.²⁾

우여곡절 끝에 1963년 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실시했고, 1964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상문사, 1963, 121, 141쪽

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226~255쪽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1964년 3월 터진 김 오오히라 메모의 충격으로 인해 박정희 정부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김 오오히라 메모가 폭로되면서 야당과 학생들은 한일협정을 ‘굴욕적’ 협정으로 규정하였고 대대적인 반정부, 반한일협정 시위가 확산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제2의 4.19혁명이 발생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야당은 박정희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준비를 했다.³⁾

그러나 1964년 말 이후 박정희 정부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1967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1967년 6·8 총선거가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지만,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권여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1967년과 1968년 안보위기는 박정희 정부에 또 다른 위기였지만, 외부적 위기는 오히려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⁴⁾

1964년 위기로부터 1965년 정치적 안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변화는 매우 드라마틱한 것이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또 한 번 나타난다. 1968년과 1969년은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시기였다. 청와대 습격사건 및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부터 EC 121기 격추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사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의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71년 정전협정 후 처음으로 남북 간에 민간인 차원의 회담인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⁵⁾

이상과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는 두 차례에 걸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배경에 두 가지 중요한 공통된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이 시기가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한 시기였다는 점이고, 다른

3) 위의 책, 259-267쪽

4)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72호, 역비, 2005, 250~276쪽

5)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4장 참조.

하나는 이 시기의 사건들과 한미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⁶⁾ 특히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으며,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전쟁과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이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베트남전쟁 시기 미국 행정부가 존슨에서 닉슨으로, 그리고 다시 포드로 바뀌면서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한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존슨 행정부 시기와 닉슨 행정부 시기로 나누어 각각 한미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면⁷⁾, 본고에서는 존슨 행정부에서부터 닉슨 행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2. 한미관계의 허니문 시대

1) 한미관계의 1차적 전환: 한일협정

1961년부터 1963년 군사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1962년의 통화개혁과 1963년 민주공화당 창당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군사정부의 민정이양 반복은 미국이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가능성을

6) Tae Gyun Park, "Beyond the Myth: Reassessing the Security Crisis in the mid 1960s i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Affairs Vol.82, No.1*, 2009, pp.93~110.

7) 장준갑, 「존슨 행정부 초기의 한미관계(1964~1966)」, 『역사와담론』 52, 2009, 245~271쪽; 홍석률, 「위험한 밀월」, 『역사비평』 87호, 2009, 461~493쪽; _____,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현실』 56호, 2005, 269~302쪽; 마상윤,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대한정책」, 『국제정치논총』 42(3), 2002, 225~247쪽; 정일준, 「유신체제의 모순과 한미갈등」, 『사회와 역사』 70, 2006, 149~178쪽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부의 민정이양 선거 실시와 경제개발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⁸⁾, 1964년에는 한일협정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대로 인해 군사정부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협정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대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⁹⁾

실상 한일협정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부터 계속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핵심적 정책의 하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케네디 행정부에서 보다 강화되었다.¹⁰⁾ 케네디 행정부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한일협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하나는 한일협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부담을 일본에게 어느 정도 떠넘기기 위한 것이었다.¹¹⁾ 케네디 행정부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New Look) 정책을 올드룩(Old Look)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일협정은 연속성을 갖고 계속 추진하였다.¹²⁾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Top priority)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감축보다는 한국에 대한 원조의 삭감

8) 박태균, 「1961~1964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수정」, 『사회와역사』 57호, 2000, 113~146쪽

9)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Bundy), Washington, April 21, 1964.,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8. FRUS의 경우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서 번호를 붙였고, 1969~1976은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발간된 책을 이용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적시했다. 인터넷은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29p1/ch1>을 통해 이용하였다.

10) 박태균, 「한일협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그 특징」,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2005, 207~245쪽

11) 위의 글, 225쪽

12)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당시 학생운동권에서는 한일협정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한일협정 체결을 중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한국 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쓰게 될) 1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미끼(a bait)로 던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윌슨 와이야트(Wilson Wyatt)를 특사로 보낼 것을 권고했으며, 와이야트(Wyatt)는 1963년 인도네시아 석유 협상을 이끈 미국의 대표였다.¹³⁾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이미 4·19 혁명 이후인 민주당 정부부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면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출되었고, 군사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종필이 일본을 오고가면서 한일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능했다.¹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협정을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부 역시 한일협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 중요한 과제였던 한일협정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협정 반대 시위 때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위수령을 위해 한국군 동원을 조심스럽게 승인한 것은 이에 대한 화답이었다.

13)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Bundy), Washington, May 19, 1964. *FRUS 1964~1968, Volume XXIX*, 문서 번호 342.

14) 청와대 비서실, “한일 농상회담과 정치회담”, 1964년 3월 4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청와대 비서실, “한일회담 대책의 최종 검토”, 1964년 3월 23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청와대 비서실, “한일회담에 관한 피알 활동”, 1964년 4월 9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나(버거 대사)는 대통령(박정희)이 우리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풀어주는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그의 정부가 우리가 승인했거나 동의했다는 인상을 주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정부의 주권에 의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동의했다.¹⁵⁾

결국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통해 한일협정에 대한 사회적 반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부 시기 미국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미 간의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또 다른 난관은 미국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 정책이었다. 이 문제 역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부터 지속된 것으로 케네디 행정부를 거쳐 존슨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¹⁶⁾

2) 허니문 관계로의 전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1964년 8월 초 버거 대사가 국무부의 한국 담당 과장으로 영전하고, 새로 브라운(Winthrop Brown)이 주한미국 대사가 임명되었다. 브라운 대사는 1960년에서 1962년 사이 라오스의 대사로 있으면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브라운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인 7월 31일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의 로버트 코머(Robert Komer)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존슨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빠른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15)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June 3, 1964, *FRUS 1964~1968, Volume XXIX*, 문서번호 12.

16) 마상윤,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논의」, 『한국과국제정치』 19권 2호, 1~36쪽.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임무가 브라운에게 부과되었다.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¹⁷⁾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대규모 미군을 유지하고, 한국군 유지를 위한 비용을 미국 정부가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군의 유지비용은 1954년 합의의사록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고, 한국 정부가 이미 1964년 초 의료부대와 태권도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감축을 통해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존슨 행정부로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감축이 절실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것이 전투부대의 파병이었다. 미국이 이미 1963년 말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1년 방미 시 파병 제안이 거절되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박정희는 1964년 11월 3일 합동참모본부장(김종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제안했고¹⁸⁾, 동년 12월 말부터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미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존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 계획을 중지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은 당시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한 극적 변화의 첫 번째 사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아시아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었다. 한국 정부가 처음 외무장관

17)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President Johnson, January 2, 1964,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2번.

18) "ROK Assistance to Viet Nam", Memorandum of Conversation, December 19, 1964,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28번. 각주 3.

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1964년 8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무부는 외무장관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며, 초대된 나라들이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무부는 판단을 선회했다. 판단을 선회한 시점은 11월 18일로 한국 정부의 전투병 파병 제안 직후였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 회담이 한국과 타이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훈령이 국무부로부터 대사관에 전달되었다. 게다가 국무부는 보다 많은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각국 대사관에 내리기까지 했다.¹⁹⁾ 결국 1966년 6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The Ministerial Meeting for Asian and Pacific Cooperation: ASPAC)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었다. 1964년 9월 한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를 제안했을 때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2차 파병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존슨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했고,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에 대한 대접은 극진한 것이었다. 미국은 박정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기를 보냈으며, 뉴욕에 도착한 박정희에게 카 퍼레이드를 벌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 존슨은 다시 한 번 박정희를 만났으며, 존슨은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박정희와 자신이 '한 선생님 아래'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²⁰⁾

19) Telegram 196 to Seoul, September 1; Telegram 434 to Seoul, November 18; Telegram 494 from Seoul, November 24; Telegram 485 to Seoul, December 4; Telegram 511 from Seoul, December 8; Telegram 497 to Seoul and repeated to other Asian capitals, December 10(이상 *FRUS 1964~1968 Vol.XXIX*, Editorial Note 문서번호 20번 참조)

20) "Your Meeting at 5 p.m. today with President Park", Memorandum From James C. Thoms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President Johnson, May 17, 1965,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46.

1965년 4월 27일 존슨 대통령의 특사인 롯지(Henry Lodge)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한미관계의 ‘갑’과 ‘을’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이 존슨 대통령의 ‘More Flag’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전투병의 대규모 참전이 절실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 사람들과 같은 아시아 사람이면서 비용이 싼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을 막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이 전투사단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잘 싸우며, 미국 외에 유일한 공산베트남에 대한 대항마이다. 이것은 거룩한 결정이다. 한국에는 좀 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며, 역사의 전환점이 왔다.(중략)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에게 피와 재화를 아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²¹⁾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은 양자 간의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은 미국이었다. 또한 1965년 10월 1차 전투부대 파병(전체적으로부터 3차 파병)이 이루어진 이후 미국은 1968년 중반까지 한국 정부에게 추가 파병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갑’의 입장에 설 수 있었다. 비록 1968년 안보위기로 인해서 1968년 여름으로 예정된 3차 전투부대 파병(전체적으로는 5차 파병)은 무산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기까지 동등하거나 또는 우위의 위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상황을 요구했다. 첫째로 NATO 수준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받는 것

21) “Korea”, Memorandum From Vice President Humphrey to President Johnson, January 5, 1966,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48.

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사시 미군의 통해 ‘자동개입’ 조항을 얻어내지 못했던 숙원을 풀고자 한 것이었다. 둘째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이었다. 이 문제는 군사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한미 간의 이슈였다. 세 번째 요구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전투부대의 파병을 통해 형성된 한미 간의 우호적 관계로 인해 위의 세 가지 요구는 미국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물론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는 모두 한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자동개입 문제의 경우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주었고, SOFA 이슈는 한국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내용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²²⁾ 그러나 경제적 문제에서는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으며, 이는 1966년의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이후 한미관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볼 수 없었던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는 한미관계를 미일관계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개선이 기존 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이나 새로운 조약의 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상황 변화에 따라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한 일본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었다. 어쩌면 이는 한국 정부의 전투부대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정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미관계의 개선은 존슨 행정부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원으로 이어졌고,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재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²³⁾

2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5, 1965, *FRUS 1964~1968*; Editorial Note,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88,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과의 SOFA 협정이 파키스탄과의 협정과 NATO와의 협정을 혼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3)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1966년 1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있었던 존슨

3. 한미관계의 균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한미관계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이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한에서 우호적인 한미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1967년 이후 한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국면은 한반도에서 전개된 안보위기로 인한 것이었다.

1967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965년과 1966년까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간의 충돌 회수는 42회와 37회에 그쳤지만, 1967년에 가면 남북 간의 충돌은 423회로 급증했다.

〈표 1〉 1966년부터 1967년 사이 남북 간의 충돌 횟수 및 피해자 현황

구 분	1965	1966	1967
비무장지대 주요사건	42	37	423(286)
휴전선남부주요사건	17	13	120
비무장지대교전회수	23(29)	19(30)	117(132)
휴전선남부 교전회수	6	11	95
휴전선남부 북괴 사살	4(34)	43	224(146)
휴전선남부 북괴 생포	51	19	50
유엔군 피살자	21(40)	35(39)	122(75)
유엔군 부상자	6(49)	29(34)	279(175)
한국경찰 민간피살자	19	4	22
한국경찰 민간부상자	13	5	53

출처: 《조선일보》 1967년 11월 4일자: () 안은 유엔군이 국방부에 보고한 수자.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Korea and the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Bonesteel) to the Commander in Chief, Pacific (Sharp), Korea, July 21, 1967,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123번, attachment (3)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었다.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 존슨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언급을 조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남북 간 충돌로 인한 사망자 역시 1966년 북한군 43명, 유엔군 35명에서 1967년 북한군 224명, 유엔군 122명으로 급증했다.²⁴⁾ 이렇게 급증한 남북 간의 충돌은 1968년에도 계속되었다.²⁵⁾

존슨 행정부로서는 한반도 안보위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를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남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기 전에는 더 이상 파병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보위기가 발생한 것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술 때문이었다.²⁶⁾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던 북한은 북베트남을 원조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만약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전개된다면, 남베트남을 돕기 위한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⁷⁾ 물론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남북 간 충돌의 급증이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한미 간에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1966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존슨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부터 1968년까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북한의 적극적 공세에 대한 대응을

24) Park, *ibid.*, pp.97~98.

25) 홍석률, 앞의 책, 1장 참조

26) Mitchell Lerner, "A Dangerous Miscalculation: New Evidence from Communist-Block Archives about North Korea and the Crises of 1968",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6, Issue 1, 2004 Winter, pp.5~6

27) "Mr. Bundy's Meeting with Mr. Colby, September 15, 1967",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ember 15, 1967,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127번.

놓고 이권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공세에 대해 그대로 당하고만 있다면 한국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북한의 공세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전술을 구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모두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²⁸⁾ 실제로 1968년 2월 안보위기 직후 존슨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던 밴스(Syrus Vance)에 의하면 정전협정 이후 1968년 초까지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습격은 570회에 달했다고 한다.²⁹⁾

이러한 전략은 1968년에 들어서 절정에 달했다. 청와대 습격사건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초까지 북한에 대한 보복 계획을 계속 고수하였다. 이에 존슨 대통령은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공격계획의 보류를 종용했다. 2월 9일에는 박정희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공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한국 공군으로부터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³⁰⁾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당황했다. 한국 정부는 공격적인 보복 전략이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존슨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는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세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은 전면전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며, 베트남에 있는 5만 명을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포터 대사의

28) “Internal Security: Views of President Park”,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9, 1967,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128번

29) “Meeting Records between Cyrus R Vance and President”, February 15, 1968,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180번

30) Telegram From the USFKC Bonesteel to CINCUNC Sharp, February 9, 1968, *FRUS 1964~1968 Vol.XXIX*, 문서번호 168번

판단이였다.³¹⁾

원래 1966년 6월의 시점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의 현지 기관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 파병문제를 한국 정부에 거론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우려했던 것은 정치적 상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67년의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3차 파병 요구로 인해서 한미관계가 ‘불행한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³²⁾ 한국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한 것이었다. 존슨 대통령이 밴스 특사를 한국에 보낼 때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도록 한다는 협박은 전혀 통하지 않으며, 한국군에 의한 무력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 존슨 대통령은 밴스에게 한국군에 의한 도발이 있을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제약과 위협이 올 것이라는 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1968년 안보위기의 과정에서 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박정희와 그의 참모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국 대사 포터는 한국군의 보복을 두려운 논쟁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 국무부의 번디 차관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

31) “Additional ROK Troop Contribution to Vietnam”,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5, 1967,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134번

32) “Troops for RVN”,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March 18, 1966,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82번;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October 19, 1966,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93번;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November 22, 1966,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101번. 물론 브라운 대사의 고려는 포터 대사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브라운 대사는 미국의 거듭된 파병 요구는 박정희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포터 대사는 한국 정부의 과다한 요구와 공격적 전술로 인해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염려하는 입장이었다.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³³⁾

결국 1967년과 1968년의 한미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의 전투부대를 파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한미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를 바라보는 한미 간의 동상이몽적 관계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존슨 행정부는 1968년의 안보위기 이후에도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³⁴⁾, 한국에 있었던 미국의 현지 관계자들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미관계에서의 균열은 한국 정부와 존슨 행정부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로서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자 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견한 한국정부로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존슨 행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특히 존슨 행정부는 1968년 이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1968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곤란했던 일로 푸에블로호 사건을 들었고, 그 직후 베트남에서의 구정공세,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전시위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다.³⁵⁾ 결국 존슨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어려웠다. 아울러 박정희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정책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33) From US Ambassador in Korea(Porter) to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rea(Bundy), February 27, 1968.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182번. 심지어 그는 통일교의 문선명을 동원해서라도 한국 정부를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34)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ebruary 29, 1968,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183번.

35) Mitchell Lerner,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p.194.

대해 강력하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결국 존슨 행정부 말기 한미 간의 갈등은 어쩌면 1969년 이후 닉슨 행정부와 박정희 정부 간의 갈등을 예언한 것이기도 했다.

4. 닉슨 독트린과 한미 간 갈등의 재현

1) 닉슨 독트린과 동아시아 참전국 정세의 변화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국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켰다. 한국전쟁 때와 달리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모든 전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유엔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 정부와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 종교 조직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전쟁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다.³⁶⁾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경우는 달랐다. 전쟁 개입의 정당성이 비판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전뿐만 아니라 전비 지원을 꺼렸던 것이다. 그나마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파병에 따른 모든 물적 지원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다른 참전국들 - 한국, 필리핀, 태국 - 은 스스로 파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파병 군인들의 봉급은 모두 미국의 군사비에서 지출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 지나친 군사비 지출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이다.³⁷⁾ 이로 인해 미 의회는 사이명턴 위원회를

36) 박태균, 「한국전쟁 기간 중 국제기구에 의한 한국원조의 현황과 그 특징」, 미출간 원고, 2012년 5월 군사편찬연구소.

37) 이로 인해 미국 의회는 사이명턴 위원회를 조직하고, 베트남전쟁 시에 사용한 정부 재정의 규모와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태국, 필리핀, 한국 등을 조사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명턴 위원회 조사를 위한 답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명턴위원회”, 외교사료관.

구성하였다. 베트남전쟁 시기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197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 조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던 한국과 태국,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이밍턴 위원회에서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5억 4천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³⁸⁾ 베트남전쟁 시기 미국 정부는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참전국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조달 과정에서 일본과 타이완에도 거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다.

결국 막대한 전비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닉슨 행정부는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켰다. 전비 지출을 위해 달러의 통화팽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달러의 기준 가치를 맞출 수 없게 된 것이었다. 1968년 이후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³⁹⁾ 이로 인해 1944년 이후 계속되어 온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준 통화였던 달러의 지위가 무너지고 일본의 엔과 독일의 마르크가 또 다른 기준통화가 된 것이다. 또한 IMF는 금태환 정지 이전에 이미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⁴⁰⁾

결국 닉슨 행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초 긴축정책을 실시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부에 대한 개입을 감소시켜야만 했다.⁴¹⁾ 닉슨

38) 『조선일보』 2005년 8월 27일자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45.html>)

39) 1968년 봄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가 영국과 프랑스 경제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에 맞춘 금값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70년도 국제통화 체제, 그 전망', 《매일경제》 1970년 1월 13일자

40) '환율제에 탄력성', 《매일경제》 1970년 9월 29일자; '29억 4천만 불 규모 IMF·SDR 할당 발표', 《매일경제》 1971년 1월 5일자. IMF는 1971년 1월 2일 109개 참가회원국에 대한 29억 4천9백만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F)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각 회원국은 197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IMF에 출자한 액수의 10.7%를 SDR로 할당받았다.

41) 여기에 더하여 닉슨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무역 정책을 실행했다. 1) 인플레이 제를 위해 미국의 외원액 10% 삭감, 2) 향후 90일 동안 임금 및 물가 동결, 3)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수입부가세 부과를 선언했고¹⁾, 이외에도 자동차에 부과되는 10%의 소비세 철폐, 1년 동안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특혜 10%를 산

대통령은 결국 1969년 꾀에서 닉슨독트린을 발표했다.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해결해야 하며, 베트남의 문제 역시 베트남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70년부터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로서 베트남에서의 정전체제 수립을 모색했고,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의 특사로 키신저가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했다. 곧이어 1972년부터 파리 평화회의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데탕트의 시대를 열었다.⁴²⁾ 파리 평화회의는 겉으로는 베트남을 평화 상태로 돌리기 위한 협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회의였다. 그동안 미국이 적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베트남의 대표들이 파리 회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두 가지 다른 현상을 가져왔다. 하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를 가져왔다.⁴³⁾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철수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감축이 함께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1969년 4월 54만 3천여 명이 베트남에 있었지만, 1971년 12월에 가서는 18만 4천 명으로 감축되었다. 전비 역시 1969 회계연도의 288억 달러에서 1971 회계연도에 15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축은

업계에 제공, 연방 예산 지출액을 47억 삭감, 연방정부의 고용자 5%의 감원. ‘달러화시대’에 낙조, 미의 금태환 정지 배경과 전망’, 《매일경제》 1971년 8월 17일자. 미국의 금보유고는 45년의 240억 달러에서 70년 말에는 115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당시 단기대외부채는 전후의 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어났고 국제수지적자의 누계는 4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42) 같은 해인 1972년 미국은 소련과 최초로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한 조약을 맺었다.

43) 배궁찬, 앞의 글, 325쪽

베트남 파병국인 한국과 태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군과 원조의 감축으로 이어졌다. 1971년 태국에서는 전체 46,000명 중 16,000명의 미군이 철수했다. 필리핀에서는 1971년까지 6,500명이 감축하여 18,500명이 남았다.⁴⁴⁾ 철수한 미군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베트남전쟁을 통해 편승(bandwagoning)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파병국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닉슨 독트린에 이은 데탕트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타이완과의 관계를 절연했다.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연루(entrapment)의 안정을 누렸던 한국, 필리핀, 타이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은 이제 닉슨 독트린을 통해 방기(abandonment)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태국과 필리핀 정부는 즉각 중국과 소련 정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베트남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던 태국 정부는 북베트남 정부에게도 손짓을 했다. 물론 이로 인해 1971년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태국에서는 1973년 민주화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⁴⁵⁾

물론 닉슨 독트린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주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독트린 이후 일본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았으며, 1976년 태국 정부가 미군 철수를 공식 요청할 때까지 태국에서 미군 기지를 유지하였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기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아시아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해야만 했고,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었다.

44) *Impact of the Vietnam War*(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2.

45) Surachart Bamrungsuk,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ai Military Rule 1947-1977*(Bangkok: Duangkamol, 1988), pp.163-164.

46) Goerge J. Viksnins, “United States Military Spending and the Economy of Thailand, 1967-1972”, *Asian Survey*, Vol.13, No.5, 1973, pp.445~457.

2) 한미 관계의 변화

닉슨 독트린이 베트남에 파병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준 충격이 컸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가해진 충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컸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충격은 주한미군의 감축으로부터 왔다. 닉슨 행정부는 우선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결정했다.⁴⁷⁾ 이는 전체 6~7만 명의 주한미군 중 약 2만 명을 줄이는 것에 불과했지만,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⁴⁸⁾ 닉슨 행정부는 1969년 하반기를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주한미군의 감축이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닉슨 행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박정희 정부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4일 키신저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할 시기”가 왔으며, “보복공격작전에 필요한 공군과 해군은 유지”해야 하지만, “미군을 1/2로 감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EC 121 사건 때문에 미루어졌던 이 계획이 “올해(1969년)를 넘기기 전에 수행되기를 희망”하며, “적당한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47)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4일 키신저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할 시기”가 왔으며, “보복공격작전에 필요한 공군과 해군은 유지”해야 하지만, “미군을 1/2로 감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EC 121 사건 때문에 미루어졌던 이 계획이 “올해(1969년)를 넘기기 전에 수행되기를 희망”하며, “적당한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키신저에게 전달했다. Memorandum From President Nixon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November 24, 1969,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117.

48) 박정희 정부는 닉슨독트린, 키신저와 닉슨의 중국 방문, 그리고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 등을 위기로 판단했다. 마상윤, 「테탕트의 위협과 기회: 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테탕트와 박정희』, 논형, 2011, 101~134쪽.

키신저에게 전달했다.⁴⁹⁾

여기에 더해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전체를 철수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었다. 물론 미군의 철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정부의 반발도 컸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군부의 반발 역시 적지 않았다. 한국 공군의 주력기를 F-4 팬텀으로 바꾸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공군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다는 평가였지만⁵⁰⁾, 미국의 군부가 이러한 평가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와 함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대표(senior representative)를 한국군 장성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⁵¹⁾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전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당황했다. 왜냐하면 197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방침은 한국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닉슨독트린의 여파로 대한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물론 1969년 12월 30일 애그뉴 부통령을 통해 최규하 외무부장관에게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49) Memorandum From President Nixon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November 24, 1969,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117.

50) 남북 간의 군사 전력에 대한 비교 평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로 남북 간의 군사력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군사력 비교를 대입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즉,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 논의가 있었던 1950년대 중반, 1960년대 초, 1970년대 초와 197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1) 주한미군사령관 ‘마’ 대장과의 조찬회 토의내용 보고 1971년 7월 20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합참의장과 ‘마이켈리스’ 대장과의 회담 내용(합참보고) 1971년 7월 30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⁵²⁾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존슨 행정부 시기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 이후 계속되었던 한미 간의 협력적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한국 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했을 때 존슨 행정부가 ‘사전협의’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베트남 전선으로의 이동을 막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10월 서울을 방문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박정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한미 간에 신뢰관계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⁵³⁾ 이 점은 닉슨의 주한미군 감축을 통보하는 편지에 대한 박정희의 답장에서 다시 사전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⁵⁴⁾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에 있는 상황에서 단행되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한국 정부의 난감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로저스 국방부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⁵⁵⁾

당시 한국 정부는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를 경험하였지만, 모두 민주당 정부로 연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당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모두 무시한 채 마오쩌둥도 만나고 워터게이트도

52) Draft Minutes o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March 4,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42~147.

53) 주한미군 감축안을 받아들이면서 박정희가 내건 조건은 “충분한 사전 협의”였다.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State Rogers to President Nixon, November 10,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97-198

5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15,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59~161.

55) 미국 로저스 국무장관과의 면담(외무장관 보고) 1970년 7월 7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 문서

일으켰던 닉슨 대통령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⁶⁾ 아울러 키신저의 레알 폴리틱스(Real Politik)는 냉전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당황토록 하는 것이었다. 단지 오키나와의 반환으로 인해 한미일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을 것으로 보인다.⁵⁷⁾

물론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모두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닉슨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철수의 시기와 조건을 조정하라고 했지만, 이는 주한미군 감군 정책이 결정된 이후였다.⁵⁸⁾

미국은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제 제안이 우리 양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공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론 놀라운 발전의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결과로서 당신의 나라와 세계에 대해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⁵⁹⁾

이상과 같은 닉슨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는 이후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군과 관련된 닉슨의 서한 전달하는 자리에서 포터 주한미군 대사는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회의 지도부’의 반대를 물리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대신해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56) 키신저 역시 닉슨 행정부에서 대외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칠레의 아옌데 정권에 대한 개입을 결정함으로써 대외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57) 당시 한국 정부는 닉슨의 중국방문이 한반도 문제보다도 미일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중공 접근에 대한 사태 분석(3차 보고) 1971년 7월 28일자, 대통령기록관 소장문서.

58) NSDM 48,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48~150.

59) “닉슨대통령이 박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52~154.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즉, 포터는 닉슨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데, 미국 의회가 이를 제대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⁶⁰⁾ 사실 이러한 포터 대사의 코멘트는 닉슨 행정부의 ‘핑계’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코멘트가 한국 정부에게 준 교훈의 문제이다. 의회에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가는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1971년 주한미군의 감군으로 인해 한미관계의 밀월은 막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971년 위수령 발동에 이어 긴급사태를 선포하였고, 외부 상황의 변화, 즉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북한의 공세 강화를 긴급사태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971년은 남북한 사이에서 처음으로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를 이해하지 못했다.⁶¹⁾ 유신체제를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개입 후퇴에 따른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⁶²⁾

미국의 개입 약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즉, 베트남 참전국의 정부에게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표명했고,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경제적, 재정적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1971년 한국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때 미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의 표시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60)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27,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154~157.

6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2,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297~299.

62) 홍석률, 「유신체제와 한미관계」, 『역사와현실』 88호, 2013, 40~43쪽.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체제를 선언하면서, 종신 대통령직을 만들었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광범위하게 침해당했다.

닉슨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 하비브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앉아서 바라보는 것(wait and see)’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비브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의 대응으로서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 세 가지 옵션을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고서 말미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 내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불개입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⁶³⁾

물론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1971년의 경험도 있었지만, 유신 직후에 한국 외교부가 분석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점을 암시하고 있다.

- ① [미국은] 도의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미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선에서 발견하려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미국 정부는 최근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과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마르코스나 박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의 영구집권 문제는 비올빈(필리핀: 필자주)이나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⁶⁴⁾

혹자는 그것 자체가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이었다고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는 미국은

63) “한국 헌법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1972년 10월 23일(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445~446쪽). 1975년 김일성의 제2의 한국전쟁 계획에서도 닉슨 행정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입이 약화되었던 현상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3, 234~239쪽

64) 주미한국대사관,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전망」, 1973년 1월18일, 721.2US 1973, 5746; 「마샬 그린 전미국차관보 한반도 정세 등에 견해 표명」 1973년 5월 경. 721.2US 1973, 5746.(이상 홍석률 앞의 논문 206~207쪽에서 재인용)

1953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에버레디 계획을 세웠던 미국이 아니었으며, 1963년 박정희에게 민정이양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던 미국도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시작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밀월관계는 닉슨 독트린 이후 막을 내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점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데 부족하고,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소모된다.”고 평가했고⁶⁵⁾, 국방부장관 레이드와 에이브람스 장군, 그리고 병커대사는 한국군의 역량이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베트남 공군과 제3국군의 효율적 사용이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 놓았다. 한국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고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고 평가했다.⁶⁶⁾ 여기에 더하여 한국군 4만 8천 명을 유지하는데 2억 5천에서 3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면서 상당부분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⁶⁷⁾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결정한 이상 더 이상 베트남에서 한국군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관계 역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결국 밀월 시기에 양자관계의 변화 또는 격상을 문서화하지 못했던 한미관계는 그 계기가 없어지자 그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거나 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빚어냈던 것이다.

65) 국무부가 준비한 보고, 날자 미상, 문서번호 95, FRUS 1969~1976,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95>

66) NSC Staff K, 웨인 스미스와 존 H. 홀드리지가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키신저에게 보내는 메모, 1971년 9월 1일자, 문서번호 105번,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05>

67) 닉슨 대통령이 레이드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메모, 1971년 7월 10일자, 문서번호 99,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99>

5. 결 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미국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국 관계에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투부대 파병에 미국은 브라운 각서로 화답했다. 특별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포함하고 있는 브라운 각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심각해진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인해 이러한 밀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던 한국군의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존슨 행정부는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략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지에 있었던 미국 요원들, 특히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닉슨 행정부에 가서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즉,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1개 사단의 감축은 베트남전쟁으로 형성된 한미 간 밀월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물론 주한미군 1개 사단의 철수로 인해 한국 정부가 얻은 것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물자를 양도받았고, M16을 비롯한 무기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또한 한미 간에 안보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합동군사훈련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결정자들은 닉슨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미국이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시작된 갈등은 포드 행정부 시기 일정 정도 개선되었지만, 카터 행정부에 가서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인권탄압, 그리고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인권 외교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코리아게이트는 심각해진 한미간의 갈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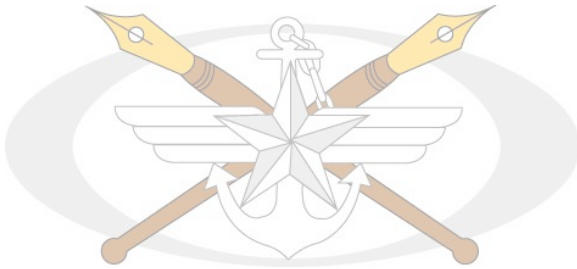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한미 간의 '신뢰' 문제였다. 1967년부터 1968년 사이 한반도 안보위기 시 한국 정부의 전략은 미국 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반대로 닉슨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정부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8년 밴스 특사가 방한 직후 존슨 대통령과 대화할 때, 1972년 한국 정부가 유신을 선포했을 때, 미국 정부는 1953년 반공포로 석방 사건 때부터 시작된 한미 간의 불신에 대해 회고했다. 1980년대 이후 한미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어떠한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 언급했을까? 한국 정부의 경우는 어땠을까?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로 양국 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왔을 때 그러한 변화를 문서화하거나 새로운 기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계기가 있을 때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뢰 관계 형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일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자주 교체되고,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대아시아 정책, 대한정책, 대일·대중정책에 변화가 있는 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신뢰에 기초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미래를 고려하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베트남전쟁, 박정희 대통령,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닉슨 독트린,
베트남 파병, 주한미군 감축, 안보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Changes in Korean-US Relationship during the Vietnam War

Park, Tae-g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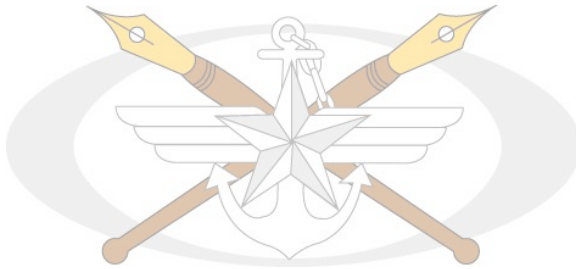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There are few works on the Korean-US relationship in 1964-1973 when the ROK combat troops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1964-1975). Since it was a very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US foreign policy, a new approach to the whole period is need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precisely. The participation of the ROK troops in the Vietnam was a very crucial moment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because the ROK government accepted American government's request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a key to the US foreign policy in general, and not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issue at that time. In fact, the Johnson administration provided special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to Korea through the Brown Memorandum in return.

However, a serious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emerging due to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66. As North Korean regime started to have a very aggressive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n order to help North Vietnam, the ROK government considered a very active retaliation in order to boost ROK soldiers' morale, while American government had a different position on this. The Johnson administration did not want escalation of the crisis into another general war in Asia and wanted to concentrate on the frontline in Vietnam.

The Nixon Doctrine played a role as the final break of a honeymoon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in the end. President Park himself as well as the ROK government officials were shocked at the downsize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K government, which has been conducted by President Johnson in 1966. Even though the conflict was weakened during the Ford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had been worsening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had a serious transition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legacy was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1970s.

Key Words : the Vietnam War, President Park, jung-hee, President Johnson, President Nixon, The Nixon Doctrine, dispatching troops to Vietnam, the downsize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security crisi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과 미국의 대응

정 광 호*

1. 서론
2. 해양전략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
4. 미국의 대응전략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대륙국가인 소련과 ‘냉전(The Cold War)’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0년 소련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고, 탈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탈냉전 시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또다시 대륙국가인 중국과 ‘쿨워(The Cool War)’¹⁾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박사과정

1) Noah Feldman, “Managing the coming Cool War with China”, *The Korea Herald*(2013.6.4.)

‘냉전’ 시 미국의 대소 전략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봉쇄정책(containment)’을 펼쳤고, 중국과의 ‘쿨워’ 시대에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지역 우방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연시키는 ‘봉쇄적 개입정책(Congagement)’을 펼치고 있다.²⁾

이와 같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극 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고, 던진 국가는 소련과 중국이다. 이 두 국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대륙국가라는 것이다.³⁾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군위주로 전력을 건설하는 군사전략사상을 고수하였다가, 해양국가인 미국과의 대립이 점증되면서 점차적으로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미국과 대립을 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사회주의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이 1918년 2월 12일 소련 함대를 창설한 후 소련 해군은 지상군을 보호하는 ‘요새함대(fortress fleet)’, ‘현존함대(fleet-in-being)’ 등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전략을 추구했다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충척수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등 적극적인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공세적인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미국의 해상경쟁자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중국 해군 또한 전통적으로 ‘인민전쟁’ 개념에 입각

2) 봉쇄적 개입(Congagement)은 봉쇄(congagement)와 개입(engagement)의 합성어임. 애런 프리드버그, 『패권경쟁(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서울: 까치, 2012), 111~145쪽.

3) 대륙국가란 개념은 해양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두 용어상의 대비개념은 국가의 전력구조와 국익추구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면 대륙국가(소련, 중국)로, 해군 중심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면 해양국가(미국)로 분류한다.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국제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Halford J. Mackinder, “The Geographic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4(1904), pp.421~437 참조.

하여 적 해군을 최대한 영해로 유인하여 게릴라식으로 타격하는 수동적인 ‘해양인민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연안에서의 방어만으로는 미국의 봉쇄와 급증하고 있는 근해에서의 해양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근해에서의 적극방어를 통해 방어중심을 늘리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⁴⁾

즉,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륙국가들과 해군 경쟁을 하였고,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의 해군경쟁에서는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의 해양통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중국과는 태평양 지역에서 치열한 해군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시, 특히 1970년대 소련의 해양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해양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21세기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태평양지역의 안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전개는 먼저 이 글의 핵심개념인 해양전략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1956년 이전 소련의 해양전략 사상의 흐름과, 1956년 소련의 고르시코프⁵⁾ 해군사령관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된 소련 해군의 해양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적극적인 해양전략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해양전략의 변화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中蘇研究』 통권 119호(2008), 64~65쪽.

5) 고르시코프는 1910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1931년 4년제 후룬제 해군대학을 졸업하여 흑해함대 구축함 함해사로부터 출발하여 1956년부터 해군 총사령관으로 29년간 재직하다가 1988년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르시코프는 1960년 50세의 생일에 지도자로서 국가보위의 공로로 ‘레닌훈장’을 받았고, 1962년 원수로 진급되었다. 그리고 1960년 중반에는 당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산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부기관지를 통하여 소련 해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고르시코프는 해양전략에 대한 소련의 국부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오늘의 막강한 소련 함대를 발전시키는데 해군 전략사고의 기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전략이론가가 직접 소련 해군력을 건설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세계 해군사상 보기드문 이론, 실무 및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한 명 제독이다.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290~293쪽.

2. 해양전략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해양전략의 개념

전략이란 용어의 기원은 ‘장군(a general officer)’ 또는 ‘장군의 술(art of the general)’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strategos’ 또는 ‘strategus’에서 유래되었다. 전략이란 용어가 영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쟁(1763) 후인 18세기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략과 전술(tactics)⁶⁾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전술이란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전략의 의미가 ‘전투의 책략(ruses de guerre)’, ‘야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적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devices for fooling the enemy as to the disposition of our troop)’라는 전술의 의미와 비슷했기 때문에 굳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⁷⁾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전술적 성격이 강했던 전쟁양상이 국가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복잡한 성격의 전쟁양상으로 변하면서 전술보다 상위개념의 전략이 등장하였다.

전략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으로서 전략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세기 이후 전략개념의 정의는 공통된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합참은 “전략이란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 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이며 과학이다”⁸⁾라고 정의하면서 전략을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은 ‘학(學) 또는 술(術)’, ‘학과 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과 환경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6) 전술은 ‘명령하다(order) 또는 규율하다(regulate)’란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인 ‘tactos’에서 유래되었다.

7) Edward Mead Earl, *NOTE ON THE TERM STRATEGY*(US Naval War college, 1949), p.2.

8)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1998), 357쪽.

알 수 있다. 즉, 전략은 전략적 목적과 대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간에서 대규모 전투력을 기동시키고 지도하는 학 또는 술임을 알 수 있다.

해양전략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개념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벳(Corbett)’은 “해양전략이란 해양이 실질적인 요소가 되는 전쟁에서 그 전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 사항은 전쟁계획에서 육군과 해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일부분으로서 해양전략에서 지상전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함대의 역할을 결정하였을 때 그에 따라 함대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이렇게 볼 때 해양전략은 단순한 함대의 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대와 지상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합동작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해양전략은 평시를 제외한 전사 해양력의 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틸(Geoffrey Till)’ 교수는 “해양전략이란 국가가 자국의 해양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¹⁰⁾ 라고 함으로써 해양전략의 적용시기를 평시까지 확대시켰다. 즉, 전쟁양상이 복잡해진 오늘날 전략이 보다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평시의 적용 및 단기적인 군사력의 운용전략 뿐만 아니라 해양력의 준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해양전략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평시 국가의 해양력¹¹⁾을 운용하고 준비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9)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London: Longmans, 1981), pp.11~12.

10)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14.

11) 머헨은 “해양력(sea power)이란 무력에 의하여 해양 또는 해양의 일부를 지배하는 해상군사력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상(commerce)과 해운(shipping)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2) 해양전략의 구성요소

‘라이케(Lykke)’는 전략의 구성요소를 목표, 수단, 방법으로 설명하였다.¹²⁾ 이것을 해양전략의 구성요소로 적용해보면, 해양력의 전시사용과 해양력의 평시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

전시 해양전략은 해전에서 승리를 위한 해양력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으로 그 목표는 해양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통제는 우리가 원하는 해양을 사용하고 필요시 적에게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강국이 주로 추구하는 함대결전과 해상봉쇄가 있으며, 열세한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현존함대가 있다. 또한 해양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군사력 투사와 적 침공에 대한 방어 및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양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는 해양세력의 주 플랫폼인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와 이들로부터 발사되는 각종 무기체계가 포함된다.

평시 해양전략은 크게 전쟁억제, 해군외교, 해양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억제는 군사력의 가장 기본적인 평시 임무로서 여기에는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방법이 있다. 보복적 억제를 위한 수단은 전략 핵잠수함이며 거부적 억제를 위해서는 나머지 해양세력이 사용될 수 있다. 해군외교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해군력 현시와 위기관리라 할 수 있다.

1660~1783(New York: Hill and Wang, 1957), p.25. 한국의 해군기본 교리에서는 “해양력이란 해양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으로써 국가이익, 국가목표 및 국가정책 추구를 위해 필요한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역량이다”라고 하였다.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2002), 3-2~3-5쪽. 즉 해양력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구성요소는 해운력과 해군력이라 할 수 있다.

12) Colonel Arthur F. Lykke, Jr, “THE FUNDAMENTAL OF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CONCEPT AND THEORY” *Military Strategy*(US Army War College, 1969), p.3.

13) 박호섭, 『해양전략의 이론과 본질』(대전: 해군대학, 2002), 18~19쪽.

해군외교의 수단으로는 수상함이 주로 사용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항모기동전단이다. 해양질서를 위해서는 불법어로 단속, 해적행위 방지, 밀수·마약밀매 방지, 밀입국 단속,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자원 보호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해양감시, 해양경비 및 해양안보협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주로 수상함과 해상초계기가 되며 일차적으로는 해양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양경찰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해군이 이를 지원한다. 위의 내용들을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해양전략의 구성요소

구 분	목 적	방 법	수 단
전 시 해양전략	해양통제	함대결전 해상봉쇄 현존함대 해상군사력투사 적 침공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보고 및 공격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기뢰 미사일
평 시 해양전략	전쟁억제	보복적 억제 기부적 억제	SSBN SS(N)
	해군외교	해군력 현시 위기관리	수상함 항공기
	해양질서 유 지	불법조업 단속 / 해적행위 방지 밀수, 마약밀매 방지 / 밀입국 단속 해양오염 방지 / 해양자원 보호	수상함 초계기

※ 출처: 박호섭(2002), 전게서, 19쪽 재구성.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박호섭(2002)은 이론적으로 전·평시 해양전략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미소 간 냉전시대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시기였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핵 및 재래식 분야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전시의 해양전략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목적과 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으나, 수단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수단인 해군 플랫폼은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평시를 위한 수단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의 역할에

있어서의 구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해양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평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해양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겠다.

3.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

소련의 해양전략의 흐름은 1953년 흐루쇼프기 소련 이전의 해양전략의 논쟁과 이후의 해양전략의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⁴⁾ 본 장에서는 1953년 이전의 소련의 해양전략의 이론적 논쟁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해군력을 감소시킨 이전까지의 소련의 해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53년 이전 소련의 해양전략 이론적 논쟁

(1) 구학파(The old school, 1924~1928): ‘머헨주의적 제해권 전략’

구학파는 전통적 해군의 거함거포 및 항공모함과 같은 대양해군에 의한 해양통제를 주장하는 학파이다. 대표적 이론가로는 그 당시 소련 해군대학총장을 역임한 게르바이스(Boris Gervais) 교수였다. 그는 ‘머헨

14) Juegen Rohwer and Mikhail S. Monakov는 1953년 이전 소련의 해군력 건설에 대한 분류를, 재건기 1920~25, 강화기 1925~32년, 제2차 5개년계획 1933~37년, 제3차 5개년계획 1935~39년, 위대한 애국전쟁(2차대전) 1941~45년, 1945년 이후-스탈린체제 종말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소련의 고르시코프 사령관 등장 이후 미 해군의 경쟁자로서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해양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953년 이전은 해양전략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 이후로 2분하였다. Juegen Rohwer and Mikhail S. Monakov, *Stalin's Oceangoing Fleet: Soviet Naval Strategy and Shipbuilding Programmers 1935~1953*(London: Frand Cass, 2001), chap.11.

주의적 제해권 전략'을 주창하였다. 이 전략은 약자는 강자가 마음대로 분쟁해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또는 사용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제해권이 반드시 '분쟁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잠수함, 기뢰, 해안포, 항공기 그리고 경수상함을 사용하여 봉쇄부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균등화(equalized)' 될 때까지 적을 약화시키고, 전력이 균등화한 시점에서 봉쇄당한 부대는 출항하여 합리적 승리를 전망하며 결전을 감행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위한 해군전력으로는 영국 해군의 2/3만큼의 주력함을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강대국의 해군력에 대항하여 최소한 소련근해에서 분쟁적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형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학파의 견해는 소련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1928년 구학파의 견해에 대립하는 소장파가 등장하였다.¹⁵⁾

(2) 신학파(The young school, 1928~1938): '거부적 요새방어 전략'

신학파는 육군 및 당이 지지하는 어뢰정, 잠수함 등 '소규모 해군(small navy)'으로 지상전을 지원하는 해양거부를 주장하였다. 신학파는 잠수함과 항공기의 대두로 말미암아 대형함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경타격부대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잠수함과 항공기는 적 수상함에 의해 봉쇄될 수 없으므로, 잠수함과 항공기가 대형함을 대신하여 해군의 주 타격전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머헨과 콜롬이 주장한 대령함에 의한 제해권을 다투는 해전의 두 형태인 봉쇄와 결전은 제해권 자체 이론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파의 영향으로 소련은 제2차 5개년 계획(1933.1~1937.12) 때,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대량 건조하였다.¹⁶⁾

15) Robert Warring Herrick, *Soviet Naval Theory and Policy: Gorshkov's Inheritance*(Naval Institute Press, 1988), pp.155~156.

16) 김정현, 『대륙국가의 해군력 증강』(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5), 126~127쪽.

(3) 소련학파(The soviet school, 1938~1956): ‘제한적 제해권 → 적극적 현존함대 전략’

소련학파는 잠수함과 항공기의 출현으로 신학파가 주장하는 제해권 교리가 약화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파는 ‘전력 균등화 전략(force-equalization strategy)’을 주장하였다. 이 전략은 ‘제한적 제해권(limited command of the sea)’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으로써, 더 강한 적군의 일부와 교전하여 적의 전력을 소모시켜, 적의 전력이 약화되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결전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적 해군의 주력부대를 패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전략은 가상 적에게 너무 열세하지 않은 1/3 이상 규모의 전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전략 실행이 가능한 대형함 위주의 해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어진 기간에 의도한 해역에서 잠수함, 어뢰정, 그리고 항공기로 구성된 약한 해군부대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해 적당한 주력함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¹⁷⁾ 이 학파는 결전이 적의 주력부대를 패배시키는 유일한 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전적 제해권 교리에 구속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소련은 1938년 제3차 5개년 계획(1937~1941) 기간에 해군전학파의 균형잡힌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는데 실패하였다.¹⁸⁾

1949년에 가서는 ‘제한적 제해권’에 반대하는 ‘적극적 현존함대(active fleet in being)’ 전략이 제기되었다. 소련의 해군역사가 피테르스키(Piterskiy)는 이 전략은 소련이 미국의 항모에 대항할 수 있는 항모를 건조할 수 있을 때까지 잠수함, 항공기, 경·고속 수상함으로 미국에 대항한다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현존함대전략’은 ‘열세해군이 해전을

17) 박정규, 『러시아 海軍戰略에 관한 研究』 (대전: 해군대학, 2002), 31~32쪽.

18) 종전 후 스탈린은 야심찬 대양해군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200척의 잠수함, 175척의 구축함, 35척의 순양함, 1척의 전투순양함과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여 1940년대에 4개의 함대와 1개 전단을 편성하여 운용하였으나, 여전히 육군중심위주의 폐쇄적 전략사상은 해군의 가치를 연안방어적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박정규(2002), 상계서, 34쪽.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코벳의 견해로, 이 전략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항공모함 건조계획이 추진되었으나,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결국 취소되었다.

2) 1953년 이후 소련의 해양전략: ‘해양거부전략(sea denial strategy)’

호루쇼프(1953~1964)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견제를 위해서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고르시코프를 해군사령관으로 임명(1956~1985)하여, 29년 동안 집권을 맡기면서 세계적인 해군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소련의 해양전략은 고르시코프의 이론에 기초하면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고르시코프는 해전에서의 승리는 전투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다음 임무달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해전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해군은 기본적으로 미국해군의 임무수행(상륙작전, 전력투사)을 저지하는 방어적이고, 억제적인 대응전략인 ‘해양거부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해양거부전략’의 채택 배경에 대하여 고르시코프는 첫째, 지상군 중심의 전통적인 전략아래 소련해군은 지원적 / 방어적 역할로 예측화되어 있으며, 둘째, 지리적 제한으로 소련이 방대한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지원이 어려운 4개의 분리된 독립함대가 대양진출을 위해 적에게 통제되는 봉쇄된 해협을 통과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 4개의 함대가 적의 해양이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주교통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셋째, 전력구조면에서 적극적인 해양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항공모함, 상륙능력, 항공기 등이 열등한 반면에 핵잠수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진해외기지체계의 미흡과 대양작전능력이 결여되어

19) 김이돈, 『소련의 해양전략이론과 극동함대의 전략목적과 목표』(서울: 국방대학교, 1986), 10쪽.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림 1〉 소련 해군함대 위치



※ ①(북해함대), ②(발틱함대), ③(흑해함대), ④(태평양함대)

흐루쇼프는 대미 핵억지력에 바탕을 둔 평화공존 개념을 해군력 건설에 적용하였다. 스탈린기에 계획되었던 대형함정 건조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거부전략에 중점을 두어 어뢰 고속정과 유도탄 고속정 등을 위시로 한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 위주의 해군력을 건설하였다.²⁰⁾ 즉, 적이 소련본토에 도달하기 전 원해에서 방어한다는 개념보다는 육상에 기지를 둔 항공세력과 어뢰정 및 유도탄 탑재 소형함으로 연안에서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련은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라는 자체의 해상거부 해역을 설정하고, 미국 함정을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의

20) Bryan Ranft and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91.

전방전개작전의 유용성에 대해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¹⁾

소련은 미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5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하였고, 1958년에는 ZV급 전략잠수함(디젤), G급(디젤)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으며, 함대함 미사일(SS-N-1)을 탑재한 Koltin급 구축함 4척을 건조하였다. 이것의 발사 사정거리는 400마일 이하였는데, 목표는 항구에 정박중인 미 항공모함과 폴라리스 잠수함이었다. 1958년에는 전략미사일부대를 창설했고, 1960년에 16발의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Y급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2세대 미사일인 서브(Serb)는 1964년에 G-II급 잠수함에 장착되었는데 사정거리는 1,000마일이었다.²²⁾ 이렇듯, 흐루쇼프의 해양전략은 핵억지 개념에 의거 미국항모 전단의 소련 본토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형 수상함보다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소형함정을 위주로 해군력을 건설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소련의 해양전략은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게 된다. 쿠바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은 미국의 해상봉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해양작전의 한계를 보였다. 즉, 소련은 전 세계에 대한 해외개입정책을 지원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어떤 해역에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르시코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목적은 ‘제국주의적인 대양전략’에 대항하는 것이었다.²³⁾ 이것은 고르시코프가 주장하는 ‘균형함대’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브레즈네프(1964~1982) 집권 시기 소련해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1) Robert Waring Herrick, "The USSR's 'Blue Belt of Defense' Concept: A Unified Military Plan for Defense against Seaborne Nuclear Attack by Strike Carriers and Polaris/Poseidon SSBNs", in Murohy, *Naval Power in Soviet Policy*, pp.169~178.

22)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173~175쪽.

23) S.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Oxford: Pergamon, 1979), p.284.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는 소련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불가피하게 핵전쟁을 할 경우를 상정하고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동전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해군은 평시에 적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유사시 적의 해군력이 본토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일 때, 이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즉응전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1971년 소련 해군은 50척 이상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의해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공격용 잠수함들로 구성된 해양거부전력은 30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1971년 소련이 이미 건조된 그리고 건조 중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총척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소련은 D급 핵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했다. D-I급 잠수함 18척에는 각각 4,300마일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XX-N-8 미사일이 12발씩 실려 있었다. D-II급 잠수함 4척에는 각각 3,500마일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SS-N-8 미사일이 16발씩 실려 있었다. D-III급 잠수함 14척에도 사정거리 3,500마일, 다탄두 미사일인 SS-N-8 미사일이 16발씩 실려 있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들은 더 이상 대서양이나 태평양 동부로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해상 경쟁자로 부상한 것이다.²⁴⁾

한편, 소련은 미국처럼 제해권을 확립해 준 공격용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았으며 또한 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한 다목적 함정도 건조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련의 미사일 전력이 미국과 나토의 수상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고, 소련의 대잠함정이 자국의 전략미사일함대를 침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었던 것이다.

북극해가 소련의 전략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짐으로써, 광범위한 잠수함 작전이 북극해 밑에서 시행되었다. 미국의 최초 핵추진잠수함인

24) George W. Baer, 김주식 역(2005), 전게서, 748쪽.

노틸러스호(Nautilus)가 북극 밑으로 항해한지 4년 후인 1962년에 소련의 N급 잠수함도 북극해를 통과했다. 서방세계에 ‘오케안 70, 75 (Okean 70, 75)’로 알려진 1970년도 소련해군의 훈련은 대양해군의 능력을 과시했다. 모스크바의 중앙지휘부는 4개의 소련함대, 한 개의 인도양 전대 그리고 한 개의 실질적인 지중해 함대를 지휘했고, 2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그 훈련에 참가했는데, 유도미사일 함정과 헬기 항공모함도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함정은 대서양 북부와 노르웨이해의 나토군 해역에 집결했다.²⁵⁾

1976년은 고르시코프의 전진배치에 대한 열망, 즉 소련 해군의 포함외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연도였다. 1973년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미·중 간 재교섭, 미·일 간 관계 개선 등이 소련으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했고,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소련으로 하여금 태평양에 대한 중요성을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은 1970년대에 태평양 함대에 해군 전력들을 증강시켰다. 1984년까지 활동하고 있던 소련의 모든 잠수함 중에서 30% 이상(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23척, 공격용 잠수함 125척)을 태평양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소련의 모든 수상함 중 30%가량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 태평양함대는 소련 북부함대보다 더 많은 함정을 전개하고 있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소련 해군의 항공력 중 30% 정도로 구성된 가장 큰 함대 항공단의 보호를 받았다. 이 항공부대는 440대 정도의 항공기가 배치되었는데, 그 중 150대는 전술 공격기와 전투폭격기였다. 또한 1979년 이후에 소련은 남중국해에서의 정찰을 위해 베트남의 캄란만에 지원기지를 보유하였다.²⁶⁾

25) ‘Okean 70’에 대한 논의는 Bruce W. Watson, *Red Navy at Sea: Soviet Naval Operations on the High Seas, 1956~1980*(Boulder: Westview, 1982), pp.28~30 참조.

26) 소련이 1970년대 말에 내린 태평양함대를 증강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McG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162~88; McGwire, “The Changing Role of the Soviet Nav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43:7(Sept, 1987),

적기(赤旗) 태평양함대(Red Banner Pacific Fleet)로 알려진 이 확장된 태평양함대는 몇 가지 임무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잠수함 미사일부대를 위해 태평양요새를 방어하는 것이다. 소련은 태평양 기지에서도 미 해군의 기동양상을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미 해군 지도자들에게 소련의 해외개입 가능성, 일본에서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 해군 활동지역 밖에서 소련 해군력의 현시 가능성은 분명하였다.

스탈린 이후 흐루쇼프와 브레즈네프 시기를 거치면서 소련은 ‘제해권을 갖지 않은 채 어떻게 미국에 대항하면서 해군작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선택에 답을 해야만 했다. 이것이 고르시코프 제독이 주장한 ‘해양거부전략’이고 이 전략의 수단으로서 나온 개념들이 ‘균형함대(balanced fleet), 단기핵전, 유보전략(withhold strategy)’ 등이다.²⁷⁾

소련해군의 전략임무는 전통적인 해상교통로 보호나 차단 등의 ‘함대대함대(fleet against fleet)’ 작전보다는 육상의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역점을 둔 ‘지상대함대(shore against fleet)’ 작전을 중요시하여 전략적 공격은 첫째, 적의 군사·경제의 중심지를 무력화시키고 둘째, 해상교통로의 시작과 끝인 기지와 항구를 파괴하고 셋째, 적의 공격수단인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방어측면에서 소련은 서방국가들에 의해 해양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들은 이 광활한 해역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위한 해·공군 기지로서 이용하면서, 전방위에서 단시간 내에 소련의 육상전략목표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그들의 육상목표 공격능력을 가능한 한 방해 및 약화시키기 위하여 해군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전쟁과정

pp.34~38 참조.

27) 균형함대는 수상함을 포함한 항공기, 잠수함 등을 포함한 균형된 해군 전력 건설을 말하는 것이고, 단기핵전은 다량의 막강한 핵 전투수단을 보유한 여건 아래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유보전략은 잠수함의 상대적인 생존성을 이용하여 적과 첫 핵 공격을 교환할 때 핵잠수함의 사용을 일부 유보하여 전쟁 중이나 전후 평화 회담에서 이를 협상조건으로 소련 측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전략임.

에서의 해군력의 효과는 적 지상목표를 파괴시키고 적 해군의 공격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느냐 하는 정도의 실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해양전략은 ‘방어적인 해양거부전략’으로서 전시 소련해군의 주 임무는 해양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약화 및 무력화시키고 지상전을 지원하는 것이며, 평시 주 임무는 핵 미사일에 의한 억제인 것이다.

4. 미국의 대응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해양거부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핵 및 공격적 항공모함의 전력에 맞서서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미국에 대응하였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집권 이전까지 소련의 해양전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에서 1975년부터 1984년 사이 10년간 발생했던 71건의 사고 중 58건, 약 81% 정도가 미 해군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58건의 사고 중 35건은 항공모함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10년 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s)의 역할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반면에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양상을 보였다. 1946~1975년, 30년간 미국 외교관계에서 핵전력의 존재는 19건의 각기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1975~1984년의 기간 동안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핵 무기의 정치적 사용은 없었다.²⁸⁾

즉, 유럽에서 소련과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열세를 핵 우위로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국가전략이,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소련과의 핵 균형이

28)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3~5.

발생하면서,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핵의 유용성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소련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응할 정도의 해군력을 증대시켰고, 또한 1970년대 중소 간 동맹 파괴와 미중 간 관계 개선은 소련으로 하여금 태평양지역으로의 관심을 또다시 가지게 하였고, 이것은 소련의 태평양지역으로의 해군력의 집중이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해양전략은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1970년대 소련의 해군력 증강 및 태평양 지역으로의 해군전력 집중은 미국의 1.5 전쟁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5 전쟁가설은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으로의 함정 이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곧 소련의 동부와 남서부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 해군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1975~76년에 제7함대사령관이었으며 또한 1976~78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던 헤이워드 제독과 1979~83년 태평양지구 총사령관인 롱(Robert L. J. Long) 제독에 의해 작성된 ‘공세적 해상타격작전(offensive sea strike campaign)’이었다. 이 작전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전쟁초기 단계에 7함대 함정들 특히, 공격용 항공모함에 의해 주도되고 전진배치된 미군에 의해 즉각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소련의 모든 함대 중 가장 잘 노출되어 있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를 ‘즉각적인 공격작전’으로 제압한다는 것이다.²⁹⁾

29) 태평양의 블라디보스톡은 5,778마일의 철로 끝에 위치했는데, 공중공격에 취약했다. 그 철로 중 마지막 450마일은 중국 국경으로부터 30마일 이내의 지점을 지나고 있다. 레닌그라드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의 거리는 희망봉을 둘 경우 19,000마일이었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경우 15,800마일이었다. 이와같은 긴 해로는 쉽게 감시가 가능했다. 태평양 핵잠수함 기지인 페트로파블로프스키-캄차스키로 가는 보급품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되어야 했다. 소련 함정이 동해의 기지에서 출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해로인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미 해군은 이와 같은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취약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Frederick H. Hartman, *Naval Renaissance: The U.S. Navy in the 1980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0), pp.27~30;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pp.17~20. 참조.

헤이워드 제독은 두 가지의 ‘해상타격작전’의 목적을 설명했는데, 첫째는 소련과의 전쟁 시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유럽으로 전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미 해군 전략 속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소련과의 전쟁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길 원했고, 두 번째는 소련과의 전쟁 시 태평양함대의 전투준비태세, 즉 공격용 항공기는 없고, 방어용 항공기전 배치되어 있던 사실이었다.

‘해상타격작전’은 최초 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태평양함대의 작전계획으로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태평양지역에서 소련과의 분쟁 시 미국은 소련의 페트로파블로프스키 기지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전투그룹을 형성하고, 4개의 공격용 함모가 2개의 방향에서 소련해군의 50% 정도의 파괴를 목적으로 공중공격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적 사고는 1977년 해군성장관인 클레이터(W. Graham Claytor Jr.)에 의해 진행된 ‘해양계획 2000(the Sea Plan 2000)’에 의해 보강되었다.³⁰⁾ ‘해양계획 2000’은 카터 행정부의 유럽 집중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은 나토군의 해군 전력에 사실상 노르웨이해를 포기했던 ‘북대서양 방어벽 전략(North Atlantic barrier sea-control approach)’을 거부하고, 전진적이고 공격적인 해군과 나토군의 북부 측면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 공격적인 전략을 주장했다. 이 계획은 전쟁이 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고, 이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미 해군의 임무를 명시했다.

‘해양계획 2000’은 항공모함과 전함이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가정을 부인함으로써 그 함정들을 다시 부활시켰다. 1980년대 가서는 항공모함은 이지스 대공방어 시스템을 갖춘 함정에 의해 방어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함정능력의 작전적 다양성을 언급함으로써 전략적

30)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pp.13~17.

선택을 제시한 전략·기획연구였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해군 비평가와 진행 중인 해군 논쟁에 대응하기 위한 1970년대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표 2〉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미 해군의 임무

안정유지 (Maintain Stability)	위기 억제 (Contain Crises)	전쟁 억제 (Deter Global War)
· 전진배치 · 해군력의 중요성 인식	· 근해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력 · 소련과의 경쟁에서 해상에서의 우세	· 해상교통로의 보호 · 동맹강화 · 소련의 압박 · 제3세계에 대한 개입

※ 출처: John B. Hattendorf, op. cit., p.15.

이처럼,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의 해양전략의 개념에 대한 일련의 연구과정의 목적은, 전진배치되고, 대규모 함대로 구성된 해군의 수상과 수중 및 공중에서의 공세적 가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부에서 확립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나와 있던 마한의 충고를 가지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해군은 이 해양전략에서 해군의 임무를 분명하게 정의했으며 또한 그것을 해군 무기획득계획의 기초로 삼았다.

1980년대 미국의 해양전략의 요점은 전면전이 시작될 때부터 해군이 소련에 대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양전략은 미국이 일반적인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만약 미국이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최고의 억제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해군은 이 두 가지의 임무(승리와 억제력)를 위해 전력을 설계했다. 그 전력은 공세적인 해양통제와 군사력 투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해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마한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모든 임무는 해양통제의 결과로 뒤따르게 될 것이었다.³¹⁾

31)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해군은 60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군은 해양전략에 의해 공격임무를 위한 고가치 전력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해군은 중무장 항공모함전투단 15개로 구성된 4개의 전투함대(각 항공모함전투단은 개념상으로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유도미사일 구축함 4척, 프리깃함 4척으로 구성되었다), 1982년에 뉴저지호(New Jersey)의 재취역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4개의 전함 위주 수상전투단(각 전투단은 전함 1척,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 프리깃함 4척으로 구성되었다), 100척의 공격용 잠수함, 상륙수송부대와 해병 상륙여단의 돌격제대를 위한 부대, 몇 개의 해상보급단, 그리고 많은 지원함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해군의 모든 기존 전투활동은 전투임무를 내포할 것이며, 각각의 것은 의회가 승인만 한다면 완전한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었다. 600척의 함정은 1980년의 부대 수준에 비해 120척의 현역 전투함, 1985년의 수준에 비해 60척의 전투함들을 해군에 증가시켜 줄 것이었다. 해군은 이 수치 이외에도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배치하는 병력과 보급품을 실은 25척의 사전배치선박과 116척의 상시대기선박을 관리할 것도 제안했다.³²⁾

1980년대 미 해군은 1950년의 NSC-68에 의해 요구된 봉쇄정책의 일부로서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14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도했던 60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해군은 장차 15척의 항공모함도 보유하게 될 것이었고, 그 항공모함들은 각 전투단의 중심에 놓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마한 이래로 해군이 평시에 것처럼 종합적인 교리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왓킨스(James D. Watkins: 1982.6~1986.6) 해군참모총장의 꾸준하고 혁신적인 지휘하에서 발전되었으며, 레먼(John F. Lehman

pp.13~17.

32)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ilding a 600-Ship Navy: Costs, Timing, and Alternative Approaches*(March, 1982), pp.6~18.

Jr: 1981. 2~1987.5) 해군장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는 동안 레이건 대통령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1981.1~1987.11) 국방장관은 해군이 그 해양전략을 실행하도록 허용했으며,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조된 냉전기 동안 해양력의 적절성을 부활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5. 결 론

1920~1930년대 소련의 군사전략이 대륙 지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해양전략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양국가방식을 추구하는 ‘구학파(The old school)’로서 제해권 장악을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나 실질적인 군사력의 한계로 제한을 받더라도 전함과 순양함위주의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콜롭과 마한의 고전적 해양전략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속정, 구축함, 잠수함, 육상기지 항공기 등의 작은해군(small navy)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학파(The young school)’로서 소련 해군이 공격하여 적을 격파하고 제해권을 획득하기 보다는 적의 제해권 획득능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학파에 이어 ‘전력 균등화 전략’을 주장하면서 ‘제한적 제해권’과 1949년에 가서는 ‘적극적 현존함대’ 전략을 주장했던 ‘소련학파(The soviet school)’가 등장하였다.

한편, 소련은 1950년대로 들어서면서, 1956년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공사건, 1958년 미군의 레바논 침공,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흐루쇼프는 해군력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고, 고르시코프의 등장으로 해군력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고르시코프의 ‘해양거부전략’을 소련의 해양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소련은 1970년부터 태평양 지역으로 국가이익을 위해 해군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소련 해군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세력 증가는, 2차 세계대전 후 대서양 지역에서 지상군 중심의 전략으로 수세적인 역할(해양통제 등)만을 강요 받았던 미국 해군으로 하여금, 적극적 해양전략으로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세적 해상타격’, ‘해양계획 2000’, ‘600 함정 해군’ 등의 개념들이 미 해군의 군사적 교리를 강화시켰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국의 해양전략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략은 위협을 필요로 한다. 1970년대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소련 해군의 위협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해양전략이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국가는 절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미국의 해양전략을 더욱더 공세적으로 진화시킬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해양전략, 해양거부전략, 요새함대, 현존함대, 공세적 해상타격, 해양 계획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U.S. Response

Jung, Gwang-ho

Although the Soviet's military strategy was continent oriented in the 1920~1930, the Soviet Union had two maritime strategies.

The first was 'the old school' that pursued the traditional maritime strategy, contending that it had to strengthen nuclear powered battleships and cruises to command the sea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geopolitics and sufficient forces and this is in the same vein as the classical theory of maritime strategy by Colomb and Mahan. The second was 'the young school' that pursued small navy with patrol killers, destroyers, submarines and land based naval aircraft, contending that it could deny enemy's command of the sea, which is better than to defeat the enemy and command the sea. Following the two schools, the soviet school emerged which emphasized the limited sea power, focusing on the equal force strategy and current aggressive fleet in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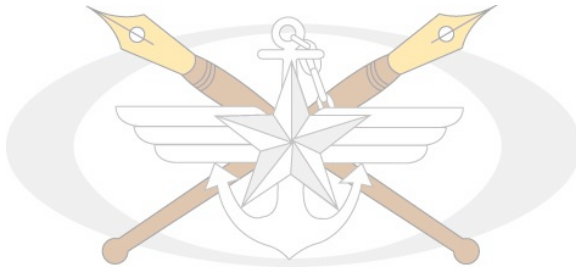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the Soviet Union in 1956 had made use of a naval power as a means of national policy with the advent of Gorshkov. Since 1970, sea denial strategy was adopted by the Soviet's maritime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nd started to expand the Soviet Union's inte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the Soviet navy increased his power in the Pacific region, the U.S. Navy changed to active maritime strategy. in the past the U.S. navy was forced to play a passive role with a ground oriented forces in the Atlantic region after World War-II. The concept of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Sea Plan 2000,' and '600 Navy Ships' had strengthened U.S. navy's doctrine

and these became the specific and clear maritime strategy of the U.S.

Therefore, this article will find out the changes in maritime strategy of the U.S. in response to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sea denial strategy, fortress fleet, fleet in being, offensive sea strike, sea plan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

조 성 주*



1. 서론
2. 연합지휘체계 형태와 특징
3.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분석
4.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 론

우리 군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될 예정이다.¹⁾ 전시작전통제권이 예정대로 한국군에 이양된다면,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 파병사 담당관, 전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전쟁사 전문교관

1) 2013년도 한·미 양국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2014년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장차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게 될 경우를 고려한 한·미

이는 1950년 7월 14일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양도한 이래 65년 만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됨과 동시에 현재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시 군사작전을 책임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게 되어있다. 이로써 전시 한미 연합작전은 한국군 주도, 미군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지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대등한 지휘관계로 한·미 협조기구를 발족하여 전략적 수준으로부터 작전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양군의 작전을 협조, 조정, 통제하게 될 것이다.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는 양국군의 노력을 통일하기 위한 작전협조와 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협조기구의 효과적인 편성과 운용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매우 긴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걸프전쟁시 다국적 작전(多國籍作戰)²⁾ 지휘체계는 2015년에 형성되는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걸프전쟁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에 맞서 31개 국가가 전투 병력을 파견하여 다국적군을 구성하였다.³⁾ 이러한 다국적군은 미 중부사령부와 사우디아라비아⁴⁾ 중심의 아랍 합동군사령부가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였다.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구성될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체계 하에서 수행된 걸프전쟁은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전쟁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를 불법적으로 기습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다국적군이

연합협조기구 운용에 대한 분석이다.

2) 다국적 작전(Multinational Operations)이란 2개 국가 이상의 군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행동의 총체적인 용어이며, 동맹(Alliance)관계나 일시적인 제휴(Coalition)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특정국가의 주도에 의해 수행되는 협조된 작전을 말한다.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 2009. 10.)

3) 권태영·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법문사, 2008, 101쪽.

4) 이하 사우디로 표기함.

사우디 영토와 페르시아만(灣) 등 아라비아반도 근해에 파견되어 유엔안보리 결의안 678호⁵⁾(1990.11.29)에 의거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군을 격멸하고 쿠웨이트 회복을 목표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이 수행한 군사작전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의 사우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사막의 방패작전(Op. Desert Shield)’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678호에 근거하여 쿠웨이트내의 이라크군을 격멸하고 쿠웨이트를 회복하기 위해 수행된 ‘사막의 폭풍작전(Op. Desert Storm)’으로 구분된다.

사막의 폭풍작전 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첨단 전력을 운용, 39일간의 항공작전과 100시간의 지상작전을 통해 쿠웨이트내의 이라크군을 격파하고 쿠웨이트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간 미 중부사령부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는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연합 협조, 통신, 통합본부(C3IC: Combined Coordination, Communication, Integration Center)와 연락반 등의 협조기구를 운용하였다. 이 협조기구는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한 양측 사령부의 작전을 협조,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다국적 작전 시 노력의 통일과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전훈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협조기구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전 기간에 걸쳐 작전의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과 같은 맥락에서 연합작전수행을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걸프전쟁 시 다국적 지휘체계의 형성과 협조기구의 운용을 고찰하여, 2015년 한국군이

5)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의 주요내용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군이 1991년 1월 15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중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이라크군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중요 문서이다.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합지휘체계 형태와 특징⁶⁾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이란 2개국 이상의 군대가 장기적인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협약이나 조약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협조된 작전을 말한다.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 및 통제는 연합군의 노력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지휘구조와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참가국간의 협의로부터 이루어진다.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자국 부대에 대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군 지휘체계는 통상 참가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은 일반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되며 작전통제, 전술통제, 또는 지원과 협조관계 등의 형식으로 기술된다.

연합국 지휘체계는 통합지휘체계, 주도국 지휘체계, 병립지휘체계, 혼합지휘체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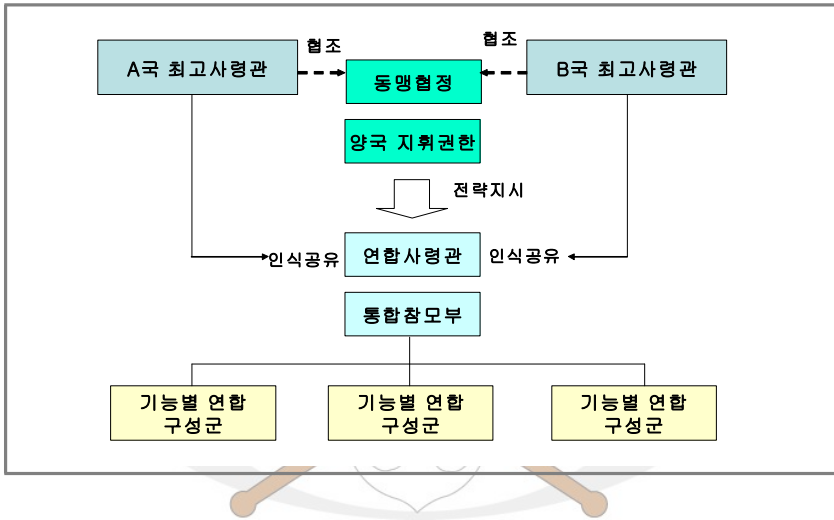
통합지휘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맹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수행되는 연합작전 시에 지휘의 통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휘체계이다. 이 지휘체계의 특징은 단일 지휘관과 회원국 대표자로 구성된 참모부,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하위제대까지 통합된 지휘부와 참모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지휘체계의 예로는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그리고 현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들 수 있다.

주도국 지휘체계 <표 2>의 (A)는 참가국의 모든 부대를 주도적인 전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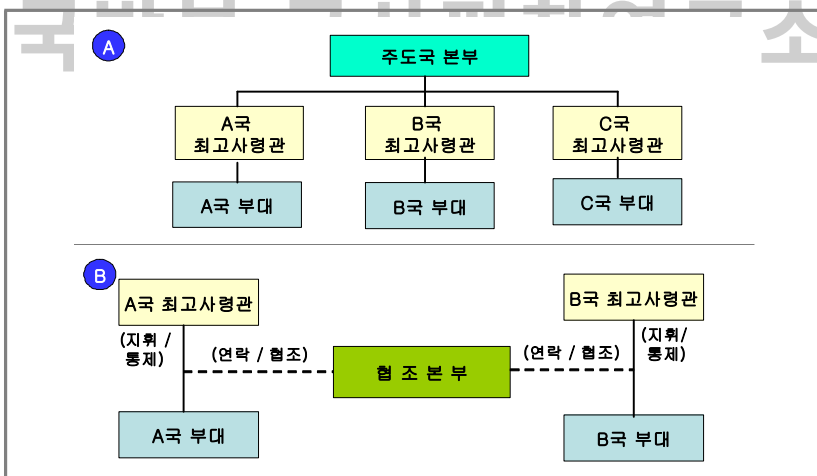
6)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합동기본교리』, 2009, 114~120쪽.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지휘체계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도국사령부에 연락요원을 파견하며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증원을 받아 참모부를 증편할 수 있다.

〈표 1〉 통합지휘체계



〈표 2〉 주도국 지휘체계(A)와 병립 지휘체계(B)



병립지휘체계 <표 2>의 (B)는 각 참가국별로 별도의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참가국들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참가국 부대의 지휘관이 자국 부대를 계속 지휘하면서 협조기구를 통하여 상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병립지휘체계의 특징은 참가국간 별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참가국들의 노력을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통일하였다. 그 사례로는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과 영국 간에 구성된 연합참모부, 베트남전시 한국·미국·자유베트남간에 구성된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 걸프전시 미 중부군사령부와 아랍 합동군사령부 간에 구성된 C3IC 등이 있다.

혼합지휘체계는 단일지휘체계와 병립지휘체계가 혼합된 지휘체계이며, 동맹국 이외의 다른 참가국이 있을 경우에 동맹국 지휘구조를 모태로 참가국의 규모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체계다. 참전하는 특정 국가의 부대가 작전적 수준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자국의 지휘체통을 유지하면서 동맹국 사령부와 병립체계를 유지하는 지휘체계이다. 반면, 참전하는 특정국가들의 부대가 전술단위 부대일 경우에는 자국의 지휘체통을 유지하면서 동맹국 사령부의 전술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체계로 운용될 수 있다.

혼합지휘체계는 걸프전쟁시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동안에 적용되었다. 서방권 참가국들은 미국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아랍권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지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서방권과 아랍권 간에는 병립지휘체계를 형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체계와 관계없이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위해 별도의 연락반을 운용하여야 한다. 특히, 연합작전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국군의 모든 사령부나 부대에 연락반을 운용함으로써 상호지원과 군사작전 이외의 문제점 등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2015년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지휘체계 형태는 마지막에 설명된 혼합지휘체계 형태가 될 것이다. 단일지휘체계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면서 병립하는 연합지휘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휘체제하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양 사령부간 작전 협조와 조정을 위한 연합 협조본부의 편성과 운용이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3.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분석

1)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 지휘체제

걸프전쟁 시 31개국에서 전투부대를 파견함으로써 다국적군 형태의 연합작전 시 각 부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휘조직의 문제가 가 크게 대두되었다.⁷⁾

다국적군의 지휘관계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고, 다국적군에 군대를 파견한 모든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정치 및 여론의 인식과 더불어 국가적, 도덕적, 종교적 자긍심은 군사적 요구만큼이나 이러한 지휘관계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

당시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H. Norman Schwarzkopf) 대장은 미군이 어떻게 해야 기타 동맹국 군대들과의 협조가 가능한가 하는 고민을 해야 했다. 다국적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 각기 영어나 아랍어, 프랑스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언어문제에 추가하여 미묘한 정치문제가 있었다. 아랍 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서방측 병사와 군대는 없었다. 또한 사우디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으려하지 않았다. 사우디군의 입장에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⁹⁾ 사우디의 군대를 사우디 영토 안에서 참전한 다른 국가의 군대가 지휘·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종교적·문화적·민족적 측면에서 사우디의 정치가들과 국민들, 그리고 아랍

7) 권태영·노훈, 전제서, 124쪽.

8)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 (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5쪽.

9) R. 파일 저, 강창구 역, 『슈와르츠코프(승리를 위한 지휘)』, 병학사, 1992, 117쪽.

및 이슬람권 국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전쟁수행능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군이 아랍군의 지휘통제 하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군은 첨단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저급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사우디 군을 포함한 아랍 합동군은 군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전장 상황을 손바닥처럼 보고 신속하게 결심하고 타격할 능력을 갖춘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미군이 사우디에 도착했을 당시 미군과 사우디군 간의 지휘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자국군의 지휘 하에 들어오도록 주장했지만, 결국 제각기 자국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행동하고, 양국의 행동의 조정은 최고사령관 수준에서 조정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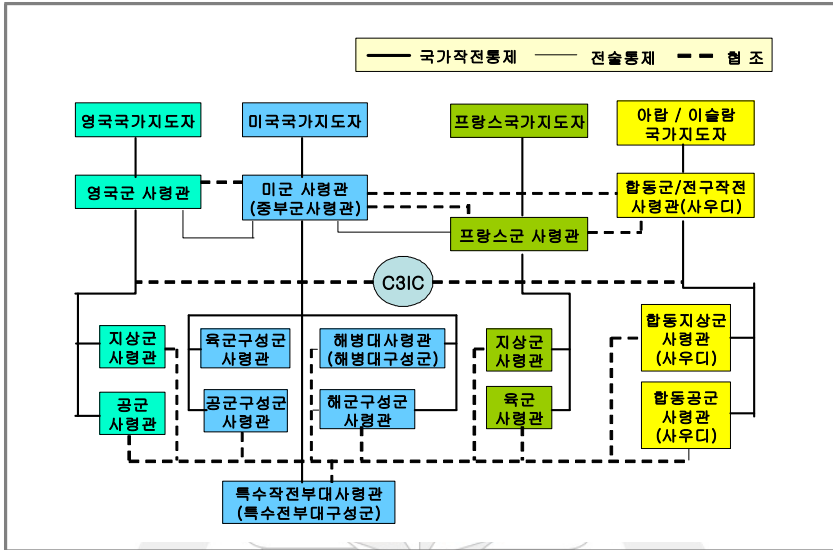
이로써 동등하지는 않으나 미국과 사우디는 별개의 지휘계통으로 다국적군의 지휘 및 통제체계가 확립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군대는 각자의 국가 지휘 하에 남아 있었다. 미 중부사령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군대 가운데 미군에 대해서는 전투지휘, 영국 및 다른 서방국가들의 군대에 대해서는 작전통제 그리고 프랑스군에 대해서는 전술통제를 실시하였다.(최초 사우디의 전술통제를 받던 프랑스군은 ‘사막의 폭풍작전’ 준비기간인 1990년 12월 중순경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었다.)¹¹⁾

한편 아랍 및 이슬람권의 국가들¹²⁾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응징하기 위해 사우디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군은 사우디의 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아랍합동군의 작전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도록 합의하였다.

10) 기다히데도, 오정석 역, 『걸프전쟁』, 연경문화사, 2003, 332쪽.

1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5~446쪽.

12) 아랍 및 이슬람권의 주요 참전 국가들은 이집트, 시리아, 파키스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이다.(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육참고, 『세계전쟁사(하)』)

〈표 3〉 사막의 폭풍작전 시 다국적군 지휘체계¹³⁾

이러한 다국적 작전지휘체계를 통하여 서방국가의 국가지휘부들은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한 반면, 이슬람국가들은 사우디에게 그들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¹⁴⁾

당시처럼 다양한 국가의 군들로 편성된 연합군을 지휘통제하는 문제는 특히도 어려웠다. 어렵게 구성한 연합군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정치 및 문화적 차이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슈워츠코프 미 중부사령관이 비 아랍국가들의 전력을 통제하고, 사우디의 장군인 술탄(Khaled bin-Sultan)이 아랍국가들의 전력을 통제하는 병립적인 지휘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능상으로 보면 슈워츠코프 대장과 술탄 중장은 지휘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였으나 미국의 지휘관인 슈워츠코프가 보다 상급자였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전쟁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전쟁 중에 노정된 일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감한 형태로

13)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계서, 446쪽.

14)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계서, 445~446쪽.

설계된 지휘구조가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지는 않았다.¹⁵⁾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가 대등한 병립적인 지휘체계 하에서 누가 작전을 주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수행에 있어 누가 최종결정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결심의 문제이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의 지휘관계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1990년 11월 5일에 미국과 사우디 양국 간에 합의되었다. 미국과 사우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은 ① 군사작전을 개시할 때는 현행의 합동 지휘권 형식을 계승한다. ② 단, 모든 군사작전에 관해서 미군사령관이 ‘최종적인 승인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①번 항은 사우디 주권에 대한 배려였다. 즉 미 중부사령관과 아랍 합동군사령관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는 것이다. 그러나 ②번 항은 미 중부사령관이 공격작전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군측이 지휘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¹⁶⁾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은 아랍 합동군사령관으로부터 그 진의(眞意)를 질문 받았으며, 그의 답변은 “공격작전계획 수립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아랍 합동군사령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은 없을 것이라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해를 시켰다.¹⁷⁾

슈워츠코프 대장은 미 중부사령관으로서 걸프지역에 전개한 미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함과 아울러 아랍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육·해·공군의 작전 전반도 총괄하게 되었고, 또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야전군 사령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¹⁸⁾ 즉,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미 중부사령관과 중부사 예하의 지상구성군사령관직을 겸임하면서 미 육군과

15) 도널드 M. 스노우·테니스 M. 드루, 권영근 역,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연경문화사, 2003, 356쪽.

16)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17)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18) 기다히데도, 전계서, 334쪽.

미 해병대를 포함하는 지상군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와 같이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지휘체계는 혼합지휘체계로서 미 중부사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각각 단일지휘체계를 이루면서 양군 사령부가 대등한 관계로 병립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의 합의에 의거하여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미 중부사령부가 다국적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작전 시 각국에 부여된 임무는 정치적 제약 및 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와 시리아 정부는 자국의 군대가 이라크 영토 내에서 전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착부대나 예비대로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쿠웨이트 해방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¹⁹⁾

그러나 각 국의 군에 임무를 부여함에 있어서 작전부대 사령관이었던 슈워츠코프 장군이 참가국들의 요구사항을 정치적 제약이나 능력에 부합하여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전략적 수준의 문제로써 미 국방부나 합참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다국적 작전 협조기구 운용

(1) 연합 협조, 통신, 통합본부(C3IC)²⁰⁾ 운용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도전은 하나의 통합사령부의 도움 없이 다국적 지상군부대 사이에 통일된 노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NATO와는 달리 여기에는 다국적 활동을 조정하는 단일 사령관이나 연합군이 없었다. 합동기획과정을 활용하고 매일 매일의 다국적군 작전의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합작전본부가 필요

19) 기다히데도, 전게서, 335쪽.

20) 이하 C3IC로 표기함.

하였다. 사우디군과 근무경험이 있는 육군구성군사령관이 이러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곧 다국적군의 C3IC가 1990년 8월 13일 창설되었다.²¹⁾

이 C3IC는 미 중부사의 육군구성군과 사우디군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C3IC의 최초 임무는 사우디에 집결중인 다국적군 지상군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 12월에 ‘사막의 방패작전’이 무르익고 다국적군의 규모가 확대되자, 이 C3IC의 미군 작전에 대한 책임이 육군구성군에서 미 중부사령부의 참모에게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C3IC의 임무도 일차적으로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작전(사막의 폭풍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²²⁾

육군구성군이 설치한 C3IC는 모든 다국적군 부대에서 파견되어 온 장교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이 C3IC는 다국적군의 훈련지역 협조, 사격장, 군수, 주파수 운영, 정보교환,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련된 많은 고유의 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일차적인 기구 역할을 하였다.²³⁾

이후 C3IC는 확대되어 지상군, 해군, 공군, 특수작전 그리고 정보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C3IC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을 통해 운용되었고, 다국적군 간에 공격작전에 있어서 통일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C3IC를 운용하는 책임자는 각 지휘체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되었다. 미 중부사 측에서는 육군구성군의 부사령관이, 그리고 사우디의 합동군부사령관이 공동으로 이 C3IC를 지휘하였다. 또한 C3IC 내 부서로는 각각 사우디군과 미군 장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상군, 공군, 해군, 방공, 특수작전, 군수 그리고 정보과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장교들은 미 중부사와 사우디의 아랍합동군사 부대들 간의 접촉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군, 사우디 국방경비대, 그리고 미 제7군단은

2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8쪽.

22)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49쪽.

23)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1쪽.

각각 이 C3IC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²⁴⁾

미국과 사우디의 군사계획담당관들 사이에는 양국 군대의 규모, 임무 그리고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과 전문지식에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합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회의를 매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가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고, 지역을 이해하고 필요한 작전경험을 갖춘 미군의 아랍어 능통자가 중요시 되었다. 사우디군 선임장교들이 작전계획의 아랍어 번역본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동안, 미국 측 소수의 아랍어 능통자들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계획을 재검토하였다.²⁵⁾

다국적군의 C3IC는 모든 다국적군의 선임장교들에게 이라크군 및 다국적군의 상황에 대해 매일 브리핑과 최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브리핑에 참가하는 장교들은 통상 미 중부사령관이나 부사령관, 사우디 합동군사령관이었다. C3IC의 작전상황 브리핑 책임은 미군과 사우디 장교가 번갈아 맡았다. 이로써 모든 다국적군 편성국들이 작전 준비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전쟁 전 기간 동안 작전수행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었다.²⁶⁾

이 C3IC는 미 중부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던 동일 시설 내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였다. 당시 미 중부사는 리야드(Riyadh)에 있는 사우디 국방 및 항공부 본부 복합건물의 국방작전본부에 위치하였다. 다국적군의 C3IC는 바로 미 중부사령관실, 중부사의 합동작전본부와 합동정보본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⁷⁾

걸프전 시 수행된 다국적 작전에 대한 양개 사령부간의 실질적인 조정·통제는 이 C3IC 및 다국적군 참가 각국 군 사령관들의 매일 회합, 미 중부사령관과 이라크 합동군사령관 또는 연합계획팀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²⁸⁾

24)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부록)』, 1993, 449~450쪽.

25)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2쪽.

26)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50쪽.

27)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49쪽.

28) 기다히데도, 전계서, 335쪽.

미 국방부의 걸프전쟁 관련 의회최종보고서는 다국적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다국적군의 지휘관계 형성과 실행은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은 지휘관계 수립에서 혁신과 융통성을 지녀야만 한다.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 작전 계획관들은 다른 나라의 지휘, 통제 및 통신 기반시설 내에서의 작전상의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 전투지휘관(Combatant Commander)²⁹⁾들은 모든 미군 및 연합군과 훌륭히 운용될 수 있는 전개 가능한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를 보유해야만 한다.”³⁰⁾고 하면서, “통합사령관은 없었으나 다국적군의 지휘체계는 각급 부대 및 참모요원의 전문성과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이었다.”³¹⁾라고 평가하였다.

(2) 연락반 운용

걸프전시 미군은 다국적 작전수행 간에 연락반을 대규모로 운용하였으며, 이러한 연락반 운용은 작전의 협조·조정에 긴요하였다. 미 중부사령부 육군구성군, 특수작전부대, 미 공군전방항공통제관, 공군연락장교, 해병대 항공함포연락중대의 연락반들은 다국적군의 협조와 통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군 전투교리에는 측방부대 간, 상급부대와 하급부대 간, 구성군 간 그리고 다국적군 상호간에 연락반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리에 근거하여 미 중부사령부의 육군구성군은 상당한 통신능력을 갖춘 연락반을 육군의 2개 군단(제18공정군단 및 제7군단)과 미 제1해병원정군에 각각 파견하였다.³²⁾

연락반들은 또한 다른 다국적군 부대에도 배속되었다.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연락반들은 평균 35명으로 편성, 아랍합동군사 예하의 동부 및 북부합동군에 파견되어 ‘사막의 폭풍작전’ 계획수립을 지원하였고, 상급부대

29) 전투지휘관(Combatant Commander)이란 미 태평양사령관, 미 유럽사령관 등과 같은 통합군사령관들을 의미한다.

30)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게서, 481쪽.

31) 국방군사연구소 역, 『걸프전쟁(미 국방부 의회최종보고서)』, 1992, 123쪽.

32) 국방군사연구소 역, 상게서, 490쪽.

및 인접부대와와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투참모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연락반들은 미 중부사 및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 사령부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위성통신장비 일체를 갖추고 있었다. 예하부대와 인접 다국적군 부대에 파견된 연락반들은 미 중부사령관과 육군구성군 사령관의 눈과 귀가 되었고, 공세작전(사막의 폭풍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군 이외의 다국적군 책임지역의 정확한 전황을 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들 연락반들은 연합전투의 동시성, 협조 그리고 통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³³⁾

미 중부사는 위성통신 체계를 갖춘 연락반 운용을 통해서 작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부사령관의 의도를 반영하였고, 작전실시간에는 실시간 상황파악을 통해 지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었다. 미 중부사의 연락반의 운용은 사막의 폭풍작전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의 지휘체계는 혼합지휘체계였다. 미 중부사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병립하는 형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 중부사는 미 중부사와 아랍합동군사 간에 C3IC를 운용하는 동시에 대규모 연락반을 지상군 군단급 사령부, 각 구성군 간 등 상·하·인접부대에 파견, 운용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연합작전에 있어 노력의 통일을 기할 수 있었다. 당시의 다국적군 협조기구의 운용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평가와 다르게 당시의 다국적 작전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권태영·노훈 박사 등은 “걸프전시 사우디와 미군 간의 C3I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많은 단점을 표출하였다. 걸프전 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군은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

33) 국방군사연구소 역, 전계서, 4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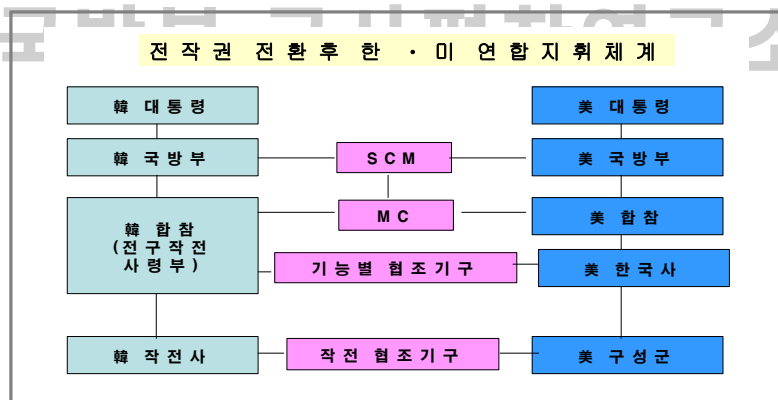
에서는 미군 중심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쟁에서 마·영군은 통일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되, 작전지역을 분할 운영하여 지휘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였다.”³⁴⁾ 라고 혼합지휘체계 하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이 운용했던 협조기구(C3IC와 대규모 연락반의 운용 등)는 이러한 혼합지휘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상당 수준으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2015년에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한은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한·미 연합지휘체계는 걸프전쟁 시 다국적 작전지휘체계와 유사하게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단일지휘체계를 이루며, 대등한 관계로 병립하는 혼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다.

〈표 4〉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지휘체계³⁵⁾



34) 권태영·노훈, 전계서, 124쪽.

35)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2009년 7월호』, 2009, 30쪽.

한·미 양측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개념에 합의하였다.

걸프전쟁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지휘체계는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지휘체계 형태임으로 한·미 양국 사령부간의 효과적인 협조기구의 운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걸프전쟁 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향후 한·미 연합협조기구의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에 대해 한·미간 문서상의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걸프전쟁 시 미국과 사우디는 미 중부사령부와 아랍의 합동군사령부가 대등한 지휘관계임에도 미 중부사령관이 작전계획수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 중부사령관이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합의하였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과 미군의 지원관계는 한국군이 피지원(Supported)³⁶⁾, 미군이 지원(Supporting)³⁷⁾하는 것이다. 양국군의 이러한 지원관계를 설정하였으므로 당연히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에 있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유추해석 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전구작전계획 수립과 준비, 그리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미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작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누가 ‘최종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걸프전쟁 시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이 말했듯이 “미군의 동의 없이는 결코 한국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한·미 양국군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는 문서상의 한·미 합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36) 교리상 피지원(Supported)의 의미는 지시에 의거, 다른 부대로부터 군사작전수행에 필요한 도움 또는 방호를 제공받거나 필요한 전투력을 보충 받는 것을 말한다.(야교 0 『지상군기본교리』, 2011.10.1)

37) 교리상 지원(Supporting)의 의미는 지시에 의거, 타 부대를 도와주거나 방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전투력을 보충 또는 유지하며, 전투 시에 단위부대가 다른 단위부대를 원조하고 특정 단위부대의 일부가 예비대로 후방을 담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활동을 말한다.(야교 0 『지상군기본교리』, 2011.10.1)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능력을 배가하는 일일 것이다. 걸프전쟁 시에도 결국 아랍군에 비해 첨단전력을 보유하고 작전수행능력이 우수한 미군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하였다.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하거나 거의 비슷한 전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갖추었을 때³⁸⁾, 비로소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님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둘째,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도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양군의 부지휘관급이 지휘통제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C3IC는 각각 사우디와 미군 장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상군, 공군, 해군, 방공, 특수작전, 군수 그리고 정보과 등으로 편성되었다. 연합 정보와 방공, 군수 그리고 3군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서가 편성되어 작전계획의 수립과 조정, 작전지원, 그리고 부대이동, 교육훈련 등 연합작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있는 부서로 편성되어 운용되었던 것이다.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도 제대별로 작전수행 간 협조와 조정에 필요한 기능별 부서가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의 C3IC와 유사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을 고려하여 민군 또는 안정화작전 수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기구는 전시편성이 아닌 평시부터 편성 운용되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평시부터完편 인원이 근무하는 상설기구로 편성되어 한·미 양국군의 장교가 연합으로 근무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협조기구 편성인원이 전시에 동원 또는 학교기관으로 부터 전환되는 요원으로 편성된다면 전시에 즉각적인 기능발휘가 극도로 제한될 것임에 틀림없다.

38) 한국군이 미군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을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 연합작전체계 구축은 대북침략억제, 동북아 전력균형, 그리고 대미 외교관계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 협조기구의 책임자로 부사령관급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 C3IC는 미 중부사 육군구성군의 부사령관과 사우디 합동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지휘하였다. 즉 미 중부사와 아랍 합동군사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협조기구를 지휘통제함으로써 C3IC의 위상과 편성, 예산상의 지원과 양국 사령관의 지도아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한·미 연합협조기구도 제대별로 사령관의 위임을 받아 협조기구를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시 대비 현 한·미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MC 연락기구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MC 운용에 대해서는 현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은 한·미 MC의 전략지침에 의거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전략지침의 하달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MC는 년 2회 정기적인 회의만을 개최토록 함으로써, 전시 한·미간의 전략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적시·적합한 전략지침을 하달하기에는 운용상 제한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걸프전쟁 시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은 참전국들의 정치적 제약과 부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시 한·미 연합작전 수행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참전할 것이고, 이러한 참전국들에게 각국의 정치적 제약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쟁 상황의 변동³⁹⁾에 따른 작전수행의 변경이나 조정 등이 요구될 때, 신속하고 적합한 전략지침이 하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MC 운용체제로는 이러한 전쟁 상황변화에

39) 6·25전쟁 시와 같이 한·미 연합군의 북진작전 중 중국군의 국경선 집결 상황 또는 참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군이 전략적 수준의 문제에 관해 상시 협의하고 조정하여 적시·적합한 전략지침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상설 MC 연락반의 설치 및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한·미 협조기구에는 영어에 능통하며, 군사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원을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걸프전쟁 시 C3IC에 근무하는 미군과 사우디군 작전계획 담당관들은 연합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으며, 미군은 아랍어에 능통하고 작전경험이 충분한 요원들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C3IC가 모든 다국적군의 선임장교들을 위한 작전상황 브리핑은 미군과 사우디군 장교들이 교대로 실시했다.

따라서 한·미 연합협조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는 기본적으로 연합작전계획 수립 간 토의에 참여하여 한국군의 상황과 의도를 개진할 수 있으며, 작전계획을 영어로 번역하고 브리핑을 영어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영어 능통자 그리고 유능한 군사분야 전문가를 선발, 보직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연합협조기구는 한국군 합참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걸프전시 다국적군 C3IC는 미 중부사령관실, 중부군사령부의 합동작전본부 및 합동정보본부 바로 인근에 있었다. 즉 연합협조기구의 위치는 양 군 사령부 인근에 위치하여 양국 군의 사령관들이 매일 혹은 수시로 상호 방문하여 적과 다국적 동맹국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한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향후 한·미 연합작전협조기구도 양국 지휘관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 합참 그리고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혹은, 이들 사령부와 근접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조기구의 종합상황실과 양국의 다양한 기능별 대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유엔파견국들과 각 군 구성군사령부와 예하부대

에서 파견될 수 있는 연락장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평시 연락반 운용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운용이 요구된다.

미 중부사가 아랍 합동군사와의 긴밀한 작전협조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전문연락단의 효과적인 운용에 있었다. 미 중부사는 각 군단 및 제1해병원정군에 연락반을 파견한 것 외에도 아랍 합동군사령부 예하의 북부합동군과 동부합동군에 연락반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연락반들은 위성통신 수단을 갖추고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에 제공함으로써 연합작전의 조정,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반도 전구는 단일전구로써 한국군은 평시와 전시에 대규모 연락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평시에 연락반 편성, 통신수단, 연락반 운용지침 등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전시에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년에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된다면, 한·미 연합작전 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등한 지휘관계를 갖는 혼합지휘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누렸던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 작전간 C3IC와 연락반의 운용 사례는 향후 한·미 양군의 협조기구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설치 운용되게 될 연합협조기구의 효과적인 운용이 한·미 연합작전 시에

한·미 연합군의 노력을 통일시키며, 작전의 성공을 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걸프전쟁 시 다국적군 협조기구 운용 사례를 통해 향후 한미 연합지휘기구 운용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에 대한 한·미간 문서상의 합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군 간의 협조기구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부지휘관급이 지휘통제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시 대비 현 한미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 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연락기구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조기구에는 영어에 능통하며, 군사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원을 보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연합협조기구의 위치는 한국군 합참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수용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여섯째, 전·평시 연락반응운용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시행이 요구된다.

현 우리군의 전력은 아직도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군의 전력에 미치지 못하며 전시 작전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적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적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우수한 전력을 가진 미군을 상대로 작전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군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일 것이다.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 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쟁 후 국가기반시설과 북한 주민의 보호와 지지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타격목표와 수단의 선정에 있어서 한국군이 최종결정권을 가져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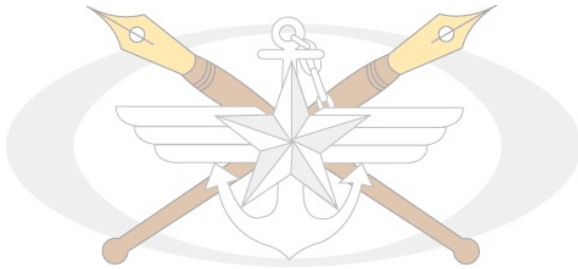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만 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을 조정 통제할 협조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은 한·미 양군의 노력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다.

2015년은 멀지 않은 미래다. 2015년 이후 한국군은 한반도 전구에서 전시 군사작전을 주도하며 미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군의 전력 증강과 작전수행 능력의 향상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전작권 전환, 걸프전쟁, 연합지휘체계, 협조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Active Plan for the ROK-US Combined Coordination Organization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Authority

Cho, Sung ju

In 2015 the wartime OPCON authority will be turned over to ROKA. After the turnover, the command arrangement and the chain of command between ROKA & USFK will be based on equal status. The combined chain of command is similar to that of the multinational forces in the Gulf War.

In Gulf war, American CENTCOM was equal to Arab JOINTCOM in the command arrangement. Under the dual chain of command, the assessment on the application of Coordination organizations for unifying efforts between CENTCOM and Arab JOINTCOM was remarkably effective.

CENTCOM and JOINTCOM used the Combined Coordination, Communication, Intergration Center(C3IC) and the Liaison Parties as a coordination organization. C3IC played the great role in the accomplishment of unity of efforts in the multinational operations through coordinations and adjustments. Also CENTCOM employed the large scale Liaison Parties at the adjacent and subordinate unit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situation of operations in real time.

Through A study on the multinational operation of coordination organization during the Gulf War, Active plan for the ROK-US combined coordination organization in near future are as follows:

First, examine the documentation of the final decision authority on the combined operation between ROK-US:

Second, the cooper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permanently, and controled by the responsible deputy comman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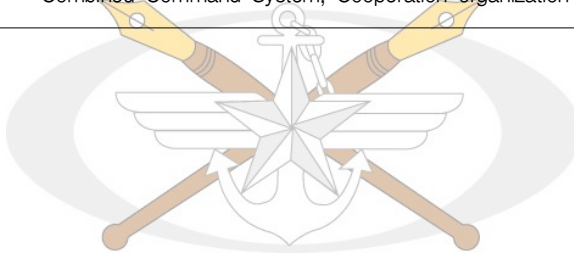
Third, the officers who speak English fluently and possess the military expertise should be assigned to the cooperation organization:

Fourth, MC Liaison Party should be established permanently to complement the current MC to prepare for the war:

Fifth, the cooperation organizations should be located in the ROKA command building or at an adjacent location and have enough space:

Sixth, a thorough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the Liaison Party are requested in peace time and during the war.

Key Word : Transfer of OPCON authority, Gulf War,
Combined Command System, Cooperation organiza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한미동맹 60년사』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3. 9. 26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그랜드볼룸)
- 주 관 : 국방부장관(정책실장 대행)
- 참석 인원 : 120명 내외
- 내 용 : 한미동맹 60년의 역사를 성립, 성장, 강화, 발전기로 나눠 동맹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성과를 군사와 안보 분야 위주로 한 권으로 정리한 연구서의 출판기념회

○ 2013년 국제분쟁사 워크숍

- 일 시 : 2013. 11. 22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인원 : 46명
- 주요 성과
 1. 이라크 안정화작전에 대해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의 주제선정 및 연구로 전쟁사 연구 관련자들의 관심 유발 및 전쟁사의 실질적 토의
 2. 실제 이라크전쟁 참전 미군의 현장 경험 발표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워크숍 성과 제고

○ 3/4분기 사적지 답사

- 답사 일정 : 2013. 10. 30
- 답사 인원 : 소장님 외 32명
- 답사 목적 :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의 영남관문을 답사
- 답사 지역 : 조령제3관문 - 조령제2관문 - 조령제1관문, 문경새재 박물관 등

○ 4/4분기 사적지 답사

- 답사 일정 : 2013. 11. 21
- 답사 인원 : 소장님 외 33명
- 답사 목적 : 백제 25대 무령왕릉과 백제시대 도읍지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공산성 답사
- 답사 지역 : 무령왕릉-국립공주박물관-공산성 등

2. 인사 이동

○ 장교 전역

- 최상호 중령(전쟁사부 연구원) : 2013. 10. 31

○ 연구소 직원 신규 임용

- 강미소(사서 9급) : 정보자료실(2013. 12. 1)

자료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 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1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 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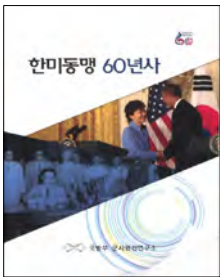
◇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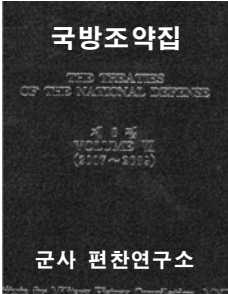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한미동맹 60년사 • 국방사부 • 46배판 • 2013. 9. 26. 	본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군사 및 안보 위주로 한미동맹사를 정리하였음. 그 대상 시기는 동맹조약이 체결되었던 1953년에서 현재까지를 다루되, 한미동맹 형성 이전과 미래 동맹의 비전도 포함. 이를 통해 동맹관계의 긍정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갈등 요소를 줄여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미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영문판) • 국방사부 • 46배판 • 2013. 9. 26. 	본서는 2010년 북한의 불법무력도발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상을 밝히던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영문 번역본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백서를 번역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구 분	내 용
국방조약집 제 8, 9집 • 국방사부 • 46배판 • 2013. 11. 29. 	본서는 국방부, 합참, 각군 등이 외국의 국방·군사기관과 체결한 국방조약을 집대성하여 미래의 국방정책 수립과 각종 조약 체결 시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편찬됨. 제8집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9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군사교류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여 정책·작전·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국방·군사 관련 조약 115건(8집)과 121건(9집)을 수록하였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82(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한환구)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 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영관(제주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박영준(국방대학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 편집간사

한환구(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3/12(第89號)

2013年 12月 5日 印刷

2013年 12月 13日 發行

發行處 國 防 部 軍 史 編 纂 研 究 所

(우편번호: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發行人 李

陽

九

印刷處 國 군 인 쇄 창 (13119019)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Kim, Byung-nam	Establishment and Political Changes of Reconstructed Baekje: Focused on Boksins' Leading a Political Situation and King Pung's Responding to Him
Yoon, Kyeong jin	The Southern regions' Resettlements on the Islands(海島入保) in Resistance of the Mongol Invasion forces
Yi, Gwang-woo	Operation Status of Samgunmun(三軍門)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Kim, Hye-young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fter the Gabo Reform: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Kim, Seon-ho	A Study on Actual power of the Air Force of Nor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force and weapon status of the Flight Division -
Lee, Sin jae	A Study on the Growth of North Korean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Chung, Yong wook	Historians on the Frontline: The Activity of US Army Military History Detachment during the Korean War
Joo, Jung youl	A Study of Napoleon's Cavalry Tactics
Park, Sung-jin	A Study on Total War Plan and 'Economic General Staff' of Japan in the 1920s
Park, Tae-gyun	Changes in Korean-US Relationship during the Vietnam War
Jung, Gwang-ho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U.S. Response
Cho, Sung ju	The Active Plan for the ROK-US Combined Coordination Organization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Authority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140-021 서울특별시 龍山區 梨泰院路 29